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7호

2001

## «제6차 KOREA학 국제학술토론회“ 자유논문발표 특집»

2000. 2. 18~22 Hawaii, Honolulu

● 韓國語의 結果狀態相	韓 東 完	1
● 남북 각방언 초분절소(운소)의 비교 연구 --15-16세기어와 관련하여--	김 영 만	15
● 韓國語의 語源 몇 가지 --알타이 諸語의 語源을 比較하며--	林 敬 淳	48
●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East Asian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 A Korea Case	Kim Jung-Bae	69
● 남북한 상사중재협력의 과제	김 상 호	84
●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보편적 세계윤리의 대두	박 주 응	101
● 국제연합(UN)의 안보 인식과 정책	유철종 · 송기돈	111
● 洪大容의 類推說과 實證說 -朱子說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姜 春 華	132
● 봉산탈춤 사자마당의 재검토: 권선징악적 사자인가, 탈춤화한 사자인가?	김 인 희	168
● 현재성의 내방가사	이 정 옥	188
●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진학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시계열 분석	有田 伸	203
●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윤 건 차	218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 韓國語의 結果狀態相<sup>\* 1)</sup>

韓 東 完

西江大學校

## 1. 問題 提起

韓國語의 遷言的 構成(periphrastic construction) '-어 있-'은 結果狀態相 内지는 完了相의 意味機能을 갖는 것으로 記述되어 왔다.

(1)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위 예문 (1)은 '철수가 의자에 앉음'이라는 先行狀況이 終結된 이후의 結果狀況이 狀態狀況으로 持續되고 있음을 보인다. 이처럼 '-어 있-' 構성이 結果狀態相 内지는 完了相의 意味機能을 갖는다는 점은 한국어 문법 기술에서 用語의 命名法의 差異를 除外하고는 一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 (2가)와 (2나)의 對比는 '-어 있-' 구성의 의미가 결과상태상임을 劇的으로 제시한다.

(2) 가.\* 철수가 자 있다.

나. 그땐 이미 바람이 자 있었다. (임홍빈 1975, (29a))

동일한 동사 '자다'를 가지고 있지만 '철수가'를 주어로 하는 (2가)는 適格 構성이 고 '바람이'를 주어로 하는 (2나)는 不適格 構成이다. 이처럼 동일한 동사 '자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적격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이들 예문이 나타내는 상황의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다.

(2가)의 경우, '철수가 잠'이라는 상황은 그 狀況이 完了된 후 어떠한 狀態 變化를 남기지 않으며, 그 상황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還元 内지는 復歸되어 버린다. 곧 '잠을 자고 난' 후의 상황은 '잠을 잔' 결과와는 아무런 유기적 관계가 없이, '잠을 자기'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철수가 잠'이라는 상황은 결과 상태가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결과상태상이 後接될 여지가 없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이 글은 國際高麗學會가 主管한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the Millennium Conference(2000년 2월 21일, Hawaii)에서 發表된 "On the Korean Resultative Aspect"를 本學術誌의 要求에 따라 分量을 줄여 실으면서 재편성과 보완을 가했다. 本稿에서 다루어 진 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한동완(1999나), 한동완(2000)에 나뉘어 실려 있다.

게 된다.

반면에 (2나)에서 ‘들판에 바람이 자다’라는 상황은 그 상황이 완료되면, 그 ‘자고 난 결과’가 상태로 남는 것이며, ‘바람이 자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말하자면 ‘바람이 자기 이전의 상황’은 ‘바람이 부는 상황’일 것인데, ‘바람이 자고 난 상황’은 ‘바람이 부는 상황’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결과상태상의 ‘-어 있-’ 구성이 결합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이처럼 ‘-어 있-’ 구성에 결과상태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구성은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이 구성이 타동사 구문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결합제약상의 특징에 있다.

(3) 가.\* 철수가 의자를 만들어 있다.

나.\* 철수가 구두를 신어 있다.

위 예문 (3)은 타동사 ‘만들다’, ‘신다’로 이루어진 타동사 구문이다. ‘만들다’, ‘신다’는 모두 결과상태를 남기는 동사들이다. 곧 상황이 수행된 이후의 결과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상태적 상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3가,나)는 모두 非文이다. (1)과 (2나)에서처럼 결과상태를 놓는 자동사 구문과는 자동사와는 결합할 수 있으나, 결과상태를 놓는 타동사와는 ‘-어 있-’ 구성이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상법주의 일반이론으로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란 근본적으로 직접 보어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런 구분이 상법주의 결합제약에 관여적이라는 것은 상법주의 일반이론으로 볼 때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국어의 특질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sup>3)</sup>

그런데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非文인 (3)에 ‘-어 있-’ 대신에 ‘-고 있-’이 결합되면 적격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의미측면에 있어서도 결과상태상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4) 가. 철수가 의자를 만들고 있다.(進行)

나. 철수가 구두를 신고 있다.(進行 및 結果狀態)

(4)는 이 두 구성이 모두 정문임을 보임과 동시에 (4가)와 (4나)에서 실현된 ‘-고 있-’ 구성의 의미가 다름을 보인다. ‘만들다’ 동사구문인 (4가)는 ‘만드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지시하는 進行相的 意味機能만을 보이는 데 반해, ‘신다’ 동사구문인 (4나)는 ‘신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지시하는 진행상적 의미기능과 더불어 ‘신은 동작의 결과상태를 지시하는 결과상태상적 의미기능을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어 있-’構成의 결합제약을 논할 때에 동사의 내재적인 상적 성격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이 지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영어의 완료상 형식 ‘have + p.p.’는 타동사 제약을 결코 보이지 않는다. 또한 日本語의 ‘て いる’ 또한 自他動詞를 不問하고 結合할 수 있다.

(4나)에서 결과상태상적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4나)가 지시하는 상황은 결과상태상황을 놓을 수 있는 동사이므로 결과상태상의 '-어 있-' 구성이 결합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어 있-' 구성이 결합되면 非文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곧이 진행상의 의미와 증의성을 놓으면서까지 '-고 있-' 구성이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또한 (4가)와 (4나)가 모두 결과상태를 놓는 상황을 지시하고 있지만, (4나)에서만 결과상태적 의미기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현상 기술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問題 1. '-어 있-' 構成이 他動詞 構文과 結合하지 못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問題 2. 他動詞文의 結果狀態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 있-' 構成이 結合되어야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問題 3. 他動詞文 가운데 '-고 있-' 構成과 結合하여 進行相對 아니라 結果狀態相의 意味機能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構成의 性格은 어떠한 것인가?

## 2. '-어 있-' 構成의 他動詞 制約

문제 1, 곧 '-어 있-' 구성이 타동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상태상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結果狀態相이란 한 事件狀況의 遂行이 終結된 以後의 結果狀態狀況을 指示하는 文法範疇이다. 이런 점에서 結果狀態相은 두 狀況의 連結, 곧 先行事件 狀況과 그 事件狀況의 遂行에 따른 結果狀態狀況의 連結이다.<sup>4)</sup>

結果狀態相의 이러한 意味機能은 그 形式的 條件에 있어서도 影響을 미쳐 凡言語的으로 볼 때 本動詞와 存在 内지는 所有의 意味를 갖는 助動詞의 結合에 의한 迂言的 構성이 그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갖는다. 한국어의 '-어 있-' 구성(그리고, '-고 있-' 구성)은 물론이고 英語의 'have+p.p'구성이나, 日本語의 [V-て + いる] 구성을 모두 存在 내지 所有의 意味를 가진 조동사를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법범주의 의미기능적 내용이 그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별 언어가 동일 의미에 상응하는 형식을 일률적으로 택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경우 所有 意味의 'have'를 그 형식으로 갖는 반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각각 存在 意味의 조동사를 취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요컨대 개별 언어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동사를 그 형식으로 채택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개별 언어마다의 體系內의 理由에 따라 다르게 성립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해당 언어의 고유한 체

4)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연결되는 두 상황 가운데 결과상태상이 더 큰 비중을 두고 지시하는 것은 전자의 사건 상황보다는 후자의 상태 상황이라는 점이다.

계내적 이유에 따라 형식이 다르게 선택된다면 그 다르게 선택된 형식은 그것 나름 대로의 능동성을 가지고 의미 내용의 질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형식과 내용은 상호 변증법적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곧 내용이 형식을 선택하지만 그 역으로 선택된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 형식의 경우는 어떤 형식이 선택되는가에 따라 그 의미기능이나 분포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가령, 영어의 구체적 형식 절차가 국어의 그것과 다름으로써 영어는 그 통사적 행태에 있어서 타동사 구문과의 결합이 제약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적 행태에서도 국어와의 공통점 이상의 심각한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have’ 동사를 취하는 영어의 완료 형식은 결과상태(perfect of result), 경험(experiential perfect), 현재 상황까지의 지속(perfect of persistent situation), 최근 과거(perfect of recent past) 등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반면에, ‘있다’를 취하는 국어의 이른바 완료 형식은 결과상태의 의미 정도만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차이점을 보임이 바로 그것이다.(한동완 1999가 참조)

또한 일본어와 한국어가 동일 의미의 조동사를 결과상태상의 형식으로 취하지만, 연결어미로 한국어가 취한 ‘-어’와 일본어가 취한 ‘-て’가 각각의 언어에서 보이는 분포적 행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보이지 않는 타동사 제약을 한국어의 ‘-어 있-’ 구성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 있-’ 구성의 타동사 제약은 결과상태상적 의미기능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다. 앞절의 예문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어 있-’ 구성이 (2가)에서는 성립되지 않고 (2나)에서는 성립되는 것은 의미론적 이유로 완벽하게 설명되지만, (4나)가 성립되어 결과상태상적 의미기능을 지시할 수 있음에도 (3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의미론적 이유로 설명될 수 없다.

결국 문제 1에 대한 해답은 결과상태상적 의미기능을 보이는 ‘-어 있-’ 구성과 ‘-고 있-’ 구성에서의 형식적 차이인 ‘-어’와 ‘-고’가 보이는 결합 제약상의 특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곧 한동완(1986)에서 제안되었듯이, ‘-어 있-’ 구성의 타동사 제약은 국어의 일반적인 ‘동사1 -여 -동사2’의 구성 원리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5)</sup> 환연하자면, [[V1] -어- [V2]] 접속 구성에서 선후행 동사의 어휘적 의미 및 ‘-어-’가 갖는 통사적 관계기능의 합성에 작용하는 일반 원리가 V2 항에 ‘있-’이 채워진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후술되겠지만 [[V1] -어- [V2]] 접속 구성의 결합 제약은 [[V1] -고- [V2]] 접속 구성의 결합 제약과 표리 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 1과 문제 2 또한 표리 관계에 놓일 수 있다. 곧 [[V1] -어- [V2]] 접속 구성과 [[V1] -고- [V2]] 접속 구성에서 ‘-어’와 ‘-고’가 선택되고 배제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원리를 통해 문제 1과 문제 2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엄밀히는 두 문의 합성 구성일 것이나, 이 점은 무시한다. 또한 여기서 ‘동사’는 형용사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계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론 이 선택과 배제의 원리는 국어의 문법 연구에 있어서 포착되기 어려운 원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원리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은 이 글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므로 별도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어'와 '-고'의 구성의 다른 바 타동사 제약과 관련하여 가설적으로 제안해 두는 것은 다음과 같다.

#### (5) '-어'와 '-고'의 選擇原理(假說)<sup>6)</sup>

全般的인 韓國語의 [V1 어 V2] 구성에서 後行 V2는 '-어'의 선행 동작 V1의 遂行 結果 일차적으로 변화를 입은 x와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반면에 [V1 고 V2] 구성에서는 '-고'의 선행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은 x와 후행 동사 간에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가설은 다음의 예문들이 증명해 준다.

- (6) 가. 철수가 의자에 앉{고/어} 공부했다.  
나. 철수가 2년 동안 집안에 숨{고/어} 살았다.
- (7) 가. 철수가 잠바를 입{고/어} 밥을 먹는다.  
나. 철수가 밥을 먹{고/어} 공부하였다.

(6)과 (7)은 선행절의 동사가 각각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자동사가 선행절에 나온 (6)은 '-고'를 배제하는 대신 '-어'를 선택하고, 그리고 타동사가 선행절에 나온 (7)은 '-어'를 배제하는 대신 '-고'가 결합되어 있는 흥미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선행절이 자동사일 경우는 '-어'가, 타동사일 경우는 '-고'가 선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를 (5)의 가설적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자동사일 경우는 선행동사의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은 x가 항상 주체인 반면에 타동사일 경우는 일차적 변화 대상은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행동사가 자동사일 경우는 동작 주체가 동작의 변화를 입은 x라는 자격을 가지고 후행 동사의 주체로 연결되므로, 앞서 우리가 일반화한 [V1 어 V2] 구성에서 '-어'의 선행동사의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은 x가 후행동사와 통사 의미론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

이에 반해 선행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는 그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는 것은 주체가 아닌 대상이므로 그 대상이 후행 동사와의 통사 의미론적 관계를 가지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것이다. 실상 (6)에서의 선행 동사의 대상은 후행 동사와 아무런

6)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이시형(1990)에서 '-고'와 '-어'의 변별성을 [+방벽성], [-방벽성]으로 설명했던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명의 궤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5)의 가설로 (7)에서 '-어'가 아닌 '-고'가 선택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의 가설이 보다 확고해지려면 선행 동사가 타동사라 하더라도 그 선행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은 x가 후행 동사와 통사 의미론적 관계를 맺을 경우는 '-고' 아닌 '-어'가 선택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가. 철수가 웃도리를 벗~~{고/\*어}~~ 공부했다.

나. 철수가 웃도리를 벗{\*고/어} 던졌다.

(8가)에서 선행 동작 '벗다'의 대상인 '웃도리'와 후행동작 '공부하다'는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 아닌 '-고'가 선택된다. 반면 (8나)의 선행 동작 '벗다'의 대상인 '웃도리'는 후행 동작 '던지다'의 대상이므로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가 분명히 성립된다. 따라서 (8나)는 '-고'가 아닌 '-어'가 결합된다.

이상의 (6)-(8)의 예문들은 '-고'와 '-어'의 分布가 排他的인 경우였지만, 이제 '-고'와 '-어'가 모두 成立 可能한 文을 검토해보자.

(9) 가. 철수가 숙제를 해 왔다.

나. 철수가 숙제를 하고 왔다.

(10) 가. 영수가 수미를 안~~와~~ 밥을 먹었다.

나. 영수가 수미를 안고 밥을 먹었다.

다. 영수가 수미를 안{고/\*어} 밥을 먹었다.

(9), (10가,나)는 '-어'와 '-고'가 모두 선택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며, 그러한 의미 차이는 가설 (5)에 의해 예측 가능하다. '-어'가 선택된 (9가)는 선행 동작의 결과 대상물인 '숙제'를 후행 동작인 '온' 곳에 '가지고 왔다'는 의미로 연역되는 반면에, '-고'가 선택된 (9나)는 두 동작 간에 아무런 관계 의미가 연역되지 않는다. '숙제를 해 놓고 왔다'는 의미 정도로 연역될 뿐인 것이다.

이런 사정은 (10)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0가)에서는 '영수가 밥을 먹이는' 대상이 '영수가 안는' 대상인 '수미'라는 점이 분명히 부각되는 반면, (10나)에서는 '밥을 먹이는' 대상이 '수미'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10가)에서는 '수미에게 밥을 먹이다' 정도로 연역되는, 선후행 동작과의 통사 의미론적 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10나)에서는 그런 의미 관계의 성립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수미를 안고 제3자에게 밥을 먹이는' 상황의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설 (5)의 타당성을 다시금 확인케 하는 것은 (10다)이다. (10다)는 후행 동사가 能動의 타동사 '먹다'인 경우다. 이 경우는 '-어' 아닌 '-고'만 선택될 뿐인데, 이는 선행 동작의 일차적 대상인 '수미'가 후행 동작의 구성 요소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밥을 먹는' 상황의 주체는 '영수'이지 '수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설 (5)의 설명력이 극적으로 미치는 것은 다음 (11)이다.

- (11) 가. 영수가 수미를 업{고/\*어} 밥을 먹였다.  
 나. 영수가 수미를 업{고/\*어} 밥을 먹었다.

우선 (11나)에서 '-어' 아닌 '-고'가 선택되는 것은 (10다)에 행해졌던 설명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선행 동작의 일차적 대상인 '수미'는 후행 동작의 주체일 수도 대상일 수도 없다. 그런데 (11가)는 '-고'와 '-어'가 모두 선택되는 (10가,나)와는 달리 '-고'만 선택됨을 보인다. 이는 "영수가 수미를 안아 수미에게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 연역이 가능한 (10가)와는 달리 "영수가 수미를 업고 수미에게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 연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가 선택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세계의 논리상 '업힌' 사람에게 '밥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9~11)에서 '-고'와 '-어'가 모두 선택되는 구성에서의 두 의미는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고'의 경우는 선행 동작의 변화를 입는 x가 후행 동작의 구성 요소가 될 필요가 없으나, '-어'의 경우는 반드시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가설 (5)를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sup>8)</sup> 그렇다면, '-어 있-' 구성의 타동사 제약은 가설 (5)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어'와 '-고'가 선택되는 보다 상위의 일반 원리인 (5)에 의해 '-어 있-' 구성이 타동사와 결합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곧 '-어 있-' 구성의 선행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는 그 선행 동작의 일차적 대상이 후행의 '있다'와 통사 의미론적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자동사 '있다'는 그런 통사 의미론적 관계를 성립시키지 못하므로 타동사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9)</sup>

### 3. '-고 있-' 構成의 重義性과 再歸的 狀況

- 
- 7) 거듭 강조하거나와 (11가)에서 '-어'가 아닌 '-고'의 선택이 가능한 것은 "철수가 영희를 업고 철수가 영희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 연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8) 물론 이러한 가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여러 문제와 충돌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 절차가 요구될 것이지만, 본고의 목적한 바와 너무 거리가 멀어질 것이므로 이 정도의 지적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다만 가설 (5)가 보다 정교화될 것을 요구하는 구문은 이동동사 구문인 '-{어/고} 가다/오다' 정도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 9) 다음 예에서 제시되듯이 이른바 對格 '-을'이 나타남에도 '-어 있-' 구성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가. 총구가 나를 향해 있다.(임홍빈 1975, (24a))  
 나. 경계선이 서울을 접해 있다.(임홍빈 1975, (24c))  
 다. 동생은 학교를 가 있다.(임홍빈 1975, (25a))

하지만, 이들은 실상 자동사 구문이며 主題化 내지는 焦點化를 통해 '-을' 성분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설명은 한동완(2000)에 실려 있다.

前述하였듯이 일반적으로는 진행상적 의미를 갖는 ‘-고 있-’ 구성이 일부 타동사와 결합하여 결과상태상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리하여 이른바 ‘-고 있-’ 구성은 진행상과 결과상태상의 중의성을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고 있-’ 구성이 중의성을 보일 수 있는 구문은 일부 타동사 구문으로 제한된다. 이제 1절에서 문제 3으로 정리되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할 차례이다.

문제 3에 대한 해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성과로는 이남순(1981)이 대표적이다. 이남순(1981)은 그가 분류한 F류 동사(=성취동사 : [+동적, -정적, +국시적] : 입다, 신다, 매다, 쓰다, 뜨다, 잡다, 둘다, 입다, 끼다, 앉다, 서다, 가다, 숨다, 등) 중에 [+재귀적]인 동사들은 ‘-고 있-’과 결합하여 [동작 미완료]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하고, [동작의 완료] 후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에서 ‘-고 있-’이 결합되어 중의성을 보이는 동사들의 성격을 [+재귀적] 동사라 한 것은 하나의 큰 成果라 할 만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재귀성]의 동사를 동작의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곧 자동사)이라 한 점이다. 동작의 목적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동작주 자신이 주체이자 목적이 될 것이므로 [재귀성]이라는 자질은 이 경우 비관여적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동사와는 달리 타동사는 동작 주체의 행동이 일차적으로는 동작 대상에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귀성]의 자질이 관여적인 것은 바로 타동사이다. 요컨대 타동사란 동작의 주체와 목적 대상을 필요로 하는 동사로서, 주체의 동작이 대상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종결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체의 동작이 그 대상에 변화를 일단 가하고 그 변화가 다시 주체에게로 귀결되어 주체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느냐 하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동사가 [+재귀적]인가, [-재귀적]인가 하는 문제는 타동사를 구별하는 데 관여적인 자질인 것이며, 자동사는 [재귀성] 자질에 관한 한 비관여적인 것이므로 여기에 [-재귀성]의 자질을 부여하는 것은 임의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다.

F류 동사 중 동작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에 [-재귀성]을 부여하는 것을 수정하여 타동사 가운데 [+결과성]을 [±재귀성]의 자질로 분석하면 ‘-고 있-’이 결합하여 중의성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재귀성]의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12) 가. 철수가 의자를 만들고 있다.(進行)  
나. 철수가 구두를 신고 있다.(進行 및 結果狀態)

(12)는 1절의 예문 (4)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12가)의 ‘만들다’는 그 동작이 대상인 ‘의자’에만 미칠 뿐이며, 주체인 ‘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곧 재귀되는 일은 결코 없는 반면에 (12나)의 ‘신다’는 동작 주체의 ‘신는’ 행위가 동작 대상인 ‘구두’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동작 주체에게 다시 귀결되어 주체인 ‘철수’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만들다’ 동사에는 그 동작의 결과가 주체에게로 재귀되는 의미가 없는 [-재귀성]을, ‘신다’ 동사에는 그 동작의 결과가 주체에게로 항상 재귀되는 특성을 갖는 [+재귀성]의 의미 자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12)에

서 진행과 결과상태의 중의성을 갖는 것은 [+재귀성] 동사가 나타난 (12나)이다. 따라서 [+재귀성]의 자질을 갖는 동사는 '-고 있-'이 결합되어 중의적 의미를 산출한다는一般化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는 '-고 있-' 구성이 똑같은 동사와 결합하더라도 상황의 성격에 따라 '재귀성' 여부가 달라지는 다음 예문 (13)의 분석을 통해 수정되어야 한다.

- (13) 가. 철수가 이불을 덮고 있다. (進行 및 結果狀態)  
 나. 철수가 슬레이트를 지붕에 덮고 있다. (進行)

(13가)에서 보듯이 '이불을 덮는'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인 '이불'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고 다시 그 결과가 주체인 '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13나)에서 보듯이 '슬레이트를 지붕에 덮는' 행위는 그 행위 대상인 '슬레이트'에 일차적 영향을 주고, 다시 그 결과가 '지붕'에 영향을 줄 뿐 주체인 '철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결과로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재귀적 상황인 (13가)는 진행상적 의미와 결과상태상적 의미의 중의성을 갖는 데 반해 주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13나)는 진행상적 의미만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귀성]의 자질을 갖는 동사에 '-고 있-'이 결합되어 중의적 의미가 산출된다는 일반화는 상황의 성격이 '재귀적'일 경우 중의적 의미를 산출한다는 것으로 확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sup>10)</sup> 이렇게 보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과제인 '-고 있-'의 중의성은 재귀적 상황에 한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제 [재귀성]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박양규(1985)에서 想定된 再歸動詞와의 대비를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박양규(1985)는 재귀 동사를 재귀 성분을 지배하는 동사라 정의하고, 재귀성분은 속격형의 한정사와 그것을 지배하는 명사로 이루어진 이른바 讓渡할 수 있는 所有의 屬格構成이며, 따라서 再歸動詞란 屬格支配 名詞를 支配하는 動詞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다음에 박양규(1985)의 재귀동사의 몇 예를 들어본다.

- (14) 가. A가 {A의, \*B의} 입을 다물다  
 나. A가 {A의, B의} 다리를 꼬집다  
 다. A가 {"A의, B의} 입술을 훔치다  
 (15) 가. A가 ({A의, \*B의} 발에) 양말을 신다  
 나. A가 ({A의, B의} 가슴에) 명찰을 달다

박양규(1985)에 따르면 (14가)의 '다물다' 동사는 그 목적어인 '입'이 양도할 수 없

10) 근자의 상 범주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들에서는 동사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 전체의 상적 성격, 곧 상황 유형을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Smith(1991), 김종도(1993), 우창현(1997), 이호승(1997) 등을 참조할 것.

는 소유의 속격 구성만을 항상 지배한다는 점에서 再歸動詞이며, (14나)의 ‘꼬집다’는 그 목적어가 양도할 수 있는 소유의 속격 구성과 그렇지 못한 속격 구성을 모두 지배한다는 점에서 非再歸動詞이고, (14다)의 ‘훔치다’는 그 목적어가 양도할 수 없는 속격 구성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反再歸動詞이다. 같은 논리로 (15가)의 ‘신다’는 재귀 동사이며, (15나)의 ‘달다’는 비재귀동사로 처리된다. 다만, (14가)의 ‘다물다’는 對格 再歸動詞이며, (15가)의 ‘신다’는 處格 再歸動詞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양규(1985)에서의 재귀 동사는 우리의 [+재귀성]과는 본질적으로 정의부터가 다른 것이다. [+재귀성]은 동작이 일차적으로 동작 대상에 가해진 다음, 그것이 주체에게로 다시 귀결되는 속성을 뜻한다. 따라서 [+재귀성] 개념은 그 설명이 타동사 구문에만 미치며 자동사 구문은 전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부 자동사문이나 이중주어문이 박양규(1985)에서는 재귀 동사의 용법을 갖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재귀 동사와 [+재귀성] 간의 차이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것은 박양규(1985)의 재귀 타동사들과, 양도할 수 없는 속격 구성을 지배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지배하는 비재귀 타동사들은 ‘-고 있-’과 결합하여 진행상과 결과상태상의 중의성을 보이는 반면에, 양도할 수 있는 속격 구성을 지배하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지배하는 비재귀 타동사나 반재귀 타동사는 그러한 중의성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는 것이다.

- (16) 가. 미희가 신발을 신고 있다.
- 나. 미자가 새 명찰을 달고 있다.
- 다. 유리가 수지의 옷에 명찰을 달고 있다.
- 라. 이도령이 춘향이의 입술을 훔치고 있다.

재귀 동사 구문인 (16가)에서뿐만 아니라 비재귀 동사 구문인 (16나)에서도 중의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수지의 옷에’라는 양도할 수 있는 속격 성분을 지배하는 처격구가 명시된 (16다)는 항상 진행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반재귀 동사 구문인 (16라)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보면 일견 박양규(1985)의 재귀성 동사와 우리의 [+재귀성] 개념이 적어도 ‘-고 있-’이 결합된 타동사 구문에 관한 한 겹치는 듯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은 두 개념이 상이함을 보여 주고 있다.

- (17)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 (18) 수미가 (자기의) 허벅지를 꼬집고 있다.

(17)의 ‘알다’ 구문은 박양규(1985)의 개념으로는 재귀 동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술하였듯이 결과상태상적 의미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의 [+재귀성] 개념으로 한다면 ‘알다’ 역시 그 동작이 대상에 행해져서 어떤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주체의 인식 상

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귀성]의 자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8)은 박양규(1985)의 개념으로는 재귀적 상황이다. 양도 불가능한 속격구를 지배하고 있는 재귀 성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8)에서는 진행의 의미만을 산출할 뿐이다. 우리의 설명 방식을 동원하면 (18)에서 ‘꼬집다’ 동사는 [-결과상태성]의 자질을 가지므로 재귀적 상황의 상정이 아예 불가능하고 따라서 결과상태상적 의미의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예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박양규(1985)의 재귀동사를 우리의 [재귀성] 개념과 대비하는 가운데 재귀적 상황의 경우 ‘-고 있-’이 결합되어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일반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제 ‘-고 있-’이 결합하여 중의성을 냉는 동사, 정확히 하자면 결과상태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갖고 있는 相的 性格을 모두 나열하면 [-狀態性, 土瞬間性, +結果性, +再歸性]과 같은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재귀성]은 [+결과성] 자질의 하위 자질이다. [-결과성]은 동작 변화의 결과가 동작 대상에 남지 않는 것이므로 주체에 그 변화가 재귀되는 것을 해당초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은 [재귀성] 자질에 대한 反證例인 것처럼 보인다.

(19) 가. 철수가 미희의 머리를 깎고 있다.

나. 철수가 이발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깎고 있다.

다. 철수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깎고 있다.

(19가)는 박양규(1985)의 개념으로도 양도 가능한 속격 구성을 지배하는 비재귀 성분이 나타난 비재귀 상황이며 [재귀성]의 개념으로도 동작 주체인 ‘철수’의 행동이 동작 주체에게로 재귀되지 않는 비재귀적 상황이므로 진행상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설명된다.

박양규(1985)에 따르면 (19나)는 재귀적 상황이다. 양도 불가능한 속격 명사구를 지배하고 있는 재귀 성분을 ‘깎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의 설명 방식을 가져오면 재귀적 상황에 ‘-고 있-’이 결합된 (19나)는 중의성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우리는 (19나)에서 진행의 의미만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재귀성] 개념으로 보면 (19나)는 비재귀적 상황이다. (19나)의 ‘깎다’ 구문은 일종의 能格動詞 構文으로서 주어인 ‘철수’는 ‘깎다’ 동사의 동작 주체일 수 없다. (19나)의 주어 ‘철수’는 실제로는 “머리가 깎임”을 당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구문은 동작 주체의 행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초 [재귀성]의 개념이 상정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19나)에서 결과상태상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자동적으로 설명된다.

문제는 (19다)에 있다. 곧 (19다)는 박양규(1985)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재귀성] 개념으로 비추어 보아도 반증례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19다)와 같은 상황은 그 동작이 대상인 ‘머리’에 변화를 가하고 다시 주체인 ‘철수’의 상태에 변화를 주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과상태상적 의미가 산출되어야 하지만

(19다)에서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귀성]이라는 개념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검토를 여기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본절에서 재귀적 상황의 예로 제시된 것만을 일별해 보면 [재귀성] 개념이란 것이 그 동작이 대상에 상태 변화를 준 다음 그 대상의 상태 변화가 주체에게로 다시 귀결, 즉 재귀된다는 것이지만, 이 때의 두 변화, 곧 주체와 대상의 변화는 모두 비본질적인 변화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일반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예를 통해 살펴보면, “철수가 옷을 입음”이라는 상황에서 동작 대상인 ‘옷’은 위치가 이동되는 변화를 입는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변화를 입지 않음이 확인된다. 곧 대상 ‘옷’은 “철수의 몸이 아닌 곳에 있다가 철수의 몸에 붙어 있게 되는” 위치 이동의 변화를 입을 뿐으로 그 ‘옷’의 성격이 변한다든지, 혹은 마모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본질적인 변화를 입지는 않는다.<sup>12)</sup> 더더욱이 ‘알다’ 동사는 대상에 대해 아무런 상태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19다)에서 결과상태상적 의미가 산출되지 않는 이유가 해명된다. 곧 “머리를 깎는” 동작은 그 결과가 주체에게로 재귀되기는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대상인 ‘머리’에 본질적 변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귀적 상황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재귀적 상황인 경우 동작 대상의 변화가 본질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재귀적 상황 자체의 개념상 자동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재귀적 상황이란 동작이 대상에 미치는 타동사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에로 그 동작이 다시 귀결되는 것인 만큼 동작 대상의 변화는 위치 이동 정도의 극히 비본질적 변화여야 한다는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3)</sup>

#### 4. 結言

이상에서 韓國語 結果狀態相의 意味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어 있-’ 구성과 ‘-고 있-’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주로 結合制約上의 특성, 후자는 重義性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11) 그리고 두 변화 가운데 주도적인 것은 대상의 변화가 아니라 주체의 변화인 듯이 보인다.

12) [+재귀성]의 동사로는 ‘입다, 업다, 안다, 신다, 끼다, 등등’의 동사가 있는데, 이를 동사는 모두 그 동작 대상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그 이동 위치는 항상 주체의 어느 신체 부위이며, 이로써 주체에 변화를 가하는, 곧 [+재귀성]의 자질을 갖는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13) 반면에 자동사 구문에서의 결과상태상 ‘-어 있-’은 이런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동사 구문의 동작이란 근본적으로 동작의 주체에게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주체의 본질적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하다.(예: 종이가 찢어져 있다.)

우선 우리는 2절에서 ‘-어 있다’ 구성의 他動詞 制約은 보다 上位의 一般論的 制約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곧 [[V1] -어- [V2]] 接續 構成에서 先後行 動詞의 의미 및 ‘-어-’가 갖는 統辭的 關係機能의 合成에 作用하는 一般原理가 V2의 항에 ‘있-’이 채워진 ‘-어 있다’ 구성의 결합제약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V1] -어- [V2]] 접속 구성과 [[V1] -고- [V2]] 접속 구성에서 ‘-어’와 ‘-고’가 選擇되고 排除되는 원리는 국어의 문법 연구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원리라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원리에 대한 전면적인 기술은 별도의 자리를 기약하였다. 그러나 假說的으로 ‘-어’와 ‘-고’의 選擇 原理를 想定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인 국어의 [V1 어 V2] 구성에서 후행 V2는 ‘-어’의 선행 동작 V1의 수행 결과 일차적으로 변화를 입은 x와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반면에 [V1 고 V2] 구성에서는 ‘-고’의 선행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은 x와 후행 동사 간에 통사 의미론적인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3절에서 우리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重義性을 보이는 동사 내지는 상황의 성격으로 再歸的 狀況을 주목하였다. 재귀적 상황이란 동작의 주체가 행한 행동이 동작의 대상에 변화를 가한 다음에 그 동작 변화가 다시 동작 주체에게로 미치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 개념을, 이남준(1981)이나 박양규(1985)의 그것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밝히는 가운데 보다 정밀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재귀적 상황에서 보이는 변화란 것이 본질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곧 재귀적 상황인 경우 동작 대상의 변화가 본질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약은 재귀적 상황 자체의 개념상 자동적으로 따라나오는 것임을 또한 밝혔다.

## 참고논저

- 장기진(1985), “진행형 ‘-고 있다’의 의미,” *홍익어문* 4.
- 고영근(1980), “국어 진행상 형태의 치소론적 해석,” *어학연구* 16-1.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텁출판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종도(1993), “우리말의 상 연구,” *한글* 219.
- 김종도(1996), “도움 음직씨 ‘오다/가다’의 상적 의미,” *한글* 233.
- 김종태(1986), “-아 있다”, “-고 있다” 조동사 구분에 대하여,” *영남어문학* 13.
- 김차균(1980), 「-아 있」과 「-고 있」의 의미, 언어 1: 41-54, 충남대 어학연구소.
- 김홍수(1977), “계기의 ‘-고’에 대하여,” *국어학* 5.
- 박양규(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 박진호(1994), “중세국어의 피동적 ‘-어 잇-’ 구분,” *주시경학보* 13.
- 서정목(1998), *문법의 모형과 핵계층 이론*, 태학사.
- 서정수(1996), *현대국어문법론*,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광수(1976), “존재(동)사 ‘있다’에 대한 재고,” *강복수박사회갑논문집*.
- 성기철(1972), “어미 ‘-고’와 ‘-어’에 대하여,” *손낙범선생회갑논문집*.

- 옥태권(1988), 국어 상 조동사의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부산대).
- 油谷幸利(1978), “현대 한국어의 동사분류,” 조선학보 87.
- 이기갑(1981), “씨끌 ‘-아’와 ‘-고’의 역사적 교체,” 어학연구 17-2.
- 이남준(1981), “현대국어의 시제와 상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46.
- 이남준(1987), “‘에’, ‘에서’와 ‘-어 있다’, ‘-고 있다’,” 국어학 16.
- 이남준(1998), 時制·相·敍法, 월인.
- 이승육(1973),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시형(1990), 한국어의 연결 어미 ‘-이’, ‘-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강대).
- 이지양(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51.
- 이필영(1989), “상형태와 동사의 상적특성을 통한 상의 고찰,” 주시경학보 4..
- 이호승(1997), “현대국어의 상황 유형 연구,” 국어연구 149.
- 임홍빈(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국민대학논문집 8.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1 — 문장범주와 굴절, 태학사.
- 정태구(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 최현배(1965:개정 4판), 우리말본, 정음사.
- 한동완(1986), “과거시제 ‘엇’의 통시론적 고찰,” 국어학 15.
- 한동완(1996), 국어의 시제 연구, 태학사.
- 한동완(1999가), “국어의 시제 범주와 상 범주의 교차 현상,” 서강인문논총 10.
- 한동완(1999나), ‘-고 있다’ 구성의 중의성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5.
- 한동완(2000), “-어 있다” 구성의 결합 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박이정.
- Binnick, R.(1991), Time and the Verb, Oxford University Press.
- Comrie(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rie(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berg, Adele E.(1991), A Semantic Account of Resultatives. Linguistic Analysis 21.
- Lyons, J. (1977), Semantics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arlota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Tenny, Carol L.(1994), Aspectual Roles and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 남북 각 방언 초분절소(운소)의 비교 연구

--15-16세기어와 관련하여--

김 영 만

영남대학교

## 1. 서론

여기서 超分節素(초분절소)란 Suprasegmental(~Phoneme)s의 번역어로서 고저, 장단, 강약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그런 범위에서는 韻素(운소), 즉 Prosody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超分節素”와 “韻素”는 동일한 의미로 쓴다<sup>1)</sup>.

종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흔히 “聲調(성조)”라는 용어로 다루어져 왔으나, 국어<sup>2)</sup>는 성조언어가 아닐 뿐 아니라, 성조라고 하면, 고저만이 문제가 되고 장단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국어에서 장단이 갖는 중요성은 고저보다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기 때문에 고저는 다루면서 장단은 다루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더구나 표준어의 바탕이 되는 서울 방언에 장단이 있고 경북 방언에는 고저와 장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장단을 무시하는 근래 학계 일부의 현상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다.

국어가 전통적으로 변별적인 超分節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5-16세기에 나온 문헌들은 이 超分節素를 표시하기 위해 글자(음절 단위)의 원쪽에 점(방점)을 찍었고, 近·現代의 거의 모든 방언들이 변별적인 장단 또는 고저를 가지고 있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15-16세기 국어(중세국어)의 韵素와 현대 각 방언의 韵素 사이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동서남북으로 다양하게 분화 발전해 나간 여러 방언들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근원에서 뻗어 나간 자취를 재현해 보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화해와 통일로 나가는 길에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다행이겠다.

현대 방언은 서울(서부), 경북(동남), 함경(동북)의 세 방언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중세국어는 15-16세기 문헌의 방점(0점, 1점, 2점)으로 표시되는 문헌어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국어의 운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업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논저들만 자세히 검토해 보아도, 중세국어나 현대 각방언의 韵素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1. “超分節素(supra-segmentals)에 대해서는 分節素(segmentals)”, “韻素(prosodeme)에 대해서는 音素(phoneme)”를 대칭적으로 쓰기로 한다.

2. Korean.

3. 다만 최근의 짚은 세대의 언어에서는 장단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처음으로 이 방면을 연구하는 이들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訓民正音>에는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왼쪽에 1점을 찍은 것은去聲이고, 2점을 찍은 것은 上聲이고, 점을 안 찍은 것(0점)은 平聲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중세국어 문헌의 모든 자리(환경)에 있는 방점을 다 표면 운소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모암(snake, <月曲>70章, 月釋二58b)”의 “-암”에는 점이 없다. 따라서 이 음절의 韻素는 平聲(즉 0)으로 나는 것으로 믿고; “:새:매(sparrow-hawk, <訓蒙字會·上·禽鳥>),”의 “-매”는 2점이 찍혀 있으니까 上聲(즉 II)으로 소리난다고 믿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다. 뒤에 언급할 바와 같이 “:새:매”는 “:새(bird, sparrow)”와 “:매(hawk)”의 합성어로서, “-매”에 찍힌 2점은 “:매”的 기저(基底) 운소가 上聲(즉 II)임을 나타낸다. 하지만, 제2음절 이하에서는 上聲(II)이 去聲(I)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중세국어의 上聲(II)에 해당하는 서울과 경북 방언의 長音이 제2음절에 오면 短音으로 바뀌는 것이 그 흔적이다. 그리고, “·모암”的 제2음절에 점이 없는 것은 去聲(I)의 표시인 1점을 생략한 것이지, 平聲(0)의 표시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15-16 세기의 여러 문헌을 잘 고찰해 보고, 살아 있는 현대국어의 각 방언을 비교해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訓民正音>의 규정 한 가지만 교조적(教條的)으로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국어에 대해서는 운소의 고저, 장단에 대하여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경상도 방언의 韵素에 대해서도 가령 “뽕나무가(mulberrytree+nom.)”의 韵素를 “MMHM”으로 기술(표기)하는 이도 있고, MHHM”으로 기술(표기)하는 이도 있다. 객관적인 소리는 한 가지 뿐인데 이렇게 기술(표기)을 달리하는 것은 이 말의 韵素에 대하여 음성학적인 면에서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음운론적 기술 방법(이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지 않은 것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0) ㄱ· 표면 운소: “뽕나무가”=[ooOu(hhHm)]  
ㄴ· 기저 운소: “뽕나무가”=/OOOU(HHHM)/<sup>5)</sup>

- 
4. <訓民正音>에서는 “平聲, 去聲, 上聲” 등의 용어를 漢字의 원음 四聲을 말할 때나 국어 韵素를 말할 때나 구별 없이 썼기 때문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국어의 韵素에 대해서는 0(平聲), I(去聲), II(上聲)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였다.  
5. 여기서 필자가 사용하는 기호는: O는 高調(H), U는 中調(M)에 해당한다. / /는 音韻, [ ]는 音聲이라는 종래 분절음에서의 표기 체계를 그대로 원용했다. /O/는 [O]와 [o]의 두 異音을 가지며 /U/도 [U]와 [u]의 두 異音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 ) 안은 다른 연구자들의 문자 체계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뽕나무-”는 기저 韵素가 모두 高調/O/이며, 주격 표지 “-가”的 기저 韵素는 中調 /U/이다. 따라서 이 말의 기저 운소는 /OOOU/이다. 그러나, 음성 실현의 단계에서는 여러 변이가 일어난다. 첫째로

여기서 (0ㄱ)은 음성적인 면에서 이 네 음절의 고저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고, (0ㄴ)은 이것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안이한 종래의 관점이 타성적으로 답습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어학, 또는 언어학 개론서에서도 한국어 韻素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종래의 연구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한국어 운소의 참모습을 탐구하는 데는 아주 미흡하다.

이 논문이 처음 국어의 초분절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추겨 줄 수 있기를 바란다.

## 2. 중세(15-16세기) 국어의 韵素

### 2.1 단음절어의 세 韵素(θ, I, II)

문현상 15-16세기 국어의 韵素는 매개 글자마다 원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예컨대 “꽃(꽃, flower)”은 0점, “풀(풀, grass)”은 1점, “별(별, star)”은 2점이다.

<訓民正音>에서는 0점이 찍힌 韵素는 “平聲”, 1점이 찍힌 韵素는 “去聲”, 2점이 찍힌 韵素는 “上聲”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用語는 漢字音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四聲(平·上·去·入聲)을 말할 때 쓰는 말이므로 이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筆者가 제안한 회립 문자 θ(theta, 0점), I(iota, 1점), II(pi, 2점)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방점수를 상정하여 만든 것이다. 다만 독자들과 종래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논문의 앞 부분에서는 ‘平·上·去’ 등과 ‘θ, I, II’를 병용하고 뒤에 가서는 전적으로 ‘θ, I, II’만을 쓰기로 한다<sup>6)</sup>.

O가 두 개 이상 연속할 때는 마지막의 한 음절(즉 “-무-”)만 高調(H)로 실현되는데 이 때의 高調는 [O]로 표시한다. 그 앞의 음절들(즉, “뽕나-”)은 낮게 실현된다. 이 낮게 실현되는 韵素는 中調U(M)와는 다르다. 이것을 필자는 [o]라고 명명한다. 즉, “뽕나-”는 [o o]이다. 그리고 주격 표지 “-가”는 基底는 /U/이지만 O 뒤, 또는 제3음절 이하에서는 더 낮게 실현되는데 이것을 [u]로 나타낸다. 결국 “뽕나무가”的 표면 음조는 [ooOu]로 나타낼 수 있다. 본론 및 金永萬(1997) 참조.

6. 訓民正音 제정자들이 국어의 세 韵素를 “平聲, 去聲, 上聲”이라 명명한 데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당시 국어에서 漢字音의 韵素는 다음 통계표(金永萬 1967, 19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原音 四聲과 상당히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正音 제정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平聲 → θ(95%)

上聲 → II(80%), I(15%)

去聲 → II(80%), I(15%)

入聲 → I(99%)

우선 원음 平聲은 95%가 θ로 실현되기 때문에 θ에 “平聲”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당연하다. 上聲과 去聲은 똑같이 80%는 II, 15%는 I이다. 따라서 이를 韵素가 “上聲”과 “去聲”

15-16세기의 어휘의 각 음절은 모두 이 세 운소(0, I, II) 중 어느 하나로 되어 있다. 이 특질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단음절어이다. 모든 단음절어의 韻素는 모두 이 세 韵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편의상 운소가 0인 語類를 “**奚類**”, I인 語類를 “**𢂔類**”, II인 語類를 “**별類**”라 부르기로 한다. 15-16세기 문헌의 방점 표기에 의하면 다음에 제시하는 단음절 명사는 韵素에 따라 분명히 세 語類로 나누어진다.

### (1-a) ‘**奚**’ 類 ( 0점 [ 0 ] )

갓(物)	갓(妻)	갓(皮)	갓(物)	갓(表)	곁(腋)	곁(傍)	꽃(花)	쌩(雉)	그(其)	긷(柱)
낫(稅)	낫(生)	납(猿)	납(顏)	넋(魂)	넙(脅)	노(繩)	늦(兆)	닥(楮)	닫(銛)	닭(鷄)
닷(덧)	더(廷)	덕(棚)	뚱(糞)	독(瓮)	돌(猪)	동(背)	딜(陶)	돈(伯)	돈(馬)	돈(便)
목(頸)	昃(分)	뭇(束)	물(陸)	밋(舵)	밋(餌)	밀(底)	불(曉)	밖(外)	밭(田)	비(梨)

으로 명명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다만 上聲과 去聲이 다 같은 비율로 II와 I로 실현되는데 (“上去無別<東國正韻·序>”), 왜 II를 “上聲”이라 하고 I를 “去聲”이라 하였는가? 그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어느 한 쪽은 “上聲”이란 이름으로, 다른 한 쪽은 “去聲”이란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국어 漢字音의 현실에 바탕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入聲인데, 入聲은 거의 모두 I인데도 I가 入聲이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入聲은 분절소의 종성(終聲)이 “ㅂ, ㄱ, ㄹ”이라는 것만으로도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上聲”이나 “去聲” 중 어느 하나를 빼고 “入聲”으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入聲이 대부분 I(“去聲”)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 正音 창제자들은 解例에서 “文之入聲與去聲相似(漢字의 入聲은 I(‘去聲’)와 같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의 韵素를 “平聲, 去聲, 上聲”으로 부르게 된 연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명칭을 그대로 써서는 혼란을 초래한다.

한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子”는 중국 원음으로는 上聲에 속하지만 우리말에서는 I(‘去聲’)로 실현된다. 반대로 “世”는 중국 원음으로는 去聲에 속하지만, 우리말에서는 II(‘上聲’)로 실현된다. 이 두 경우에 만약 <訓民正音>에서 명명한 대로 I를 “去聲”으로, II를 “上聲”으로 부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중세국어) 韵素에 대해서는 고유어나 漢字語나를 따질 것 없이 “平·上·去”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필자처럼 0, I, II 등의 다른 용어나 기호를 써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東國正韻>식 방점이다. 중국 원음 四聲이 우리 韵素로는 앞의 표와 같이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서는 漢字音의 방점을 중국 원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平聲 → 0점

上聲 → 2점

去聲 → 1점

入聲 → 1점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平聲과 入聲의 경우는 95% 이상은 현실음에 맞지만 그래도 예외가 있고(예컨대, ‘王’은 평성이지만 II로 실현된다), 上聲과 去聲은 완전히 현실음을 무시한 것이다. <東國正韻>과 正音 제정자들이 “上去無別”이라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上聲은 모두 II로 去聲은 모두 I로 발음하라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정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訓民正音> 謬解, <釋譜詳節>을 비롯한 佛書謬解 등 15세기의 많은 호화판 서적들에 다 이런식 방점을 찍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현실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정책은 실패했다.

벼(稻)	蚩(陽)	鬯(柔)	𩔁(梭)	𩔂(培)	𩔃(種)	𩔄(債)	𩔅(貨)	𩔆(針)	𩔇(席)	𩔈(雛)
살(簾)	𦥑(薪)	𡇱(客)	𧈧(鼎)	𩔇(俗)	술(酒)	𩔉(炭)	金(林)	싣(楓)	𦥑(前)	吳(漆)
우(上)	𩔋(配)	저(自)	조(粟)	𩔌(片)	𦥑(藍)	집(家)	초(醋)	콩(菽)	풀(腕)	高地(土)
활(弓)										

## [이상 78 개]

## (1-b) ‘풀’ 類 ( 1점 [ I ] )

·遞(齒)	·간(分)	·간(冠)	·𦥑(葦)	·갈(刀)	·𩔂(重)	·𩔃(價)	·갓(冠)	·개(浦)	·𦥑(葦)
·𩔋(穀)	·겨(糠)	·결(波)	·겸(重)	·겼(訣)	·𦥑(紺)	·겼(訣)	·고(鼻)	·곤(鵝)	·꼰(處)
·󠄂(芻)	·膏(膏)	·夭(串)	·夭(串)	·𩔋(策)	·군(坑)	·굶(蠶)	·𦥑(蠶)	·긔(夢)	·긔(蹄)
·귀(耳)	·兜(時)	·𩔃(鑿)	·금(理)	·𩔃(隙)	·글(末)	·𩔃(時)	·긴(끈)	·길(道)	·𩔃(隙)
·깃(巢)	·깃(衿)	·깃(分)	·나(我)	·나(年)	·낚(釣)	·낟(錄)	·날(日)	·흘(經)	·흘(刃)
·납(鉛)	·낫(畫)	·늬(煙)	·내(臭)	·논(沓)	·놈(奴)	·놋(鎰)	·누(誰)	·눈(目)	·뉘(誰)
·니(齒)	·니(蟲)	·닢(葉)	·싸(地)	·단(束)	·둘(月)	·暨(女)	·僭(源)	·僭(女)	·담(垣)
·땀(汗)	·대(竹)	·嘲(時)	·띠(時)	·떵(葦)	·뗙(餅)	·뎬(時)	·여(彼)	·禪(寺)	·嘲(筏)
·되(升)	·툐(茅)	·뒱(茅)	·斐(意)	·툐(灸)	·툐(帶)	·툐(輪)	·툐(藁)	·마(薯)	·맏(貝)
·물藻(물藻)	·말(斗)	·말(木)	·맛(味)	·매(磨)	·매(鞭)	·미(野)	·밀(柰)	·몇(柰)	·몇(幾)
·모(角)	·몬(鈎)	·倨(身)	·吳(池)	·뫼(食)	·물(衆)	·물(水)	·밀(麥)	·바(所)	·박(匏)
·발(足)	·불(鬱)	·불(骨)	·𦥑(件)	·밤(夜)	·憎(煩)	·밥(食)	·비(腹)	·비(舟)	·뼈(骨)
·벼(禾)	·벼(掌)	·豆(犁)	·荼(春)	·吳(櫟)	·匪(布)	·𦥑(角)	·暉(鼓)	·剗(雷)	·燔(火)
·燔(膠)	·비(雨)	·빛(梳)	·빛(光)	·살(輻)	·살(矢)	·𦥑(米)	·술(肌)	·새(新)	·셔(椽)
·셔(轡)	·ဿ(斛)	·손(手)	·솔(松)	·쇠(鐵)	·소(牛)	·수(雄)	·𦥑(蒿)	·술(匙)	·쉬(禾)
·⾦(藪)	·띠(種)	·띠(緯)	·신(鞋)	·안(內)	·왈(卯)	·암(雌)	·및(由)	·열(十)	·엿(餡)
·온(百)	·옷(衣)	·울(籬)	·움(穴)	·입(口)	·외(苔)	·입(門)	·자(尺)	·憕(眠)	·爻(城)
·재(坂)	·지(灰)	·지(嶺)	·질(拜)	·젖(醯)	·젖(乳)	·憎(叢)	·줄(繩)	·줄(握)	·쥐(鼠)
·질(馴)	·침(荷)	·짓(羽)	·짖(羽)	·쵹(源)	·啞(眞)	·채(策)	·체(篩)	·춤(舞)	·춤(睡)
·壽(葛)	·코(鼻)	·코(長)	·기(箕)	·𩔃(頸)	·툐(基)	·툐(等)	·툐(肘)	·߲(爪)	·߲(鋸)
·틀(型)	·틀(機)	·틀(隙)	·툐(塵)	·툐(蠅)	·푎(豆)	·푎(糊)	·푎(草)	·푀(血)	·푀(稷)
·한(日)	·한(舌)	·한(贊)	·한(槽)	·한(炬)	·한(力)				

## [이상 216개]

## (1-c) ‘별’ 類 ( 2점 [ II ] )

·감(柿)	·汊(邊)	·결(渠)	·개(蟹)	·골(谷)	·골(背)	·곰(熊)	·꾀(貓)	·길(丈)	·김(縉)
·남(個)	·남(粒)	·내(川)	·널(板)	·네(四)	·네(昔)	·눈(雪)	·뉘(世)	·님(主)	·달(蘆)
·돈(錢)	·돌(石)	·돌(梁)	·되(戎)	·돌(二)	·뒤(後)	·매(鷹)	·ﾒ(叢)	·꾀(山)	·말(言)
·밀(蠶)	·발(簾)	·발(托)	·밤(栗)	·별(友)	·별(蜂)	·氓(虎)	·별(星)	·봄(暭)	·새(鳥)
·새(草)	·심(泉)	·섬(島)	·세(三)	·세(縱)	·속(內)	·술(刷)	·습(內)	·숨(息)	·쉰(50)
·실(絲)	·애(腸)	·양(胃)	·엄(牙)	·옴(癬)	·외(과)	·일(事)	·장(佛臺)	·잣(柏)	·杼(杼)

2.2.2 韻素型: 위에서 본 韵素 변화 규칙 (7), (8)이 적용된 결과로 중세국어의 세 韵素型은 다음과 같은 韵素 구조를 가지게 된다.

(9) ㄱ. 0형 : 앞에 0가 하나 이상이고, 그 뒤에 0개 이상의 I가 온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0_1I_0$ 로 나타낼 수 있다<sup>12)</sup>.

[예] 꽃, 집, 하·늘, 보름, 가·모·티, 가마·피, 쟁나모

ㄴ. I형 : 첫 음절이 I로서 모든 음절이 다 I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I_1$ 로 나타낼 수 있다.

[예] ·풀, ·달, ·구·룸, ·어·미, ·돗·가·비, ·명·바·기, ·두·루·미

ㄷ. II형 : 첫 음절이 II가 하나 오고 그 뒤에 I가 0개 이상 온다.

이 것을 공식화하면  $II_0$ 로 나타낼 수 있다.

[예] :별, :돈, :사·롭, :님·금, :사·마·피, :거·며·리

만약 (7), (8)과 같은 규칙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韵素의 결합형은 2음절어에서 9가지( $0-0$ ,  $0-I$ ,  $0-II$ ;  $I-0$ ,  $I-I$ ,  $I-II$ ;  $II-0$ ,  $II-I$ ,  $II-II$ )가 되고, 3음절어는 27 가지, 4음절어는 81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7), (8)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각 韵素型은 (9)와 같은 韵素의 결합체로만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2음절어는 4개의 韵素 결합만 가능하고, 3음절어는 5개의 韵素 결합만 가능하다. 음절수에 따른 가능한 韵素 결합체(작은 운소형)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sup>13)</sup>.

12. 아래첨자로 된 'i', 'o' 등은 운소의 수가 그 숫자 이상으로 온다는 뜻이다. 예컨대 ' $0_i$ '는 0 가 1개 이상이라는 뜻이고, ' $I_o$ '는 I가 0개 이상이라는 뜻이므로 I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 이상 얼마든지 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운소 기호 다음에 이런 숫자 표시가 없는 것은 그 韵素가 꼭 한 개만 온다는 뜻이다. 따라서 0형을 " $0_1I_0$ "라 한 것은 맨 앞에 0가 1개는 반드시 와야 하고, 거기 연달아서 0가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그것이 끝나면 뒤에 아무 것도 안 올 수도 있지만 I가 몇 개든지 올 수 있다는 뜻이다. I형의 공식 " $I_1$ "은 맨 앞에 I가 1개는 반드시 와야 하고 그 뒤에 I가 얼마든지 더 올 수도 있다는 뜻이며, II형의 공식 " $II_0$ "는 맨 앞 II가 꼭 한 개만 오고 그 뒤는 I가 0개 이상, 즉, 없거나 무한히 많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13. 제약이 없을 경우는 3(韵素의 수)에다 음절수 만큼 제곱(自乘)한 수( $3^1=3$ ,  $3^2=9$ ,  $3^3=27$ ,  $3^4=81$ )로 계산되고, (7), (8)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음절수에다가, 韵素 수(즉, 3)에 하나를 뺀 수(즉, 2)를 더한 숫자가 된다. 즉, 韵素결합체의 수=음절수+(韵素의 수-1)과 같이 되는데(韵素 수는 3 고정적), 그 내용을 韵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형의 경우는  $0_1I_0$ 로서 그 韵素 구성체(하위 韵素型)의 종류는 음절수 만큼 많다. 즉, 1 음절어의 경우는 0 한 가지 뿐이고, 2음절어의 경우는 00와 0I의 2가지, 3음절어는 000, 00I, 0II의 3가지와 같다. 오른쪽의 첫째 항목을 "음절수"로 한 것은 이 0형의 韵素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비해, I형과 II형의 경우는 음절수가 늘어나도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다. 즉, I형은  $I_1$ 로서 1음절어에서도 I 한 가지, 2음절어에도 II 한 가지, 3음절어에서도 III 한 가지 뿐이며; II형은  $II_0$ 로서 1음절어에도 II 한 가지, 2음절어에서도 III 한 가지, 3음절어에서도 III 한 가지 뿐이다. 따라서 I형과 II형은 음절수에 관계 없이 각각 한 가지의 운소 구성체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위의 공식 등호(=)의 오른쪽은 첫째 항("음절수")은 0형의 뜻이고, 둘째 항(韵素(型)의 수-1)은 I형과 II형의 뜻이다. 韵素(型)의 3가지 중 0형의 뜻은 앞 항목인 "음절수"에 반영되었기에, 그 뜻 하나를 뺀 2 만을 더한 것이 각 음절수의 韵素 구성체의 총수가 되는 것

- |                     |                |
|---------------------|----------------|
| (10) ㄱ. 1음절어 : 3 가지 | ㄴ. 2음절어 : 4 가지 |
| ㄷ. 3음절어 : 5 가지      | ㄹ. 4음절어 : 6 가지 |
| ㅁ. 5음절어 : 7 가지      | ㅂ. 6음절어 : 8 가지 |
| .....               |                |
| n음절어 : n+2 가지       |                |

참고로 이론상 2~6음절어의 운소 결합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a. 2음절어 (ㄱ) ⓪형: (⓪2형)⓪-⓪, (⓪1형)⓪-Ⅰ  
 (ㄴ) Ⅰ형: Ⅰ-Ⅰ  
 (ㄷ) Ⅱ형: Ⅱ-Ⅰ
- b. 3음절어 (ㄱ) ⓪형: (⓪3형)⓪-⓪-⓪, (⓪2형)⓪-⓪-Ⅰ, (⓪1형)⓪-Ⅰ-Ⅰ  
 (ㄴ) Ⅰ형: Ⅰ-Ⅰ-Ⅰ  
 (ㄷ) Ⅱ형: Ⅱ-Ⅰ-Ⅰ
- c. 4음절어 (ㄱ) ⓪형: (⓪4형)⓪-⓪-⓪-⓪, (⓪3형)⓪-⓪-⓪-Ⅰ, (⓪2형)⓪-⓪-Ⅰ-Ⅰ,  
 (⓪1형)⓪-Ⅰ-Ⅰ-Ⅰ  
 (ㄴ) Ⅰ형: Ⅰ-Ⅰ-Ⅰ-Ⅰ  
 (ㄷ) Ⅱ형: Ⅱ-Ⅰ-Ⅰ-Ⅰ
- d. 5음절어 (ㄱ) ⓪형: (⓪5형)⓪-⓪-⓪-⓪-⓪, (⓪4형)⓪-⓪-⓪-⓪-Ⅰ, (⓪3형)⓪-⓪-⓪-Ⅰ-Ⅰ,  
 (⓪2형)⓪-⓪-Ⅰ-Ⅰ-Ⅰ, (⓪1형)⓪-Ⅰ-Ⅰ-Ⅰ-Ⅰ  
 (ㄴ) Ⅰ형: Ⅰ-Ⅰ-Ⅰ-Ⅰ-Ⅰ  
 (ㄷ) Ⅱ형: Ⅱ-Ⅰ-Ⅰ-Ⅰ-Ⅰ
- e. 6음절어 (ㄱ) ⓪형: (⓪6형)⓪-⓪-⓪-⓪-⓪-⓪, (⓪5형)⓪-⓪-⓪-⓪-⓪-Ⅰ,  
 (⓪4형)⓪-⓪-⓪-⓪-Ⅰ-Ⅰ, (⓪3형)⓪-⓪-⓪-Ⅰ-Ⅰ-Ⅰ,  
 (⓪2형)⓪-⓪-Ⅰ-Ⅰ-Ⅰ-Ⅰ, (⓪1형)⓪-Ⅰ-Ⅰ-Ⅰ-Ⅰ-Ⅰ  
 (ㄴ) Ⅰ형: Ⅰ-Ⅰ-Ⅰ-Ⅰ-Ⅰ-Ⅰ  
 (ㄷ) Ⅱ형: Ⅱ-Ⅰ-Ⅰ-Ⅰ-Ⅰ-Ⅰ

韻素型은 첫 음절에 어떤 운소가 오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⓪형은 ⓪가 앞에 몇 음절이나 연속되느냐에 따라 ⓪1형, ⓪2형, ⓪3형, ⓪n형 등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Ⅰ형과 Ⅱ형은 제2음절 이하는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

**2.2.3 복음절어의 방점(경밀표기):** 앞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訓民正音>에는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왼쪽에 1점을 찍은 것은 去聲이

이다. 따라서, 1음절어는  $1+(3-1)=3$ ; 2음절어는  $2+(3-1)=4$ ; 3음절어는  $3+(3-1)=5$ ; 4음절어는  $4+(3-1)=6$ 과 같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음절수에 2를 뺀 것이다.

좀 더 알기 쉽게 공식을 만들자면, “음절수×1+1+1”로 하면 좋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다. ‘음절수×1’은 ⓪형의 뜻, 다음의 ‘1’은 Ⅰ형의 뜻, 마지막의 ‘1’은 Ⅱ의 뜻이다.

고, 2점을 찍은 것은 上聲이고, 점을 안 찍은 것(0점)은 平聲이다)"이라 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韻素는 단음절이나 복음절이나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방점을 찍게 되어 있다.

(12) ㄱ. 0(平聲) 0점

ㄴ. I(去聲) 1점

ㄷ. II(上聲) 2점

그리고 사실 단음절어 및 복음절어의 첫 음절은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있다. 따라서 (11)에 제시한 각 韵素型의 방점을 응당 0=0, I=1, II=2로 방점을 찍을 것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3) a. 2음절어 (ㄱ) 0형: 0-0, 0-1 (ㄴ) I형: 1-1 (ㄷ) II형: 2-1

b. 3음절어 (ㄱ) 0형: 0-0-0, 0-0-1, 0-1-1

(ㄴ) I형: 1-1-1 (ㄷ) II형: 2-1-1

c. 4음절어 (ㄱ) 0형: 0-0-0-0, 0-0-0-1, 0-0-1-1, 0-1-1-1

(ㄴ) I형: 1-1-1-1 (ㄷ) II형: 2-1-1-1

d. 5음절어 (ㄱ) 0형: 0-0-0-0-0, 0-0-0-0-1, 0-0-0-1-1, 0-0-1-1-1, 0-1-1-1-1

(ㄴ) I형: 1-1-1-1-1 (ㄷ) II형: 2-1-1-1-1

e. 6음절어 (ㄱ) 0형: 0-0-0-0-0-0, 0-0-0-0-0-1, 0-0-0-0-1-1, 0-0-0-1-1-1,

0-0-1-1-1-1, 0-1-1-1-1-1

(ㄴ) I형: 1-1-1-1-1-1 (ㄷ) II형: 2-1-1-1-1-1

이러한 방점 표기는 매개 음절의 운소를 충실히 반영한 "정밀표기" 방점이다.

**2.2.4 현실 문현의 복음절어 방점:** 그러나 문현상에 실じ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점의 생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방점을 생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글자에 방점 표기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세계의 문현사상 매개 글자마다 韵素 표시까지 하는 예는 아마 없을 것이다. 중국의 漢語는 전형적인 성조언어로서 옛날부터 이를 조사, 연구하여 모든 漢字를 四聲으로 분류하였지만, 사전에 해당하는 운서(韻書) 이외에는 글자마다 四聲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sup>14)</sup>. 이렇게 하는 데는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14. 중국어(漢語)의 경우 分節素는 같으면서 성조에 의해서 뜻을 구분하는 경우도 많고, 같은 글자로서 分節素까지 같아도 聲調가 다름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好"는 上聲(hǎo) 이 되면 'good'의 뜻이고, 去聲(hào)이 되면, 'like'의 뜻이지만, 글자마다 성조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후세에 나온 중요 고전의 주석서 등에는 특히 like의 뜻으로 쓰일 때에 한해서는 "去聲"이라는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글자의 오른쪽 위(右上隅)에 권점(圈點)을 찍어 去聲 표시를 하기도 했지만 모든 서적의 전문(全文)을 글자마다 四聲 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데, 우리의 경우는 한글이 제정된 이후 200년 동안에 거의 모든 서적에 글자마다 韻素 표기를 하였던 것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음운론을 연구하는 우리는 그 덕분에 당시의 超分節素까지 알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당시에 출판에 관계하는 이들로서는 여간 고역이 아니었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로 인한 국력의 피폐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sup>15)</sup>. 따라서 가급적이면 품을 줄이는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생략법이다.

그러나, 당시의 관계자들은 생략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엄격히 구분한 것 같다. 먼저 다음 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없다.

첫째, 0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0점을 찍었다. 이것은 생략할 수도 없거니와, 0의 자리에 1점이나 2점을 찍으면 실제의 소리를 I나 II로 달리 읽게 되고 의미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령 0-0-I는 0-0-1이 되어야 하는데 0-1-1로 찍으면, 0-I-I로 읽고, 0-2-1로 찍으면 역시 0-I-I로 읽기 때문이다<sup>16)</sup>.

둘째, I나 II도 첫 음절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첫 음절에서는 세 韵素 중 어느 것이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면, 0점으로 알고 0로 발음할 수밖에 없고, 1점이 찍히면 I로, 2점이 찍히면 II로 발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0 뒤에 맨 첫 번째 오는 1점이나 2점은 생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때 1점은 I의 표시이고, 2점은 기저음은 II이지만 규칙 (7)에 의해 I가 되는데, 이것을 생략하면 0점이 되어 0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I나 II가 한 번 나타나면, 그 뒤의 음절은 규칙 (7), (8)에 의하여 모두 I가 되기 때문에 이 때의 방점(1점)은 생략할 수 있다. 규칙 (7), (8)에 의하여 그 자리에는 반드시 I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기저 韵素가 0라 하더라도 규칙에 의하여 I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分節音素에서 “장로”로 적었어도 실지 발음은 “장노”로 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訓民正音> 解例와 杜詩諺解 등에서는 앞 음절이 I(1점)나 II(2점)인 경우 그 바로 뒤의 음절의 방점(1점)은 전부 생략하였다(金永萬, 1991:95-96; 2000:14-23). 첫 음절이 0(0점)인 경우도 일단 I(1점)나 II(2점)가 나타나면 그 다음 음절은 반드시 I가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1점을 생략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그 뒤에도 계속 I가 오기 때문에 모든 음

15. 임진왜란 이후의 문헌에서 방점이 사라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는 힘에 부쳤던 것이다. 흔히 연구자들은 방점법이 사라진 것은 우리말에서 15세기에 있던 韵素가 없어진 것을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서는 안 된다. 15세기에도 언어 소통에 불편이 있어서 방점을 찍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17세기 문헌에 방점이 없어진 것이 韵素 자체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소박한 생각이다. 출판에 드는 인적(人的), 물적(物的)인 부담 문제와 관계가 더 많지 않을까? 없어도 의사 소통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며 할 필요가 있을까?

16. 0-2-1은 基底로서는 0-II-I가 되지만, 규칙 (7-), 즉 II→I/σ₁\_\_에 의하여 0-I-I로 바뀌기 때문이다.

절의 방점을 다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 생략하지는 않았다. 15세기 중기에 나온 문헌들은 解例에 나온 단어들을 비롯하여 일부의 명사는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用言 등 대부분의 2音節語의 경우는 생략하지 않았다. 3음절의 경우는 중간의 한 음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6세기에 나온 朴通事 등 崔世珍撰의 문헌에서는 3음절의 경우도 생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생략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연속 두 음절을 생략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I가 여러 음절 계속할 경우, 하나 건너 하나씩 생략하였다. 일반적으로 맨 끝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짹수째 음절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金永萬, 1991:98-99).

이러한 방점 생략 원리를 (13)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생략된 방점의 흔적은 특히 Ø로 표시하여 Ø를 표시한 0점과 구별하였다.).

- (14) a. 2음절어 (ㄱ) Ø형: 0-0, 0-1 (ㄴ) I형: 1-1(1-Ø) (ㄷ) II형: 2-1(2-Ø)
- b. 3음절어 (ㄱ) Ø형: 0-0-0, 0-0-1, 0-1-1(01Ø)  
                (ㄴ) I형: 1-Ø-1 (ㄷ) II형: 2-Ø-1
- c. 4음절어 (ㄱ) Ø형: 0-0-0-0, 0-0-0-1, 0-0-1-1, 0-1-Ø-1  
                (ㄴ) I형: 1-1-Ø-1 (ㄷ) II형: 2-1-Ø-1
- d. 5음절어 (ㄱ) Ø형: 0-0-0-0-0, 0-0-0-0-1, 0-0-0-1-1, 0-0-1-Ø-1, 0-1-1-Ø-1  
                (ㄴ) I형: 1-Ø-1-Ø-1 (ㄷ) II형: 2-Ø-1-Ø-1
- e. 6음절어 (ㄱ) Ø형: 0-0-0-0-0-0, 0-0-0-0-0-1, 0-0-0-0-1-1 (0-0-0-0-1-Ø),  
                0-0-0-1-Ø-1, 0-0-1-1-Ø-1, 0-1-Ø-1-Ø-1  
                (ㄴ) I형: 1-1-Ø-1-Ø-1 (ㄷ) II형: 2-1-Ø-1-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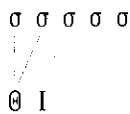
다만 이런 생략은 한 단어 안의 모든 음절이 하나의 형태소이거나, 다른 형태소라 하더라도 I가 계속 연결될 때의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 어절 안의 여러 형태소 중에 그 어원 내지 기저 운소가 Ø나 II일 때는 비록 표면 운소는 I로 실현되더라도 방점 표기는 어원 韻素나 기저 韵素를 반영하여 표기하는 습관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미 “-느-”는 기저 운소가 Ø이기 때문에, 표면 韵素로 보아서는 I이고 생략할 자리가 아닌데도 0점(생략이 아니다!)으로 남겨 놓는 수가 있다. 또 선어 말어미 “-습-”은 동사 “肱-(‘confess’)”에서 왔기 때문에 기저 운소가 자음 어미 앞에서는 II이고, 모음 앞에서는 Ø이지만(즉, “-:습·고~스·ば”), 앞 어간 등에 이어져서 I로 실현될 때도 2점이나 0점으로 표시할 때가 있다. 예컨대, “막:습거·늘[ØIII→0201], 기·리스·보·려[ØIII→01011]” 등.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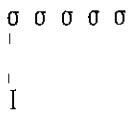
중세국어에는 Ø, I, II의 세 韵素가 있고 이 세 韵素는 서로 연결될 때 주로 앞 음절의 韵素에 의해 제약을 받아 다른 韵素로 바뀌는 규칙이 존재하며, 그 때문에 복음절어의 韵素 체계는 첫 음절의 韵素가 무엇이냐에 따라 Ø형, I형, II형의 세 가지

로 나누어지는 체계적인 운소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韻素型 중 0형은 하위 분류도 있어서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중세국어의 모든 단어는 이 韵素型의 어느 하나를 배당 받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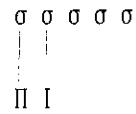
1) 0(2)형



2) I형



3) II형



### 3. 현대 각 방언의 운소

#### 3.0 중세에서 현대까지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났던 방점 표기가 17세기에는 자취를 감추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국어 韵素의 추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0(平聲), I(去聲), II(上聲)의 세 韵素가 17세기 이후에는 금방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18-19세기에는 방언에 따라 三韻素(型) 체계의 일각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芡類와 풀類의 구별이 없어지고(서울), 어떤 곳에서는 풀類와 별類가 하나로 합쳐졌으며(함경), 세 韵素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방언도 있다. 그런가 하면 三韻素(型) 체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방언(경북·경남)도 있다.

다음에 현대 각 방언의 韵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3.1 현대 서부제방언(西部諸方言)의 韵素

**3.1.1 문헌에 나타난 표준어의 韵素:** 현대 표준어(서울 방언)는 3韻素 체계에서 2韻素 체계로 변하였다. 芡類(0)와 풀類(I)의 구별이 사라진 것이다<sup>17)</sup>. 그 대신 별類(II)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까지도 다른 두 語類와 확실히 구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상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舊韓末에 설치된 國文研究所의 문헌을 보면, 池錫永을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韵素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池錫永이 지은 字書 <兒學編>과 <字典釋要>에는 韵素 표기를 했는데, 芡類, 풀類 어휘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별類에 대해서는 글자 오른편 위쪽 귀통이(右上隅)에 한 점을 찍음으로써 별類의 韵素를 芡類·풀類와 구별하고 있다<sup>18)</sup>. 이것은 0(平聲)와 I(去聲) 사이에는

17. 이런 현상을 가지고 종래의 많은 연구자들은 중세국어의 세 韵素가 서울에서는 다 사라진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 韵素의 자질을 고쳐야 한정시키고 성조언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 단 이것은 訓釋의 국어(고유어와 한자어 다 포함)에 한한 것이고, 漢字音에 대해서는 上聲字와 去聲字에는 모두 加點하고 平聲字와 入聲字에는 포사가 없다. <字典釋要·凡例>2b

구별이 없어지고, II(上聲)는 아직도 0(平聲)·I(去聲)와 달리 발음되었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면, 한 점이 찍힌 별類의 韻素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가? <兒學編>과 <字典釋要>의 凡例에는 이것을 “倣語之曳聲(말할 때 소리를 길게 끄는 것)”이라 하였다(註18 참조). “曳聲”이란 말할 것도 없이 長音을 말한다. 이것으로 보아 표준어에서는 별類는 长音으로 발음되고 꽃類와 풀類는 短音으로 발음되었으며, 꽃類와 풀類 사이에는 구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池錫永의 長短의 구별 표시는 그 후에 나온 總督府의 <朝鮮語辭典>에도 이어졌다. <朝鮮語辭典>에서는 글자의 원쪽에 한 점을 찍는 것으로 长音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 나온 <큰사전>(서울)과 <조선말사전>(평양)에서는 글자 위에다가 가로 줄을 긋는 것으로 长音 표시를 하였다. 이 여러 사전에 长音 표시를 한 음절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중세국어에 2점을 찍었던 것들, 즉, 별類(II)이다. 다음 표는 중세국어 문헌과 현대 사전의 韵素 표기를 대조한 것이다.

(15) 15-16세기 문헌과 현대 국어사전의 韵素 표기 대조표

語群	중세 문헌	字典釋要	朝鮮語辭典	큰/조선말	(韻素자질)
꽃類	꽃(0=平聲)	(無標)	(無標)	(無標)	短音
풀類	·풀(I=去聲)				
별類	:별(II=上聲)	별'	-별	별	長音(曳聲)

이 표는 중세국어의 세 韵素가 현대 서울 방언에서 두 韵素로 줄어 든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 뿐만 아니라, 平壤, 光州를 포함한 西部(경기, 평안, 황해, 충청, 전라) 방언에 공통된 현상이다<sup>19)</sup>.

결론적으로 서부제방언은 长音과 短音이라는 두 가지 변별적인 韵素를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서부 방언들의 长音을 W라는 기호로 나타내고<sup>20)</sup>, 短音은 S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 W는 중세국어 문헌에서 방점을 2개 찍었던 것을 상징하는 로마자이다. 즉, W는 원래 U를 두 개 나란히 놓았다는 뜻에서 영어로는 ‘Double U[dʌblju:]’라는 글자 이름이 생겼고, 불어로는 V를 두 개 나란히 놓았다는 뜻에서 ‘Double V[dubləv]’라는 글자 이름이 생겼다는 것을 상기하면 될 것이다. S는 short라는 영어의 머릿자를 뜻 것이다, 찍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다.

에서는 漢字音에 관한 것을 “上聲去聲字傍加一點而平入兩聲人所易曉故闕之以從簡便”이라고, 國語音에 관해서는 그 뒤에서 “凡係倣語之曳聲處亦加一點”이라 했다. 그리고 <兒學編>의 두 “序” 뒤에 붙은 凡例에 해당하는 부분의 “大韓國文”의 ‘新訂高低辨’조에는 “上聲去聲은傍加一點 (我東俗音에上去聲이 別노差等이 無함이라) 平入兩聲은無點이오”라고 “凡係倣語之曳聲에 亦加一點”이라 했다.

19. 다만, 전라 방언 중에는 장단 뿐 아니라 高低의 현상도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20. 李崇寧(1964)에서 0점을 O로, 1점을 V로, 2점을 W로 나타낸 것에서 암시를 얻었다.

**3.1.2 서부제방언의 韻素型:**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부제방언에는 두 가지 韵素가 있다. 하나는 長音(W)이고 하나는 短音이다. 이것은 단순히 “모음에 長母音이 있고 單母音이 있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lexical)인 변별에 관계되는 것이다. 즉, 앞의 2.1의 (1-a), (1-b), (1-c)의 세 語類 중 亂類(1-c)에 속하는 어휘는 현재까지도 韵素 W를 가지고 있고, 花類(1-a)와 풀類(1-b)에 속하는 어휘들은 모두 韵素 S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음절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절어에도 있어서 모든 어휘의 모든 음절은 W와 S의 두 韵素 중 어느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복음절어에서는 환경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韵素의 종류에 제한을 가하는 韵素 규칙이 있다.

#### (16) 서부제방언의 韵素 규칙

- ㄱ. 첫 음절에는 어떤 운소나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다.
- ㄴ. S는 어떤 환경에나 나타날 수 있다.
- ㄷ. W는 첫 음절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저가 W인 음절도 제2음절 이하에서는 S로 변한다. ( $W \rightarrow S/\sigma_{-}$ )

규칙 (16 ㄱ, ㄷ)의 예를 들면 “숨(息)”은 長音(W)으로서 “숨통, 숨결”과 같이 첫 음절에서는 그대로 長音으로 실현되지만, “한숨, 목숨”과 같이 제2음절에 오면 短音(S)으로 실현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복음절어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음운론적 단어(phono logical word)로서 하나의 기식절(氣息節, breath group)로 발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의미상 문법상으로는 한 단어라도, 중간에 휴지(pause)가 있으면, 새로운 기식절이 형성되기 때문에 長音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약에 따라서 서부 방언의 韵素型은 음절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첫 음절에 어떤 韵素가 오느냐에 따라 W型과 S型으로 나뉜다. 두 韵素型의 韵素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7) 서부제방언의 운소형

- ㄱ. S(短音)型 : 첫 음절부터 마지막 음절까지 모두 S인 것. 즉, Si.  
[예] 꽃, 풀, 달, 목, 물, 하늘, 바람, 구름, 아버지, 어머니, 나그네
- ㄴ. W(長音)型 : 첫 음절은 W이고, 둘째 음절 이하는 모두 S인 것. WS0.  
[예] 별, 새(bird), 눈(snow), 사람, 셋별, 임금, 거머리, 굼벵이, 지렁이

참고로 2~6음절어의 운소 결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8) a. 2음절어 (ㄱ) S형 : SS  
(ㄴ) L형 : LS

- b. 3음절어 (ㄱ) S형 : SSS  
 (ㄴ) L형 : LSS
- c. 4음절어 (ㄱ) S형 : SSSS  
 (ㄴ) L형 : LSSS
- d. 5음절어 (ㄱ) S형 : SSSSS  
 (ㄴ) L형 : LSSSS
- e. 6음절어 (ㄱ) S형 : SSSSSS  
 (ㄴ) L형 : LSSSSS

이것을 중세국어의 그것(11)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단조로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韻素의 수가 하나 줄었기 때문이다, 0형과 같이 앞에 오는 0의 수가 여러 개 오고 그 뒤에 다시 I가 올 수 있는 韵素型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현대 서울 방언은 韵素의 기능 부담량이 중세국어에 비해 현저히 줄어 들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長短의 구별 의식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추세로서, 앞으로는 언어 생활에서 의미 변별을 순전히 분절소만으로 단순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중세국어의 세 韵素와 세 가지 韵素型을 그대로 간직하고, 고저와 장단의 자질이 다 변별적인 방언이 있다.

### 3.2 경북방언의 韵素

**3.2.1 경북방언의 특징:** 대구와 울산을 포함하는 경북방언은 경남방언(부산 포함)과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의 세 운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은 경북방언의 별類는 서울 등과 같이 長音인 테 비해 경남 방언은 별類가 길지 않고 짧으며 그 대신 경북 방언에 없는 低調로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 이 節에서는 경북 방언의 韵素를 다루기로 하겠다. 한 가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행정 구역으로는 경남에 들어가는 居昌은 韵素의 면에서 경북방언권에 들어가며, 강원도 삼척(三陟)은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이지만 韵素라는 면에서는 경북 방언권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별類를 長音으로 발음한다. 지금은 광역시가 된 울산(蔚山)의 경우는 과거에는 경상남도에 속했지만 역시 별類를 長音으로 발음한다. 울산은 지리적으로도 慶州에 붙어 있다.

**3.2.2 경북방언의 韵素:** 경북방언에는 중세국어에서와 같이 花類, 풀類, 별類의 세 語類가 韵素에 의해서 뚜렷이 구분된다. 2.1의 (1-a), (1-b), (1-c)의 단어들은 경북에서도 그대로 변별된다. 별類는 서울방언에서와 같이 長音으로 실현되며, 花類, 풀類는 서울에서와는 달리 뚜렷이 구분되어 花類는 대체로 高強調로 실현되며, 풀類는 대체로 中平調로 실현된다. 長音은 경북의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높이(pitch) 면에서는 중간 높이이지만, 동북부 해안 지방(영일, 영덕, 울진, 삼척)에서는 높게

실현된다. 그리고 ‘高強調’란 높으면서도 強勢를 띠고 있다는 뜻이고, 中平調란 중간 높이이면서平坦한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여기 대해서는 金永萬 1997 참조), 高強調는 O라는 기호로, 中平調는 U라는 기호로, 장음은 W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sup>21)</sup>. 이 기호들은 중세국어에서는 각각 Θ, I, II에 대응한다. 중세국어의 경우는 회립문자로 0점, 1점, 2점을 상징한 것과 같이, 현대국어의 경우는 로마문자로 방점 수를 상징하게 하였다. 즉, O는 0점을 상징하고, U는 1점을 상징하고, W는 2점을 상징한다.

종래의 많은 사람들은 高強調를 H(高), 中平調를 M(中), 長音에 해당하는 경남방언의 저조를 L이라 하였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이해하기 쉬울는지 모른다. “성조”라는 입장에 서서 단음절어의 높이만을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맞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절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높이 자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金永萬 1991 참조).

다음은 중세국어, 서울(서부)방언, 경북방언의 韻素 대비표이다.

(19) 韵素 대비표

語類	중세	서부방언	경북방언	語例
꽃類	Θ (꽃)	S	O	꽃, 낮, 닭, 밭, 콩, 활
풀類	I (풀)		U	풀, 길, 춤, 칼, 불, 맛
별類	II (별)	W	W	별, 꿈, 널, 돈, 숨, 잣

3.2.3 韵素 규칙과 유형: 이 방언의 세 韵素는 중세국어와 기본적으로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연구·기술 방법의 부적절성 때문에 이 관계를 선명하게 구명해 내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許雄(1955)에서는 단음절어에서는 위의 표에서와 같이 Θ(平)는 O(H)에, I(去)는 U(M)에 정확히 대응된다.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서 00(平平)인 “벼름(바람), 나모(나무)” 등은 방언에서는 OO(HH)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許雄(1955)에서는 “\*UO(MH)”가 되어서 그런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단음절어의 운소 대응 규칙이 복음절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서 문제는 앞 음절의 운소를 U(M)로 잡은 데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바람, 나무”의 앞 음절 韵素(o)는 음성학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나 U라고 할 수 없다.

단음절어에서 중세의 세 韵素(Θ, I, II)와 경북 방언의 세 韵素(O, U, W)가 정확히

21. 어떤 韵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필자는 여러 가지의 초분절 자질을 다 참작하였다. 그 것은 마치 분절음의 音素(phonereme)들(예컨대, /a/, /u/, /ɪ/ 또는 /p/, /k/, /s/ 등)이 여러 資質(feature)의 집합이듯이(예컨대, /s/의 경우 [+cont., +strid., +del rel.]) 같은 자질들의 집합으로 보는 것과 같이) 경북 방언의 韵素도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O’라 하고,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U’, [+Long, -High, -Low]라는 資質群을 가진 超分節素를 ‘W’로 나타낸다.

대응하는 것은 (19)에서 명백해졌지만, 정확한 음성학적 관찰과 적절한 음운론적 기술 방법에 따른다면, 복음절어에서도 역시 세 韻素는 정확히 대응한다. 종전에는 경북방언의 韵素는 복음절어에서는 단음절어보다 두 개가 불어나 5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 필자의 입장이었고 그것은 음성학적인 면에서는 바르다고 생각한다. 즉, 복음절어에서는 기본 韵素 O, U, W 외에 ‘파생 운소’로서 o, u가 더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파생 운소’ o, u는 O, U가 특별한 환경에서 변한 韵素라고 기술하였다(金永萬 1997). 그러나, o, u가 O, U에서 변한 것은 틀림 없지만, ‘파생 운소’라는 특별한 용어를 써서 기술하는 것보다는 변이음(allophone)이라는 개념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金永萬 2000:12 참조). 간단히 말하면, 韵素 /O/는 [O]와 [o]의 두 변이음을 가지며, 韵素 /U/는 [U]와 [u]의 두 변이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방언의 韵素 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차차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7)에서 중세국어 韵素 Ⅱ(上聲)가 제2음절 이하에서는 I(去聲)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16)에서는 서울방언에서도 제2음절 이하의 長音(W)이 短音(S)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8)에서는 중세국어 韵素 O(平聲)는 I(去聲)와 Ⅱ(上聲) 뒤에서는 I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경북방언에도 이들과 정확히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

- (20) ㄱ. 첫 음절에서는 세 운소가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 ㄴ. W는 첫 음절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기저가 W인 음절도 제2음절 이하에서는 U로 변한다. ( $W \rightarrow U/\sigma$ )  
예) “숨(息)”은 W(長音)이지만 “한숨, 목숨”의 “-숨”은 U가 된다.
  - ㄷ. O는 U 또는 W 뒤에서 U로 변한다. ( $O \rightarrow U/\{U,W\}$ )  
예) “꽃”은 O이지만 “불꽃”의 “-꽃”은 U인 “불-”의 영향으로 U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경북 방언은 운소 규칙이 중세국어와 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운소형도 중세국어와 꼭 같다. 즉, 다음과 같은 운소형을 설정할 수 있다.

- (21) ㄱ. O형 : 앞에 O가 하나 이상이고, 그 뒤에 하나 이상의 U가 올 수 있다.  
이것을 정식화하면  $O_1 U_0$ 로 나타낼 수 있다.
- ㄴ. U형 : 첫 음절이 U로서 모든 음절이 다 U로 되어 있다.  
이것을 정식화하면  $U_1$ 로 나타낼 수 있다.
  - ㄷ. W형 : 첫 음절이 W로서 그 뒤는 모두 U이다.  
이 것을 정식화하면  $W U_0$ 로 나타낼 수 있다.

각 韵素型 안의 韵素 구성은 중세국어와 꼭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만약 (20)과 같은 규칙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韵素型은 2음절어에서는 9가지(O

-O, O-U, O-W; U-O, U-U, U-W; W-O, W-U, W-W)가 되고, 3음절어는 27 가지, 4음절어는 81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韻素型은 (2) 1과 같은 韵素(하위 韵素型)만 가지게 되고, 그 결과 2음절어는 4개의 韵素型만 가지게 되고, 3음절어는 5개의 韵素型만 가지게 된다. 음절수에 따른 가능한 韵素 결합체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2)	ㄱ. 1음절어 : 3 가지	ㄴ. 2음절어 : 4 가지
	ㄷ. 3음절어 : 5 가지	ㄹ. 4음절어 : 6 가지
	ㅁ. 5음절어 : 7 가지	ㅂ. 6음절어 : 8 가지
	.....	
	n음절어 : n+2 가지	

참고로 이론상 2~6음절어의 韵素型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3) a. 2음절어
  - (ㄱ) O형: (O2형)O-O, (O1형)O-U
  - (ㄴ) U형: U-U
  - (ㄷ) W형: W-U
- b. 3음절어
  - (ㄱ) O형: (O3형)O-O-O, (O2형)O-O-U, (O1형)O-U-U
  - (ㄴ) U형: U-U-U
  - (ㄷ) W형: W-U-U
- c. 4음절어
  - (ㄱ) O형: (O4형)O-O-O-O, (O3형)O-O-O-U,
   
(O2형)O-O-U-U, (O1형)O-U-U-U
  - (ㄴ) U형: U-U-U-U
  - (ㄷ) W형: W-U-U-U
- d. 5음절어
  - (ㄱ) O형: (O5형)O-O-O-O-O, (O4형)O-O-O-O-U,
   
(O3형)O-O-O-U-U, (O2형)O-O-U-U-U,
   
(O1형)O-U-U-U-U
  - (ㄴ) U형: U-U-U-U-U
  - (ㄷ) W형: W-U-U-U-U
- e. 6음절어
  - (ㄱ) O형: (O6형)O-O-O-O-O-O, (O5형)O-O-O-O-O-U,
   
(O4형)O-O-O-O-U-U, (O3형)O-O-O-U-U-U,
   
(O2형)O-O-U-U-U-U, (O1형)O-U-U-U-U-U
  - (ㄴ) U형: U-U-U-U-U-U
  - (ㄷ) W형: W-U-U-U-U-U

韵素型은 첫 음절에 어떤 운소가 오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O형은 O가 앞에 몇 음절이나 연속되느냐에 따라 O1형, O2형, O3형, On형 등으로 하위 분류를 할 수 있지만, U형과 W형은 제2음절 이하는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다<sup>22)</sup>.

이러한 韻素의 변화는 어디까지나 음운적인 차원의 변화이다. 중세국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그런데 경북 방언에는 중세국어에는 확인할 수 없는 音聲的인 變異音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에는 여기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sup>23)</sup>.

경북방언에는(경남방언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o, u라는 변이음이 있다. 이러한 변이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먼저 o부터 보자. o는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O 앞에서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바람, 나무, 꽃밭, 배꽃”의 앞 음절 韵素가 그것이다. o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래의 연구자들은 거의 모두 U(M)로 기술하고 있다. 그것은 o와 U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모두 O보다 낮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이 점 한 가지만 보고 o를 U에 편입시켜 버렸다. 그러나 o와 U는 음성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첫째, U는 o에 비해 강하고 높아도 오히려 o보다 높게 느껴진다. 둘째로 U는 길어도 상대적으로 길고 무엇보다 평탄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이에 비하면 o는 짧고 끝이 앞보다 높으며 불안정한 운소다. 그것은 o가 O를 지향하고 있다는 환경적 특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o를 “向高調”, 즉, 높은 韵素(O)를 향하는 音調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리고 o는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같은 높이로 발음되는 것은 아니고, 맨 앞에서는 낮게, 뒤로 갈수록(즉, O에 가까워 질수록 높아진다<sup>24)</sup>). 그리고 음운론적으로 보아도 이 운소가 U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의 규칙 (20ㄷ)에 관계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U라면 그 뒤에는 O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불꽃”에서 보듯이 꽃의 기초 운소는 O이지만, 앞에 “불”的 운소가 U에 동화되어 U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 결과로 “불꽃”은 U U가 되어 U와 U의 합성어인 “밤낮”과 같은 운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O 앞에는 U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람, 나무, 꽃밭, 배꽃” 등의 둘째 음절의 운소는 분명히 O이다. 따라서 첫 음절의 운소는 U일 수 없다. 종래의 연구자들은 “聲調”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러한 음성적 특징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높은 것은 O이고, 그보다 낮은 것은 무조건 M이라고 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 음성적으로 O도 아니고 U도 아닌 이 o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필자는 金永萬(1966) 아래로 이 o를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꾸어 가면서도 독립된 韵素로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金永萬(1997)에는 과생운소라고 이름하였다. 그것은 O에서 과생한 운소라는 뜻이다. 그러다가 “과생운소”보다는 변이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22.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규칙 (20ㄴ,ㄷ)에 의하여 O 뒤에는 O나 U가 자유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소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U나 W 뒤에는 오직 U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운소형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23. 중세국어에서도 음성 실현 단계에서는 변이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문헌 표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24. 그래서 許難(1955) 아래 많은 연구자들은 둘째 음절 이하의 o는 O(H)로 치고 있다. 이것이 부당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높이 자체도 O에 못 미칠 뿐 아니라 prominence 등 다른 특성에서 판이하기 때문이다(金永萬, 1991).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金永萬(2000)에서는 O의 변이음으로 처리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에 예로 든 네 단어 가운데 “꽃밭”, “배꽃”은 O와 O의 합성어로서 앞의 단일 어인 “바람, 나무”와 같이 oO이다. 여기서 우리는 O는 O 앞에서는 o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o는 O가 특수한 환경하에서 일시적으로 변형된 것임을 보여 준다. 더구나 일시적으로 변한 이 o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지면 O로 환원된다. 예를 들면 “앞”과 “집”은 둘 다 花類로서 韵素가 O인데 이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앞집”과 “집앞”이 되었을 때 모두 oO가 된다. 즉, “앞집”에서는 “앞”이 o로 변하고 “집”은 그대로 O로 남아 있는데, “집앞”에서는 반대로 “집”이 o로 변하고 “앞”은 그대로 O로 남아 있다. 즉,



그림과 같이 “앞”과 “집”은 어느 것이나 앞에 오면 o, 뒤에 오면 O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O가 O의 변이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하나, o가 O의 변이음임을 암시하는 것으로는 중세국어에서 경북(경상도)방언의 o에 해당하는 음절은 모두 0점이 찍혀 있어 중세국어에는 O와 o가 다 같이 중세국어의 0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나모(0-0), 브룸(0-0)”과 같이 방점이 모두 0-0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sup>25)</sup>.

결론적으로 말하여, [o]는 /O/의 변이운소(變異韻素)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음성적 차원의 운소 변화 규칙을 얻는다.

(24) O는 O 앞에서 o로 실현된다. 즉, O→o/\_O

따라서 /O/는 [O]와 [o]의 두 변이음을 가졌다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변이운소 u도 U의 변이음이다. 그 환경은 U가 제3음절 이하에 오거나, O 뒤에 왔을 때다. 예를 들면, “번개(UU)”와 “불(U)”이 합쳐서 “번갯불”이 되었을 때 제3음절에 오는 “-불”은 앞의 두 음절보다 현저히 낮고 약한 소리인 u가 되며, “먹(U)”과 “구름(UU)”이 합쳐져서 “먹구름”이 되었을 때 제3음절의 “-름”도 현저히 낮고 약한 u로 변하여 UUu가 된다. 그리고 “목(U, neck)”과 “젖(U, beast)”이 합쳐진 “목젖(uvula)”은 “젖”的 운소 U가 O 뒤에 옴으로써 역시 더 낮고 약한 u로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는다.

25. 이것으로 보면, 중세국어에서도 0의 변이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 (25) ㄱ. U는 제3음절 이하에서는 u로 실현된다. 정식화하면,  $U \rightarrow u/\sigma_2 \underline{\quad}$ .  
 ㄴ. U는 O 뒤에서 u로 실현된다. 정식화하면,  $U \rightarrow u/O \underline{\quad}$   
 (두 가지 규칙을 합쳐서 “ $U \rightarrow u/O/\sigma_2 \underline{\quad}$ ”로 나타낼 수 있다)

(24), (25)와 같은 규칙에 의하여 경북방언의 韻素型 (21)은 음성학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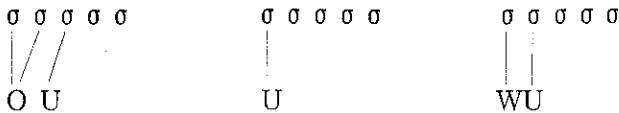
- (26) ㄱ. O형 : O가 꼭 하나 있고, 그 앞에 o가 하나 이상, 그 뒤에 u가 하나 이상 있을 수 있다. 즉 (21ㄱ)은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O<sub>1</sub>U<sub>0</sub>/ [o<sub>0</sub>Ou<sub>0</sub>].  
 ㄴ. U형 : 첫 음절이 U로서 그 뒤에 U가 하나 올수 있고, 또 그 뒤에는 u가 하나 이상 올 수도 있다. 즉 (21ㄴ)은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U/U/ [U(Uu<sub>0</sub>)].  
 ㄷ. W형 : 첫 음절이 W로서 그 뒤에 U가 하나 올 수 있고, 또 그 뒤에 u가 하나 이상 올 수 있다. 즉 (21ㄷ)은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WU<sub>0</sub>/ [W(Uu<sub>0</sub>)].

따라서, (23)은 다음과 같이 음성적으로 실현된다(4음절어까지만 제시한다).

- (27) a. 2음절어 (ㄱ) O형: (O<sub>2</sub>형)o-O, (O<sub>1</sub>형)O-u  
 (ㄴ) U형: U-U  
 (ㄷ) W형: W-U  
 b. 3음절어 (ㄱ) O형: (O<sub>3</sub>형)o-o-O, (O<sub>2</sub>형)o-O-u, (O<sub>1</sub>형)O-u-u  
 (ㄴ) U형: U-U-u  
 (ㄷ) W형: W-U-u  
 c. 4음절어 (ㄱ) O형: (O<sub>4</sub>형)o-o-o-O, (O<sub>3</sub>형)o-o-O-u,  
 (O<sub>2</sub>형)o-O-u-u, (O<sub>1</sub>형)O-u-u-u  
 (ㄴ) U형: U-U-u-u  
 (ㄷ) W형: W-U-u-u

**요약:** 경북방언은 O, U, W의 세 운소를 가지며, 韵素들은 서로 연결될 때 주로 앞 음절의 韵素에 의해 제약을 받아 다른 韵素로 바뀌며, 그 때문에 복음절어의 韵素 체계는 첫 음절의 韵素가 무엇이냐에 따라 O형, U형, W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체계적인 운소 조직을 가지고 있다. 韵素型 중 O형은 하위 분류도 있어서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경북방언의 모든 단어는 이 韵素型의 어느 하나를 배당받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圖示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1) O(2)형                  2) U형                  3) W형



이것으로 보아 경북방언의 韻素 체계는 중세국어의 모델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3 함경방언의 韵素

**3.3.1 단음절어:** 앞에서 우리는 국어의 모든 방언의 초분절소를 설명할 때 語類를 芽類, 풀類, 별類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말하였다. 함경방언에 대해서도 이 분류는 유효하다. 여기 따라 함경방언의 韵素를 보면 단음절어에서 꽃類는 낮고 풀類·별類는 높기 때문이다. 全學錫(1993)을 보면, 꽃류에 속하는 ‘꽃(芻), 말(馬), 목(喉), 집’ 등은 “저”(低)로, 풀류에 속하는 ‘풀, 옷, 痾, 봄’ 등과 별류에 속하는 ‘벗, 일(事), 숨, 곰’ 등은 ‘고(高)’로 되어 있어 구분되기 때문이다. Ramsey는 이들 1음절의 말들은 고저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는 액센트라는 것은 2음절 이상에서만 나타난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함경도의 꽃류와 풀·별류를 비교할 때 전자가 낮고 후자가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함경 방언의 꽃類는 慶南北의 U와 같고, 풀·별류는 慶南北의 O와 같다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 두 가지 韵素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먼저 ‘높다’는 풀·별류의 운소에 대해서 보자. 이 운소의 행동의 특징은 그 뒷 음절이 모두 낮아진다는 것이다. ‘풀, 별’의 뒤에 ‘이, 은, 을’ 등의 조사가 붙어 ‘풀이, 별을’ 등의 2음절어가 되었을 경우 뒤의 ‘-이, -을’ 등은 원래 높은 소리였으나<sup>26)</sup> 낮은 소리가 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함경 방언의 경우는 고조와 고조가 연속되었을 때는 뒤의 음절이 낮아지는 현상(즉, “高+高→高低”)을 발견한다. 이것은 경북 방언에서 O(高)가 둘 연속될 때 앞 음절이 낮아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즉, 함경 방언의 ‘高調’는 경남북의 O와는 행동을 달리한다. 여기서 우리는 함경방언의 풀별류에 얹히는 超分節素는 Ω(omega)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한다<sup>27)</sup>.

다음에 꽃류에 얹히는 ‘낮은’ 소리를 보자. 이 말 뒤에 ‘이, 은, 을’ 등의 조사가 붙어 ‘꽃이, 꽃을’ 등의 2음절어가 되었을 경우 ‘-이, -을’은 높은 소리(Ω)가 되나, 어

26. 그 증거는 이들 조사가 그 앞에 꽃류가 왔을 때는 높이 발음된다는 것이다.

27. 이전의 논문에서는 함경 방언의 高調도 경남북과 같이 O로, 金永萬(1997)에서는 U로 나타냈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운소를 통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운소는 경남북의 O, U와는 행동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기호를 쓸 필요를 느꼈다. 고민 끝에 Ω(omega)라는 회립 문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굳이 설명을 불이라면 이 글자가 전체적으로 동글어 로마자 O와도 비슷하고, 밑이 터져 있어 U를 거꾸로 놓은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간 ‘꽃-’은 이보다 낮다. 그러나, 그 ‘낮은’ 어간은 慶南北방언의 U와는 다르다. 慶南北의 U는 그 뒤에 오는 다른 운소를 U로 만든다. 그런데 문제의 이 韻素는 그 뒤에 높은 ㅚ를 허용한다. 경남북에서 뒤에 O를 허용하는 운소는 o 밖에 없다. 꽃류에 붙는 이 운소는 경남북의 o와 같다. 全學錫(1993)과 다른 연구자들이 이것을 低로 본 것은 o가 O에 비해 약하고 좀 낮은 특성을 취한 것이므로, 나무랄 것은 없지만, 경남북의 U와 같은 韵素는 아니다. 필자는 이것을 o로 규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합경 방언의 1음절어의 韵素는 꽃類에 얹히는 o와 풀별類에 얹히는 ㅚ의 두 가지다. 다음에 이들 운소를 정리, 제시한다.

#### (28) 합경 방언 1음절어의 운소

ㄱ. 꽃類 : o [向高調]

[예] 꽃(꽃), 등, 술, 침, 밭

ㄴ. 풀·별類 : ㅚ [高調]

[예] 풀, 글, 길; 별, 곰, 돈

경북에서는 o는 단음절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합경도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명사에는 통상 조사가 붙는데 조사는 거의 모두가 ㅚ이므로 그 앞에 o가 oㅚ가 되어 안정된 형태를 이룬다. 반면에 ㅚ는 뒤에 어떠한 조사가 와도 그 조사를 u로 만들어 ㅚu가 된다(“복음절어” 참조).

3.3.2 복음절어의 韵素 규칙과 韵素型: 앞에서 단음절어에는 o와 ㅚ의 두 가지 운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우리는 o와 ㅚ에 조사가 붙으면, 각각 oㅚ와 ㅚu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2음절어에는 u라는 또 하나의 韵素가 생기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 u는 1음절어인 풀·별類의 韵素 ㅚ에 조사 ㅚ가 연결되었을 때 조사가 ㅚ에서 u로 바뀐 것을 알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운소 규칙을 발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29) 합경방언에서 ㅚ는 ㅚ 뒤에서 u로 바뀐다. 즉, ㅚ→u/ㅚ\_\_.

그런데 이 u는 원래는 ㅚ에서 왔다는 것도 알았다. 따라서 u는 합경도 방언에서 ㅚ의 하나의 변이음임을 알 수 있다. 즉 /ㅚ/는 [ㅚ]와 [u]라는 두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29)는 음성학적 변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합경방언의 2음절어는 다음과 같은 운소형을 가지고 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0) 합경방언의 2음절어의 韵素型

ㄱ. o형 : a. 꽃1類 : o(1)형 oㅚ 하늘, 거미, 가시, 겨울, 고기

b. 꽃2類 : o(2)형 oo 가슬(秋), 나물, 다리, 마을, 바람, 불꽃.28)

ㄴ. 풀·별類: ⓪형  $\Omega\Omega[\Omega u]$  (풀類) 구름(雲), 파리, 가물; (별類) 사람, 까치, 임금

우리는 중세국어에서 2음절어의 ⓪형이 두 개의 하위 운소형을 가지고 있고, 경북 방언의 경우도 ⓪형이 두 개의 하위 운소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같이 함경방언의 ⓪형도 두 개의 하위 운소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3음절어, 4음절어로 음절수가 늘어나는 데 따라 그 수가 불어날 것을 예측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⓪형의 운소구성체의 수는 음절수와 꼭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의 I형과 II형, 및 경북방언의 U형과 W형이 음절수에 관계없이 한 가지씩만 있듯이 함경방언의 ⓪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운소 ⓪, ⓧ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첫 음절에는 두 운소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올 수 있으나, ⓪는 ⓧ 뒤에서는 오지 않으며, 합성어의 경우는 원래 ⓪이던 음절도 ⓧ 뒤에서는 “불꽃”的 경우처럼 ⓧ로 바뀐다<sup>29)</sup>.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얻는다.

(31) ⓪→ⓧ/ⓧ\_. (ⓧ는 ⓧ 뒤에서는 ⓪로 변한다.) [예] 불(ⓧ)+꽃(⓪)→불꽃ⓧ[Ωu]

이 규칙은 중세국어에서 ⓪가 I나 II 뒤에서 I로 바뀌는 규칙 (8) 및 경북방언에서 ⓪가 U나 W 뒤에서 U로 변하는 규칙 (20)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함경방언의 운소형 일반을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2) ㄱ. ⓪형 : ⓪<sub>1</sub>ⓧ<sub>0</sub> (앞에 하나 이상의 ⓪가 오고, 뒤에 ⓧ가 몇 개든지 올 수도 있다.)

ㄴ. ⓧ형 : ⓧ<sub>1</sub> (하나 이상의 ⓧ로 되어 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여러 제약이 없었다고 하면, 2음절어에서는  $2^2=4$ , 3음절어에서는  $2^3=8$ , 4음절어에서는  $2^4=16$ , 5음절어에서는  $2^5=32$ 와 같이 운소형이 불어날 것이나, 저와 같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음절수+(운소수-1)”<sup>30)</sup>에 의하여 2음절어는 3, 3음절어는 4, 4음절어는 5, 5음절어는 6가지가 된다.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소형이 존재한다.

- 
28. ⓪(2)형의 oo는 경북방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앞뒤 음절에 대해 다 같은 기호 ⓪를 썼으나, 실은 앞의 ⓪보다 뒤의 ⓪가 좀 높다. ⓪의 연속은 뒤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진다. 그러나, 그 높이는 ⓧ보다는 낮다. ⓪는 ⓧ를 향하여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소리이다. ⓪를 “向高調”라 한 것은 ⓧ를 지향(指向)하는 韻素라는 뜻이다(“경북방언” 참조).
29. 다만 이 때의 ⓧ는 음운적인 차원으로(즉, /ⓧ/), 음성적으로는 규칙 (29)에 의하여 [u]로 실현된다.
30. ‘음절수’는 ⓪형의 하위 운소형(⓪1, ⓪2 등)의 종류수이다. ‘(운소수-1)’와 같이 1을 뺀 것은 韵素 2개(⓪, ⓧ) 중 하나는 앞의 ‘음절수’에 ⓪의 끝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뺀 것이다. 그 남는 1은 ⓧ의 끝이 된다. 앞의 註9 참조.

- (33) a. 2음절어 (ㄱ) ㅇ형: (o2형)o-o, (o1형)o-ꝝ  
                         (ㄴ) ꝝ형: ꝝ-ꝝ
- b. 3음절어 (ㄱ) ㅇ형: (o3형)o-o-o, (o2형)o-o-ꝝ, (o1형)o-ꝝ-ꝝ  
                         (ㄴ) ꝝ형: ꝝ-ꝝ-ꝝ
- c. 4음절어 (ㄱ) ㅇ형: (o4형)o-o-o-o, (o3형)o-o-o-ꝝ, (o2형)o-o-ꝝ-ꝝ,  
                         (o1형)o-ꝝ-ꝝ-ꝝ  
                         (ㄴ) ꝝ형: ꝝ-ꝝ-ꝝ-ꝝ
- d. 5음절어 (ㄱ) ㅇ형: (o5형)o-o-o-o-o, (o4형)o-o-o-o-ꝝ, (o3형)o-o-o-ꝝ-ꝝ,  
                         (o2형)o-o-ꝝ-ꝝ-ꝝ, (o1형)o-ꝝ-ꝝ-ꝝ-ꝝ  
                         (ㄴ) ꝝ형: ꝝ-ꝝ-ꝝ-ꝝ-ꝝ

한편, 규칙 (29)에 의한 음성 실현을 감안하면, (32)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4) ㄱ. ㅇ형 : o<sub>1</sub>(ꝝu<sub>0</sub>)(앞에 ㅇ가 하나 이상이고, 뒤에 ꝝ가 하나까지 올 수 있고,  
                         그 뒤에 u가 0개 이상 올 수 있다)  
 ㄴ. ꝝ형 : ꝝu<sub>0</sub>(앞에 ꝝ가 하나 오고 그 뒤는 u가 0개 이상 올 수 있다)

(34)를 전개하면 이론상 다음과 같은 운소형이 된다.

- (35) a. 2음절어 (ㄱ) ㅇ형: (o2형)o-o, (o1형)o-ꝝ  
                         (ㄴ) ꝝ형: ꝝ-u
- b. 3음절어 (ㄱ) ㅇ형: (o3형)o-o-o, (o2형)o-o-ꝝ, (o1형)o-ꝝ-u  
                         (ㄴ) ꝝ형: ꝝ-u-u
- c. 4음절어 (ㄱ) ㅇ형: (o4형)o-o-o-o, (o3형)o-o-o-ꝝ, (o2형)o-o-ꝝ-u,  
                         (o1형)o-ꝝ-u-u  
                         (ㄴ) ꝝ형: ꝝ-u-u-u
- d. 5음절어 (ㄱ) ㅇ형: (o5형)o-o-o-o-o, (o4형)o-o-o-o-ꝝ, (o3형)o-o-o-ꝝ-u,  
                         (o2형)o-o-ꝝ-u-u, (o1형)o-ꝝ-u-u-u  
                         (ㄴ) ꝝ형: ꝝ-u-u-u-u

이상에서 합경방언은 韻素도 두 개이고, 韵素型도 두 개이다. 다만 운소형 중에는 ㅇ형은 앞에 오는 ㅇ가 몇 개며 뒤에 오는 ꝝ가 있고 없고, 많고 적음에 따라 하위 운소형이 생기기 때문에 운소형의 수는 음절수에 따라 늘어난다. 이 점에 있어 합경방언의 운소형은 중세국어, 경북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합경방언과 서울방언(서부제방언)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중세국어의 세 운소 가운데 두 운소가 합쳐져서 운소 수가 둘로 줄어 든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하겠으나, 그 줄어든 것이 서울의 경우는 꽃류와 풀

류가 합쳐진 데 반하여 함경도에서는 풀류와 별류가 합쳐진 점이 흥미있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운소형에 있어서는 서울방언은 운소의 수와 꼭 같이 두 가지이지만, 함경방언은 음절수에 따라 하위 운소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다르다.

#### 4.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세국어 및 현대 각 방언 중 대표적인 세 방언을 예로 超分節素(韻素)를 상호 관련 속에서 살펴보았다. 이 중에는 경남방언과 같은 중요한 방언을 소개할 여유를 갖지 못했고, 전라방언에도 장단뿐 아니라 고저도 상당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필자가 이 방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류하였다. 다만 경남방언은 별류에 있어서 경북방언의 W에 해당하는 韵素가 장음이 아니고 低調(w)라는 점을 빼고는 韵素(型)의 수나, 각 韵素의 행동이나 모두 경북과 꼭 같기 때문에 논하지 않더라도 유추가 가능하다<sup>31)</sup>.

지금까지 본론에서 논한 것 중 특히 다음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논문을 마감하려 한다.

첫째로 모든 어휘가 운소면에서 꽃류, 풀류, 별류의 세 語類로 대별되었던 것을 보여 주려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언마다 조금씩 달라진 운소를 비교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남(경북·경남)방언에는 이 세 갈래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서부제방언에는 꽃·풀류가 합쳐지고 동북(함경)방언에는 풀·별류가 합쳐지는 흥미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이것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중세국어와 현대 각 방언의 운소 비교표

語群 分類	중세 국어	서부제방언 (서울등)	동부제방언		
			경북방언	경남방언	함경방언
꽃類	꽃(θ=平聲)	短音(S) 音	短	高強調(O)	高強調(O)
풀類	-풀(I=去聲)		中調(U)	中調(U)	低調(o)
별류	:별(II=上聲)		長音(W)	低調(w)	高調(Ω)

지금의 짧은 세대의 언어에는 점차 이 운소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고 방언에 따른 차이도 음성매체를 통한 전국의 획일적인 방송 시스템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층에게는 이 운소를 잘못 발음했을 때(특히 장단에서) 상당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본론을 통하여 우리는 옛 韵素에는 高低의 요소와 長短의 요소가 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학계의 상당수 연구자들이 “성조”라는 이름으로 長短을 배제하고 高低만을 다루려 하고, 심지어는 서울이나 경북 등지에 엄연히 존재하는 長短까지 高低의 한 속성으로 귀일(歸一)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31. 경남방언의 韵素에 대해서는 金永萬(1997)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 参考 文獻

- 金敬蘭 1994. 고대 및 중세 영어에서의 장단모음화에 대하여. 人文研究(영남대) 제16집 제1호 101-112.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金武植(1992). 경북방언 超分節素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國語學 22.
- 金星奎(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博士學位論文).
- 金永萬(1966a). 慶南方言의 聲調 研究. 國어국문학 31.
- (1966b). 방점(傍點)과 현대 국어 성조의 비교: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한글 137(64-79).
- (1967a). 이조 전기 한자음의 운율(I-II). 한글 139-140.
- (1967b). 傍點의 本質에 대한 考察: 높은 소리는 "high tone"인가? 國어국문학 36.
- (1972). 고금 성조 비교 재론. 한글 149(pp. 66-76).
- (1974a). 방점 표기의 원칙과 성조 변화. 國어국문학 64(79-92).
- (1974b). 국어 운율의 본질과 변천: 서울·경북·경남·함경·전라 방언의 비교. 國어국문학 65-66(합본).
- (1986). 國語 超分節音 研究. 嶺南語文學 13.
- (1987). 國語 超分節音素의 史的 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1989). 形태소 (느)의 기저 운율(성조)에 대하여. 鄭然榮先生回甲紀念論叢(29-53).
- (1991). 國語 超分節音素의 史的 研究. 翰信文化社.
- (1997). 國語 超分節音素의 共時的 研究. 嶺南語文學 32. 1-47. 嶺南語文學會.
- (2000). 國語 超分節音(韻素)의 바른 理解를 위하여. 東洋學30.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 김영황(1978). 조선민족어 발전력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 金完鎮(1973/77).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塔出版社.
- 金周源(1991a). 경상도 방언의 성조 高調의 본질과 중세국어 聲調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75-93.
- (1991b). 중세국어 성조 기술에 대한 일고찰--이른바 無聲調 형태소를 중심으로. 둘메 서재극박사환갑기념논문집.
- 金次均(1977). 경상도방언의 성조체계.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南廣祐(1964). 東國正韻式 漢字音 聲調의 研究. 中央大論文集 9.
- 文孝根(1974). 韓國語聲調의 分析的 研究. 世宗出版社.
- 朴炳采(1980). 言文에 관한 研究: 聲調를 中心으로. 民族文化研究所(高麗大) 15.
- 언어학연구실(조선 과학원언어문화연구소). (1960). 조선어문법 학우서방(번인)(1961). 일본 동경
- 李基文(1998). 國語史概說. 太學社.
- 李東華(1990). 慶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音韻論의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相億(1978). Middle Korean Tonology. 미국 Illinois 대학 박사학위 논문.
- 李崇寧(1964). 十五世紀 活用에 있어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 7-2.
- 李炫複(1973). 現代韓國語의 accent. 서울대 문리대학보 19.
- 張泰鎮(1958). 傍點의 機能: 15세기 音素設定을 위한 試圖. 語文學 3.
- (1963). 방점의 연구: 특히 형태론적 과정에서. 한글 132.
- 全學錫(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회령, 경성, 함주 지방말의 음조를 중심으로. 태학사.
- 鄭然榮(1974/77). 慶尚道方言聲調研究. 塔出版社.

- (1976). 國語聲調에 관한 研究. 一潮閣.
- 정인섭(1965). 우리말 액센트는 고서 액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10.
- 池錫永(1906). 言文. 廣學書舖.
- (1909). 字典釋要.
- 車載銀(1997). 15世紀 國語의 聲調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許雄(1955). 傍點 研究. 연세대 東方學志 2.
- 河野六郎(1951). 謢文古文獻の聲點に就ついて. 朝鮮學報 第一輯. 93~140.
- 河野六郎(1959). 再び東國正韻に就ついて. 朝鮮學報 第十四輯. 443~462.
- Crystal, David (1997).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4th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Oxford.
- Fox, Anthony (2000). *Prosodic Features and Prosodic Structure: The Phonology of Suprasegmentals*. Oxford University Press.
- Gildsmith, John A.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Reproduced by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 (1990) *The Autosegmental & Metrical Phonology*. Basil Blackwell, Massachusetts
- Hyman, Larry M(1975). *Phon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 Lehiste, Ilse (1970). *Suprasegmentals*. Cambridge, Mass. M.I.T. Press. (金武植, 金太相 번역본 超分節音素論. 翰信文化社. 1991)
- Ramsey, S. R.(1973). 咸鏡·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研究. 國語學2. 1978.
- (1979).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塔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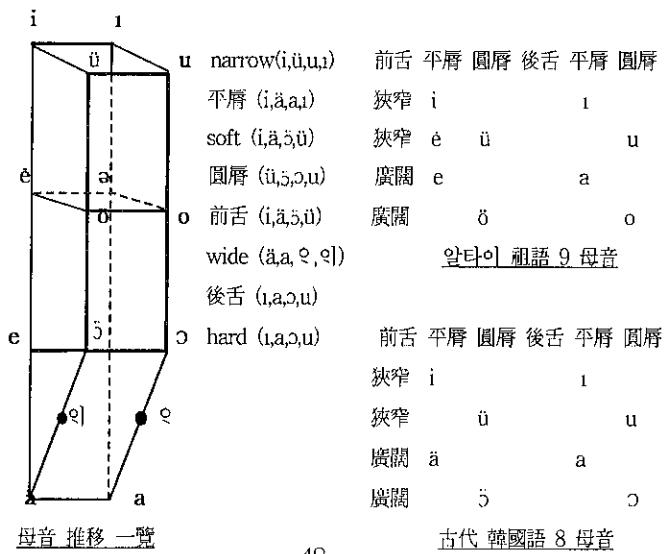
# 韓國語의 語源 및 가지

--알타이 諸語의 語源을 比較하며--

林 敬 淳

## I. 序言

晝耕夜讀의 專門部를 마치고 學府에서 學士 論文으로 “三南 方言에 있어서의 애·에 음의 混用 現象”(1952)을 썼다. 이 方言에서는 개(犬·狗)는 게[ke (g-)]이고, 게(蟹)는 기[ki (g-)]이다. 中央에서도 젊은이들은 이러한 傾向이 짙다. 알타이祖語에 이미 [a]의 對立音은 [ä]가 아닌 [e]였다. 이것은 等距離의 變化요, 母音推移다. 이 過程이 그 때 이미 完成된 狀態였다면, 東方 [i a ɔ u]가 後舌인 陽性, 西方 [i ä ɔ ü]가 前舌인 陰性, 南方 [ü ɔ ɔ u]가 圓脣, 北方의 [i ä a i]가 平脣으로 固定됐겠지만, [i]는 [ö]로 [ə]는 [e]로 [u]는 [ü]로 遷及하여야 하니, [i, e, u]는 다 前舌 곧 陰性 素性을 가진 체 옮아 왔다 하겠다. 日語 對格 接尾辭 を(<ə<ö)나, 新羅城[シラギ]의 ギ(<과<과)도 同軌다. 露語 方言의 素性 中 áканъе (力點 없는 o를 a와 같이 發音한다.)가 있고 英語에서도 이런 現象은 있다. (i.e. водá《水》→[vadá], hot-house《溫室》→[hat haus]). [o>ɔ]는 半島語(韓) 아까니에의 始發이다. [ও, ও]는 圓脣 素性에서 脫出하는 過程이요, 上向 二重 母音이 [i]母音化하는 것(икани e)도 韓·露語에 共通點이 있다(i.e. 요것→이것, 여보→이보, 예쁘→이쁘-; язык→и зык). 二重 母音의 後部 脱落이다. 印歐·슬라브語에도 있는 이런 現象이 알타이語에만 있는 素性이라는 뜻은 아니다. 많은 言語들은 sandhi form 곧 連聲 語形을 가지고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이것은 母音 推移의 어느 段階가 方言에 살아 남을 것인가를 豫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쌀이 찰-과 連聲할 때 찹쌀이 되는 것은 빛《米》이었던 때를 想起시킨다. 학자들 중에는 化石化했다는 表現을 쓰기도 한다.



## II. 本論

1) 古土耳其 736.r. kérü (g-) Adv. fr. \*ké:; 'backwards, behind', and the like; an early 1.-w. in Mong. as gerü (Haenisch 50); a.i.s.m.l. in NC, NW, SW Az. kéri; Osm. geri. Türkü VIII kérü: 'westwards' (as far as the Iron Gate) I E 2; anta: kerü: barıp 'going back from there' IX. 16; kerü: bariğma: bardi: 'those who wished to go back went' Ongin 11: Uyğ. IX kérü: kün batsık(k)a: 'westwards towards the sunset' III B.9 (ETY II 38): VIII ff. Man.-A M I 26, 26-7 (ilgerü): Bud. tinin kérü: kaytı tartap 'drawing back (Hend.) his reins' USp. 97, 20-1 (kaytı uncertain, but see 2 kadıt-): Civ. kérü barrı 'goes back' TT I 174: Xak. XI kö:k temür kérü: (käf unvocalized) turma:s 'blue iron does not rest (yastaqırı) without work' Kaş. I 361, 26 (Kaş. explains this as meaning that when a sword is used, it is not left in the wound but withdrawn for further use); (the man who enters the grave) kérü: yanma:s 'does not come back' III 65, 2; kérü: körüp 'looking behind you' (ḥalfak) III 245, 16; a.o. do. 246, 1; n.m.e.: XIV Muh. ḥalfa gérü: Mel. 14, 11; Rif. 90 (misspelt gé:rter); tanahħħā 'to cease, be stopped, be removed' kérü: er-(?) 24, 11 (vocalized kerewar-); 106 (unvocalized, kérü:er-): Xwar. XIII kérü: 'then, again' 'Ali 55: XIV ditto Qutb 99: Kom. XIV keri (of space) 'backwards'; (of time) 'before' CCI; Gr. 139 (quotns.): Kip. XIII ḥalfa (opposite to 'in front' ilgerü) kerü: Hou. 26, 19: XIV tħumma 'then' kérü: Bul. 15, 12; Osm. XIV ff. gerü, sometimes spelt gé:rü: 'afterwards; back', etc.; c.i.a.p. TTS I 305-6; II 429-30; III 290-1; IV 336.;

700r. köt (g-) 'backside, buttocks'; s.i.a.m.l.g., but like other similar words rarely listed in modern dicts.; SW Osm. göt (Acc. götü). See köcük. See Doerfer III 1657. Xak. XI köt al-dubur 'backside, buttocks' Kaş. I 321; köti: kızla:k al-ħummara mina'l-ṭayr, that is 'with a red tail'; a bird, species uncertain, hardly 'the red-headed finch' which is the normal meaning I 473, 20: Kom. XIV 'backside' köt CCG; Gr.: Kip. XIII al-ist 'buttocks' köt (MS. kit) Hou. 21, 5: XIV köt al-dubur Id. 78: XV ditto Kav. 61, 7; Tuh. 15a, 12.;

716.l. köli:- (g-) the basic meaning seems to be 'to be shady, or shaded' (v.i.) and also perhaps 'to shade, give shade to' (v.t.); in the latter sense it survives in NE Tel. kölö- R II 1270, and Khak. köle-; it is the origin of kölit-, kölik, köli:ge: (the parallel series köşı:-, köşk, köşı:ge: seems to be an example of an I/Ş relationship in Standard Turkish). The meanings of köli:-, kölit-, in Xak. perhaps represent its use as a euphemism for köm- 'to bury'. Uyğ. VIII ff. Bud. Sanskrit (sutava 'like a child' ḍoğol te:g); paripālito'pi 'and protected, guarded' kölöp (sic) yeme: TT VIII D.38 (a metaphor usage?): Xak. XI ölüg köli:di: 'he buried (dafana) the dead man' (etc.) Kaş. III 272 (köli:r, köli:me:k);

716.r. D kölit- (g-) Caus. f. of köli:-; survives in NE Bar., Kızıl kölöt- R II 1272; Khak. kölet- 'to shade (something)'. Uyg. viii ff. Bud. kölitti turdi 'stood shading him' PP 65, 6 (iğle-): Xak. xı ol ölügni: kölitti: 'he had the corpse buried' (adfana) Kaş. II 311 (kölitü:r, kölitme:k);

717.r. D kö:lik (g-) Dev. N. fr. köli:-; practically syn. w. köli:ge, q.v., but much rarer; for survivals see that word. Cf. köşik, çoğay. Xak. xı kö:lik (so spelt, under fā'il) al-żill 'shade, shadow' Kaş. I 409: KB (by wise talk men have risen to be king, malik) üküş söz başıg yérde kıldı kölik 'too much talk has made men's heads something buried in the ground' 173 (see Kaş.'s translation of köli:-);

718.l. D köli:ge: (g-) Dev. N. fr. köli:-; 'shadow, shade'; cf. kölik, q.v. S.i.a.m.l.g. in a wide range of forms of which one or two may represent kölik; the modern words include NE Koib., Sag., Şor köletki R II 1270; Khak. kölek; Tuv. kölege: SE Türki köleŋje: NC Kir. kölökö/kölöŋkö; Kzx. kölökö: SC Uzb. kulanka: NW Kk. köleŋke; Kumyk gölentki; Nog. köletki: SW Az. kölke; Osm. gölige; Tkm. kölege. Cf. kösi:ge; Uyg. viii ff. Bud. kölige belgürer 'a shadow appears' Suv. 52, 20; a.o. U II 39, 87-90 (ajmin): Civ. köligede kuritip 'drying it in the shade' H I 76: Xak. xı köli:ge: al-żilu'l-żalil 'deep shade' Kaş. I 448; III 174 (both main entries): KB (if you see this world) kölige sami 'it is like a shadow' 3536; (this world) kölige turur 4758: xii(?) Tef. köle:ge:/kölige: 'shade' 183: Çağ. xv ff. kölege (spelt) gölge...säya ma'näsina 'shadow' Vel. 371 (verse); kölege (spelt) säya; in Ar. żill wa fay' San. 308v. 25: Xwar. xiv kölige (köli:ge)/köletke (köle:tge:) 'shadow' Qutb 101; kölige 'shade' Nahc. 408, 15: Kom. xiv 'shade' kölege CCI, CCG; Gr.: Kıp. xiu 'the shade (żill) of a tree, etc. köle:k: Tkm. kölge:y Hou. 7, 14: xiv kölge:y al-żill wa'l-xayāl 'shade, shadow' Id. 84; Bul. 4, 5: xv al-żill kölge:y Kav. 58, 8; żill köletke (MS. töletke)/kölege (in margin gölge) Tuh. 24a. 10; żallala köletke eyle- do. 24b. 2: Osm. xiv to xvi gölge in various phr. meaning 'to shade, protect'; in several texts TTS II 446; III 306; IV 350.;

718.r. D köli:klig (g-) Hap. leg.; P.N./A. fr. köli:k. Xak. xı ff. köli:klig yé:r 'a shady (ma žallal) place' Kaş. I 510.;

753.l. köş:i:- Hap. leg., but the -ö- is fixed by kösi:ge; q.v.; cf. köli:-, q.v. Modern V,s of similar form in, e.g., SE Türki: NC Kir. are not related. Xak. xı ta:m kū:nüg köşidi: 'the wall hid (wārā) the sun and obstructed it(s light)' (satarahā); also used of anything which obstructs the light (satara'l-aḍwā) Kaş. III 267 (köşir, köşirme:k).;

753.r. D köşit- Caus. f. of köş:i:-, but practically syn. w. it. N.o.a.b. Uyg. viii ff. Bud. kün teğri öz kütün örtgeli köşitgeli [gap] 'in order to cover the sun and

obstruct (its light) by his own strength' TT X 305-6: Xak. *xı bulit kö:küg köşitti*: 'the cloud covered (or blocked out, satara) the sky'; also used of anything that covers (or blocks out) anything Kaş. II 307 (*köşitü:r*, *köşitme:k*).;

753.r. D *kö:şik* (sic, under *fā'il*) (Conc. N.) fr. *köşi:-*; cf. *köşi:ge*, *kö:lik*. Pec. to Xak. Xak. *xı kö:şik al-xamar wa'l-satرا* 'a screen, covering' Kaş. I 409: KB *kayu sıgnu keldi tiledi kö:şik* (rhyming w. *éşik*) 'some came to take refuge (with him) and asked for a screen (from their enemies)' 451.;

753.r. D *kö:şi:ge*: Dev. N. fr. *köşi:-*; acc. to Kaş. 'light shadow', as opposed to *köli:ge*: 'deep shade'. Mong. *kösige* 'curtain; the side wall of a tent' (Kow. 2587, Holtod 229) looks more like a l.-w. fr. *kö:şik* with suffixed -e than fr. this word. The modern words with this meaning, *kösige/kösögö* and the like, in several NE languages: SE Tar.: NC Kir. seem to be reborrowings fr. the Mong. Uyğ. viii ff. Bud. (climbing a big tree, breaking off the branches and leaves, taking them, and) *balık üzे örtüp kösige kilip* 'covering the fish and giving them shade' Suv. 602, 2: (xiv Chin.-Uyğ. Dict. 'curtain' *kösige* (?Mong. l.-w.) Ligeti 176; R II 1307): Xak. *xı köşi:ge*: 'slight shade' (*al-żillu'l-şağır*) Kaş. I 448; III 174 (both main entries): (Kom. xiv 'curtain' *kösegen* (?Mong. l.-w.) CCI; Gr.).;

753.r. D *köşiklig* Hap. leg.; P.N./A. fr. *köşik*. Xak. *xı köşiklig yé:r* 'a shady (muzallal) place' Kaş. I 509.;

754.l. D *köşin-* Hap. leg.; Refl. f. of *köşi:-*. Xak. *xı er künke: köşindi:* (MS. *köşündi:*) 'the man shaded himself (tazallala) from the sun'; also used when a man hides himself (*tawārā*) from somebody Kaş. II 157 (*köşinü:r*, *köşinme:k*).;

721.r. *köm-* (g-) 'to bury', both specifically for 'to bury' (the dead) and more generally for burying something in the ground, ashes, etc.; sometimes even more generally for 'to dig, cultivate'. S.i.a.m.l.g.; in NW Kumyk; SW Osm., Tkm. *göm-*. See *köli:-*. Uyğ. viii ff. Civ. *isig külke kömüp* 'bury them in hot ashes' H I 151; o.o. do. 35 (1 o:t); USp. 13, 4 (er); 32, 6: Xak. *xı ol ölügni: kömdi*: 'he buried (dafana) the corpse' (etc.); and one says <ol> *kö:zme:n kömdi: ittaxada'l-xubz fi'l-malla* 'he put the loaf in the hot ashes' Kaş. II 27 (*köme:r*, *kömmek*): KB 5212 (*eşü:-*): xiii(?) At. (the wise man says what has to be said and) *kereksiz sözini kömüp kizleyür* 'buries and hides unnecessary remarks' 118: Tef. *köm-* 'to bury' 183: xiv Rbğ. ditto R II 1319 (quotns.): Muh. *dafana göm-* Mel. 26, 3; *gö:m-* Rif. 109: Çağ. xv ff. *göm-* ('with g-') *ba-zamın pinhān kardan* 'to hide in the ground', and sometimes 'to put on one side and hide, but not in the ground' San. 309r. 4 (quotns.): Xwar. xiv *köm-* 'to bury' Qutb 101: Kom. xiv ditto CCI; Gr.: Kıp. xiii *dafana köm-* Hou. 33, 18: xiv ditto İd. 84; *tamma wa qabara* 'to cover up; to bury (the dead)' *köm-* Bul. 50r.: xv

dafana köm- Kav. 76, 1; Tuh. 16a, 1.;

720.r. 1 kem 'illness'; like kégen normally used in Hend. w. 1 i:g; acc. to Kaş. kemlen- was used specifically of horses, but this cannot apply to kem in Uyğ. Survives only(?) in SW Anat. (one group of refugees) kem 'a chronic, painful, cardiac disease' SDD 873; not to be confused with SW Osm. kem 1.-w. fr. Pe. kam 'deficient, bad', etc. Uyğ. viii ff. Bud. ig kem 'illness' (Hend.) U II 42, 7; 43, 19: Civ. TT VII 28, 5 (1 i:g): Xak. xı kem al-dā 'illness'; hence one says at kemlendi: 'the horse (etc.) was ill' (dā'a) Kaş. I 338; a.o. II 363, 20: KB (the physicians) ol ig kem ne ermişsu berdiler 'declared what the illness (Hend.) was' 1057.:

34.r. 1 o:t (o:d) 'fire'; normally lit., occasionally metaph. for 'anger'. Sometimes spelt oot in Uyğ. ? to represent the long vowel or distinguish in fr. 2 ot. S.i.a.m.l.g.; SW Az., Osm. od; Tkm. o:t (o:d...before vowels). Türkü viii biriki: boduniğ ot suv kılmadım 'I did not make the united people discordant' (lit. 'fire and water') I E 27, II E 22; a.o. do. 37; 27 (borça:); Uyğ. viii ff. Chr. oot yalını birle 'with a blaze of fire' U I 8, 12: Bud. ot yalin TT V 6, 44; 8, 91; a.o. U II 8, 27 (2 tamit-); the word spelt od, odh; ot occurs several times in TT VIII: Civ. otka kömüp 'burying it in the fire' H I 35; a.o.o.; oot TT I 19, etc.; oot yalını 123; oot 'the element of fire', common in TT VII: xiv Chin.-Uyğ. Dict. oot see çakıl-: Xak. xı o:t al-när 'fire' Kaş. I 43 (prov.); I 164 (öç-) and nearly 30 o.o., sometimes spelt ot: KB ot 'fire' as one of the elements 143; 249 (ütül-); 375 (öç-); a.o.o.: xiii(?) Tef. ot 'fire' 239; At. ditto, common: xiv Muh. al-när o:d Mel. 17. 6; 23, 2; Rif. 95; o:t 68, 17; 169: Çağ. xv ff. ot atış 'fire' Vel. 86; ot 'a generic term for fire' San. 62r. 1 (quotn.): Xwar. xiv ot 'fire' Qutb 120: Kom. xiv ditto CCI, CCG; Gr.: Kıp. xiii al-när o:t Hou. 8, 18; 17 15: xiv ditto İd. 15; ot Bul. 4, 11: Osm. xiv ff. od c.i.a.p. TTS I 535-6; II 714-17; III 531-3; IV 597-9.;

60.r. D otuŋ (o:ddun) Den. N. fr. 1 o:t. S.i.a.m.l.g.; NE Khak. odiŋ: SW Az., Osm. odun; Tkm. o:dun: elsewhere otun. See Doerfer II 585. Cf. çava:r. Uyğ. viii ff. Bud. kuruğ otuŋ 'dry firewood' U II 8, 26; do. 9, 28 (ötrü): Civ. üç bağ otuŋ 'three bundles of firewood' USp. 91, 12: Xak. xı otuŋ al-ḥaṭab 'firewood' Kaş. I 134; I 67, 3 (uvşak), nearly 20 o.o., spelt otu:ŋ twice and o:tuŋ once: xiii(?) Tef. otun/otuŋ 'firewood' 240: xiv Muh. al-ḥaṭab o:dun Mel. 78, 8; Rif. 182: Çağ. xv ff. otun ditto R I 1106 (quotn. fr. Babur; not in San.): Kıp. xiii al-ḥaṭab o:dun Hou. 17, 16: xiv otun al-ḥaṭab İd. 15; Bul. 4, 11: xv ditto Tuh. 13a. 8.;

릉.MOD(N) / мод(ОН) n. a) Tree, woods, forest. --n u bej-e. Trunk of a tree. --n u jar-a. Knot of tree.

b) Wood, wooden, lumber, timber; fire-wood; stick, staff; domino. -- ben

barixu. "To hold one's stick or whip," i.e. own only a stick or whip, having lost everything else; to become bankrupt. -- cilavu. Construction materials. --n. Wooden. --n badm-a. Magnolia yulan (Ch. yu-lan-hua --n baising. Wooden building. --n bar. Printing block. --n keb. Printing block. --n köl. Wooden leg[s], artificial leg[s], horse (gymnastics). --n odun. Jupiter. --n sidurvu. A two-stringed guitar. --n u örgüsü. Thorn, prickle, splinter. -- tulxu. To lean on a staff, walk with a stick. emegel ün --. Wooden frame of a saddle. ger ün --. Wooden framework of a yurt. mori ben unuzu -- ben barixu. To hold a stick while riding one's horse (having lost all possessions but these).

c) Measurement of length: verst (0. 6629 miles); verst post; measure of length equivalent to Ch. ch'ih 尺, foot; meter (obs.). tabun --n u vazar. A distance of five verst(1.067km). tabun -- torv-a. Five meters of silk.

MODUCI / модоч .Carpenter. -- daran. Carpenter.;

MODULA- / модох v.i. To perch on a tree; to become hard like wood; to enter a forest.;

MODULIG / модлог adj. Abundant with trees or forests, thickly wooded.;

MODURA- / МОДРОХ v.i. To become woody or ligneous; to become stiff or hard.;

MODURXAG / МОДОРХОГ adj. Wooded, woody, ligneous.;

MODUTAI / МОДТОЙ adj. Wooded. -- vudumzi. Boulevard. eldeb -- oi. Forest with various kinds of trees.;

통.슬.1991. p.205. 90: tree: **нег.** тө 130; **маньчж.** hialiq -1; **маньчж.** лит. тоо 130; **нан.** тө 130; **ульч.** тө 130; **орок.** тө 130; **чжурчж.** тоо 130; **эвенк.** тө 130.;

日. こぬれ《木末, 木のうれ, こずゑ》 かる《枯》 かれる《枯》 からす《枯》 かれき《枯木》 からき《枯木》 からむ《絡》 くるし《苦》 くれる《暮》 ころす《殺》 こる《膺懲, 痉固, 樵, 伐, 榻》 こうる《包括》 ころ《轉》 ころぶ《轉》 ころばす《轉》 から《空》 からかふ《弄》 こり《行李》 こうり《行李》 かく《缺, 撞, 書》 かける《掛》 かくる, かくれる《隠》 かくす《隠》 かぶる《被》 かうむる《被, 蒙》 かかぶる《被》 かうぶる, かぶる《被》 かかへる《抱》 かがみ《鏡, 鑑》 かがむ《屈》 かがめる《屈》 かがまる《屈》 かけ《影, 陰, 蔭, 庇護》 かけろふ《光隱而影》 がけ《崖, 厝》 かべ《壁》 くも《雲》 きり《雲霧》 くもる《曇》 こまる《困》 こむ《込》 こもる《籠》;

比較 檢討: マ늘~그늘~그를~그르매~그르매~그름재~그름재~그림~그림자 《陰/木, 陰影》. 그리-《畫》, 마리-《蔽, 障》, 마리蠹>가려덮-《隱蔽》, 마리뵑>가리오>가리우>가리-《障碍》, 굴외-, 굴이-《侵犯, 行惡》-> 가라(<몽.xar-a/xap>물>가라말《黑馬》 거르-《缺》 굵-《彫刻》 굵-《撞》 뿐 > 끌《鑑》 걸-《掛》 거풀>거풀《被覆》 짊ёт>칼날《刃》 가리개>갈개>가개>かけ《障礙物》《陰影》 그

르-~그르츠-~그르흐-~그르흐-~그릇《錯誤》; 霽-《腐敗》空虛》~磬-~磬보-~고프-《感虛飢》飢餓》~磬-《化膿》~골흡>磬음>고름《膿液》磬-《減少하-》~磬失-~>구포하-《感虛, 飢餓》~磬-《饑餓》; こむ《込》~구무·굼기·궁《穴》~뒤꿈치·뒤꿈치/磬>풀·발《趾·臂·足》감-《蔽眼, 捲》~감박이-/눈《瞬, たたく/め>ま》~곰치->감추-《隱蔽하-》~古터.köm-《埋藏하-》~ kem《病》~ 그물->그물-《暮, 篠, 晦日》~그물>그물《網》과 같은 意味場을 이루어 古터. köli:-《그늘지-》 kölik 《shade 그늘, shadow 그림자》 kölit-《to shade 그늘지게 하-》 köli:k · köli:ge《그림자》와 같은 造語겠지만, こぬれ《木末》과는 어떤가? {그늘에}로 본다. 남글, 남기의 뒤음절이 그저 대격 주격형이 아니겠다. 따라서 {그늘}의 /그/와 더불어 《木》의 뜻이다. 나막신《屐履/木》, 놀누물《生菜蔬》, なま《生, なれ》날것>날컷》, な《生菜》, き, こ《樹木》. なまき(こ)のうちに《生木裏에》. 疊, 울타리, 울섶, 읊잣《籬》을히-《擁, 들러 쌓아 읊이 돼 주-》들의 가방語가 '그늘'이요, 'こぬれ'라 할만하다. 몽. '모둔'은 통. '모'와 古터. '온'의 가방語다. 意味場으로선 헷불, 불쏘시개, のろし《狼烟》等이 聯關을 가진다. 林2000 209i 4639 p. 參照.

2) 古터. 502.r. 1. ta:m (?d-) originally 'a wall (by implication built of mud or mud bricks); s.i.a.m.l.g. w. a wide range of extended meanings including 'a building with earth walls, a brick-built structure; a grave mound; SW Az., Osm. dam 'roof'; Tkm. ta:m a brick-built structure'. Türkü viii (I have written this inscription) bu: taşka: bu: ta:mka: (sic) 'on this stone and these walls' I SE: Uyğ. viii ff. Chr. U I 7, 16-17 (bészük): Bud. tam tokiyu 'pounding into shape the (earth) walls' (in building a house) TT VI 82: Civ. (if a man falls from his horse or is flogged or) tamdin tüşüp 'falls off a wall' H I 181; tegirmi tam içinde esrük boltır 'you have become drunk within a walled enclosure' TT I 57: Xak. xi ta:m al-cidär 'wall' Kaş. III 157; I 153 (ükelig), 397 (ükekle:-), and nearly 40 o.o. translated al-cidär, al-hā'it 'wall' or al-sür 'town wall': xiii(?) Tef. dam 'wall, building' 116; tam ditto 283: xiv Muh. al-hā'it ta:m Rif. 179 (Mel. 75, 13 tiwa:r); al-saṭḥ 'a roof' da:m 76, 6; ta:m 179: Çağ. xv ff. tam tam ... saqf ma'näsina 'roof' Vel. 175: (quotn.); tam diwär-i saray 'palace wall' San. 161 v. 4: Xwar. xiii(?) bu üyniq da'ami 'the wall of this house' Oğ. 249 (Mongoloid spelling representing a long vowel): xiv tam 'wall' Qutb 169: Kom. xiv 'roof' tam CCI; Gr.: Kip. xiii al-saṭḥ ta:m üstü: Hou. 6, 4: xiv ṭam (t-) sic ditto. İd. 66; ditto ṭa:m Bul. 16, 10: xv suṭūḥ (also al-qā'ir ?meaning, perhaps error for al-qā'ida 'foundation') tam Tuh. 19b. 11: Osm. xiv ff. dam (and? ṭam) 'building, cowshed, prison', and the like in several texts TTS I 174; II 254; III 165; IV 188;

503.I. F 1 tamu: 'hell'; l.-w. fr. Sogdian tmw; in the medieval period the form tamuğ, possibly borrowed fr. some other Iranian language, appeared. One of the

few pagan religious terms which was taken over by Islam. S.i.a.m.l. in both forms; see Doerfer II 936. Türkü viii ff. (the road which leads) tamu kapğına 'to the door of hell' Chuas. 126; tamu yérin 'the country of hell' do. 161: Uyğ. viii ff. Man.-A M I 13, 15 (1 a:ğ-); Man. TT III 14 (to:-); Bud. tamu is fairly common, e.g. tamuli yıklılı 'rebirth in) hell or as an animal' U II 33, 7; (you have suffered grievous pains) tamudaki teg 'like those in hell' U III 46, 18 etc.: Xak. xi tamu: a name for 'hell' (cahannum) Kaş. III 234: KB tamudün yırar 'it is far from hell' 292; solujdin tamu ornu uştmax oğ ol 'hell is on your left and paradise on the right' 917; iki ev yaratı bu xalqka kamuğ biri atı uçmak birimiğ kamuğ (sic) 'he created two dwelling places for all these people, the name of one is paradise and of the other hell' 3654: xm(?) Tef. tamuğ 'hell' 284: xv Muh.(?) cahannum tamuğ Rif. 138 (only): Çağ. xv ff. tamuğ/tamuk tamu cahannam ma'näsina Vel. 175; tamuğ/tamuk dūzax 'hell' San. 161v. 19 (quotn.): Xwar. xm tamuğ 'Ali 52: xv ditto Qutb 169: Kom. xiv 'hell' tamu/tamuk/tamux CCI, CCG; Gr.: (Kip.) xm cahannum Tkm. ta:mu: Hou. 8, 21: xiv tamu: ditto İd. 66: xv ditto Tuh. 11a. 8: Osm. xiv ff. ditto; c.i.a.p. TTS I 671; II 873; III 663; IV 733.;

463.l. 1 ta:ğ (d-) 'mountain'. C.i.a.p.a.l., usually as tağ or taw; in NE Tuv.; NW Krim; SW Az., Osm. dağ; Tkm. da:ğ. See Doerfer II 859. Türkü viii (VU) Töjkəş tağda: 'on the Töjkəş mountain' II S 8; I E 12 (én-) a.o.o.: viii ff. tağ üze: 'on a mountain' IrkB 17; a.o.o.: Uyğ. viii kömür tağda: 'at the Coal Mountain' Şu. N 8; a.o.o.: viii ff. Bud. tağ 'mountain' is common; see also tağdin: Civ. ditto: Xak. xi ta:ğ al-cabal 'mountain' Kaş. III 153 (prov.) and nearly 70 o.o.: KB yazı tağ 'plains and mountains' 21, 69, 96, etc.: xm(?) Tef. ta:ğ/ta:ğ ditto 281: xv Muh. al-cabal da:k (sic) Mel. 24, 13; ta:ğ Rif. 178; qullatu'l-cabal 'the crest of a mountain' da:ğ ba:şı: Mel.; ta:ğ ba:şı: Rif. do.: Çağ. xv ff. tağ küh 'mountain' (also 'tamarisk' a Pe. l-w.) San. 157r. 16: Xwar. xm ditto Qutb 168: Kom. xiv 'mountain' tağ/tav CCI, CCG; Gr.: Kip. xm al-cabal ta:ğ Hou. 5, 17: xiv ditto İd. 64 (tağ); Bul. 3, 9: xv al-cabal ta:ğ, also called taw bi'l-wāw Kav. 58, 11; cabal taw 'also with -ğ' Tuh. 11a. 9.;

동. 텔.(Lessing.1960).p.775. TAMTA n. Small mortar.;

775.r. TAMU / TAM [s. tamas (darkness of hell)] n. Deep abyss or pit, chasm; hell, hades; tortures suffered in hell, torments. -- ben üzekü. To see one's hell; to be tormented as in hell. -- 역 unaxu. To faa into hell. -- jin zobalang. Torments of hell.;

776.l. TAMU- / TAMAX [= tomu-,1.] v.t. To twist or spin thread or rope. degesü --xu. To twist or splice a rope.;

776.l. TAMUGDA / ТАМАГДАХ v. pass. of tamu-. mori jin köl --zu bain-a. The

horse is staggering, walking cross-legged (from fatigue).;

776.I. TAMULA- / TAMAX v.t. To torture, torment.;

776.I. TAMULAGCI / ТАМЛАГЧ n. Torturer.;

776.I. TAMULAL / ТАМЛАЛ n. The act of manner of torturing, torture.;

776.I. TAMULГ-A / ТАМЛАГА n. The act of twisting or spinning.;

776.I. TAMUMAL / ТАММАЛ [n.d. of tamu-] adj. Twisted, spun.;

통.슬(1991) .p .203. 55. mountain: нег. ijē 79; манъчж. alip 80; манъчж. лит. alin 80; нан. xure(n) 79; ульч. xure(n) 79; орок. xure 79; чжурчж. aliiн 80; эвенк. ure 79;

比較 檢討: 한.~日. 담《壁》~듬->담-《包容》~더미《積物》~정어리, 露積, 난가리》~ dam>やま>이엄<니엄>이엉《屋蓋》~듬ぞ 무수 지>담근 무 김치 《貯藏蔓菁 潰[dzieg>tzü, 지]》(たくあん의 泽庵[たくあん] 和尚 所作 説은 牽強附會?)~たくはふ,たくはへる《貯藏》~たくさん《許多, あまた》; 높<たか《高, 높이》~언덕《岡, 堤防》~덕/체《高架/蠶室用, 시렁》~덕대《骨格, 身長》~たき《瀧, 瀑布水》~たく,たける《長, 猛》~たけ《竹, 身長》~たこ《鳶[연]》; もる《盛, 담-容受薦穀》もり>뫼>배《森林》山, もよほす>비앗->비쳤>はやし《林》催促, 成熟·習慣·學習>使生·林>; 올르-<올 오-<올マ->あがる《上昇/山》~をか《岡》(통.만. 語의 語源은 여기에 對應하고 xure는 夫餘系 《城/山》과 聯關이 있을 듯하다.) 높을<노풀>のぼる《高》上昇》 등이 한 意味場을 이루지만 廣範圍하게 形態上 同語源으로 遷及하는 것은 たこ《鳶》까지다. 林2000. 098a 2597 p. 參照.

3) 吉ter.874.I. yuvka: 'slender, insubstantial', and the like; al-daqiq, and al-raqiq, both used to translate this word, are practically syn., and hard to distinguish in some places. S.i.a.m.l.g., in SE Türki jupka: SC Uzb. yupka: SW Az. yuxa; Osm. yufka; Tkm. yu:ka, elsewhere yuka/yukka/yuğça/çuka/ çuğça and the like. Türkü vñi yuyka: 'thin' T 13 (uçuz; the word is quite clear on the stone, but y and v are much alike in Runic script and this is almost certainly a mason's error for yuvka): Uyg. vñi ff. Bud. (of a gift, deprecatingly) az yuka (?sic) 'scanty and meagre' Hülen-ts. 2029: Civ. yuka (?sic) kadız 'thin cinnamon bark' H I 107: Xak. xı yuvka: 'thin' (al-daqiq) of anything; in prov. yuvka: yapar taxbiz ruqaq 'bakes thin loaves'; yupka: alternative form (luğça) for the -v-, the -p- replacing it as in Ar. usruf/usrub, maştaba/maşṭafa; (Pe.) pānid, when arabicized, becomes fānid Kaş. III 33; o.o. of yuvka: (MS. ?yufka:) II 350 (kalna:d-); III 204, 12 (yuvkalan-); 302 (kalnu:-); o.o. of yuvğça: yuvğça: yağı: 'the straggling (al-nākib) enemy' II 6, 3; 294, 25 (yomğrı:); III 80, 21 (suvla:-); yuvka: bolup ka:l 'stay in a state of madness' (al-cunün) 156, 13: (under the heading faw'al) yuwğça: al-xubzu'l-muğaddan 'puff pastry' III 27; o.o. I 433 (katma:); III 25 (yalas: spelt yuğça:); 35 (yalas:çı:); Çağ. xv ff. yupğça (spelt) nāzik wa raqiq 'thin, slender' San. 341r. (quotn.); yuka shorter form of yupğça nāzik,

and metaph. 'a kind of thin loaf' (*nān-i tangı*) which they make very thin and bake on a girdle 344r. 1: Kom. xiv 'thin' *yoğā* CCG; Gr.: Kip. xiii *al-ruqāq* *yupka*: (-b-) *etmek* Hou. 16, 2; *al-şandalat yupka*: (-b-) *çuz* that is 'thin satin' (*aṭlas raqīq*) 19, 7; a.o. 27, 19: xv *xaffī* 'light, insubstantial' (*yepil*) *yuka* Tuh. 14a, 7: Osm. xiv *yuxa* 'thin' (cloud); in one text TTS II 1073.;

(통.슬.1991.p.206.107: thin: *нег.* nemkūn 152; *маньчж.* niijkəŋ 152; *маньчж.* лит. nekel'en 152; *нан.* nemi 152; *ульч.* nemi 152; *орок.* nemdūke 152; *чжурчж.* nenkekun 152; *эвенк.* nemkūn 152.;

比較 檢討: 한.야비갑->야비암-《輕》~얄파하-《輕薄》(~날랑날랑한-《柔軟하-》> ñallaŋñallaŋ《柔軟》 > 알랑알랑《柔軟》);

古.터.748.r. *kes-* 'to cut, cut off', and the like. S.i.a.m.l.g.; NW Kumyk alone has *ges-*. The resemblance to Tokharian B *käs-* 'to cut' is a coincidence? Cf. *kes*. Türkü viii ff. IrkB 8 (*kılıç*): Uyğ. viii ff. Bud. *kılıç üzə* *kesermen* 'I cut with a sword' U II 61, 17; o.o. do. 76, 1 (*tel-*); Hüen-ts. 316: Civ. *edgū* *kişiler* *yolin kese katığlanur* 'they strive to cut the good men's road' TT I 28; in TT VII 36 about omens to be drawn from mice 'biting' various things the word normally used is *ısır-*, but in lines 2 and 12 *kes-*; in USp. 22, a long petition, the phr. *kalan kes-* 'to collect (or deduct?) a particular kind of tax' constantly occurs; a.o. H I 12 (*ögi:*): Xak. xi *ol yiğäç kesdi*: 'he cut (*qaṭa'a*) the piece of wood' (etc.) Kaş. II 11 (*kese:r*, *kesme:k*; prov.); four o.o.: KB *basm kesmesünü* *keseyin tilin* 'I will cut off my tongue, so that they may not cut off my tongue, so that they may not cut off my head' 166; o.o. 144 (*ço:ğ*), 363, 810 (*bıç-*), 4426: xiii(?) At. *amır cawābin kese* 'cutting short his answer' 290; a.o. 324 (*örte:-*); Tef. *kes-* 'to cut, cut off', etc. 174 (common): xiv Muh. *qaṭa'a* *kes-* Mel. 9, 4-8; 30, 5; Rif. 81, 114; a.o.o.: Çağ. xv ff. *kés-* (etc.) *kes-* Vel. 358; *kés-* *burıdan* 'to cut' San. 314r. 24 (quotns.): Xwar. xiii *kes-* 'to cut, cut off' 'Ali 31: xiii ditto Oğ. 40, etc.: xiv ditto Qutb 95; *kés-* MN 343: Kom. xiv ditto CCG; Gr.: Kip. xiii *qaṭa'a* *wa zabara* ('to prune') *kes-* Bul. 72r.: xv *qaṭa'a* *kes-* Kav. 9, 6; 74, 10; (and *üz-*) Tuh. 30a. 10; *cabba* 'to cut off' do. 12a. 12.;

750.l. D *kesil-* Pass. f. of *kes-*; 'to be cut, cut off, severed', and the like, S.i.a.m.l.g. Uyğ. viii ff. Bud. (all the nerves of the elephant's tusks were) *tüzülüp* *kesilip* 'torn apart and severed' U III 60, 5; same Hend. Suv. 61, 10 and 17-18: Xak. xi *kesildi*: *ne:ŋ* 'the thing was cut' (*inqaṭ'a*) Kaş. II 136 (*kesilür*, *kesilme:k*); a.o. I 339 (*ti:n*), 523: KB *kesildi* *sözüm* 'my speech has been cut off' (i.e. is ended) 33; o.o. 227, 404, etc.; xiii(?) Tef. *kesil-/kesül-* 'to be cut off' etc. 175: xiv Muh. *inqaṭa'a* *kesil-* Mel. 23, 9; Rif. 104: Çağ. xv ff. *késil-* (spelt *buıda şudan* 'to be cut' San. 314v. 7 (quotn.): Xwar. xiv *kesil-* 'to be cut (off)' Qutb 95: Kip. xiv *inqaṭa'a* *kesil-* Bul. 33v.: xv ditto Kav. 77, 5; Tuh. 60a. 3:

Osm. xv ff. kesil- 'to be cut off, separated', etc.; c.i.a.p. TTS I 449; II 618; III 438; IV 502.;

791.l. süvri: 'with a tapering end, sharp, pointed'; syn. w. subi: but not connected etymologically unless they 'have a common foreign origin. Survives only(?) in SW Az., Osm. sivri 'pointed', etc.; sivri sinek 'mosquito'. Uyğ. viii ff. Bud. süvri sügүн sançip 'piercing with a sharp lance' U II 86, 48; süvri sışlar 'sharp spikes' TM IV 253, 56; a.o. do. 255, 138 (uçluğ): Xak. xi süvri: 'anything with a tapering end' (muḥaddadu'l-ra's), like teeth, spear- or arrow-heads, lamp-stands (al--manāra), spits, and other small (şığār) things Kaş. I 422: xiv Muh.(?) (after al-baqq 'gnat' çi:nbi:n--a medieval word) sewri: sinek Mel. 63, 8 (in one MS.): Kom. xiv 'sharp' sürü CCG; 'gnat' (?) sürü çibin CCI; Gr.: Kip. xiv süwrü çibin al-ba'ūd 'mosquito', compounded of süvrü: raqıqu'l-ṭarf mahdud 'slim, tapered' and çibin al-dabāb 'fly' İd. 54; al--ba'ūd siwri çibin, and in another dialect (luğā, ?Tkm.) siwri sije:k Bul. 10, 15: xv ba'ūd süwri şibin Tuh. 7b. 9: Osm. xviii siwri (spelt) in Rūmī, 'a sting (niş), the sharp (tizi) point of anything'; siwri sijek in Rūmī, 'a gnat' (paşşa), in Ar. boqq San. 258r. 28.(솔옷 <솔꽃, 쇠사슬, 바늘(混態) 같이 날카롭은 것);

동. Lessing. (劉) (1960).471.r. KIRГА- / ХЯРГАДАХ v.t. To cut off, shear, clip. --v ci. Barber, shearer. --n alxu. To annihilate, exterminate. unagvasun i --xu. To shear wool. xonin u novusu ji --xu. To shear sheep. tüsün i --xu. To give a haircut.;

471.r. KIRГАГДА- / ХЯРГАГДАХ v. pass. of kirva-; ;

471.r. KIRГАГУР / ХЯГУУР n. Scissors, shears.;

만. 滿和辭典(1937). 271.r. kes 《가파른, 날카로운 (벼랑)》;

통. 친. (1949) 182. отрезать《截取, 切離, 꺾->꺾-, 품->품-》 Эвенк, мийнэ- Эвен, мийнэ- Сол. - Нег. мийнэ- Ороч, - Уд. минэ- Орок. ми- Ульч, юйнэси- Нан. муй-~цу- - Маньчж. мэйтэ- (韓.의->미어지-《裂》과 關聯이 짙다. 아래서 {몸 身 : み 身}을 對應한 것은 意味場에 置重한 措處다.);

比較 檢討: 韓. ~ 日. 바늘>바늘《베를 물라<므로아>말라 ernal 늘, 布木 裁斷 添補 針/刃》~はる, はり>발(기)->벌이《張>針》~발늘/낫>바늘《齒刃》~はなみ《齒並・刃並》; のみ<늘몸《刃身>銳身>鑿>蚤 (>齒刃>針)》~들-> とし《銳利き->~としき-け>とげ《가시}, 刺, 刺, 棘》~ (늘거웃)>のげ, のぎ 《芒》~のる, のぶ, のびる《伸長》~늘-《伸張하-》~늘/뵈>날/베《經, 날줄》~나무/いと/ぬの>いとなむ《經/絲/布>經營》~늘->날-《紅[심>임]》~노랑노랑 누렇게 늙-《黃黃 煙>糊塗>附着》~의로시《狼烟>黃色 烽火》~의-ぬり《與糊-塗裝》; 것 그->꺾->꺾-《截取 [절취] 품->~가식>가식>가시 《刺, 骨》 꺼끄렁이<것 그렁이<꺼스렁이<거스렁이<거스럭이<거스럭<마스락>마수라기>마우라기>가으라기《芒》~きて, きれる《切/銳利》。 林2000 133c 3197 p. 參照。

4) 古터.556.r. taş/taş Preliminary note. Although Kaş. spells both 'outside' and 'stone' taş, 'outside' is tas in Yakut. Pek. 2589 and daş in Tkm. and 'stone' is taş do. 2590 and daş respectively. It is clear that this represents a real difference in the original pronunciations of the two words, cf. 1 baş/2 baş. The difference is further reflected in the facts that in SC Uzb. 'outside' is taş and 'stone' toş, that 'ouside' in some NE and NW languages is tiş/tis and in modern Osm. dış while 'stone' is everywhere taş/tas/-daş, and that in Çuv. 'outside' is tul and 'stone' çul, in Mong. çila'un (Haenisch 27).;

556.r. 1 taş (? d-) normally an Adj. or Adv. 'outside', sometimes a N., 'the exterior, or outside (of something); something which is outside, court-yard, foreign country', and the like; the exact antithesis of iç. S.i.a.m.l.g.; in NE Tuv. daş; SW Tkm. daş; Osm. until about xvi daş/taş more recently dış. Türkü viii (I had the tomb decorated) içi:n taşı:n (sic) 'inside and out' I S 12, II N 14: Uyg. viii içre: ben bulğayı:n temiş taşdır (sic) [gap] 'he said "I will cause disturbances at home, and abroad..."; taşdindin 'abroad' Şu. S 4: viii ff. Man.-A (your lust) kim tastan (sic) aşka içgüke katlap erur 'which is mixed with your food and drink from outside' M I 16, 5-6: Man. taştın sıgar alkatılmış 'which is praised in foreign countries' TT IX 90 (taştın here seems to be not the Abl. but an Adv. with the suffix -tin, cf. -dun/-dün/-tun/-tün); içtin sıja r...taştın sıgar M III 40, 5-7 (i); 43, 15-17: Bud. içtin sıjar...taştın sıjar 'at home...abroad' U II 80, 66; taştıktı/taştın sıjarkı 'external, coming from outside' (of thoughts, etc.) TT VI 187 ff.; (I went for a ride) taştın 'out-side the city' PP 5, 4; kapıgnıñ taşında 'outside the gate' TT VII 16, 3; a.o.o.: Civ. taş 'external' is common in TT VII; taşıña kegde yörgep 'wrapping paper on the outside' H I 150; a.o. do. 178 (salkım): O. Kır. ix ff. Mal. 45, 4 (elle:-): Xak. xı taş to:n zaharatu'l-tawb 'the outside of a garment'; taş yé:r al-fađa' mina'l-arđ wa'l-ğurba 'a court-yard, a foreign country' Kaş. III 152; yıldız ala:sı: taştı:n 'an animal's blotches are on the outside of its body' (cäric badanihi) I 91, 25; er taştın bardı: 'the man went out' (xarıca(n)) I 435 (a main entry indicating that Kaş. regarded this as an Adv. not an Abl.); a.o. II 74 (katur-): KB ay iç taş bılıgli 'O (God) that knowest the inside and outside (of a man)' 11; élig kilmağay kör seni özde taş 'the king will not send you away from him' 3823; (do not say) köni sözde taştın 'anything other than the truth' 6622; o.o. 863, 2213: xii(?) At. bu ajun me körmekke körklüg taşı 'the outside of this world looks beautiful' 217; o.o. 219, 384; Tef. taş 'the outside' 290: Çağ. xv ff. taş. taşra 'outside' Vel. 170 (quotn.); taş (2) zâhir wa birün 'out-side, exterior' (quotn.); (3) dûr wa ba'id 'distant' San. 157r. 4; daş the same as taş ditto 223v. 26: Xwar. xiv taş 'the exterior' taştın 'outside' Qutb 173: Kom. xiv 'out-side'

taştın CCI; Gr.: Kıp. xiv taş al--xāric İd. 63: xv zāhir taş Tuh. 24a. 12: Osm. xiv to xvi daş usually spelt taş 'the outside'; very common, esp. in the phr. i ç---taş TTS I 683; II 884; III 673; IV 744.;

古  
557.1. 2 taş (?d-) 'stone' in all the usual meanings of that word in English. S.i.a.m.l.g.; daş in NE Tuv.; SW Az., daş in Tkm., but consistently taş in Osm.; çul/çol in Çuv. (Ashmarin xv 220); a l.-w. in Pe., Doerfer II 855-7, where the question whether Mong. çilağun is a very early l.-w. fr. Turkish is discussed. Türkü viii taş occurs several times in the phr. bengü: taş 'memorial stone' I S 12, etc. and bitig taş 'inscribed stone' I N 13, etc. (é:t-); ida: taşda: kalmış: kuvranıp 'those who remained in the scrub and stony desert(?) assembled' T 4 (this is the likelier translation, but taşda: could mean 'in foreign parts'): viii ff. the Toyok document (ETY II 57) describes the qualities of various moncu:knuŋ taşlarıŋ 'jewels and (precious) stones': Yen. Kaşuk taş bal[bah:] 'the stone balbal of Kaşuk(?) Mal. 34 (a dubious inscription): Uyğ. viii bitigim belgü:min anta: yası: taşka: yaratıdım 'I had my inscription and sign set up there ona smooth stone' Şu. E 9-10: viii ff. Man.-A Man.-uig. Frag. 400, 9-10 (at-): Chr. U I 7, 16 (béstük): Bud. taş yérde 'in stony places' (or 'foreign parts') v.l. for öj yérde 'in deserts' TT VI 115: Civ. çıku taşun inçge sokup 'pounding çıku: stone into fine (dust)' H I 172; taş 'a stone counter' is common in TT VIII L.; a.o. USp. 15, 2 (örjdün): O. Kir. ix ff. taş:n bunta: tiki: (my people) 'erected their (memorial) stone (to me) here' Mal. 49, 4: Xak. xı taş al-ħacar 'stone' Kaş. III 152; nearly 30 o.o.: KB 212 (1 sa:y), 830 (korum): xiii(?) At. (can one count the number of grains in tall sand dunes or) uşak taş 'small pebbles?' 60; Tef. (he hit him on the head) taş birle 'with a stone' 290: xiv Muh. al--şaxr 'rock' taş Mel. 75, 1; Rif. 178: Çağ. xv ff. taş taş---sang ma'näsina 'stone' Vel. 170 (quotn.); taş (1) sang San. 157r. 3; daş the same as taş sang 223v. 26; a.o. 126r. 18 (baka:): Xwar. xiv taş ditto MN 8: Kom. xiv 'stone, rock, (jeweller's) weight' taş CCI, CCG; Gr.: Kıp. xiii al-ħacar taş Hou. 5, 16; 30, 7-8: xiv taş ditto İd. 63; ditto taş Bul. 3, 9: xv ditto Kav. 56, 14; 58, 12; Tuh. 12b. 12: Osm. xv ff. taş 'stone'; c.i.a.p. TTS I 683; III 674; IV 745.;

몽. 銀.(1960) p.182.1. СИЛАГУ(Н) / чулуу(н) n. Stone, rock.;

СИЛАГУСИ / чулууч(иң) n. Stone mason.;

СИЛАГУДА- / чулуудах v.t. To throw stones; to stone; to throw anything.;

СИЛАГУЛЫГ / чулуулаг n. and adj. Mineral; rocky, stony.;

СИЛАГУР- / чулуурал v.i. To harden, become petrified.;

СИЛАГУРХАГ / чулуурхаг adj. Stony, stone-like, petrified.;

СИЛАГУСИ / чулуушык Same as cilavura-.;

СИЛАГУТАИ / чулутай [=cilavutu] adj. Stony, covered with stones.;

CILAGUTU / 칠루ут See cilavutai.;

CILAGUZI- / 칠루ужих v.i. To become petrified. --vsan. Petrified.;

통.슬(1991) 205. 81: stone: ног. šolo 120; манъчж. vexee 79; манъчж. лит. wexe 79; нац. Золо 120; ульч. šolo 120; орок. Золо 120; чжурчж. h(i)urxe 79; эвенк. šolo 120. ~xise 200.;

比較 檢討: 도락>뚫>뚫>돌《石》, 치벽>조약(돌)>작알>자갈《礫》, 바회, 바구, 바위, 바우《岩》; 풍. çilağun>cila'un《石》; 만. vexee《巖石》 만문. wexe 《巖》; 古터. ta:ş《石》, Çuv. tul《뜰것, 外》 çul/çol《石》, Uzb. taş 《外, 뜰것》 toş《石》; 울차, 네기. 祧CIČ《石》, 나나., 오록. Золо《石》; 女眞 h(i)urxe《石》; 日.いし《石》 いはほ, いは《岩石》. 공통점: 온 음절 具備: 츄바, 한, 우즈; 頭音 口蓋音化: 풍., 츄바., 울차., 네기.; 口蓋音化 未熟 즈: 나나., 오록.; 아까니예(a音化)의 시작 울차.; 12 > -ş : 古터., 우즈.; 바위 系 한., 만. 日.(轉位); dil2 > iš 系: 日., 女眞. 林2000 154a참조 參照.

5) 《門》; 古터.791.r. 'to sweep'(拭-); with some metaph. meanings like 'to drive out, send away' in some modern languages. An early l.-w. in Mong. as şı'ür- (Studies, p. 227); s.i.a.m.l.g. with various phonetic changes (-i/-ü-, -p/-b-). Uyğ. VIII ff. Man. (like the servants of kings and begs who) sıpirür arıtr 'sweep and clean' (the house and furniture) Wind. 33-4; Xak. XI ol ev süpürdi: 'he swept (kanasa) the house' Kaş. II 85 (süpürür, süpürme:k): XIV Muh. sahaqa 'to rub clean' süpür- (-b-, unvocalized) Rif. 110 (Mel. 27, 3 sü:rt-); kanasa süpür- 30, 13; 114: Çağ. XV ff. süpür- (spelt) cárüb kardan 'to sweep' San. 238v. 2 (quotns.); Kip. XIII kanasa min kansı'l-bayt süpür- (-b-) Hou. 37, 1: XIV süpür- ('with -p-') kanasa İd. 51; Bul. 78v.: XV ditto Kav. 74, 11; kansa süpir- Tuh. 31b. 1.(拭(이)~拭(이)빗자루)의 關聯에서;

古터. 582.r. kabak/kapak Preliminary note. Morphologically kabak Dim. f. of ka:b, and kapak Dev. N. fr. 2 \*kap- are quite different words. They are still distinguished phonetically in SW Az. (ğabağ/ğapağ) and Osm. (kabak/kapak) but in early texts they are spelt and, in some modern languages, pronounced exactly the same,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etermine which word is intended. Exceptionally, in SW Tkm. 'pumpkin' is sometimes ka:bak, but ğa:bak means 'eyelid' and ğapak 'cover, lid'.;

582.r. D kabak Dim. f. of ka:b; lit. 'a small container', in practice 'gourd, pumpkin, marrow', and the like (but not 'sweet melon'). S.i.a.m.l.g. except NE(?) w. some phonetic changes. L.-w. in Pe., etc., Doerfer III 1419. Xak. XI kabak al-dubbā' wahwa'l--qar' 'a pumpkin', that is a gourd which is eaten fresh (raṭb) Kaş. I 382 (between two translations of kapak): Çağ. XV ff. kabağ/kabak ('with -b-') (1) kadū 'gourd'; (2) metaph. 'a target' (nişana-nama) which they fasten on the top of a tall pole and shoot at (quotn.);

originally in shooting competitions they put a pumpkin on the top of a tall pole and so the word came to be used for 'target' San. 265r. 14: Kom. XIV 'pumpkin' kabak CCI; Gr.: Kıp. XII al-qar' wa'l-yaqtin ('marrow') kabak Hou. 8, 11: XIV kabak 'a pumpkin at which they shoot arrpws' Id. 68: XV al-qar' kabak Kav. 63, 13; Tuh. 29a. 3. Osm. XIV ff. see kapak.;

582.r. D kapak Dev. N. fr. 2 \*kap- lit. 'something which covers or closes', usually used for 'a lid, or other cover', and 'eyelid'. S.i.a.m.l.g. w. some phonetic changes. L.-w. in Pe., etc., Doerfer III 1367, 1545. Türkü VIII ff. Man. (just as one throws) ötsüz (damaged, uncertain) kapakuğ 'a...lid' (in running water and cleans it with one's hands) M III 14, 10-11 (iii): Uyğ. VIII ff. Bud. közi kapakı tüp tüz 'her two eyes and eyelids were exactly alike' U IV 30, 48; a.o. TT X 436-7 (tü): Xak. XI kapak cafnu'l-'ayn 'eyelid', also called köz kapaklı: (kabak follows here): kapak 'udratu'l-adrā 'a virgin's hymen; one says ol ki:z kapaklı: sı:di: 'he deflowered (iqtađda) the girl' Kaş. I 382; XIV Muh. al-cafn kapa:k (-b-) Mel. 46, 13; Rif. 140: Çağ. XV ff. kabağ/kabak ('with -b-')...(3) puşt-i çasm 'eyelid' San. 265r. 14 (quotn.): Xwar. XIV kapak 'eyelid' Qutb 126: Kıp. XIV kabak (sic?; 'target' and) cafnu'l--'ayn (and al-muxala 'bran'; all three simultaneously) Id. 68 (see kabak, kavik): XV cafn kapak (?; -b-) Tuh. 11a. 12: Osm. XIV-XV kapak 'eyelid' TTS I 398; II 559; III 392; IV 448 (here spelt kabak; the word is also noted in all periods meaning 'drinking cup', for which kabak is perhaps right); XVIII kapak ('with -p-') in Rümî, sar püş 'cover, lid' San. 265r. 17.;

583.l. D kapığ Conc. N. in -ığ fr. 2 \*kap-; 'door, gate. The second vowel was originally -i- but became -a- in Man.-A and some Uyğ. (Uyğ.-A) texts and later became -u- by labial attraction. Survives in some NW languages and SW Az., Osm., Tkm.; elsewhere displaced by eşik. L.-w. in Pe., etc. as kapu, etc., Doerfer III 1368. Türkü VIII temir kapığ 'the Iron Gate', a pass between Balkh and Samarkand is mentioned several times in I, II, T, IX.: VIII ff. Man. tamu kapığına 'to the gate of hell' Chuas. 126; kapağın açtı 'he opened its gate' M I 13, 7; oo. do. 8-12; M III 23, 2 (ii); TT II 8, 65: Uyğ. VIII ff. Bud. kapağ (sic) 'gate' is common in PP: Civ. teğri kapığı 'the gates of heaven' TT I 144: a.o.o.: Xak. XI kapuğ (sic) al-bāb 'gate' Kaş. I 375; over 30 o.o.: KB (some flowers) açtı hapuğ 'have opened a gate' (with their beauty) 97; o.o. 264, 2529 ff.: XIII(?) Tef. kapuğ/kapu 'gate, door' 198-9: XIV Muh. al-drwāza 'gate' kapuk (sic) Mel. 73, 13 (Rif. 179 adds wa darbu'l-sür 'and town gate', translation kayğa:; ?for kapşa: q.v.); al-bāb kapu: 76, 5; kapuğ 179; a.o. 26, 9; 109 (yaptur-): Çağ. XV ff. kapu ('with -p-') dar-i sarayı 'palace gate', also called eşik; kapu ökçesi 'the bottom pivot of door', and metaph. 'threshold', in Ar. 'ataba San. 265v. 20:

Xwar. xiii kapuğ 'door' 'Ali 12: xiv kapağ/kapuğ 'door' Qutb 126–7; MN 275; Kom. xiv ditto kabağ/kabak CCG; Gr.: Kıp. xiii al-bāb kapu (-b-; also eşik) Hou. 6, 4: xiv kapu (sic, 'with -p-'). al-bāb; one says kapu aç and kapuni: aç 'open the door' Id. 68; al-bāb ka:pi:/ka:pu: (-b-) Bul. 14, 11: xv al-bāb (eşik and) ka:pu (-b-, so read?) Kav. 59, 10; kapu (-b-) Tuh. 8a. 5.;

583.r. D kapğa: Dev. N. in -ğa: which seems here to be an Elative, fr. 2 \*kap-; 'a great gate, town gate'. Survives in NC Kir. kapka; Kzx. kakpa; NW Kaz. kapka. Xak. xı kapğa: al-darb 'a great gate' Kaş. I 425: xiv Muh. Rif. 179 (?; kapığ).;

584.l. kapğa:k Dev. N. (connoting habitual action) fr. 2 \*kap-; 'lid, cover'. A l.-w. in Mong. kabkak (Kow. 728) and Pe., etc. Doerfer III 1422. Survives (or reborrowed from Mong.?) as kapkak in NE Tel., Tob.; SE Türki and SC Uzb. (kopkok). Cf. kapak, yapğuç. Xak. xı kapğa:k al-'/ifāş wahwa makabbatu'l-kināna 'a leather stopper, that is the cover of a quiver' Kaş. I 471.;

584.l. D kapıçı: N.Ag. fr. kapığ; 'gate-keeper, door-keeper'. Survives in SW Osm. kapıcı/kapuci; but Tkm. ğapçı means 'one who begs from door to door'. L.-w. in Pe., etc. Doerfer III 1369. Uyg. viii ff. Bud. kapağıçı (sic) 'gate-keeper' PP 41, 5; 42, 5; 44, 6; kapıçı: do. 66, 1: (Xak.) xiv Muh. al-bawwāb 'gate-keeper' kapu:çı: (-b-, wa oda:çı:) Mel. 56, 14; kapuğçı: (-b-) Rif. 155: Xwar. xiv kapuğçı ditto Qutb 127: Kıp. xiii al--bawwāb ka:pu:çı: (-b-) Hou. 24, 4.;

584.l. D kapıaklıg P.N./A. fr. kapığ; s.i.s.m.l. Xak. xı kapuaklıg ev 'a house with a door (bāb)' Kaş. I 495.;

584.l. D kapgaklan- Hap. leg.; Refl. Den. V. fr. kapğa:k. Xak. xı ké:ş kapgaklandı: 'the quiver had a cover' ('ifāş) Kaş. II 275 (kapgaklanu:r, kapaklanu:r, kapgaklanma:k).;

584.r. D ka:blan- Refl. Den. V. fr. ka:b; Hap. leg. in Kaş.'s meaning, but fr. Xwar. xiv onwards kaplan- was used as the Pass. f. of kapla- 'to put a cover on (something); to bind (a book)', and more generally 'to cover, surround, besiege, contain', etc. Xak. xı er kablandı: 'the man became the owner of a wine-skin' (ziqq) Kaş. III 199, 6 (in a passage on the functions of -lan-); n.m.e.:

870.r. yap- (?d-) this V. and its der. f.s have a wide range of meanings, 'to build (e.g. a wall); to shut (a door); to cover (things); to stick (things) together', the basic connotation of which seems to be 'to put (things) together'. There are some indications, see yapa:ku, and Mong. dabçı 'cover'; dabgür 'doubled' (Haenisch 30), that the initial may originally have been d-, but this is

uncertain. S.i.a.m.l.g. w. the usual phonetic changes; the prevailing meanings are 'to cover, shut, shut up' in NE, SE, NC, and SW Tkm.; ditto, and 'to build, complete' in SC, NW; 'to make, construct, do, arrange', etc. in SW Az., Osm. Türkü viii ff. IrkB 28 (1 ordu): Uyğ. viii ff. Man.-A (first of all) yapdilar yaratdilar 'they created (Hend.)' (the tenfold heavens) M I 14, 8 (in subsequent parallel sentences yarat-, and once ét- yarat- are used); Civ. yap- 'to cover' H II 26, 110: Xak. xı er kapuğ yaptı: (MS. yapıtti:) 'the man slammed (şafaqa) the door'; and one says er to:r yaptı: (ditto) 'the man threw down (alqā) the net over the birds' (etc.); and işle:r ötme:k yaptı: (ditto) 'the woman fixed (or stuck, alşaqtat) the bread in the oven'; and er ta:m yaptı: (ditto) 'the man built (banā) a wall' Kaş. III 57 (yapa:r, yapma:k); yuvka: yapa:r taxbiz ruqāq 'makes thin loaves' III 33, 26; o.o. I 348 (2 kars): I 374 (sıdığ); III 208, 23 (?; corrupt); KB yaparsen kapuğ 'you slam the door' 719; o.o. 1303, 6152: xiii(?) Tef. yap- 'to construct, build' (e.g. a wall) 141: xiv Muh.(?) al-tağıya 'to cover' yapmak Rif. 119 (only): Çağ. xv ff. yap- ('with -p-') both v.i. and v.t. püşidan wa püşanıdan (the grammatical analysis is directed towards the Pe. V.s, the second a Caus. f. of the first but both v.t.) 'to put on; to cover; to hide, conceal' and 'to clothe, to cover, to conceal'; and nān ba-tannūr çaspändan 'to fix bread in the oven' is also yap- San. 324v. 28: Xwar. xiv yap- 'to shut (e.g. a door); to cover' Qutb 63 (yab-); 'to build' do. 68 (yap-): Kom. xiv yap- 'to cover, to shut' CCI; 'to make' (in phr.) CCG; Gr. 113 (quotn.): Kip. xiii xabaza 'to make bread' ya:p- which also means ğalaqa'l-bāb 'to shut (a door)' and banā Hou. 34, 3; o.o. 34, 10 (ğalaqa); 37, 4 (banā): xiv yap- ğattā 'to cover' wa banā; and in the Kitāb Beylik ağlaqa İd. 90; ğallaqa yap- (-ti:) Bul. 64v.: xv yap- ğattā Kav. 9, 3; Tuh. 27a. 12 (also örüt-); banā yap- ('with -a-') 75, 11 (also ğattā); 8b. 2; satara ('to conceal') wa ğattā yap- 20a. 12; a.o. 27a. 2; Osm. xiv to xvi (only) yap- for 'to shut (a door)'; common TTS I 782; II 997; III 767; IV 841.;

434.I. VU to:- 'to close, block, and the like; hitherto transcribed tu:- which is the pronunciation suggested by tuyuk, q.v., but, as it is the basis of tod-, tok, and tol-, to:- is more probable. N.o.a.b. Türkü viii (thereis only one road over the Kögmen mountains and) tomiş teyen eşidip 'I have heard that it is blocked' T 23: Uyğ. viii ff. Man. tamu yolın toturuz 'you have blocked the road to hell' TT III 14: Xak. xı ol ağızın to:di: hazırlama fāhu 'he closed his mouth'; also used for blocking up a hole (idā sadda kull ṭaqb) Kaş. III 247 (to:r, to:ma:k): KB (geese, ducks, swans, and sand-grouse) kalıkış todı 'fill the air' 72; (the sky let its forelock fall and) yaruk yüz todı 'obscured its bright face' 5824.;

鄂.俄.(1960) p.906 ХАГАЛГ-А(Н) / ХААЛГА n. Gate, door. --barivci kümün. Gatekeeper. --jin duvar. House number. -- jin kösigür. Pole propped against a

gate in order to keep it closed; latch. -- sakivci kümün. Gatekeeper, doorman. -- xavaxu. To close the gate. voul --. Central or middle gate. vuldung --. Arch. jabuvan --. Wicket. josulal un --. Triumphal arch.:

통. 친 (1949) p. 183. дверь (門) Эвенк. уркэ Эвен. уркэ Сол. ўркэ~ўккэ Нег. уј кэ~у'ткэ~ус'кэ Ороч. уккэ Уд. укэ Орок. утэ Ульч. ўчэ Нан. ујкэ Маньчж. ујэ;

比較 檢討: \*비 소리>뿌리>싸리《荊蓀》(098項n目 參照)로 된 사립 門, 문턱이 없는 암 門, 弁韓의 後身 伽倻語의 돌[梁], 日. とり(ゐ)《神社 門》, 돌쪽귀>돌쪼귀, 돌찌귀의 돌《回轉》이나 (미)닫이《(推)閉(門)》, 古터.yap-, to-《閉 닫-/門》도 門과 통한다.となり《隣》도 《門戶 나란히》로 풀이된다. (울鳴돌梁목 海峽의 돌>도랑《水路》은 글자대로의 뜻이다.) 위굴.kabuk《門》, 古터. kapiğ《門》, kapğa《大門》 kabak《눈까풀》은 우리 갑,겹《皮》과 같은 意味場이며, {덮개, 블이개, 두께}>두행>댕)에서도 門의 語源을 찾을 수 있다. 林2000 211ac치de침 參照. 몽골語는 우리의 {걸게}《懸垂, 閉門》에 걸맞는 걸까? 통구스-만주 語는 古터.yap-과는 軌를 달리 한다. 前者は 露語式 [우]나 [위]요, 後者は [d]의 變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前者は {밀-}《推》, 後者は {덮-}《覆蓋》인 셈이다.

6) 古터. 215.r. arka: originally 'the back' of a person, animal, or thing; hence metaph. 'a backer, someone who stands behind and supports a person'. S.i.a.m.l.g. Uyğ. VIII ff. Man.-A yeme amti bolzun esengü alkış tüzü nom arkasına 'and now let there be well-being and praise to all supporters of the (true) doctrine' M I 27, 11 ff.: Bud. o:t öglüğ saçı arkasında yadılı turup 'his flame-coloured hair hanging down his back' U IV 10, 67-8; arka bérip 'turning his back' (on the light (Dat.) of the gods) TT VI 273; tüz köpültüg bursaŋ kuvrağlarıñ iki arka kıldım erser 'if I have caused discord in level-minded religious communities (Hend.)' Suv. 134, 12-14; similar phr. TT IV 10, 20: Civ. süsgünü arkası tutuşur '(pain) grips hia shoulders and back' TT VII 25, 4: Xak. xı arka: al-żahiru'l-ladı yu'āwinuk fi'l-dawâhı 'a backer', who helps you in difficulties' Kaş. I 128 (prov.); a.o. ('back') I 139, 6: KB bayat ok bolu bérönü arka yülek 'may God give you abundant backing and support' 90; arka 'backing' 1697-8; arka yülek 116, 1045: xı(?). Tef. arka 'back, backing' 58: xıv Muh. al-zahr arxa: Mel. 47, 13; arka: Rif. 114; al-misnad 'couch' arka: yatak Rif. 168 (only): Çağ. xv ff. arka puşt 'back', in Ar. żahr San. 37r. 22: Xwar. xıv arka 'back' Qutb 11: Kom. xıv 'back' arka CCI; Gr.: Kıp. xıı al-żahr wa'l-musā'ada 'back; support, help' arka: Hou. 21, 1; a'āna 'to help' arka: bérdo. 34, 20; sā'ada 'to support, help' ditto 40, 17: xıv arka: al-żahr İd. 11: xv ditto Kav. 60, 17; Tuh. 24a. 11: Osm. xıv ff. arka (once in xıv arxa) (1) 'back'; (2) 'backer, helper'; c.i.a.p. by itself and in phr. TTS I 39; II 54; III 37; IV 38-9.;

古터. 846.l. sirt has a very miscellaneous range of meanings of which 'back' is perhaps the basic one. The Xak. meaning, unknown elsewhere, may have been properly 'the thick hair on the back of a horse's neck'. S.i.a.m.l.g. meaning 'a mountain ridge; the back (of a man, knife, axe, etc.); the exterior of something', not all current in all current in all languages. Xak. xı sırt al-hulb (MS. halb) 'thick, coarse hair' Kaş. I 342 (cf. sırtla:-): Çağ. xv ff. sırt sur'at 'speed' (sic) Vel. 285; sırt (spelt) şāna wa dūş 'shoulder blade, shoulder' San. 251 v. 4 (şāna also means 'speed'; Vel.'s translation is prob. a misunderstanding of this word): Oğuz xı (after Xak.) and the Oğuz call any mountain stream or small valley (tal'a wa wādī şāğır) sırt Kaş I 342: Kom. xiv sırt 'hill' CCG; Gr.: Kıp./Tkm. xiv sırt al-rābiya 'a hill'; and in Kıp. naşlu'l-mihrät 'a ploughshare' İd. 57; a.o. do. 52 (sürüğ); al-rābiya sırt Bul. 3, 10; al-sikka 'ploughshare(보습)' sırt (MS. sırt) do. 4, 1; a.o. do. 5, 1 (sürüğ): xv saqanqūr 'skink' (a kind of lizard) sırt balıkı Tuh. 19a. 8;

몽.했.(1960) p. 682.l. SEGER / 쎄эр n. Spine, backbone, spinal column; a vertebra, nape of neck; whirlwind; hill, mountain ridge. > 할하 符.(1988) cēp «脊椎骨»;:

몽.했.(1960) p. 1065.l. ZO(N) (ZOU, 2) / 300(н) n. Base of spine, sacral region; vertebrae, spine; sciatic nerve; fur along the spine; back. -- ben abxu, Lumbago(腰痛). --jin mix-a. Tenderloin(허리의 軟한 고기/소·돼지). -- ködelkü. To sprain(呻-) one's back. --n du jum xabcivulxu Lumbago(腰痛). -- niruvu. Back, spine(등뼈). --n u arisun. Skin of the back [AT 64].:

몽.했.(1960) P. 54.r. ARU / AP n. and adj. Back, rear; north, northern; verso of a sheet or folio. -- bej-e. Back or rear part of a body or carcass; rear or northen side of something. -- debisker. Background. -- du. In the rear, back, behind. -- du ece. From behind, from the rear. -- ger. Home or family left behind. -- jin tüsilge. Cushion for the back. -- mongvul. Outer Mongolia. --tal-a. Back, rear; reverse side; northern side. avula jin -- du. Behind the mountains. cavasun u --. The back or reverse of a sheet. cerig ün --tal-a. Rear of an army. var un --. Back. of the hand. ger ün --. The back of a house or yurt.> 할하. 符.(1988) p. 244 ᠠƿƿ～արՁ«背, 脊椎, 後面 部分, 背影 部分»;:

통.친.(1949) p. 74 «1. спина(背), 2. поясница(腰), 3. широкий(廣大한)» Эвенк. д арама 2 Эвен, дарама 2 Сол, дарама 1 Нег, дајама 2 Ороч, даама 1 Уд, дама 1 Оро к, дарами 3 Ульч, дарама 2 Нан, дарама 2 Маньчж, дара ~дарама 1,2;:

比較 檢討: 메->미-«擔/肩», 메밧>메밧>메왓>메앗-«脫/肩»; 디->지- / 등허 리에 «負/背», 짚>짐/등 «荷物/背».; 니마>이마/앞 · 앞 «額頂/前» 니-/に>이-/마 리 · 머리<말-<물-<몰-«戴/頂 · 頭上, 卷, 荷物. 日. 頂戴 [ちやうだい] 받들께요,

주세요/ まり=丸=庭球, まく, まき=卷・捲》 にりむ>님>nim>임《前, 主, 愛人, 貴人, 貴下》; 업-《負/背》 おふ, おんぶす《負/背, 受, 被》 おぶ v. 《帶/男腰・女背》 おび n 《帶》.; 보들이, 보들이 > 보따리《取於手荷物, 懸垂褓》, 보듬-《容納褓, 包容》. 運搬 方法과 道具를 人體 部位와의 關係에서 보아, 意味場을 같이 하니, 語源을 달리 한다. 또, 여러 알타이 語에서 알 수 있듯이 등덜미, 등모로, 등성이, 雪-, 雪-, 셔->서->스- 等屬에 あるく, あゆむ, せ; arka, aru>aro, ar, seger>ser, sırt, zo, zou, darama 等이 더러는 脱落, 더러는 混態 形式으로 들어 있다.

### 参考文獻

1. 金澤庄三郎, 廣辭林, 東京, 三省堂, 1925, 1936 305次版.
2. 金田一京助, 國語史 -系統篇-, 東京, 刀江書院, 1963.
3. 龜井 孝, 河野 六郎, 千野 榮一 編著, 言語學大辭典, 世界言語編, 東京, 三省堂, 1992.
4. 小澤重男, 日本語で引く 英・蒙・土 對照單語, 東京, 大學書林, 1966.
5. \_\_\_\_\_, モンゴル語 基礎 1,500語, 東京, 大學書林, 1965.
6. 小松 格 (こまつ いたる), ウズベク語 辭典, 東京, 泰流社, 1979.
7. 金芳漢・金周源・鄭堤文 뭉끌어와 통구스어, 서울, 민음사, 1986.
8. 竹内和夫, トルコ語 文法入門, 東京, 大學書林, 1970.
9. 田村實造 等編, 五體清文鑑譯解, 京都大學文學部, 内陸アジア研究所, 1966.
10. D Tömörtoого, a Modern Mongolian-English-Japanese Dictionary, 小澤重男 編譯, 現代蒙英日辭典, 東京, 開明書院, 1979.
11. 람스테트. G. J. 著, 아알토. P. 編, 金東昭 譯, 알타이語 형태론 개설, 民音社, 1985.
12. Lessing, Ferdinand D., Mongolian-English Diction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0.
13. Miller, R.A., 著, 西田龍雄 監譯, 日本語とアルタイ諸語, 東京, 大修館書店, 1981.
14. 符拉基米爾佐夫 著, 陳偉 陳鵬 譯, 沈成明 校, 蒙古書面語與喀爾喀方言比較語法, 青海人民出版社, 1988.
15. 徐在克 著, 中世國語의 單語族 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0.
16. 서재만 편, 터어키-한국어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2.
17. 宣德五, 趙習, 金淳培 編著, 朝鮮語 方言 調査 報告, 延邊人民出版社, 1990.
18. 阿爾泰語言學導論, 形態學, [芬蘭] G.J. 蘭司鐵 著, 陳偉, 沈成明 譯, 中華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19. Ullmann S. Seman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Basil Blackwell & Mott Ltd., 1962, 池上嘉彥譯, 言語と意味, 大修館書店, 1969.
20. 劉昌淳 著, 李朝語 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64, 1987 七次版.
21.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82.
22. 李基文 著,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61, 改訂版 9刷, 1980.
23. 李樹蘭 等編, 錫伯語口語研究, 中國民族出版社, 1984.
24. 林敬淳 著, 變形生成文法論叢, 螢雪出版社, 1982, 修訂增補 1987.
25. \_\_\_\_\_著, 言語의 比較, 全南大學校 出版部, 1985.
26. \_\_\_\_\_著, 韓・日 漢字 音・釋의 比較研究, 서울, 大提閣, 1991.

Almost all currencies in East Asia were severely affected by speculative attack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s. Following the defacto devaluation of the Thai Baht on July 2, 1997, other ASEAN countries underwent a series of speculative attacks. In response to the attacks,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Malaysia allowed currency depreciation in mid-July either by widening their exchange rate bands or by not intervening their exchange rate bands or by not intervening heavily in the currency market. In mid-August, Indonesia decided to abolish exchange rate bands to prevent further depreciation of the Rupiah. There was a delayed speculative attack on the Korean won in late October 1997, which began to depreciate drastically over the subsequent two months. Korea also moved to independent floating in mid-December after widening exchange rate bands a month earlier.

Thailand, Indonesia and Korea requested IMF assistance and, in exchange, accepted conditions of tight macroeconomic policy,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and real-sector structural reforms. Despite IMF assistance and policy shifts, these countries continued to face simultaneous downward spirals of exchange rates and stock prices.

These and many other East Asian economies also experienced severe credit crunch and economic contraction because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were cautious in extending loans under the pressure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the substantially curtailed access to foreign credit.<sup>2)</sup>

Until the currency crisis broke out, East Asia was the most dynamically growing part of the world and often was called the "growth center" in the world economy. Its economic miracle was made possible by rapid capital accumulation, increased supply of labor, and productivity growth. This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last 20 years was aided by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s and outward-oriented policy regimes. Since the mid-1980s, outward orientation had been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export-oriente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We observed virtuous circles of the expansion in FDI inflows and exports and imports, which stimulated economic growth, in turn attracting FDI inflows and stimulating trade.

When there was a currency crisis in Mexico in late 1994, economists and policymakers in the East Asia said the region would not face a similar crisis

---

2) Masahiro Kawai, *The East Asian Crisis: Causes and Lessons*, A Paper presented at the 3rd Biennial Pacific Rim Conference, Bangkok, Thailand, January 16, 1998, pp 157-172

because its economic fundamentals were substantially better. It enjoyed high savings rates, relatively low inflows, such as FDI inflows and short-term capital inflows, the deficits were financed by long-term capital inflows, such as FDI inflows and short-term banking inflows with long-term roll-over commitments. They believed that a severe currency crisis was a remote possibility in East Asia.

Now, to our surprise, most of the East Asian economies are under currency attacks and are undergoing severe financial crises. The experiences since July 1997 have revealed the fact that no economy, even the supposedly most dynamic East Asian economy, is immune to massive currency attacks once things go wrong.

The crisis broke out in June 1997 when markets, as with Mexico in 1994-95 and many other countries in the past, began to doubt the sustainability of the external positions with the southeast Asians countries—especially in light of the increasingly apparent weakness of their domestic financial systems. The initial attack on Thailand quickly spreaded out of southeast Asia, where underlying structural problems already existed as well, and to northeast Asia in light of its ongoing problems.<sup>3)</sup>

The de facto devaluation of the Thai Baht in July 1997 was soon followed by a series of speculative attacks on other ASEAN currencies. In response to the attacks,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widened their exchange rate bands in mid-July 1997 to allow currency depreciation. The Philippines immediately requested IMF assistance, which was quickly approved because the country already had been under the IMF program. Indonesia switched to an independent float system to allow further depreciation of the Rupiah and to prevent a continued run on the Rupiah in mid-August without success. In October, the country was forced to request IMF assistance to strengthen its foreign exchange reserve positions with the conditions of tight macroeconomic policy,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closure of 16 commercial banks), and domestic economic reforms. Malaysia also saw its currency come under speculative attack and allowed the Ringgit to depreciate.

Although there was no immediate contagion effect for other East Asian currencies, the Hong Kong dollar was the major target of attack in late October

---

3) C Fred Bergsten, *the Asian Monetary Crisis: Proposed Remedies*, Statement Before the Committee on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November 13, 1997

1997. As the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was determined to defend its currency value and consequently let the interest rate rise the speculative contagion spread quickly to Korea. The Korean won began to depreciate drastically in November and December because of perceived difficulties of roll-over of foreign currency loans extended to Korean commercial banks. Korea then rushed to the IMF for its assistance in late December and accepted the conditions of tight macroeconomic policy,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further capital-account liberalization, and domestic economic reforms involving conglomerates(*chaebols*).

In spite of commitments of massive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IMF, the World Bank and other countries, and accompanied policy reforms, the values of the Korean Won and the Indonesian Rupiah continued to plunge at the turn of the year because of the loss of confidence in these currencies. International bank lenders started to pull out of Korea and Indonesia for fear of possible defaults of borrowers(commercial banks in Korea and business firms in Indonesia) whose external debts were inflated by steep currency depreciation. At the same time, domestic investors in these countries sold their currencies to avoid further exchange losses. All these exerted significant downward pressure on the exchange rates. Not only Thailand but also Indonesia, Korea, and many other East Asian economies experienced severe credit crunch and economic contraction because domestic commercial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NBFIs) have pressure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d have substantially reduced access to foreign credit.<sup>4)</sup>

Indonesia and Korea had much better fundamentals than did Thailand, but both countries came under massive currency attacks and are now under IMF supervision. The financial positions of these two countries were severely affected by steep depreciation of the currencies, which in turn led to further currency depreciation. Some of Western scholars argue that there are essentially five causes for the East Asian currency crisis: unfavorable macroeconomic conditions, excessive inflows and rapid outflows of short-term capital, inappropriate exchange rate arrangements, financial system fragility, and regional contagions.

### **III. The Asian Values and Rapid Industrialization in East Asia**

From the Asian viewpoint, many influential Asian economists think that the

---

4) Masahiro Kawai, *the Asian Monetary Crisis: Casuses and Lessons*, p. 162

Asian currency Crisis of East Asia are caused by the conflict between the Asian Value (The Asian Economic Model) and the American Economic model. The United States has for years attempted to destroy this Asian model because of its Asian Value based on protectionist and statist features.

In summer 1994, when former Singapore prime minister, Mr. Lee Kwan you had interview with a reporter of American Foreign Affairs.

He said that cultures of Asian countries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countries, so the Western value couldn't be applied into the Asian value. He added that remarkable Asian economic miracle was created based on the Asian value.

Proponents of the Asian Value are Japan, China, Hong Kong, Indonesia, East Asia, ASEAN, totally 11 countries are supporting the Asian Value.

Culture as an element in the Asian economic miracle has largely been neglected or dismissed by both Western economists and political scientists, although the former might occasionally acknowledge that the highly entrepreneurial economically responsive populations in the region, themselves the product of market force, might have spurr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 economies. The latter sometimes note that Confucian cultures may have lent moral authority and political legitimacy to interventionist developmental states. Western and some Asian anthropologists and sociologists, on the other hand, have identified kin and ethnic networks, or "culturally embedded network capitalisms," as locally efficient means of mobilizing capital and industrial growth in the Asian miracle economies.<sup>5)</sup>

Culture has also played a much larger role in explaining the Asian miracle by Asian intellectuals who mostly from the political establishment in patriarchal authoritarian and semi-authoritarian states like Singapore, Malaysia, China, and Indonesia. They argue that "Asian values"-emphasizing the primacy of order over freedom, family and community interests over individual choice, and economic progress over political expression, together with thrift, ambition and hard work-wer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fortunate public sector policies and private sector actions that resulted in the Asian miracle.<sup>6)</sup>

## The Asian Values

- 
- 5) Gary G. Hamilton, ed. Business Networks and Economic Derelopment in East and Southeast Asia, Hong Kong, Center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ong Kong, 1991. p. 32
  - 6) Linda Y.C. Lim, *Whose Model Failed? Implication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8, pp. 25-36

The "Asian values" school was unpopular among many Western commentators for suggesting, among other things, that capitalism and democracy need not hand-in-hand. So it was predictable that when the Asian economic crisis hit during a period of unprecedented economic strength in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recovery in Western Europe, opponents of the "Asian values" school were out in full swing(chiefly in the editorial pages of the Wall Street Journal), crowing over its assumed demise and the concomitant assumed triumph of the "American way."

The Asian miracle was particularly attacked for its reliance on industrial policy and cronyism, or relationships between big business and government, both of which contributed to moral hazard in the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and the resultant over-investment in a classic asset bubble. Paul Krugman, the MIT economist who had some years earlier pronounced the Asian miracle a "myth" based on low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sup>7)</sup>, is one of those who favor the moral hazard argument that "crony capitalism" or Asian reliance on guanxi (relationships) is what caused the crisis, which in this view is essentially a crisis of bad investment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sup>8)</sup>. This line of argument directly challenges both the praise of statist industrial policy by mostly Western political scientists and of "culturally embedded networks" favored by mostly Western anthropologists and sociologists.

There is no question that crony capitalism did play a role in the over-inflation and subsequent deflation of economic growth and asset prices in Asia. But this is far from the only or most plausible interpretation for the crisis and it is certainly not the whole story. Indeed, in the affected Asian countries and other emerging economies around the world, another interpretation is taking hold, one that is much less favorable to the liberal orthodoxy favored by Western economists. In this view, it is the Western model of free-markets-with-democracy that has failed along with the collapse of its prime success stories in Asia—or a case of "the West won the Cold War, only to lose the peace."

### **Too Much, Too Fast Openness of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of East Asian Countries**

First, if openness was an essential ingredient of the Asian economic miracle,

---

7)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 November / December 1994, pp. 62-78

8) Paul Krugman, *What Happened to Asia?* Mimemo, January 1998

too much openness too fast was responsible for its downfall. In particular, rapid and sweeping(although not yet complet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that began in the late 1980s led to a massive influx of foreign capital, especially short-term loan and equity capital, which contributed to the boom economy and over-investment bubble of the 1990s. Without this influx of foreign funds—which in some cases amounted to as much as 75 percent of the equity capital on local stock markets—domestic crony capitalism alone could not have fed a boom and bubble of such proportions. Even without crony capitalism, high growth and the expectation of continued uninterrupted high growth, fed in large part by foreign capital, might have led to excessive risk-taking and overleveraging of local businesses believing that their economies were immune from the business cycle.

High domestic growth and investment in turn contributed to ballooning current account deficits, with imports(mostly of machinery and equipment required by the flood of new investments) constantly exceeding exports by a wide margin. This was further fueled by overvalued exchange rates, the result both of more or less fixed exchange rate regimes, established to attract foreign capital by removing currency risk, and of large inflows of capital. Open capital markets and capital-account convertibility also increased these economies' vulnerability to currency speculation that could, as the appropriate moment, trigger a sudden massive exit of foreign funds as easily as these funds had previously entered.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in Asia also occurred before there were appropriate state or collective institutions to monitor and regulate financial institutions or local expertise to manage them. The region's much-vaunted entrepreneurialism led to the establishment of a horde of new banks and finance companies—Indonesia alone had more than 200 banks<sup>9)</sup>—within a short span of time and with inadequate experience in money management. Even without crony capitalism, excess capacity in the financial sector and intense competition to lend and invest among these neophyte institutions would have led to a fair proportion of "bad investments." It was aggravated by the easy availability of cheap capital from abroad, in many cases pressed on local borrowers by overeager foreign lenders who should have known better, but faced intense competition among themselves and were attracted by the returns presented by higher interest rates and by rosy projections of continued rapid growth.

With or without the moral hazard presented by local crony capitalism, the resultant excess supply of capital was bound to lead to some bad investments

---

9) Linda Y.C. Lim, *Whose Model Failed?* p.27

as capital started flowing to more and more marginal projects. Unlike their local borrowers, foreign lenders and investors from Western countries and Japan possessed the requisite expertise in risk assessment and credit evaluation. But they apparently chose not to apply this knowledge, yielding instead to herd instinct.<sup>10)</sup>

Openness and the dominance of private enterprise in Asian economies also severely limited their governments' ability to intervene to control these flows. Given domestic excess demand and external imbalance(huge current account deficits), governments should have allowed their currencies to depreciate or raise taxes and interest rates and cut government spending to reduce domestic demand and correct the imbalance. But in very open economies such as these, with high import shares of GDP, currency depreciation would increase costs, including offshore loan servicing costs, and cause inflation from higher import prices, while higher domestic interest rates would be ineffective so long as businesses could resort to cheaper borrowing in accessible offshore markets—that is, they may as well have increased rather than reduced external borrowing.<sup>11)</sup>

At the same time, public sectors were small and mostly in balance, and governments had little control over overborrowing in the private sector. This reduced the effectiveness of raising taxes and cutting expenditures as is typically required, for example, in IMF programs in countries that have large fiscal deficits and loose money policies. In short, the dominance of private enterprise reduced the influence that governments had over the macroeconomy.

The nascent democracies that since the late 1980s had taken hold in Kore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lso caused a loss of government control over the macroeconomy. Whereas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s could impose higher interest and taxation costs on local business communities almost at will, and had done so to maintain currency stability for decades prior, this became difficult with the increased political influence of businesses over elected legislatures whose members were either business persons themselves, or required business support to get elected.

Thailand's short-lived coalition governments(five in six years), frequent general elections, and extensive vote-buying(\$1.1 billion in the November 1996

---

10) Jaffrey A. Frankel, *How Well Do Foreign Exchange Markets Functions?* Coping With Financial Volat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41-81

11) Linda y.c Lin, Whose Model Failed? Implication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8. p.25

general election alone) made it particularly vulnerable to vested interest opposition to the fiscal and monetary contraction necessary to correct an external imbalance-as suggested by the year before the July 2, 1997<sup>12)</sup>, devaluation of the Baht. Democracy has also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crony capitalism, as exemplified by the favoring of businesses with ruling political party connections in Malaysia's joint public-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projects, who naturally would oppose both interest rate increases and cuts in public expenditures from which they benefit.

By contrast, Hong Kong—which does not have an elected government and Singapore—which has a single-party-dominated parliament—have done relatively well through the economic crisis. Like the authoritarian governments of the past in Korea and Thailand, both administrations maintain strong central economic control and can impose economic hardship on their populations or take politically unpopular measures when necessary for economic stabilization. Thus the Singapore government cooled off the domestic property market when it was still booming in 1996, and the Hong Kong authorities were able to ignore domestic business leaders' complaints about the currency peg hurting their businesses and were able to raise local interest rates to beat back an attack by currency speculators in 1997. In the terminology of political scientists, both states have an autonomy from business interests that their newly democratic neighbors do not have.

#### IV. Challenges of American Growth Model in East Asia

Proponents of the Western liberal model do not, of course, see things this way. Instead, they assert that open markets and democracy have worked and that instead it is the "Asian" parts of the Asian economic model that have failed particularly statist industrial policy in Korea(beloved though it is of some Western political scientists); crony capitalism in Thailand, Malaysia, and Indonesia(a reflection of both statist industrial policy and culturally embedded networks); and political mismanagement everywhere—from the virtual absence of government in Thailand, to persistent authoritarianism in Indonesia, and an idiosyncratic strong leader in Malaysia. They further argue that the excessive lending and investment by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resulted from information gaps caused by inadequate local government regulation,

---

12) Linda Y.C Lin, Whose Model Failed? Implication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8, p.32

monitoring, and disclosure requirements, not from mistakes made by financial markets. They believe that financial restructuring along Western lines and the takeover of troubled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by more experienced and expert foreign counterparts would increase efficiency in the channeling of local savings to investments, reduce the risk of bad investments, and forestall a recurrence of the present crisis.

The IMF occupies a peculiar position in the Western economic policy canon. On the one hand, the multilateral agency is seen and has operated as an instrument of Western policy orthodoxy that advocates free trade and capital flows together with fiscal austerity and monetary conservatism. The IMF typically requires policy deregulation for client countries facing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and inability to meet their external liabilities. At the same time, it is recognized that the availability of IMF "bailouts" creates another moral hazard problem, by encouraging governments and private borrowers, lenders and investors to take excessive risks in emerging markets, secure in the knowledge that their risk is minimized by the likelihood of an IMF rescue should things go really bad. The result is periodic overinvestment and overlending bubbles such as characterized Mexico in 1994 and Southeast Asia and Korea in 1997.

## V. The Asian Responses: The Korean Perspective

For Asians, disillusionment with market openness has set in. At worst, they see themselves as the victims of a massive conspiracy of Western governments, the IMF, financial markets, and industrial corporations to first deliberately inflate and then deflate the asset values of Asian banks and corporations, and then to subsequently take control of them at post-crisis fire sale prices under forced liberalization by the IMF. At best, Asians view the current crisis as a case of massive market failure, particularly on the part of globally unregulated foreign financial market actors who, despite of their greater expertise and global experience, still indulge in excess lending and investment to Asian markets and so cannot be trusted to better manage th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they may take over.

One of Thailand's most respected economists, Ammar Siamwalla, former President of the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as been very critical of his own government's errors that led to the crisis, but still express extreme doubts about the policy of financial liberalization.

The currency market is really crazy...we are receiving all the punishment

because we have opened our currency markets to the forces of globalization (which) in retrospect has been far too rapid<sup>13)</sup> South Korea is the classic case, but it is harder to identify "developmental states" and successful statist industrial policy in Southeast Asia outside of Malaysia and Singapore. Rather, state development policy in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is more likely to be viewed as having been captured by crony capitalists with close personal relations with government, thereby violating the developmental state principle of state autonomy from special interests.

Notwithstanding this, and despit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economist and the political scientist/political economist views,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always included as part of the so-called Asian economic miracle or "Asian model" that has been promoted by advocates of free-market economics. These include both conservative Western think tanks like the Heritage Foundation and more liberal multilater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ose Washington consensus of liberal economic policies has been foisted on emerging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en the Philippines, Taiwan, South Korea, and Thailand became politically democratic as well in the late 1980s, this completed the picture of triumph for the Western liberal model of free-markets-with democracy.

The West has pushed us to open our markets, but what are we getting in return? Through globalization we have created a monster<sup>14)</sup>-Park Yung Chul,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Finance.

Already, China and Vietnam have postponed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that would expose their currencies to speculation, and there have been calls for regional and global cooperation in the monitoring and possibly regulation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 This idea was first raised by Malaysian prime minister Mahathir and supported by his nemesis, currency trader George Soros, who has said:

Financial markets are inherently unstabl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re especially so.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s are notorious for their boom-bust pattern...The recent turmoil in Asian markets raises difficult questions about currency pegs, asset bubbles, inadequate banking supervision, and the lack of financial information which cannot be ignored. Markets cannot be left to correct their own mistakes, because they are likely to overreact and

---

13) Paul Scherer, *Distrust a Western Economics Grows in Thailand Amid Crisis*,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7, 1998, p. 23

14) Brian Vrenner, *What to Do about Asia*, Business Week, January 26, 1998, pp. 26-30

to behave in an indiscriminate fashion<sup>15)</sup>.

At the same time, some Asians may also lose their enthusiasm for the chaos, corruption, and weak and unstable government that political democracy has ushered in to different degrees, in countries like Kore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which contributed to the crisis both by weakening government macroeconomic control in some cases.

In short, the Asian economic crisis does not provide unqualified support for either the Western open-markets-and-democracy model or the Asian strong-government-and-cultural-values model. Both need some adjustment for global and national capitalisms to work smoothly. Certainly, the paths to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and democracy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perhaps staged to occur only in line with the concomitant development of supportive state and civi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need to resist the pressures of would-be crony capitalists to interfere with their fiscal, monetary, and regulatory autonomy, while private sector business networks need to be adjusted to adequately account for risk and to race purely rent-seeking behavior.

The Asian crisis does expose the futility of applying simplistic and essentially ideological models to the messy practical busin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conomic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hose political, economic, and business systems are not only diverse and complexly intertwined, but also still evolving. Far from yet another presaging of the end of history—in this case the presumed triumph of "Western" over "Asian" models—the crisis suggests that it is time to return to history, that is, to each country'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orces, to discern both the complex, multifaceted causes of the crisis and its eventual solutions. This is a task too important to allow to be jeopardized by those who would approach it only through the limited lenses of partial, monocausal theories and models of one or the other cultural-ideological predilection.

## **VI. Summary and Conclusion : The Lessons of East Asian Financial & Economic Crisis**

The economic crisis in Asia is a crisis of the American model for a globalized economy. Asia's monetary crisis has resulted from the conflict

---

15) George Soros, *Toward a Global Open Society*, Atlantic Monthly, January 1998, pp. 20-24

between that American model and an Asian growth model that originated in Japan and was initiated elsewhere.

The Asian growth model originated in Japan and produced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xport-led growth through a state influenced system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bankers and industrialists. It could sustain higher debt levels than Western systems because industry, banks and government were collaborating in what was viewed as a national enterprise.

The United States has for years attempted to destroy this Asian model because of its protectionist and statist features.

The Real Situation has happened to Korea: "The shattering of this economic model as a result of foreign banks suddenly withdraw their funding... produced a legacy of distrust and resentment which will have long-term political implications."

This is why American-inspired remedies to the problems of Asia no longer possess the credibility they possessed before Thailand's finances collapsed. That proceeded the first falling domino in a sequence that has yet to be interrupted, whose political consequences could prove more dangerous than the economic ones.

Clearly, both the Western economists' and Western political scientists' competing open and statist models have, in some sense, failed with the crisis in their showcase economies in Asia. On the one hand, market openness without the requisit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expertise—including political infrastructure and managerial expertise—to manage it can a recipe for economic disaster. Even the normal workings of global financial markets themselves can be disruptive to small open economies. On the other hand, statist industrial policy can lead to crony capitalism, excess capacity, over leverage, and bad investments' "culturally embedded networks" of ethnic business relationships or guanxi). Both openness and statism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the Asian miracle, but also to the Asian meltdown.

What about "Asian values?" At first glance, the indictment of openness and democracy in the crisis, and the evident need for more state-led institution building, state monitoring if not control of private sector financial transactions, and state autonomy from private interests in the political sphere, might seem to be a confirmation of the wisdom of the Asian values school. Too much freedom too fast in both markets and politics can lead to downfall, suggesting a continued need for a strong, benevolent, central state authority.

In short, the Asian economic crisis does not provide unqualified support for either the Western open-markets-and-democracy model or the Asian strong-government-and-cultural-values model. Both need some adjustment for global and national capitalisms to work smoothly. Certainly, the paths to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and democracy should be carefully planned, and perhaps staged to occur only in line with the concomitant development of supportive state and civil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need to resist the pressures of would-be crony capitalists to interfere with their fiscal, monetary, and regulatory autonomy, while private sector business networks need to be adjusted to adequately account for risk and to reduce purely rent-seeking behavior.

The Asian crisis does expose the futility of applying simplistic and essentially ideological models to the messy practical busines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economic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hose political, economic, and business systems are not only diverse and complexly intertwined, but also still evolving. Far from yet another presaging of the end of history—in this case the presumed triumph of "Western" over "Asian" models—the crisis suggests that it is time to return to history, that is, to each country'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orces, to discern both the complex, multifaceted causes of the crisis and its eventual solutions. This is a task too important to allow to be jeopardized by those who would approach it only through the limited lenses of partial, moncausal theories and models of one or the other cultural-ideological predilection.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ummarize my paper.

First, I would like to personally stress that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sian Valu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auses of East Asian Monetary crisis. The Asian Value is still spiritual principle to do Business for traditional Asian enterprise. The Asian Value must be honored in the culture of Asian people. We, Asian people strongly believe that past East Asian economy miracle has been achieved based on the spirit of the Asian value.

Western global standards seems that it is very reasonable to make more productive, but due to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of East Asian people, the Western global standard couldn't be accepted willingly by the people of East Asian people.

Second, in order to prevent future monetary crisis in East Asia, I strongly recommend that mutual monetary surveill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onitor the flow of Western short-term hot money in our domestic financial

market, and to exchange informations of flow of Western investor's hot money.

Lastly, I also would like to strongly recommend that Northeast Asian country, including China, Korea, Japan, should establish Asian Monetary Fund which could performs the function such a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en Currency crisis happens in East Asia.

## References

1. Charles W. Alomiris, Reducing Moral Hazard, Journal of Columbia Business School, 1998, pp. 17-19
2. Paul Krugman, Saving Asia: It's time to get radical, Fortune, September 1998, pp. 75-80
3. C. Fred Bergsten, Reviving the Asian Monetary Fu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Briefs, November 1998
4. Reuven Glick and Ramon Moreno, the East Asia Miracle: Growth Becaus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otectionism or in Spite of it? Business Economics, April 1997
5. Business Korea, New Directions for Korea, March 1998, pp.12-17
6. Business week, Currency Crisis, July 28, 1998, pp.16-20
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peculators Hit Asian Markets, July 27, 1997
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What's Ahead for Asia, December 17, 1998, pp. 22-23
9. Newsweek, The Fall of Crony Capitalism, January 26, 1998, pp. 10-15
10. Newsweek, Asia's Crisis: Going from Bad to Worse, August 24, 1998, pp.8-13

# 남북한 상사중재협력의 과제

Problems for Coope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김 상 호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차〉

- I. 서론
- II. 남북한 경제교류상의 문제점
- III. 남북한 중재협력 모델로서의 동서중재협력 현황
- IV. 남북한 상사중재협력의 방향과 현안과제
- V. 결론

## I. 서론

북한은 1994년 12월부터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 경제활동 업무를 반관반민 단체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양대 기관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은 모두 정무원 기구인 대외경제위원회에 소속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유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유치, 조총련파의 합영·합작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북한 대외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을 시발로 1992년 10월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을 제정·공포하였고 기존의 합영법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3년 1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제정·공포하였고 이후 세관법, 토지임대법 등의 제정과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는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령은 이를 총괄하는 외국인투자법<sup>1)</sup>을 모법으로 두고 그 하위체계로 이른바 투자 3법인 합영법<sup>2)</sup>, 합작법<sup>3)</sup> 및 외국인기업법<sup>4)</sup>이 중심 법률로

1)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2) 1984.9.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제정 및 1994.1.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개정.

3)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투자 3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에 속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sup>5)</sup>이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합영·합작·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합영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은 각각 합영기업, 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설립운영, 해산과 분쟁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의 하위법이다. 따라서 합영과 관련하여 합영법의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북한내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외국투자은행법<sup>6)</sup>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나진·선봉)를 포함한 북한지역내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북한이 외국은행 유치를 통하여 북한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외화조달과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1995년 2월 대외경제계약법<sup>7)</sup>을 제정·공포하였다. 1985년 제정된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본 따 만든 듯한 이 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북한도 이제는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사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sup>8)</sup>.

이 논문에서는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 및 대북 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이 앞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에서 혼란의 과제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분쟁해결 수단인 국제상사중재제도와 관련시켜 남북한간 중재협력의 과제를 실무적 차원에서 탐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남북한 경제교류상의 문제점

### 1. 남북한 교역추이 분석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1999년 중 남북한 교역 규모는 3억 3,344만달러로 전년 대비 50.2% 증가하였다. 반입은 31.8%증가한 1억 2,160만달러이고, 반출은 63.4%늘어난 2억 1,183만달러인데 이는 남북한 교역이 가장 많았던 1997년보다 8.1%증가한 규모이다.<sup>9)</sup>

4) 1992.10.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

5) 1993.1.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

6) 1993.11.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제정.

7) 1995.2.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제정.

8)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법무』, 1995.8, pp.12-13.

교역액 중 거래성 교역은 1억 8,904만달러로 전년도의 1억 4,369만달러에 비해 31.6% 증가하고 비거래성 물자교역은 1억 4,440만달러로 전년도의 7,825만달러 대비 84.5%늘어났다.<sup>10)</sup> 1999년의 남북한교역이 전년 대비 50.2% 증가한 것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농림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반입이 증가하는 등 IMF 경제상황에서 급감했던 거래성 교역이 국내경기 회복에 따라 크게 늘어났으며 또한, 비료 등 대북지원 증가와 금강산관광사업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의 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9년 중에 남북한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581개로 써 1998년 378개보다 203개 늘어났으며 교역품목수도 1998년 486개보다 39개 늘어난 525개이다.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은 9,962만달러로 전년 7,099만달러 대비 40.3%증가하였으며, 이는 거래성교역액에서는 52.7%, 전체교역에서는 29.9%를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품목을 보면 반입기준으로 섬유류가 83.8%이고, 전자 및 전기 5.3%, 가방 등 화학공업생산품이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9년 중 북한과의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전년도 72개 업체에서 60개 업체가 늘어난 132개 업체이다.

2000년에도 북한은 에너지난, 외화난, 원부자재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상품교역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탁가공교역은 비교적 북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고, 국내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수로 본공사착공, 금강산 관광개발 등과 함께 서해안 공단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남북경협활성화에 따른 물자 반출 등 전반적인 교역증대가 예상된다.

## 2. 교역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

### (1) 교역갈등사례

1992년 인천항으로 반입한 북한산 벌꿀, 참깨 등에 대해서 국내의 반입업체가 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의문점이 있어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반입승인을 정식으로 얻지 않고 반입승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sup>11)</sup>

한편, 국내업체가 땅콩 300톤을 반입하여 제과업체에 공급하여 사용하였는데 품질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부산항에 반입된 2차분 2,000톤은 제3국산 위장반입 혐의로 인해 물품이 압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sup>12)</sup> 남한에서 반입한 평양소주가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생각한 북한 당사자가 남한 당사자와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서에 위반되는 2배의 가격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있었

9) 통일부 보도참고 자료(2000.1.26,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10) 거래성교역은 상업적 매매거래와 위탁가공교역이 포함되며, 비거래성 교역에는 대북지원, KEDO중유, 경수로·금강산관광사업 등 협력사업 물자의 반출입이 해당된다.

11)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IV. 1995.12. p.16.

12) 상계서, p.7.

다.<sup>13)</sup>

대북 반출은 홍콩이나 중국 측 중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기업이 1995년 1월 홍콩 측으로부터 신용장을 받아 S해운을 통해 석탕 2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한 후 대금지급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국내 반출업자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 Unpaid통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네고서류 중 Invoice에 DPRK 표시가 빠졌다는 것이었다.<sup>14)</sup> 또 다른 거래에서 국내기업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2,000톤을 북한으로 반출하기로 하고 대금결제는 홍콩의 중개상을 통해 받기로 하였다. 홍콩의 중개상은 100%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하겠다고 했으나 국내의 반출기업은 보다 안전한 선적 전 T/T입금을 요구하였다. 가격은 당사자간의 협의 끝에 톤당 737불로 합의되었으나 대금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sup>15)</sup>

남북한간의 연계교역<sup>16)</sup>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합의 후 물물교환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며 결제는 제3국(홍콩이나 중국)을 통한 신용장개설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간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농산물(피호두, 깐호두, 고사리 등), 한약재와 남한의 세탁비누, LDPE와의 연계교역 실적이 있다. 연계교역에서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이 견본과 크게 상이해서 남한기업이 손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또한 도착물량이 계약물량보다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연계교역의 경우 홍콩이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기업으로서는 이점이 문제였다.<sup>17)</sup>

남북교역에 제3국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sup>18)</sup> 이 사례는 남북간 교역에 말려든 중국 티베트자치구가 농산물 판매대금을 떼이게 되자 한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문제가 된 경우이다. 1994년 11월 부산의 S무역이 마카오 소재 북한 무역상사인 Y무역을 통해 북한산 깐호두 250톤을 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Y무역은 북한에서 물량확보가 어렵게되자 중국 티베트자치구와 계약, 1995년부터 3차에 걸쳐 티베트 산 깐호두 243톤을 S무역에 공급했다. 그러나 깐호두를 공급한 티베트무역협회가 북한으로부터 전체 대금 중 1차분인 25만불(50톤)밖에 받지 못했고 2-3차분 109만불(218톤)을 북한측의 대금지급 기피로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티베트 측이 북한 Y무역에 항의하자 Y무역은 남한의 S무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밟

13) 상계서, pp.167-169.

14) 상계서, pp.191-193.

15) 상계서, PP.200-201.

16) 연계교역(무역)이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17) 상계서, pp.209-214.

18) 부산일보 30면(1996.6.11).

뺨하는 한편 위임장을 써주며 S무역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국제적인 위신이 걸린 고소사건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이 S무역을 수사한 결과 S무역은 간호두 1차분(25만불)과 2차분 대금(21만불)을 이미 북한 Y무역에 현금결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3차분 88만불은 1994년 Y무역에 반출한 컴퓨터와 백설탕, 생고무 등 생필품대금과 상계처리돼 사실상 S무역이 간호두 대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건은 북한상사의 계약위반으로 야기되었는 바 티베트 측이 받지 못한 문제의 대금은 티베트의 경제가 훼청거릴 정도의 거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 (2) 평가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남북교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잠재되어 있다. 평양 소주 반입에서 북한측은 남한 자본주의체제의 유통경로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을 모르는데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상담시에 북한측에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물품을 반입하는 국내업자로서는 계약된 도착일자에 선박이 도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 항구의 하역시설과 연결 도로망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가 주된 원인이다. 북한물품 반입시 수량부족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명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탕 반출사례에서처럼 대북 교역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남한의 반출물품이 남포항에 입항 될 경우 신용장에 의거한 네고서류 없이도 선편으로 발송되는 선하증권 한 장으로 통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기업에 신용장을 개설한 홍콩이나 중국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조치를 당할 경우 물품조차 반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홍콩이나 중국의 개설은행이 담보조건 없이 신용이나 업자와의 결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대금지급 보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국내 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설된 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연계교역의 경우에도 남한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계교역에서도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는 주로 홍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홍콩에서 북한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교역에서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선 지연시의 배상문제, 품질불량시의 가격할인, 위장물품일 경우의 선박운임 문제 등은 중요사안으로 쌍방간에 절충 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up>19)</sup>

19) 대북교역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은 그들의 계약서에 “물품의 한국도착 후 물품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박이 입항하면 물품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북한에 즉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클레임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바람직한 일로 생

한국무역협회가 대북 교역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실태조사<sup>20)</sup>에 의하면 대북 교역에서 북한상사나 중개상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자가 응답자의 67%에 달하였다. 그리고 북한상사나 중개상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경우로 응답자의 47%가 「납기위반」을 지적해 납기지연으로 판매시기 실기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품질위반」도 37%에 달해 당초 계약당시의 견본과 품질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납기 및 품질위반이 전체 계약위반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III. 남북한 중재협력 모델로서의 동서중재협력<sup>21)</sup> 현황

#### 1. 동서국가간 상거래의 특징

2차대전 후 정치적 냉전으로 교역이 두절상태에 있던 동서 양 진영간에는 외교·문화·경제면에서 상호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려는 기운이 동서간의 해빙과 함께 구체화되었는데, 무역재개의 계기가 된 것은 1952년의 모스크바 경제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재개를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무역촉진회가 탄생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경제활로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쌍방의 내부적인 요구에 따라 동서무역은 계속 확대되었다.

동서무역은 전통적으로 국영무역제도(state trading)를 채택하고 있는 공산권국가들과의 무역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국가간의 무역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영 무역제도는 흔히 보는 무역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상적인 통제의 형식이나 방법이 상이한데 이 점이 동서국가간 무역의 법적 측면을 분석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특징의 하나이다.

동서국가간 무역에서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법적 문제는 최혜국약관(most-favoured nation clause)과 주권면제(soveteign immunity)이다.<sup>22)</sup>

최혜국약관은 주권국가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국제적 통상의 확대발전을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법적 보장이 되어 비국영 무역국가에도 최혜국약관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국제친선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권리와 공산주의 권리의 평화적 공존은 최혜국약관을 최소한의 법적 조건으로 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 기업인들이 공산권국가에 입국하여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분쟁 발생시 상대국 법원이나 중재법원에서 평등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며 다른 나라에

---

각된다.

20)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및 투자 실태조사』, 1996.2, pp.34-36.

21) 동서중재란 동서국가간의 무역 등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동서무역(east-west trade)이라고 말할 때 동(east)이란 주로 동구와 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를 말하고, 서(west)란 주로 서구와 북미의 공업국가를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22) 고준환, 동서무역중재에 관한 일고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5호(1987.6), p.15.

비해 차별대우를 받을 때에는 최소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권면제란 국제법상 주권국가나 정부는 외국법원의 관할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론인데, 공산권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통치행위와 경제관리행위를 구별하고, 전자에는 주권면제이론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는 공산권의 국영무역이 국가의 통치행위와 경제관리행위의 경계선상에서 운영해 가고 있는 가운데, 공산국들이 주권면제설을 취하나 국영무역을 별도의 법인이 함으로 사실상 주권제약용인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제한적 주권면제이론).<sup>23)</sup>

그러나 통치행위와 경제관리행위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공산국들이 무역업무에 있어 주권면제특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972년의 미-소 무역협정에서처럼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재판권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우리 나라와 러시아간에 체결된 한-러 무역협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분쟁발생시의 내국민대우보장과 주권면제이론의 적용배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한-러 무역협정 제11조 제1항

“각국의 법인 및 자연인은 상대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국 영토 내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The juridical and natural persons of each country shall be accorded national treatment with respect to access to all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as plaintiffs, defendants or otherwise. They shall not claim or enjoy immunity from suits or execution of judgment, proceeding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or other liabil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with respect to commercial transactions. They also shall not claim or enjoy immunities from taxation with respect to commercial transactions, except as may be provided in other bilateral agreements.)

## 2. 동독과 서독

### (1) 서론

2차대전 후 동독과 서독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접촉이 단절되 다시피 했으

23) 장효상, 국제경제법, 박영사, 1985, pp.31-35.

나 1990년 10월 독일이 다시 통일되기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해온 분야가 동서독간의 교역이다.

동서독간 무역은 내독거래(Innerdeutscher Handel)로 불리는데 이는 서독 측이 분단상대국인 동독을 주권국인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sup>24)</sup> 내독간 무역과 지불교류에 관한 법적 뒷받침은 1951년 9월 20일 동서독간에 체결된 베를린협정이었다.

1960년 8월 16일 개정된 바 있는 동 협정은 동서독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 합의 문서의 형식과 당사자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 합의서가 동서독의 조약이 아님을 표시하기 위하여 주권국가 상호간에 사용하는 통상적인 무역협정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무역협정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Abkommen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아주 비공식적인 법률문서에나 쓰이는 Vereinbarung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 말을 영어로 compact라고 한다.<sup>25)</sup>

동서독무역에 대한 서독의 입장은 1957년 3월 25일 유럽공동체(EC)조약 체결 시에도 반영되었다. 서독 측의 요구에 따라 EC조약은 동서독간의 교역은 외국무역이 아니고 독일내부의 교역이며 체약국들은 동독을 제3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EC회원국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비회원국에 부과하는 공동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sup>26)</sup>

통일 전 동서독은 상사중재에 관하여 다같이 독일민사소송법전(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제1025조-1048조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 법은 독일통일 후 독일전역에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통일조약의 경과규정에 따라 통일 당시(1990.10.3) 동독의 베를린중재재판소에 계류중인 중재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독일민사소송법전이 아닌 구 동독중재재판소의 규정이 적용된다.<sup>27)</sup> 통일 전 동서독은 다같이 뉴욕협약의 가입국이었다. 따라서 동독은 통일조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소송상 외국으로 비록 경제적으로 내독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동독의 중재판정은 동독의 중재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독일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이 되었다.

과거 동독의 대표적인 국제상사중재기관은 베를린중재재판소이었다.<sup>28)</sup>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54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재절차에서는 독어, 영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기관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 관리기관으로도 기능한다. 베를린중재재판소는 앞으로도 유지되면서 동서중재의 센터로서 발전되리라고 전망된다.

과거 동독과 서독이 양국의 무역분쟁을 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

24) 양병희,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p.9.

25) 장효상, 전계서, p.395.

26) 고준환, 국제상사중재론, 법문사, 1980, pp.370-371.

27) 양병희, 전계서, pp.22-23.

28) 영문 명칭은 The Arbitration Court attached to the Chamber of Foreign Trade of the GDR(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이다.

음과 같다. 이는 앞으로 남북한 상사중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 (2) 동서독간 상사중재 경험

1976년 1월 28일 베를린에 소재하는 「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사례이다.<sup>29)</sup>

중재신청인은 동독기업이고 피신청인은 서독회사이다. 신청인은 1970년 2월 피신청인과 특수장비 제조를 위한 독점적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부터 매년 최소 4만 5천 마르크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피신청인이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만든 제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하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이 1971년부터 1973년까지의 최소 로열티 청구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약의 해제, 중재조항의 무효, 중재인의 불공정성을 들어 로열티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반대신청(counter claim)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제반사정을 검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 끝에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재판정을 하였다.

또 다른 사례는 1981년 10월 5일 역시 「동독무역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진 중재사건이다.<sup>30)</sup>

중재신청인인 동독기업은 1977-1978년에 걸쳐 피신청인인 서독회사에 cardboard를 공급하였으나 대금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간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텔레스교섭이 있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이 합의금액을 신청인에게 송금하기로 한다는 분쟁해결 조건에 도달하였다.

신청인은 중재판정부에 피신청인과의 위 분쟁해결 합의내용을 통지하면서 중재판정의 범위를 이자와 중재비용 부담문제에 한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합의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신청인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에 교환된 모든 텔레스 내용과 제반 증거자료들을 계약서상의 준거법으로 지정된 동독 국제상사계약법의 관계조항에 따라 조사, 해석한 후 신청인의 이자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중재절차에 소요된 중재비용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 3. 미국과 소련

29)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IV, pp.197-199.

30) ICCA, op.cit., Vol.VIII, pp.126-127.

과거 미국과 소련은 동서를 대표하는 초강대국으로 양국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하였다.

1972년에 체결된 미-소 무역협정(United States-USSR Agreement regarding Trade) 제7조에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고 1966년에 채택된 구주경제위원회 중재규칙에 의거한 중재를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경우에 양 당사국 이외의 제3국에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중재인을 선임케 할 것과, 미국과 소련 두나라 이외의 제3국으로서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중재지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상호합의에 따라 그밖의 중재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구주경제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르지 않고 스웨덴에서 중재를 받도록 규정해 왔다. 어떻든 미-소 무역협정에서는 각기 자국의 무역업자와 무역기구로 하여금 제3국에서의 중재를 약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련의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관할을 배제하였다.<sup>31)</sup>

미국의 최대 상설중재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소련연방상공회의소(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1977년 1월 미국과 소련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소 무역계약에 사용할 선택적 중재조항」(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항은 그 제목이 나타내듯이 그 채택여부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다른 방식의 중재도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는 소련연방상공회의소 부설 대외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물론이고 미국중재협회의 중재규칙에 의거한 중재나 아니면 피신청인 국가에서의 중재도 있을 수 있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중재절차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며, ② 중재판정부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며, ③ 중재지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며, ④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단일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면 진술, 구두심문 및 중재판정은 영어와 러시아어로 되어야 기타 증거서류들은 중재판정부가 요구하지 않는 한 번역이 필요없도록 하였다.<sup>32)</sup>

#### 4. 미국과 중국

미국과 중국간의 교역은 18세기 말인 1784년 미국선박이 중국의 광동성을 방문했

31) 장효상, 전계서, p.387.

32) 미-소 중재협정에서 계약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중재조항: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ermination or invalidity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ptional Arbitration Clause for Use in Contracts in USA-USSR Trade, 1977"(prepa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USSR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을 때 처음 시작되어 1950년에는 양국간의 교역이 2억 3천만달러에 달한 적이 있었으나 6.25사변으로 1951년부터는 완전히 두절되었다. 그러나가 1972년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상해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양국관계에 활로가 열렸고 이어 1979년에는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으며 동년 7월에는 무역협정이 체결되는데 까지 발전하였다.<sup>33)</sup>

미-중 무역협정의 내용 중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과거 미국과 다른 공산권 국가간에 체결된 무역협정상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협정에서는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conciliation or other mutually acceptable means." 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재 전 단계의 분쟁해결 수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표현은 미-중 무역협정에서 유별난 것으로 과거 미국이 공산권 국가인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간에는 특기할 것으로 공동조정(joint concili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중국의 오랜 전통인 조정제도의 발전형태인데 1975년이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미국중재협회간에 중재 전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고안, 발전되어 왔다.

중국식 조정제도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에 따른 거래의 계속 및 당사자간 신뢰지속, 저렴한 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서방국가들에 의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인 조정제도의 발전형태인 공동조정은 양국의 중재기관이 각 1인씩 조정인(conciliator)을 임명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며 조정과정에서 국제거래관행과 실무적 경험을 활용하였다.

#### IV. 남북한 상사중재협력의 방향과 현안과제

##### 1. 협력의 방향

우리 나라 대북 경제협력의 기본 목적은 남북한간 경제교류 중대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남북한간에는 상거래질서가 제도적으로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법적 장치의 마련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며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단계별 진전, 즉 남북간 물품교역에서 대북 투자, 합작투자 또는 자원의 공동개발단계를 거쳐 남북한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경우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을 고려에 넣고 대처해야

33)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of the PRC, *Guide to Chin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Economic Information and Agency, 1984, p.353.

34) 미-중 무역협정 제8조 제1항.

할 것이다. 특히 상사중재에 관한 국제관행이 중재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할 때 교역 및 투자규모가 큰 남한측이 중재의 신청인이 될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남북한 분쟁해결의 실천적 과제로는 우선 교역 및 투자보장에 관한 정부차원의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중재기관간에 공동중재 규칙의 제정 및 중재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제3국을 통한 분쟁해결문제들을 들 수 있는 바 이하 이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2. 상사중재협력의 과제

### (1) 분쟁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협정체결

남북한간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과제는 남북한 사이에 직접적으로 투자보장협정이나 교역협정을 체결하여 확실한 분쟁해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sup>35)</sup> 아니면 남북한 정부차원의 (가칭)“남북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한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정신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sup>36)</sup> 분쟁해결조항의 내용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 및 러시아와 체결한 무역 및 투자보장협정상의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 및 대외경제계약법상의 분쟁해결조항을 검토해보면 러시아보다는 중국법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한 한-중 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메커니즘<sup>37)</sup>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양국의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우호적인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둘째, 분쟁을 당사자간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 없으면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중재약정에 따라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셋째, 중재의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양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넷째, 한국과 중국 양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남북한 교역협정에도 이들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남북한 모두에게 수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35) 법제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11, p.157.

36)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1992.9.17발효) 제1조 제2항: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파세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7) 한-중 무역협정 제6조 참조.

한-중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중국이 워싱턴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중국이 ICSID에 대한 유보통고를 통하여 ICSID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은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ICSID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8)</sup> 북한의 경우 워싱턴협약의 가입국이 아니지만 UN회원국임을 고려할 때 북한은 ICSID중재보다는 UNCITRAL 중재규칙<sup>39)</sup>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sup>40)</sup>

이상과 같은 노력과 함께 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sup>41)</sup>에 가입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2) 남북 공동중재규칙의 제정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상의 분쟁해결조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유추해석 해 볼 때 북한은 임시중재 보다는 제도적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간 공동중재규칙을 제정하여 남북한간 분쟁을 제도적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이 요청된다.

공동중재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별도의 공동중재기구를 설치하자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축적된 중재처리 경험이나 국제적 인지도와 중재협력 관계, 상관행 등을 고려할 때 별도기구의 신설보다는 남북한의 기존 중재기구가 공동으로 남북 공동중재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될 때 중재기구로는 남한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되며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38) 세계은행(World Bank)의 주도로 「일방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sup>42)</sup> 탄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을 워싱턴협약이라고도 하는데 1965년 미국의 워싱턴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기구가 투자분쟁국제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이다.

39) UNCITRAL 중재규칙은 범세계적 이용과 통일화를 위해 UN차원에서 노력한 결실의 산물이다. 동 규칙은 1976년 4월 28일 UNCITRAL(UN국제무역법위원회) 제9차 회기에서 채택되었으며 41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40) 우리나라가 소련과 체결하여 현재는 러시아로 승계된 한-러시아 투자보장협정에서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UNCITRAL 중재규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한-러시아 투자보장협정 제9조 제4항).

41) 정식 명칭은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일명 뉴욕협약이라 함)」이다.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국제연합 주도로 1958년 6월 10일 채택된 중재에 관한 세계 최대의 다국간 조약이다. 한국은 1973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20여국이 가입하고 있는데 동서·선후진 국을 망라하여 주요 무역국들이 모두 가입하고 있다.

공동규칙 제정의 당사자가 될 것이다.

공동중재규칙의 제정목적은 남북한 상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써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에 두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적용대상으로는 남북한 물품의 반출입, 용역,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포함하여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분쟁 발생 시 중재지 및 중재기관의 결정은 규칙상에 (가칭) “남북합동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sup>42)</sup>. 기타 중재판정부의 구성, 심문진행, 중재판정 등에 관한 규정내용은 UNCITRAL중재규칙 등 국제적 중재규칙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남북 중재기관간 중재협정의 체결

무역이나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주된 관심사항이다. 국제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재지<sup>43)</sup>에 관한 합의이다.

중재지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제출, 심문에의 출석, 비용절감 등의 측면에서 당사자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선호하는 중재지를 고집하다 보면 본계약 자체의 체결이 지연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순조롭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재지를 사전에 확정시켜 두는 대신 양 당사자 소재국의 중재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는 중재협정상의 중재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양국의 중재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재지를 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협정상의 중재조항의 주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중재협정은 중재기관간의 중재협력에 관한 협정이므로 남북한의 경우 체결의 당사자는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무역중재위원회가 될 것이다<sup>44)</sup>.

대한상사중재원이 그간 중국, 러시아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 권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협정은 중재지 결정에 있어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해 있다<sup>45)</sup>. 따라서 남북한 중

42) 협동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미국중재협회와 체결한 한·미 중재협정상의 협동중재위원회 운영경험 및 과거 미국과 중국의 수교이후 양국의 중재기관간에 운영되어 큰 성과를 거둔 협동중재위원회의 운영기법과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43)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란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재지내에서 심문절차가 행해지는 특정장소(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실 등)는 이를 심문장소(place of hearing)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지와 심문장소를 모두 중재장소로 표현하기도 한다.

44) 별도의 중재기구 설립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양국간 기존 중재기관간의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5) 피신청인주의란 당사자간에 중재지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재협정에서도 피신청인주의에 입각한 중재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한 중재협정의 경우는 피신청인이라는 지위에 따라 중재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중재협정<sup>46)</sup>에 약간의 보완을 가한 협정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피신청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물품의 상태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양국의 중재기관이 예외적으로 중재지를 신청인국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협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고 합목적적이라고 생각된다<sup>47)</sup>. 왜냐하면 남북한 당사자간에 상사분쟁 발생 시 교역, 투자를 포함한 대북 경협에서 남한측 당사자가 중재신청인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재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제3국 중재 및 적용규칙

북한은 분쟁발생 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등 대북한 교역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점이 우려사항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재절차가 북한에서 북한의 중재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외에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북한인 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아직까지 뉴욕협약이나 워싱턴협약 등 중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방국가와도 중재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합영법과 동 법 시행세칙 및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sup>48)</sup>.

합작법에서는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분쟁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실패하면 북한의 중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기업법 및 동 법 시행규정에도 제3국 중재에 관한 언급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제3국 중재의 경우 남북한 당사자와 외국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기관은 어느 기관인가?

제3국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북한과 과거부터 중재관계를 가진 독일의 베를린중재재판소(Schiedsgericht Berlin)로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베를린중재재판소가 바람직할 것이냐는 것은 검

46)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중국, 러시아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권의 중재기관과 체결한 중재협정이 모두 이에 속한다.

47) 대한상사중재원이 1973년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와 체결한 중재협정의 내용이 이에 속한다.

48)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이나 “제3국의 중재기관”이라는 표현은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의 여지가 없지 않다. 거리가 멀다는 것과 함께 중재비용의 증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경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IETAC는 상해 및 홍콩에 인접한 심천경제특구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어 남북한 교역에 따른 분쟁이나 대북 투자에 따른 투자분쟁의 해결기관으로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제3국 중재기관을 고려함에 있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ALCC중재센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sup>49)</sup>. AALCC는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로서 법률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정부의 자문과 법률분야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아시아·아프리카 역내 국가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56년에 창설되었다. AALCC는 당초 인도 등 제3세계의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후 남북한 및 중국이 가입하여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명실상부한 국제적 협력기관이 되고 있다<sup>50)</sup>.

제3국 중재의 경우 남북한당사자 및 북한과 외국당사자가 수락가능한 국제적 중재규칙으로는 UNCITRAL중재규칙과 워싱턴협약이 될 것이다.

## V. 결론

북한은 투자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먼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의도하고 있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제3국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2월에 제정·공포된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해결을 배제하고 있다. 즉,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실패하면 중재에 의한 해결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당사자 합의를 조건으로 제3국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을 모범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법의 시행으로 북한도 이제는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관련 상사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력 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마련했으며 이는 앞으로 남북한 교역과 대북 투자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에는 정치적 긴장상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이고 대북 투자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정부 및 책임 있는 민간단체들은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남북한간의 거래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대북 교역과 투자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상사분쟁 해결의 주요 과제는, ①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남북한 정부차원

49) AALCC는 The Asian · 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아·아법률자문위원회)의 약칭이다.

50)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은 AALCC 산하의 쿠알라룸푸르중재센터 및 카이로중재센터와 중재협력을 위한 중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의 협정체결이나 합의서 교환이 요청되며, ② 남북한 중재기관간 공동중재규칙의 제정, 중재협정의 체결과 제3국 중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③ 북한이 중재에 관한 국제적 다자협약인 뉴욕협약과 워싱턴협약에 가입하도록 남한측이 적극 유도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독일통일의 교훈을 통해 보듯이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 동서국가간 관계에서 보여준 상사분쟁 해결의 경험을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서 발생하게 될 상사분쟁을 국제상사중재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은 남북한 공영인 동시에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준환, 국제상사중재론, 법문사, 1980.  
-----, 동서무역에 관한 일고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5호(1987.6).  
김상호 외, 최신 국제상사중재론, 동성사, 1997.2.  
양병희,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대한상사중재원, 1994.12.  
신웅식, "External Economic Contract Law of North Korea", 『월간 경영법무』, 1995.8.  
장효상, 국제경제법, 박영사, 1985.  
법제처, 『북한의 중재제도』, 1995.11.  
통일부, 보도참고 자료(2000.1.26, www.unikorea.go.kr)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IV., 1995.12.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및 투자 실태조사』, 1996.2.  
ICCA,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IV.,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 "Commercial Arbitration" Year Book, Vol.VIII.,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Ministry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of the PRC, Guide to China's  
Foreign Economic Relations and Trade, Economic Information and Agency, 1984.

기타 참고자료:

- 1)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2) 미-중 무역협정문
- 3) UNCITRAL 중재규칙 전문
- 4) 한-러시아 투자보장협정문
- 5) 뉴욕협약 전문
- 6) 한-일 중재협정문
- 7) 한-중 중재협정문
- 8) 부산일보(1996.6.11)

#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보편적 세계윤리의 대두

박 주 응

원강대학교

## I. 21세기 보편윤리의 필요성

世界는 우리가 사는 마을이다. 만약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우리 이웃집도 불이 날 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전체적인 책임 가운데 각자 몫을 떠맡아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서도 오지만 정신에서도 온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느냐를 따질 때 물질과 정신의 한쪽만을 취하기 어렵다. 개체보다 공동체를, 갈등보다 조화를 존중하는 문화를 사랑해야 한다. 경쟁보다는 나눔의 문화를 권리보다 의무를 선호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인간다운 삶이라고 믿는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인간을 잃어버린 20세기였다고 볼 수 있다. 기술-과학적 경제의 힘은 소수 인류에게는 전에 없던 물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인간 생활의 기초를 위협하고 있다. 이 힘은 훨씬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놓고 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원칙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人间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人间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마련되어 있다. 즉 “나”와 “우리”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人间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산다는 것은 서로 관계하는 것이다. 人间은 여러 가지의 관계의 그물 속에서 얹혀서 살아간다. 너와 나의 관계를 정상적 관계, 원만한 관계, 우호적 관계, 신뢰적 관계로 만드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相愛의 관계에서 相和의 관계로, 相克의 관계를 相生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 人类와 道德의 근본문제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伦理와 秩序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伦理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인간이란 “나”와 “너”가 어울려 살기 마련이고, 여러 사람이 살다보면 저절로 습관, 풍속이 생겨나게 되며, 이런 습관, 풍속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 도덕이 정립이 된다. 윤리란 말하자면 한 집단, 한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질서이다. 질서가 없으면 纪纲이 서지 못하게 되며, 질서 기강이 서지 못하면 그 집단, 사회, 국가는 별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 伦理에는 普遍性과 特殊性이 있다. 보편성은 인류의 도덕적 원리로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등 인간 생활에서 기본적인 질서가 되는 윤리를 가르킨다. 특수성은 시대, 지역, 사회 제도에 따라 변

재하고, 국제법과 외교상의 관행 등도 넓은 의미로 '사회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구촌이 부딪치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을 생각나는 순서를 따라서 우선 나열해 보기로 한다.

1. 지나치게 치열한 사회 경쟁
2. 자연의 파괴와 환경 오염 그리고 자연 자원의 고갈, 환경윤리
3. 정보화로 점점 더해 가는 빈부의 격차(특히 국제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4. 경제 논리와 금전 문화 내지 물질 문화에 밀려서 쇠퇴해 가는 정신 문화, 인간의 비인간화
5. 인간 상호간의 갈등(개인적 갈등,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인종간의 갈등, 남녀간의 갈등, 종교적 갈등), 전쟁의 위협
6. 청소년의 반항과 탈선, 범죄와 마약
7. 인터넷 신종 범죄의 극성, 사이버 사기범
8.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생명윤리의 파괴
9. 과학 기술과 상업주의의 결합
10. 부정과 부패
11. 가치 체계의 혼란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것들은 서로 엉켜 있고 중복되어 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원인을 소상하게 밝히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여러 원인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다수 현대인의 그릇된 가치관(values) 또는 인생에 대한 불건전한 마음가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그 밖에도 국가를 따라서 다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의 지구촌 문제를 일으켰겠지만, 그 사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공통적인 것은 그릇된 가치관 또는 인생에 대한 불건전한 마음가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다. 돈과 권력, 건강과 생명, 학문과 예술, 성(性)을 포함한 여러 가지 희락, 그밖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에는 그들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우리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수한 대상들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원하는 것들이 많으나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하는 물음과 자주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물음에 부딪쳤을 때 실현이 가능한 것들 가운데서 가치가 가장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가치비교(价值比較)의 척도(尺度)가 무엇이냐는 어려운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현대 지구촌의 공통된 문제들의 가장 큰 원인이 물질적 내지 외면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릇된 가치관에 있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인간적 내지 내면적 가치의 세계로 관심의 비중을 옮기도록 하는 가치관의 전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교육학적 문제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 가치관의 전환을 원대한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가치관의 전환은 意识构造(의식구조) 혁신의 일환이다.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의식구조의 혁신 가운데서 또 하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이기주의의 극복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적 내지 외면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애착으로 인한 치열한 경쟁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할 마음의 여유를 잃게 하였다. 대다수의 현대인의 생활 태도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오늘의 지구촌이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21세기를 위한 보편 윤리” 문제를 다루는 우리가 얻은 중요한 의견(ideas)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대에 인류가 공통으로 부딪치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현대를 사는 지구촌의 주민들은 소유와 향락 따위의 물질적 내지 외면적 가치의 세계에서 최고의 보람을 찾는 대신, 건강한 삶, 사회에 대한 봉사 또는 예술과 학문, 종교와 사상 따위의 인간적 내지 내면적 가치의 세계에서 삶의 중심 목표를 추구하는 가치관의 전환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구촌의 주민들은 ‘나’만을 위하는 小我(소아)의 태도를 넘어서서, 깊은 配慮(배려)로써 타인과 공동체도 위하는 大我(대아)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간적 가치 내지 내면적 가치의 세계의 优位(우위)를 두도록 노력하라” 또는 “소아의 태도를 넘어서서 대아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의 큰 원칙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유교의 윤리사상에서 선택적으로 도출하여 보편적 세계윤리로

유교는 전통사상의 중핵적 위치에 서서 우리의 삶이나 역사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다. 도덕적 위기, 인간성의 상실, 주체성의 위기가 심각하게 대두될수록 유교는 우리들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儒教伦理(유교윤리)은 자기 수양으로부터 비롯해서 남을 가르쳐서 편안하게 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내 몸을 닦는 修己(일)을 먼저하고 그런 뒤에 남을 편안하게 한다(安人 또는 治人)는 것은 유교사상의 근본이 된다.

儒教는 人伦中心(인륜중심)의 사상이다. 论语(논어)는 人伦(인륜)에 관한 가르침이다.

人伦(인륜)이란 말은 두가지의 뜻을 갖는다. 첫째는 人间관계, 人间自体를 의미한다. 두번째는 사람이 가야할 길, 人间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의미한다.

人间관계에는 올바른 질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규범과 윤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人伦이다.

유교는 人伦을 가장 강조한다.

천지지간(天地之間)에서 人间이 哪 万物의 영장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五伦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는 도덕과 윤리가 없다. 动物은 理性도 없고 良心도 없다. 본능과 충동대로 생존 할 뿐이다. 人间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道德과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에게 人伦과 도덕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은 지옥이요, 짐승의 사회요, 악마의 세계이다. 그것은 人间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도덕이 있기 때문에 人间이라고 할 수 있고, 人伦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人伦과 道德이 봉괴한 사회는 이미 인간 사회가 아니다.

道德은 人间의 大本이요, 人伦은 社会의 조건이다. 五伦을 강조하고 도덕을 인간사회의 근본으로 삼은 유교의 가르침은 가장 건전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伦理가 五伦이다. 伦은 인간 관계요, 인간 관계의 바람직한 질서요, 질서 있는 인간관계다. 人间은 人伦的 존재이다.

人伦의 존재란 말은 첫째로 사회적 존재란 뜻이요, 둘째는 道德의 존재란 뜻이다.

五伦은 간결하고 평이하고 명쾌한 도덕원리다.

사회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五伦의 가르침은 보편 타당성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한다. 개방적 시민사회가 되어 우리의 도덕과 인륜에 다소 변화가 생겼지만, 삼강오륜의 기본 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유교는 오륜(五伦)의 가르침 이외에 다섯 가지의 한결 같은 덕(德)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다섯 가지의 덕(德)은 오륜(五伦) 뜻지 않게 중요하다. 맹자(孟子)는 그 중에서 네가지 덕을 강조하고, 이것을 사단(四端)이라고 하였다.

仁, 义, 礼, 智

여기에 信을 추가하여 仁, 义, 礼, 智, 信의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도덕을 五常(오상)이라고 한다.

五伦과 五常은 유교의 기본 도덕이요, 人伦의 뿌리를 이룬다.

五伦은 인간관계의 윤리요, 五常은 주로 개체적 인간의 윤리다. 인간의 도덕교육, 인격교육, 정신교육의 핵심은 五伦, 五常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교에서

숭상한 仁과 孝悌(효제) 그리고 忠恕(충서)이다.

孝道(효도)가 단순히 가족 윤리를 위한 덕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의 정신은 사회전체를 후덕하게 만드는 원리이며 효의 정신이 확산되면 나라 전체의 정치문제도 잘 풀리고 인류 공동체도 쉽게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의 보편적 세계윤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교는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孝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다. 효는 부모에게 물질적 편안함을 제공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봉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 孝는 다른 여러 도덕적 의무에 우선한다. 공자와 맹자는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다른 公的(공적) 의무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孝悌(효제)는 仁(인)을 이룩하는 근본이고 출발점이다.

仁(인)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사랑이나 기독교의 사랑과는 다르다.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 이외에 절대 자를 매개로 삼는 까닭에, 그것은 절대적 사랑이다. 그러나 仁(인)의 바탕으로서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人情(인정)에 기초하는 까닭에 인간 관계의 亲疏를 따라서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仁(인)은 여러 가지 덕의 종합과도 같은 복합적인 개념이다. 仁(인) 가운데는 회생정신, 공공, 신중, 공평, 소박, 성실, 간대, 신의, 민첩, 은혜로움, 정직 등의 덕이 포함되어 있다.

孟子(맹자)의 尽心章句(진심장구)에 “仁(인)이라 함은 사람다운(仁)을 말한다”는 구절이 있다. 孔子(공자)는 论语(논어)에서 “仁(인)이란 나를 이기고(克己) 예로 돌아감(复礼)”이라는 말로 대답했다. 요컨대 공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 “仁(인)”의 덕이요, 仁(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己)의 껍질을 벗어나서 큰 “우리” 즉 집단적 자아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礼(예)는 작은 “나”가 큰 “우리”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귀중한 관문 내지 규범이다.

유교문화의 사회의식은 개인이 사사로움을 극복하고 전체적인 공고의 질서를 확보하는 것으로 집약시킬 수 있다. 자신의 사사로움을 이기고 예법을 회복하는 것이 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克己复礼为仁(국기복례위인)이라 했다.

예는 올바른 行动规范이다. 예로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다스리고 단속해야 한다.

忠恕(충서)는 스스로 성실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것이다. 忠(충)은 나에 대한 참이요, 恕(서)는 남에 대한 참이다. 忠恕는 참되고 어진 것이요(忠), 너그럽고 동정심이 많은 것이다(恕). 恕는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친다(推己及人)”는 윤리로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자세(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배풀지 않는 것(己所不欲 勿施於人)” 이것이 바로 恕의 핵심이

다.

도덕 없이 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법률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차원과 도덕차원을 좀더 정밀하게 구별하기 위해 중요하다. 법률과 도덕 차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관돼 있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윤리적 의무가 있다. 법은 도덕적 기초 위에 필요하다.

법은 윤리 없이 영구히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윤리 없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도 없다. 윤리는 정치와 법에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행위는 가치 및 선택과 관련있기 때문이다. 세계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공통된 윤리를 옹호하고 있다. 도덕이 없는 권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구적 윤리 없이는 더 나은 세계질서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라.

만일 인간 권리에 관한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 책임에 관한 선언과 연결해야 한다.

민족 국가는 이미 기능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또한 실제로 붕괴되고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 체제, 인간적으로 보람있는 새로운 지구촌 사회의 건설이 인류의 꿈이다.

이제 지구촌 모두가 공정한 경쟁과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적 또는 세계적 규모의 난제들이 속출함으로써 지구 사회의 공동체이식 합양과 기존 가치관의 충돌적 재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야말로 코스모폴리탄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우리에게 책임 있는 세계성(Responsible Globality)에 부응하는 새로운 보편적 세계윤리가 필요하다.

지금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세계질서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가장 잘 보장한다고 믿었던 국민 국가가 글로벌화의 물결 앞에 혼들리는데 대한 불안이다.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라고 본다.

환경파괴를 보면 살아 있는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안되지만 다음 세대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윤리의 영역이다. 오로지 가치가 있는 것은 윤리이다. 환경 파괴는 어느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과학기술로는 지식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이 손꼽힌다. 이를 기술이 인류를 풍요롭게 할 것이지만 부작용도 많다. 인터넷 사기 등 허위 정보 범죄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복제양(羊) “돌리”를 탄생시킴으로서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新人間” 부류가 태어날 수도 있지만 생명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있다.

‘보편 윤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언제 어디서나 타당성을 갖는 절대적 윤리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내다보며 우리 시대가 요

구하는 ‘보편 윤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21세기는 윤리의 세기 여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는 윤리성이 결여된 시대였다.

세계 윤리의 기초는 구속력 있는 가치, 바꿀 수 없는 기준, 근본적인 도덕적 태도에 관한 최소 근본적 합의로서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배려(Caring for Future)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각 文化에 두루 걸쳐 있는 여러 핵심 가치는 사랑, 진실성, 공정, 자유, 조화, 관용, 책임, 생명존중을 포함한다.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는 점점 더 서로 연관되고, 동시에 점점 더 확산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최소한 공통된 이해와 공유하는 가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UNESCO에서 주관한 한 위원회는 “인류 생존과 번영에 관련 있는 이면과 가치를 새로이 종합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와 평등, 상호 존중, 배려, 성실”을 세계 시민 윤리로 설정했고, 또 한 연구소는 세계윤리로 “사랑, 진실성, 공정, 자유, 조화, 관용, 책임, 생명존중”을 제시했다. 기타 여러 위원회에서 지구촌에 있어야 할 보편적 윤리를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제안했다.

제안된 가치들이 다 실현되면 지구촌 구제에 도움이 될 가치들이라는 수궁이 가는 덕목들이다.

여기에는 서구적인 종합의 여운이 많다고 본다. 덕목이 나열을 넘어서 지구촌 문제의 더 깊은 원천적인 정신문제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유교 윤리의 선별이고 충, 효, 예의 사상이다. 道德의 재건을 위해서는 유교적 전통 윤리를 오늘에 되살려야하고 전통 윤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孝사상을 고취해야 한다. 효는 윤리의 근본이니 孝思想만 제대로 보급되면 모든 윤리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짚은 세대는 대체로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식을 놓고 기르면서 늙어지면 동의하게 된다. 그때 가서야 나도 효도받기를 원한다. 남의 부모를 존경하고 생명근원인 부모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윤리를 따르겠는가?

발전이란 복합적이며 야심찬 작업이다.

귀중한 진보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하며, 세계 곳곳에 수많은 민족이 선의를 가져야 한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맞으려면 회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公害病인 水俣病을 예를 들어보자. 가해 기업의 연구자들은 미나마다병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社员이 되어야 했고 原因을 공개하면 해고된다. 그들에게는 또 가족들이 있다. 회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폭로행위는 비도덕적이다. 그래도 폭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리의 문제이다.

부패(corruption)문제는 인류 사회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제기 돼온 과제이다.

그것은 마치 성(sex)문제가 인류역사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뇌물 수수 행위와 관련된 공직윤리와 성 윤리는 단순 대비 차원을 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마음만 먹으면 돈 안 드리고 仁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든지 많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핸드폰을 삼가는 것, 기차표 살 때 순서를 지키는 것, 공중탕에서 물을 아끼는 것, 교통신호 지키는 것 등등이다.

节制는 옛날에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다 미덕이었다. 거기에는 물욕의 절제만 아니라 감정 일반의 절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편윤리 속세 절제의 윤리는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UNESCO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보편윤리계획(The UNESCO Universal Ethics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论语와 孟子에 기록된 孔子와 孟子의 사회 정치 사상은 글자 그대로 세계를 변혁시킬 만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윤리적 절대론자들이 말하는 무제약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보편 윤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를 위한 “세계 윤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계 윤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논증하거나 异论의 여지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공동으로 부딪치고 있는 세계적 문제들의 객관적 현실을 밝히고, 이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되는 가치관(values)과 철학 그리고 도덕 규범(moral code)등의 代案을 제시하는 일과 이 대안에 동의해 줄 것을 세계 각국의 지성 사회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그 의의는 클 것이다.

# 국제연합(UN)의 안보 인식과 정책

유 철 종 · 송 기 돈

전북대학교

##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안보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정
- III. 국제안보의 제도화 과정: 국제기구와의 관계
- IV. 유엔 안보전략의 변화
- V. 현대 유엔 안보전략의 방향 모색
- VI. 결론

## I. 서 론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보장의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국제연맹의 탄생, 이론적으로는 같은 해 영국 웨일즈대학에 국제정치학과의 설치된 이래 동시적으로 체계화된 최우선 연구주제가 되어 왔다.<sup>1)</sup> 그러나 이 주제의 범주 및 성격은 20세기의 대부분 시기 동안 대체로 전쟁 또는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인식과 국가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협소한 영역에 국한되어 왔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시한 유엔은 국제연맹의 실패로부터 보다 실효적인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관계의 구조적 제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가간 상호의존의 복합화와 지구적 쟁점의 국제의제화라는 체제 속성의 변화에 힘입어, 기존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고려가 변화되어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합한 재구성화가 촉진되었다.

냉전 종식 또한 국제체제의 분산화와 국제협력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종래 유엔을 통한 보편적 지구관리 또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본래의 집단안보 개념 및 방식의 변질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지역주의적 접근 등이 포함되며, 이는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통한 보

1) 국제관계학과가 최초로 대학에 창설된 것은 1919년 영국 웨일즈대학의 윌슨 석좌교수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그 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Brian Porter (ed.), *The Aberystwyth Papers: International Politics 1919-1969* (London: Oxford Univ. Press, 1972)이다. 이와 관련한 소개를 위해서는 Steve Smith, Ken Booth & Marysia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6), pp.xi-xiv 참조.

다 투명한 안보관리와 실행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본적 인식 및 접근방식과 현재의 그 변화패턴 및 성격, 그리고 구체적 접근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냉전이후의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국제질서에 적합한 국제안보레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는 형태상의 갈등 및 전쟁의 부재, 단일 국가 또는 지역 중심의 안보체제라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인식범주에 머물렀던 종래의 국제안보관으로부터,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세계평화를 모색함에 있어 유엔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일이 포함된다.

냉전 시기 집단안보라는 기제를 통하여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그 핵심 기능으로 삼아 온 유엔의 성과는 비록 많은 한계를 노출시켰으나,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비교적 의미있는 관리방식을 제도화시켜 왔다. 그 과정에서 냉전 이후 발생한 다수의 지역분쟁은 국제성을 지니면서 예기치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킴으로써, 유엔의 집단안보에 대한 기존 접근을 변화·수정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동안 평화유지군과 유사한 유엔군, 다국적군, NATO와 같은 지역기구의 주도화 등이 등장하였으나, 이를 모두는 집단안보의 본래의 형태로부터 변형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맞추어 현대 유엔의 안보인식 및 정책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지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분석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제정치학계의 안보연구의 발전과정을 검토한 후, 실제적인 배경으로는 19세기 초 유럽에서의 안보관리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제연맹과 유엔에 이르기까지의 연장선상에서 그 특징적인 역사적 의의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국제안보에 대한 유엔의 기본적 접근, 안보전략의 원형으로서의 집단안보, 집단안보의 변형으로서의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건설 등의 제 개념과 상호관계를 검토·고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유엔 집단안보와 관련된 제반 개념과 활동을 일정한 관계유형의 틀로 재구성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계유형의 틀은 이를 개념을 갈등의 예방-해결-평화강화와 관련짓고 있으며, 문제점과 극복방안은 주로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의 상충성, 국제규범과 평화적 해결, 그리고 지역기구와의 관계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 있다.

## II. 국제안보 연구의 이론적 발전과정

안보연구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안보’ 개념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보 개념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연구의 범위나 강조점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시되어 온 일반 개념은 “전쟁 또는 위협으로부터의 상대적 해방”이나 “이미 취득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 등 구속적 요인의 해제로 대표되고, 이를 그 분석단위에 국한하여 ‘국가’를 강조할 경우 “국가이익의 성공적 추구 능력,” “외부의 침략에 대한 극복 능력” 또는 “국가의 핵심 가치의 보호 능력” 등에,<sup>2)</sup> 그리고 이를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할 경우

에는 인류 공동의 안보, 즉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또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다른 측면에서는, 희소한 가치에 대한 위협의 부재로 정의되는 안보가 원칙상으로는 절대적 개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보 연구 또한 그 강조점에 따라 전쟁, 갈등, 전략, 방위, 평화, 국가안보, 국제안보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안보에 관한 연구는 다른 생활들과는 달리 시기적 고찰이 비교적 유용하다.<sup>3)</sup> 먼저 양차 대전 사이의 시기에는 민주주의, 국제적 이해, 중재, 국가 자결, 군비축소, 그리고 집단안보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신념이 있어, 군사력보다는 국제법 및 국제기구를 강조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2차대전의 시작으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한 민족국가들 간의 갈등관계로 초점이 옮겨져 자연히 군사력이 안보의 핵심주체가 되어갔다.

전후 10여 년(1945-55년)에 걸쳐 학자들은 군사적 수단들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어떤 단일의 주제가 안보 의제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다. 첫째, 안보가 모든 국가들의 일차적 목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지는 가치들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국가안보는 군사적·비군사적 통치기법 모두에 의해 추구될 수 있는 하나의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에 대한 각성은 군사정책과 관련한 경고와 신중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넷째, 국가안보와 경제, 자유, 그리고 국내의 정치과정과 같은 대내적 문제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 등이다.

2차대전 이후 두 번째 10년간(1955-65년)은 안보연구의 황금기로서, 핵무기와 이와 관련된 관리사를 가운데 특히 군비통제와 제한전이 지배적인 주제가 되었으며,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이 가장 인상적인 지적 성과였다. 이 시기 안보연구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소 관계, 나토, 핵전략 등에 대한 지나친 몰두,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지나친 집착, 전쟁의 법적-도덕적 측면의 경시, 연구자들과 정책작성자들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평화연구(peace studies)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들 수 있다.<sup>5)</sup>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데탕트 완화로 냉전의 긴장 요소들이 재현됨으로써 국가안보 연구가 새로운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 연구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

2) 김태현 역 (배리 부잔),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 (서울: 나남출판, 1995), pp.45-47에 소개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참조할 것.

3)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대표적 저술로는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35, No.2 (June 1991); David A. Baldwin,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Vol.48, No.1 (October 1995) 참조.

4) 이 시기에 속한 대표적인 학자는 Quincy Wright였으며, William T. R. Fox, Bernard Brodie, Harold Lasswell, Eugene Staley, Vernon Van Dyke 등이 이의 영향을 받았다.

5) 이와 관련된 전반적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에 실린 글들을 참조할 것. Jaap Nobel (ed.), *The Coming of Age of Peace Research: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a Discipline* (Groningen, The Netherlands: STYX Publications, 1991).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이전의 국가안보 연구와 본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된 것은 아니었고, 이전 연구의 재판(再版)처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많았다. 냉전으로 인해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주제는 핵무기 및 핵전략, 동·서관계 및 미국과 서유럽의 안보, 그리고 군사적으로 규정되는 국가안보의 우선성 등이었다. 이는 안보연구에 있어 범주의 다양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제안보 연구와 기타 영역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연구 범주와 강조점의 혼란상에도 불구하고, 안보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로부터 전체 참여국의 교차 이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국제 안보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국제질서의 해석 여부에 따라 안보의 전략이나 정책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이전의 지배적 인 (신)현실주의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이상주의로의 대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복합적 상호의존과 정형화된 상호작용 모델의 출현이라는 현 시기의 특징적 구도 속에서 안보협력을 위한 상설장치로서의 제도 또는 국제안보 레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개념 구분에서 보듯, 향후 안보 개념이 국가 단위 또는 군사적 측면이라는 특정 수준을 극복하여 보다 포괄적인 ‘세계안보(world/global security)’를 지향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 III. 안보의 국제 제도화 과정: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제사회의 안보문제 관련 제도화 노력은 이 문제를 정형적으로 취급하게 된 보편적 국제기구의 창설과 일차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와 유사한 시도는 있어 왔다. 17세기 중엽 웨스트팔리아체제 이후 근대 주권국가간의 관계가 비교적 가시적인 제도화의 형태를 보이게 된 것은 19세기 초 비인회의 이후였다. 이후 19세기 말에는 국제법과 관련된 제도화 노력인 헤이그체제 (The Hague System)가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공공국제연합(Public International Unions)에서 비록 기능적으로 한정된 부문이었지만 공식적인 국제기구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세계적 차원에서 안보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연맹에 의해서였으며, 이 과정은 현재의 국제연합에까지 연결되고 있다.

#### 1. 유엔 이전의 제도화 과정과 특징

먼저 국제연맹 이전의 안보의 제도화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구주협주(The Concert of Europe)’ 또는 ‘회의체제’로 명명되는 비인체제는 기존의 국가간 쟁무관계를 극복하여 다자적·집단적 외교를 통해 유럽질서를 안정화시키려는 거의 최초의 노력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후에 국제기구가 계승하게 될 다자적 협의 및 집단외교(collective diplomacy)와 같은 중요한 국제적 실행들이 강화되어, 국가

간 상호의존과 이익공동체의 인식을 구현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sup>6)</sup> 특히 집단 외교의 경우,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에 대한 성문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절차의 형성, 그리고 분쟁 당사자들에 의한 평화적 해결책의 모색이라는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국가들간의 폐쇄적인 주권 존엄성 등으로 인해 고위정치를 위한 상설제도와 법의 지배를 산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헤이그체제는 19세기 후반 군비확장의 경쟁 시기, 즉 무장된 평화 시기에 국가의 대외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자문의 성격을 지니고 등장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의 평등성과 독립성이라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제도화 및 정기화된 회의기구로서 각종 위원회가 창출되고 재판소가 창설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7)</sup> 또한 이 체제는 유럽의 소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까지 참여함으로써 국제외교의 초점이 유럽에만 고착되었던 비현실성을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다. 헤이그체제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발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 절차 마련, 유럽체제의 글로벌화 등에서 긍정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과 약소국들간의 갈등과 1차대전의 발발로 인해 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경험이 그 규칙성이나 지속성에 있어 비교적 안정된 국제 기구의 형태를 갖추고 등장한 것은 19세기 말의 공공국제연합 또는 행정연합(administrative unions)에 이르러서였다. 이들은 비정치적인 기능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결성된 것들로서, 본 연구의 주제인 국제안보 문제와는 일차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설적인 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제행정 관료제를 탄생시켰고, 회원국들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키는 절차적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이런 경험을 통해 정보의 집합 및 교환 장소, 공통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지, 정책작성 및 실행·조정을 위한 도구, 그리고 통일된 기준의 형성 및 수용 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듯 19세기의 경험은 비인체제의 다자외교, 헤이그체제의 법률적 자문, 그리고 공공국제연합의 협력적 제도 등을 통해, 20세기 국제기구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적 절차의 개발, 국가들의 참여 확대, 국제 사무국의 제도화 등에 있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의 제도적 노력은 전쟁 예방과 안보 유지를 위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창설은 19세기 유럽의 세력균형이 전쟁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접근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의 안보 문제를 힘의 균형보다는 힘의 우위체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직

6) Karen A. Mingst & Margaret P. Karns, *The United N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Boulder: Westview Press, 1995), pp.16-17.

7) 1899년과 1907년 두차례 개최된 헤이그회의는 그 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의(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조사특별위원회들(ad hoc International Commissions of Inquiry),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및 국제전리품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로 연결되었다.

접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유지, 비폭력적 영토 보장, 그리고 만국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등이 국제연맹의 지향 목표로 설정되고, 특정 국가의 의지가 강요되는 강대국 지도체제 또는 폐권의 방지 수단으로서 국제법에 의한 전쟁 불법화의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도덕과 윤리에 호소하여 군사적 침략의 부당성을 인식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경제제재 또는 봉쇄와 함께 집단적 안전보장에 의존한다는 전통적인 이상주의에 기초하고 있다.<sup>8)</sup>

국제연맹의 창설은 국제제도화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즉 이념, 형태, 성격, 윤용 원리 등 모든 측면에서 이전 시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매우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9)</sup> 첫째,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단일의 보편적 기구를 주창해왔던 기존 국제정치 사상가들의 이념과 이상이 국가 정책에 통합되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바람직한 국제적 행동이 요구되는 광범한 문제들을 취급하기 위한 제 수단을 단일의 기구내에 과감히 포괄하고 있다. 셋째, 향후 유엔을 위한 모델로서 작용하게 될 정치적, 사법적,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기관들을 창출함에 있어 혁신적이었다.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 방법과, 침략전쟁에 대한 집단안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후에 증명되었듯이 진보적인 것 못지 않게 보수적 경향도 여전히 내포하고 있어 실패하였다.<sup>10)</sup>

## 2. 유엔에서의 제도화 과정과 특징: 집단안보

국제연맹의 경험을 토대로 창설된 유엔 역시 기존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으로 등장하였다. 즉 유엔은 회원국 국가들간의 법률적 평등이라는 주권 개념, 특정 국가의 국내 관할권에 속한 문제들에 개입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국제평화 및 안전의 보호라는 일차적 목표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국제평화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각 국가들이 무력 사용 및 위협의 금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그리고 경제제재와 같은 강제조치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유엔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개념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서, 동맹 중심의 세력균형을 대체한다는 국제연맹의 이상을 계승·발

8) 이 구상은 월슨의 1917년 초집단력에 의한 '평화연맹(League for Peace)' 주장을 기초로, 세계평화를 위한 유일하며 가능한 계획이라는 3단계 구상이다.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gency,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pp.60-61.

9) A. Leroy Bennet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inciples and Issue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pp.36-38

10) 국제연맹의 보수적 특징은 곧 이 기구의 실패와 연계된다. ① 국제사회의 권위와 힘의 원천을 재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되지 않았다. ② 민족국가의 주권에 의한 가맹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③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에 적절한 새로운 실행 방식들이 구비되지 못했다. ④ 국가간 경제적 대결이 종대로 상호간의 협력의지가 결여되었다.

11) Mingst & Karns (1995), 앞의 책, pp.20-21.

전시킨 것이다. 집단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집단안보는 ‘하나에 대항하는 전체(all against one)<sup>12)</sup>라는 개념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우월한 힘을 지닌 적대적 공격자와 대결할 목적으로 각 회원국이 세력연합에 참여하겠다는 언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3)</sup> 보다 평범한 정의로는 “집단안보의 필수조건은 집단적 자기 규제로서, 이는 일단의 국가들이 당해 국제시스템의 규범을 위반한 국가를 집단적으로 응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안보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라고도 한다.<sup>14)</sup> 종합적으로 볼 때, 집단안보는 국가 행위자들간의 공개적의 협정에 따라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평화를 파괴하려는 불특정 행위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재하는 평화 관리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집단안보는 자력구제에 의한 세력균형보다는 세련되고 안정적이며, 단일의 세계정부(a world government)에 의해 권위적으로 수용되는 관리방식보다는 체계화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집단안보에 관한 유엔 헌장의 대의 및 지향점은 제1장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제시되어 있다. 헌장 제1조의 4개 목적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제1차적 목표로 규정되어, “평화에 대한 위협의 예방·제거, 침략 및 평화 파괴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적 조치, 국제적 분쟁 및 사태에 대한 평화적 수단 또는 정의 및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한 조정 및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집단안보의 대상에 대한 강제적 조치(헌장 제7장)와 평화적 해결(헌장 제6장)을 주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 관하여, 헌장 제2조 3항과 4항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거한 해결과 함께, 유엔이 허용하지 않은 일체의 무력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엔에서의 집단안보 조치는 크게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이라는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유엔이 일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헌장 제6장(제33-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강제조치에 해당하는 제7장에 우선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분쟁의 해결방식으로는 당사자들이 교섭, 심사, 중개[거중조정],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 및 협정의 이용, 그리고 당사들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수단이 포함된다(제33조). 여기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개입된다. 즉 안보리는 분쟁사태의 성격 결정을 위한 조사(제34조), 적절한 해결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권고(제36

12) 이와 유사한 용례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one for all, all for one)”처럼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Josef Joffe, “Collective Security in the Future Europe,” *Survival*, Vol.34, No.1 (Spring 1992), pp.36-37.

13) Charles & Clifford Kupchan, “Concert, Collective Security and the Future of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Vol.16, No.1 (Summer 1991), pp.114-161 참조.

14) 이러한 입장에서의 논의는 George Downs & Keisuke Iida, “Assessing the Theoretical Case against Collective Security,” Downs 외, 앞의 책, pp.17-39 참조.

15) Inis L. Claude, Jr., *Swords into Plowshares: The Problems and Progres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4th ed.,(New York: Random House, 1971), p.94.

조),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일련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력사용에 관한 한 유엔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전쟁, 보복, 복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포괄적인 무력사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제도 내에서도 무력사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강제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장 제7장과 자위권에 해당하는 제7장의 제51조이다. 즉 유엔 현장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가 갖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조치는 안보리에 즉시 보고되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안보리의 권능과 책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이다.<sup>16)</sup>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사용의 예외 외에 유엔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제적이며 최종의 행동은 현장 제7장의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그리고 공격 행위에 대한 행동” 규정이다. 여기에서의 핵심 규정은 제41조의 비군사적 행동과 제42조의 군사적 행동이다. 전자의 경우, 유엔 안보리는 무력사용 이외의 어떤 조치의 사용도 회원국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제관계,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 통신수단의 전체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이 여기에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는 제41조 조치의 불충분성이 인정될 경우 취해지는 방식으로 평화와 안전의 회복에 필요한 군사적(육·해·공군) 행동으로 시위 또는 봉쇄 등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선택될 경우 회원국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이라는 보편적 세계기구와 여타 지역적 국제기구와의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는 현장 제8장의 “지역적 협정”에 관한 규정이다. 유엔은 자체의 목적과 원칙에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적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지역협정 또는 지역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안보리의 허가를 조건으로 일차적으로 평화적 해결에 의존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2차대전 중 적국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적 조치는 관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이 그 적국들로부터의 새로운 침략을 방지하는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유엔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있어 일차적으로 비군사적 접근을 우선시하여 가능한 한 무력사용을 절제하고 있다. 둘째,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배분이 비교적 명확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안보리에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강제 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의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안보와 같은 실질문제에 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적용함으로써 강대국들의 현실적

16) 무력사용의 금지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현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John F. Murphy, "Force and Arms," William J. Durch (ed.), *Peacekeeping, American Policy, and the Uncivil Wars of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p.101-104.

조건을 인정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적 기구와의 유기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분쟁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적 대응방식을 적절히 균형화할 수 있는 여지를 구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집단안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집단안보가 발효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특별협정의 체결이 사실상 사문화 됨으로써 현장 규정에 적합한 집단안보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이다. 둘째, 안보리의 거부권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동화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회원국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자위권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특정 국가 또는 지역적 동맹체들에 의한 자의적이고 비합법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장의 목적과는 배치되는 광범위한 무력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 셈이다.

#### IV. 유엔 안보전략의 변화

##### 1. 냉전시기 집단안보와 평화유지 활동

유엔의 안보전략은 기본적으로 집단안보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접근방식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강제조치이며, 부수적으로는 무력 사용의 예외적 인정과 지역적 협정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적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냉전 시기에는 평화적 해결과 강제조치가 규범적 방식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평화유지(peace-keeping) 활동에 거의 의존하는 변질된 양상을 보여왔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의미하는 평화조성(peace-making)은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로 보완되고, 강제적 조치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용된 바 없으며 현장 규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평화조성과 강제조치, 그리고 평화유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1) 평화조성-예방외교와 강제적 조치

평화조성은 유엔 현장 제6장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 안보관리 방식이다. 즉 분쟁 발생시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적대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평화협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즉 분쟁 종식을 위한 중재를 목표로 이와 관련된 외교적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갈등 종식, 이차적으로는 그 이후의 평화적 상황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조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현장 제6장의 방식을 포함하여 세계법정 또는 원조를 통한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후에는 제재 및 특별한 경제적 문제들, 군-군 접촉, 안보 지원, 무력 시위, 예방 배치 등 군사적이고 강제적인 방식들이 추가되었으며, 평화집행군(peace-enforcement units)과 같은 방식도 포함되기에 이르렀다.<sup>17)</sup>

첫째, 세계법정의 경우는 현장 제36조와 제37조에 의거 안보리가 회원국들에 대

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을 2000년 이전까지 아무런 유보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촉후하고 있다. 둘째, 원조를 통한 상황 개선과 관련해서는, 평화조성이 일차적으로 분쟁을 촉진시키는 상황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 유엔은 관련된 모든 산하기관과 프로그램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재 및 특별 경제문제의 경우에는, 평화조성이 헌장 제41조하의 제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가 안보리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헌장 제50조), 자국의 곤란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안보리가 계획하며, 이 경우 전체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결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의 사용과 평화집행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장 제7장의 강제적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평화조성의 기본 개념에 수정을 가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로써 유엔의 집단 안보 유형에 속하는 개념들 사이에 그 정의나 운용방식에 있어 혼용과 혼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예방외교는 본래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인 함마슬트 재직 시 가동된 것으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종 단계이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로 간주되는 기법이다. 평화적 해결은 제1 단계로 조정이나 중재의 노력을 경주하며, 제2 단계에서는 유엔 사절단이나 중재자의 현지 해결을 위해 분쟁지역에 이들을 직접 파견하는 일이며, 마지막 제3 단계에서는 분쟁지역내의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엔군이 주둔하고 이들이 국제 경찰력을 행사하는 단계이다. 이 마지막 단계가 예방외교에 속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동서간 냉전이 심각하게 대립되고 있거나 않으나 다수의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개입될 수 있는 ‘한계적 외곽지역’에 유엔이 개입하는 경우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들의 팽창으로 야기된 냉전 관련 지역을 제한하기 위한 봉쇄정책의 국제판이라는 수단의 성격을 지닌다.<sup>18)</sup>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은 1992년 『평화의제(Agenda for Peace)』에서 예방외교를 폭력 사태의 발발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그 구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 사실 발견 및 조사, 조기 경보, 예방적 배치, 그리고 비무장 지대의 설치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sup>19)</sup> 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중시하며 유엔은 공정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무력사용에 있어서도 평화유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예방외교는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혼존의 분쟁이 갈등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즉 갈등 발생 시 이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방외교는 분쟁이 갈등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님은 최근 유엔의 문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sup>20)</sup> 여기에는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17)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Preventive Diplomacy, Peacemaking and Peace-keeping* (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992), pp.20-27.

18) 구영록, 『국제정치의 주요 개념』(서울: 법문사, 1978), pp.172-174.

19) Boutros-Ghali, 1992, 앞의 책, pp.13-17.

20) “Preventive diplomacy and peacemaking,”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http://www.un.org/Docs/SG/SG-Rpt/ch4b.htm>.

예방외교뿐만 아니라 군대 및 경찰요원의 예방적 배치, 예방적인 인도적 행동(예: 민감한 국경지역에서의 난민문제 관리), 그리고 국내적 갈등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행동을 요구하는 예방적 평화건설까지 망라된다. 이 경우를 고려할 때,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예방외교 또한 탈냉전 이후 강화되고 있는 갈등 후 평화건설이라는 개념까지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기본적 특성에는 큰 변화가 없어, 예를 들어 갈등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조기 경보의 개념, 적절한 예방적 행동을 위한 갈등의 원인 및 성격 등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 관할권의 중시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동의의 필요성 등은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유엔의 강제적 조치는 가장 최종적인 안보 관리방식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역사상 이에 근거한 실제 활동은 전무했으며, 한국전과 걸프전에 관여했던 유엔군과 다국적군이 가장 근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많은 측면에서 유엔 집단안보의 변칙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그 성격 규정에 관한 논의는 거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유엔군이나 걸프전에서의 다국적군은 그 법적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유엔헌장 제7조에 따른 강제조치로 보기 어렵다. 이들 두 사례는 유엔사령부보다는 특정 국가 사령부의 지휘하에 있었고,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적인 전투작전에 완전히 참여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평화유지군이나 감시군으로도 간주되고 있지 않다.<sup>21)</sup>

## 2) 평화유지 활동과 그 성격의 변화

냉전 시기의 국제분쟁에 있어 유엔 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구속력의 결여로, 제7장의 강제적 조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의 이전 노출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전자보다는 강하고 후자보다는 약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거부권 행사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헌장 제6.5장에 해당된다는 평화유지 활동이다. 그러나 초기의 평화유지는 공격자에 대한 강제적 처벌보다는 갈등 상황의 동결로 그 목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제6장의 평화조성에 좀더 근접하는 특징을 보였다. 다시 말하여, 집단안보를 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창설 당시의 적극적인 개념보다는, 분쟁의 확산 방지를 통해 해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소극적 개념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시기 유엔의 집단안보 방식은 평화유지 활동이 주조를 이룬다. 따라서 그 시기와 성격 및 운용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범주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공통기준을 설정하는 데는 아래와 같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1) Adam Roberts & Benedict Kingsbury, *United Nations, Divided World: The UN's Rol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268. 보다 구체적인 결격 요소에 관해서는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Everyone's United Nations*(1986), pp.51-53.

<표 4-1>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시대적·특징적 구분과 명칭의 비교<sup>22)</sup>

	제 1 세대 (1945-1980년대 중반)	제 2 세대 (1980년대 중반-1989)	제 3 세대 (1990년대 이후)
국제평화아카데미	고 전 형	복합적-다차원적 평화협정	강 제 형
Michael W. Doyle	비무장-경무장 유엔군	복합적-다차원적 평화협정	평화 강 제
William J. Durch	전 통 형	다 차 원 형	인도적 개입 평화 강 제

먼저 제1세대는 냉전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던 시기로서, 미국과 소련이 긴장 지역에서 직접적인 무장 충돌을 회피하던 상황이었다. 이 유형의 활동은 분쟁 당사자들 중간에 위치하여 종전을 감시함으로써 분쟁의 협상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여기에서의 평화유지를 위한 원칙은 크게 동의성(consent), 공평성(impartiality), 그리고 자위 목적의 무력 사용 등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sup>23)</sup> 첫째, 동의성이라 함은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로 될 때 유엔의 개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공평성은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의 일방 당사자에 편파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여 중립을 견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자위 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은 평화유지군이 기본적으로 무장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경무장의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원칙은 강대국의 자의적 또는 편파적 개입을 방지하여 유엔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군사적 접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통하여, 분쟁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분쟁의 현상적 관리를 위한 장치의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제2세대 평화유지 활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식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과도기이면서 탈냉전 시기로의 연계 가능성을 보였던 시기였다. 여기에는 소련 고프바초프의 정치적 신사고와 이에 따른 냉전 완화라는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당사자간의 복합적·다차원적 평화협정이 주류를 이루어, 주로 국내 민주화, 난민 송환, 선거 감시, 인권 협정, 과도행정 업무, 경찰 훈련 및 감독 등이 주로 촉진되었다. 이는 갈등 이후의 평화건설을 위한 민간적 요소들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평화유지와 평화조성 및 평화건설 사이에 개념적인 연계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개념적 또는 활동상의 적극화에 힘입어 1990년대 초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간 갈등에 있어 유엔활동이 극적으로 진전되기에 이르렀다.<sup>24)</sup>

22) Michael W. Doyle, "Managing Global Security: The United Nations Not a War Maker, a Peace Maker," Charles W. Maynes & Richard S. Williamson (eds.), *U.S. Foreign Policy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New York: W.W.Norton & Co., 1996), pp.60-62; Durch, William J.,(ed.), "Keeping the Peace: Politics and Lessons of the 1990s," *Peacekeeping*, Durch,1996, pp.3-10의 각 구분을 요약한 것임.

23) International Peace Academy, 1998, 앞의 보고서, p.2.

제3세대 평화유지 활동은 냉전 종식 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복합적인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데서 연유하고 있다. 이 시기의 분쟁은 단순히 군사적 이유가 아닌 종교와 인종 등의 매개변수를 통해 그 결과 각종의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활동은 분쟁 종식의 강행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저강도 군사활동의 범위를 뛰어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이미 쇠락한 국가의 재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전과 걸프전의 경우처럼, 이 시기의 평화유지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집단안보의 원형과 다양한 변형들이 종합적으로 혼용되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sup>25)</sup> 첫째, 전통적인 유형으로서, 평화조성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투 중지를 위한 잠정적인 군사적 활동(예: 걸프전후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감시단), 둘째, 예방적인 평화유지 활동으로서, 잠재적인 위협 상황에 직면하여 갈등의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유엔이 군대를 배치하는 경우(예: 1992년 마케도니아), 셋째, 협상 결과 합의한 평화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으로서 평화건설에 해당되는 경우(예: 나미비아, 캄보디아, 앙골라,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넷째, 인도주의 구호 물자의 운반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유지 활동으로서 가장 새로운 형태(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회교도 원조), 다섯째, 특정 국가내에 권위적인 정치체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내전이 발생한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 활동(예: 소말리아) 등이다. 그 외에도 휴전협정의 준수를 위한 평화의 강제활동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속한다.

## 2. 평화건설과 평화강제

### 1) 갈등 후 평화건설

유엔의 집단안보 운용은 본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강제조치로 구상되었다가, 현실적으로는 평화유지 활동이 냉전 시기에 주류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새로운 성격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유엔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모색하게 된 새로운 평화유지 방식은 “갈등 후 평화건설(post-conflict peace-building)”이라는 개념으로 확립되었다.

『평화의 제』에 따르면 평화건설은 갈등 발생 이후의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갈등의 재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를 강화하

24)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나미비아의 유엔이 행지원그룹(UNTAG), 엘살바도르 유엔감시단(ONUSAL), 캄보디아 과도행정단(UNTAG) 등을 들 수 있다.

25) Marrack Goulding, "Current Rapid Expansion Unsustainable without Major Changes," John Roper et al., *Keeping the Peace in the Post-Cold Era: Strengthening Multilateral Peacekeeping* (New York: The Trilateral Commission, 1993), pp.93-97.

고 적대 세력들간에 신뢰와 상호작용을 공고화할 수 있는 구조들을 규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sup>26)</sup> 또한 이 개념은 평화질서의 수립에 적합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외교의 일환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동시에 평화조성과 평화유지가 성공하기 위한 관건이 되기도 한다.

평화건설과 예방외교의 관계는, 새로운 평화적 환경 창출이라는 평화건설의 개념이 평화적 조건의 불괴를 회피하기 위한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예방외교의 상대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평화조성과 평화유지와의 관계에서 볼 때, 갈등이 일단 발생할 경우 이 둘 두 유형의 활동이 행동화된다. 그 결과 그러한 평화활동의 목표가 성취되면, 기저에 놓여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인도적 문제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 오로지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작업만이 평화질서를 공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방외교가 갈등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건설은 그러한 위기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sup>27)</sup>

평화건설이 유엔의 제반 평화활동의 선제조건이자 동시에 그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평화를 강화하고 제 국민(민족)들간에 신뢰감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노력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평화건설은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국가들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양, 교육, 문화적 교류, 선거의 조직화, 감시 및 시행, 민간의 물리적 하부구조 및 제도의 재건 등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유엔이 분쟁 국가의 국가적 구조와 능력,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 제도의 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같은 새로운 책임을 요청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영역에서 유엔 제도가 갖는 권위는 사회적 평화(social peace)가 군사전략적 또는 정치적 평화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합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법의 지배 및 결정작성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실행과 새롭고 안정된 정치질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명확한 연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바람직한 국제적 통치(international governance)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 및 국가공동체의 모든 수준에서 증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유엔의 평화건설 활동은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 2) 인도적 개입과 평화강제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 관리방식에 변화가 갈등 후 평화건설로 수렴되면서,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출현하게 된 접근방식이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26) Boutros-Ghali, 1992, 앞의 보고서, pp.11-12.

27) Boutros-Ghali, 위 보고서, pp.32-33.

과 관련된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이다. 인도적 개입은 계속되는 갈등이나 무정부 상황 속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평화질서의 확보를 위한 전통적인 기준의 평화활동과는 일단 구별된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은 갈등이 실질적으로 종식되지 않을 경우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 활동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이 활동이 분쟁 당사자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유엔 헌장이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내 관할권 범위 내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대해 안보리의 이러한 활동이 월권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오히려 내란이나 배신한 정부의 폐해로부터 국가의 진정한 주권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이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sup>28)</sup>

둘째, 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유엔 개입 활동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즉 인도적 위기에 처한 민간인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임받은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타 당사자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간주되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개입 활동을 민간인 식량과 의료 지원만으로 제한할 경우 근본적인 갈등해결이 매우 어려워진다.

셋째, 유엔 밖의 비정부적 단체들과 유엔의 활동 사이에 부조화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이는 그들의 현지 활동이 유엔의 개입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이루어지면서, 각자 자체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상이한 현장 목표와 재원 체제를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여타 기관과 활동의 조정, 정보의 공유, 교통 및 통신의 지원, 또는 의료 지원과 같은 상호작용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평화건설의 두 번째 접근방식인 평화강제활동은 강제적 수단의 사용을 전제로, 갈등의 억제, 사실상의 분쟁종식 창출, 분쟁 당사자들간의 교섭 원활화, 국가 통치권의 부재에 직면한 비전투 민간인의 보호와 같은 업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적 수단의 사용은 위기 상황 속에서 종전을 유지하고 평화협정을 실행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sup>29)</sup> 이 경우 평화강제는 인도적 개입과 중첩되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 즉 만일 이러한 개입 활동이 자체의 관여 수준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거나, 또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강제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이다.

평화강제 활동이 대처해야 하는 대상 가운데 예외일 수 없는 경우는 민간인 대량 학살이다. 비록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무정부성과 각국의 상이한 국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만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럼에

28) Durch, 1996, 앞의 논문, p.5. 대표적 사례는 소말리아 활동(1992-199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2 이후), 그리고 북이라크 활동(1991 이후) 등임.

29) 대표적 사례로는 1995년 후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NATO 주도하에 이루어진 유고실행군(IFOR)임.

도 불구하고 1994년 르완다 사례에서 유엔 안보리가 인종간 대량학살을 종식시킬 목적으로 강제 활동을 중시했으나,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냉기도 하였다.

평화강제의 활동이 분쟁지역에 관여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고려되는 상황하에서도 민간인뿐만 아니라 평화강제 활동 참가자의 사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이 활동은 최소한의 필요한 무력만을 공평하게 사용함으로써, 종전을 위반한 어떤 당사자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셋째, 이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쟁 지역의 어떤 세력에 비해서도 유엔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비록 우월한 무력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전투부대를 억제했다 하더라도, 저강도 수준에서 비정규적인 평화파괴 활동(예: 게릴라 또는 테러활동 등)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행동이 항상 수반될 필요가 있다.

### 3. 소결: 유엔 안보전략의 관계 유형

제IV장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의 집단안보 관련 제 활동은 유엔 창설 이후 그 유형이나 운용 방식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반복해 왔다. 그 일반적 특징은 갈등 상황의 출현과 즉시 가능한 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예방 활동에 주력하면서, 일단 갈등이 분쟁 또는 전쟁으로 상승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다차원의 활동을 전개하고, 이 모든 대처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최후의 강제적 조치로 대응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갈등 또는 분쟁의 형식적 종식에 국한되지 않고, 분쟁지역에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평화질서의 수립과 인간적인 정치사회적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질서를 공고화하는 데까지 그 임무가 무한히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유엔의 평화활동은 본래 갈등의 발생 이후 이의 상황 종식이라는 소극적인 의도에 국한되었으나(평화조성), 이의 사전 예방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의도로 전환되었다(예방외교). 따라서 유엔의 전 활동은 사실상 예방외교의 정신을 선제조건으로 하면서, 갈등이 분쟁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평화적 해결과 강제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냉전 시기에 이런 의도가 현실화되지 못하자 신축적으로 변용시킨 방식이 유엔 활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것이다(평화유지). 그 후 군사적 분쟁의 과정 속에서 비군사적인 인도적 문제들이 돌출함으로써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거의 조치를(강제) 다시 신축성있게 적용하고 있으며(평화강제), 보다 항구적인 평화질서의 존속을 위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적 기초를 강화하고자 보다 근본적인 요인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다(평화건설).

유엔의 이런 제반 활동을 그 영역에 따라 <표 5-1>과 같은 관계유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표 5-1> 유엔의 집단안보 시스템 3 : 『평화의 제(Agenda for Peace)』 (1992)기준<sup>30)</sup>

영역 구분	예 방 →	갈 등 해 결 →			강 화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갈등 후 평화건설
활동 유형					

다음으로 평화활동이 최초로 배치되는 시기에 보여지는 갈등의 강도와 국면에 따라 유엔의 안보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sup>31)</sup> 갈등의 강도는 정치적 긴장상태→저 강도 간헐적 갈등→고강도 갈등 확산(즉 전쟁)으로, 갈등의 국면은 갈등의 부재→위기→전쟁→종전→적대관계 중지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 두 수준에서 볼 때, ‘예방외교’는 갈등의 수준이 가장 낮고 설질적인 갈등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제1단계의 평화활동이다. 그러나 위기가 심화되어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갈등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강제’ 활동이 야기되는 데, 이 때가 가장 고강도 수준의 갈등 확산 시기이다. 전쟁으로 인해 인명 살상이 발생하게 되면, 갈등의 수준이 다소 완화되면서 그러한 손실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평화강제가 ‘인도적 개입’ 활동으로 전환하게 된다. 전투행위가 사실상 중지되어 갈등 수준이 초기의 군대배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때 전통적 ‘평화유지’가 주류 활동이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전투행위의 발발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어서, 어떤 형태의 실질적 폭력 발생으로 인해 취약한 평화협정이 타격을 받을 경우, 유엔의 활동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화강제의 형태를 떨 가능성도 있다.

## V. 현대 유엔 안보전략의 방향 모색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99년 유엔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 국제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관해 몇 가지 상황 점검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먼저 긍정적인 성격의 특징은 특정 국가의 대내적 갈등, 교섭에 의한 갈등의 해결, 갈등 후 평화건설의 추세, 그리고 국제규범에 의한 평화 관리이며, 부정적 특징은 국제공동체의 합의 부족과 주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의 불일치 경향과 관계된 것이다. 이 모든 경향들은 그 성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현재 유엔의 안보전략에 있어 저해 요인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주요 특징과 문제점으로 인도적 개입과

30) Boutros Boutros-Ghali, *An Agenda for Peace* (1992)에서는 본래 이런 개념 구성은 발견할 수 없으나, 그 특성으로 볼 때 이런 구성이 가능할 것임.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의 FIB: 유엔 평화유지활동 자료에서 재인용함 (<http://www.fib.ethz.ch/fib/pko/tab1.htm>).

31) The Henry L. Stimson Center의 자료를 Durch, 1996, p.9에서 재인용.

32) Kofi Annan, 1999, 앞의 보고서 제1장.

국가 주권의 상충성, 국제규범과 평화적 해결, 그리고 지역기구와의 관계조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엔에 의한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간의 문제는, 인도적 개입의 명분이 발생할 경우 유엔이 분쟁 당사자의 동의없이 강제적 개입을 강행할 수 있는가 하는 평화강제의 문제를 환기시켜 준다. 이 문제는 인도적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성있는 책임감과 국내문제 불간섭이라는 유엔 현장 자체내의 양립 문제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있다.<sup>33)</sup> 그러나 학계의 대다수는 유엔의 평화강제 활동이 특정 국가의 주권이나 국내 관할권 침해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sup>34)</sup>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방향 모색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도적 개입의 국제적 정당성에 대한 합의는 규범적으로 부인되기 어려운 추세이므로, 실제로 분쟁지역의 여타 문제와의 전반적인 원활한 관계 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와 경찰력의 부재, 분파들간의 불화 등 정치적 긴장의 감소가 전제되지 않는 인도적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입의 정당성이라는 규범적 요소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화활동이 적절하게 성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임무 목표의 확대는 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활동 전개가 요구된다. 넷째, 특히 이 활동을 주도한 미국 자체의 중립성과 공평성이 상실되었던 점에 비추어, 참여 국가들이 객관성 유지와 희생비용 지불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둘째, 국제 규범과 평화적 해결의 문제는, 유엔의 활동이 갈등 후 평화건설을 강조하는 추세에서 포괄적 평화협정을 실행하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임무는 전통적인 평화유지뿐만 아니라 난민과 피난민의 귀환 및 재통합, 화해, 인권 증진 및 보호, 선거 지원, 전쟁으로 피폐화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재건을 위한 지원 등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임무 가운데 하나가 국제 사법 체제의 재건이다. 이 문제는 평화강제 활동이 도덕적 절대명령이라는 신념아래, 그 운용 방식은 안보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엔 현장을 통한 법률적 타당성에 비추어 무력사용에 관한 한 현장만이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이 제공하는 국제 규범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법과 인권법과 관련된 사법적 도구들이 상당 정도 증가해 왔다. 이는 현재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법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며, 판결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 결

33) Adam Roberts, "Humanitarian War: Military Intervention and Human Rights," *International Affairs*, Vol.69, No.3 (1993), pp.429-449.

34)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문헌은 Barry M. Blechman, "The Intervention Dilemm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18, No.3 (1995), pp.63-73; Antonio Donini, "Beyond Neutrality: On the Compatibility of Military Interven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Vol.19, No.2 (Summer/Fall, 1995), pp.31-45.

과에 대한 순응과 준수,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빈번히 개입하게 될 정치적 요인들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나 유엔의 국제법적 기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엔의 정치적 기관들이 현장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체가 되고 있음을 이미 합의된 바이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표현으로 구현되는 유엔 중심의 법적 질서와 제도가 국가이익에 우선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지역기구와의 관계 조정의 문제는, 지역적 행동에 적합하며 유엔의 목적 및 원칙과 일치하는 문제들을 취급하기 위한 지역적 협정 및 지역적 기구에 관한 유엔 현장 제8장(지역적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sup>35)</sup> 그러나 냉전으로 인해 이 규정의 적절한 이용은 손상되었으며, 사실상 지역적 협정은 현장이 예상했던 방식으로의 갈등 해결과는 종종 상반되게 작동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분쟁이 대개 특정 지역의 특정 국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들 문제에 대한 접근은 보편주의 방식의 유엔보다는 지역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기구에 일차적인 해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은 최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유엔과 지역기구간의 협력적 작업과 업무분담이 신축성과 창의성을 갖고 각각의 사례가 지닌 현실에 적응하도록 조정될 경우 그 효율성을 제고될 전망이다.<sup>36)</sup>

지역적 협정 및 기구들은 오늘날 기여해야 할 새로운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유엔과 지역협정 및 기구 사이의 협의를 통해, 어떤 문제와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 요구되는 조치들의 성격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과업에 있어 유엔과의 보충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기구들은 그 지역 밖의 국가들로 하여금 지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 있다. 또한 만일 안보리가 해당 지역내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지역협정 또는 기구에 구체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기로 선택할 경우, 안보리는 지역적 노력의 타당성에 대해 유엔의 무게를 빌려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VI. 결 론

유엔의 안보전략은 일차적으로 집단안보를 통한 각 국가의 안보를 바탕으로, 이를 전체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로 연계·확산시킨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현실주의적 국제사회의 힘의 분포를 반영하고 있는 시스템임을 감안할 때, 본래의 이상주의적 안보 실현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35) 지역적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현장 규정상 유엔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제행위의 경우는 2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집단적 자위권(현장 제51조)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국에 대한 조치(현장 제53조 1항)이다.

36)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말리아에서의 아프리카단결기구(OAS), 아랍국가연맹(LAS), 이슬람회의기구(OIC), 캄보디아에서의 아세안(ASEAN), 월살바도르에서의 “사무총장의 우방들(The Friends fo the Secretary-General)”이라는 독특한 협정 합의, 니카라파에서의 OAS, 그리고 발칸반도에서의 EC와 CSCE의 중심적 역할을 들 수 있다.

왔다. 그러나 전통적 이상주의에 연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자유주의적 안보 접근이 보다 현실성을 획득해 가면서, 자연히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법의 지배 원칙,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보에 의한 세력균형의 대체, 그리고 국가 이익과 국제적 이익의 조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민주성 제고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의 복합적 상호의존과 비군사적 쟁점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 기구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공통 주제로 등장한 것이 ‘제도’이며, 향후 국제 행위자들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무정부상태 하에서의 협력’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보다 안정되고 투명한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기대를 놓았지만, 개별 국가 특히 강대국들과 유엔의 관계 설정이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여 그 한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안보에 관한 보다 제도화된 노력은 19세기 초 유럽의 비인체제로부터 시작되어, 국제법을 강조하던 헤이그체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를 체제는 보편적인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작동한 것으로, 현실 국제관계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이런 체제가 구비된 것은 국제연맹의 출범으로 가능했으며, 비록 실패의 요인을 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유엔에까지 승계되었다.

유엔의 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집단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출발하였다. 이는 기존의 관리체제였던 동맹 중심의 세력균형 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힘의 균형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국제갈등의 관리방식이었던 것이다. 유엔 집단안보의 주축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강제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실현되기에 너무 취약한 방식이었으며, 후자는 특정 강대국의 자의적 주도에 의한 과행성이 노출될 수 있었던 점은 방식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더구나 냉전의 대립구조는 이런 취약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보다 적응력 있는 접근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이 종래의 집단안보 개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방향으로 변용되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접근 또한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변화를 반복하게 되는데, 적어도 냉전 시기에도 그런 현상은 복잡할 정도로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평화조성을 더욱 보완하는 체제로서 포괄적인 예방외교 개념을 우선적으로 원용하고, 강제조치를 다소 완화시키는 평화강제 방식까지를 포함하게 되었다. 더구나 냉전 종식으로 인해 군사적 분쟁이 비군사적 문제들을 초래함으로써 그러한 운용방식은 더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적 문제로서 이는 유엔의 평화활동이 국내관할권을 침해하여 강제적으로 분쟁지역에 개입되는 결과까지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이렇듯 복합적인 개념 혼용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활동은 주류의 지향성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 이후의 평화건설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의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분쟁 해결 및 관리의 수준을 벗어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평화적 기초 수립과 질서의 유지라는 구조적 방식을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엔의 안보전략이 그 다양성과 복합성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한가지 명확한

논리는 쉽게 발견될 수 있다. 즉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안보 관리방식은 평화적 해결이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승될 경우에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되 이러한 활동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규범과 분쟁 지역의 특수성에 상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단계에서는 예방외교, 갈등 해결의 단계에서는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강제, 강제조치, 그리고 그 이후의 평화의 공고화 단계에서는 평화건설의 방식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평화활동이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후 국제적 상황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갈등 후 평화건설의 지배적 추세화, 국제규범 등 법률적 요소의 역할 증대, 교섭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갈등 해결 노력, 그리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국가간보다는 국가내의 갈등의 점증, 국제공동체간의 합의의 부족, 국가 주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엔의 평화활동을 둘러싼 핵심 논쟁은 인도적 개입의 정당성, 국가주권과 범지구적 가치의 우선성, 국제규범과 레짐의 효율성, 국제기구의 보편주의와 지역기구의 지역주의간의 관계 설정 등이며, 이 외에도 유엔 운용의 지나친 정치화, 강대국들의 유엔에 대한 장악 의도, 유엔의 재정문제에 대한 소극적 협조, 전반적인 유엔의 제도적 개혁 등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관리와 관련하여 정당성있게 유엔을 대체할 다른 제도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다른 방식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편협된 국가 또는 지역이익보다 지구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 먼저 강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명한 방향은 특히 국제법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규범과 레짐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보다 강한 의도와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 洪大容의 類推說과 實證說

-朱子說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姜 春 華

덕성여자대학교

## 目 次

- I. 序論
- II. 朱子의 類推說
  - 1. 朱子 이전의 ‘類’의 의미
  - 2. 朱子의 類推說
- III. 洪大容의 類推說
  - 1. 類推說 응용
  - 2. 類推說 비판
- IV. 朱子의 實證說
  - 1. 朱子 이전의 “參驗說”
  - 2. 朱子의 “證驗說”
- V. 洪大容의 實證說
  - 1. 卽物·實見의 實證法
  - 2. 觀察·觀測의 實證法
  - 3. 實驗·實踐의 實證法
- VI. 結論

## I. 序論

湛軒 洪大容(1731-1783)은 조선시대 실학발전사 중 제 2기에 속하는 北學派 혹은 利用厚生學派의 선구자이다. ①홍대용의 실학사상이 형성되게 된 外來 影響으로는 그가 생활하였던 18세기에 적지 않은 漢文西學書들이 소개되었고, 燕行시 접할 수 있었던 서양과학지식과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었다. 燕行은 그의 인생을 양분화하는 분수령이 되었고 그로 하여금 주자학 一邊倒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탈성리학적 실학 사상이 형성될 수 있는 외래적 契機가 되었다. ②홍대용 실학사상이 형성되게 된 內的 原因은 경직되어 가는 성리학 자체의 弊端이었다. 18세기 홍대용이 생존하였던 당시의 학계는 도학적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권위주의와 교조주의의 말폐 현상을 보이는 당시의 학문 풍토는 공허한 원리·원칙만 따지는 空理·空談에 빠져 현실사회를 외면한 것이었다. 당시의 지배 사상인 주자학에 대한 강한 비판과 저항 의식이 결국 그의 실학사상이 형성되게 된 내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그로 하여금 주자학에서 일탈하여 사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한 動因이 되었다. ③ 40년대이래 이러한 홍대용 실학의 외래영향·내적 원인을 조명하는 논문들은 한

국·조선·중국·일본·미국 등 나라에서 적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논문들을 통하여 홍대용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한流派인 北學派·利用厚生學派의 대표적인 인물임이 확실시되었고, 그의 학문도 氣哲學, 實學的 經世說, 地轉·地球說 등으로 해명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식론의 측면에서 그의 실학 사상을 조명하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동양철학, 특히 한국철학에 있어서 인식론 분야는 연구가 가장 미진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先儒들에 대한 후학들의 연구는 대체로 위와 같이 우주론이나 인성론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식론이나 지식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평가하는 지식론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오지 않았다. 그것은 동양철학에는 인식론이라 할만한 이론이 없다는 생각이 뿐리 깊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철학사를 검토해 보면 인식 자체를 문제삼고 그 과정을 구명해 보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를 홍대용의 철학사상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지금까지 그의 인식론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홍대용이 무엇을 인식대상으로 삼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인식목표에 도달하고자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홍대용의 실학 사상과 철학 체계는 어떠한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인식방법을 통해 구축되었는가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인식 방법론 없이 새로운 실학 사상이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러한 인식론의 측면에서 그의 사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인식론에는 누가 인식하고(認識主體), 무엇을 인식하는가(認識對象) 등의 문제 외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認識方法論이 포함된다. 대체로 홍대용 이전의 유학자들은 인식의 방법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기존의 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즉 인식대상의 문제였다. 만물의 근원 또는 구성요소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생성 변화하여 우주를 이루었는가 등 本體에 대한 인식에 주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학자들이 전혀 인식의 방법론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氣哲學者인 洪大容은 인식 방법론에 대해 비교적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외에도 ‘어떻게 아는가?’의 방법론 탐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인식 방법론에 대한 탐구는 格致說·類推說·實證說·相對說·以天視物說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 그 중 格致說·相對說·以天視物說은 논자의 다른 논문에서 논할 예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類推說과 實證說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類推’의 이론은 서양 철학사뿐만 아니라 중국 철학사에도 일찍 나타나 本體論·心性論·修養論과 함께 古代 학문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朱子에 이르러 類推說은 格物致知說과 함께 인식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그리하여 類推說은 주자학 위주의 조선시대 유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洪大容도 類推說에 대하여 적지 않은 언급을 남겼다. 그는 천하 만물을 모두 궁구할 수 없다는 인식의 한계를 유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

제나 유추라는 지름길을 통해 해결하려는 병폐를 지적하고, 그 보완방법으로 실증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에게서 유추설과 실증설은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홍대용의 유추설과 실증설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朱子 이전의 ‘類’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 본 후 주자의 類推說을 분석해 보고 홍대용의 類推說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주자 유추설과 홍대용 유추설의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朱子 이전의 ‘參驗說’ · ‘效驗說’ 등을 간략히 살펴 본 후 주자의 ‘證驗說’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의 實證說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어떻게 주자설을 넘어서 實證說을 類推說의 보완으로 제시하였으며 실학적 방법으로 삼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홍대용이 어떻게 유추설 · 실증설을 인식의 두 방법으로 확립하고, 또 이를 통해 자연을 탐구하고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주자학을 넘어선 자신의 실학 체계를 구축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II. 朱子의 類推說

### 1. 朱子 이전의 ‘類’의 의미

인식론에서 인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로서 類推는 인식대상들 사이의 일정한 특징 즉 구조 · 기능 · 속성 · 관계 등에서 보이는 유사 · 일치에 의거하여 그것들이 다른 면에서도 유사하거나 일치할 것이라고 추리해 내는 논리적인 추리 절차이다. 類推의 토대는 객관적인 실재 속에 존재하는 類比이다. 유추가 ‘본질적인 특징들’에서의 유사 · 일치로부터 출발하고 실천 · 실증을 통해 끊임없이 교정될 경우, 그것은 인식적 사유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sup>1)</sup>

‘分類’를 통한 사물에 대한 이해는 인류의 일반적인 인식방식이다. 그것의 발전 · 체계화된 형태가 類推說이다. 일찍이 ‘類推’는 중국 철학사에서 인식의 방법 중 하나로서 오랜 기간의 발전을 통해 朱子에 이르러서 類推說로 자리를 굳혔다.

일찍이 商周시기에 ‘類’라는 말이 처음 出現하였다. 그때의 ‘類’는 제사의 명칭이었는데<sup>2)</sup> 이후에 점차 그 뜻이 변화되었다. 『周書』에서는 ‘類’가 ‘善’이라는 뜻으로 쓰였다.<sup>3)</sup> 春秋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의 提高와 함께 주위 사물에 대하여 소박한 分類가 시작되어 ‘類’는 ‘종족의 부류(族類)’ · ‘사물의 부류(物類)’ 등 새로운 뜻을 지니게 되었다.<sup>4)</sup> 春秋말기에는 鄭析의 “부류에 따라 움직인다”<sup>5)</sup>와 孔

1) 물론 유추는 언제나 개연성의 추리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2) 『尙書 · 堯典』, “肆類上帝, 種于六宗.” 이 뜻은 “상제에게 類체사를 지내고, 육종에게 정결히 제사지내다”라는 것이다.

3) 『周書』, “言行不類, 始終相悖.” 이 뜻은 “언행이 善하지 못하면 근본에서부터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4) 『左傳』, “非我族類, 其心必異.” 이 뜻은 “나와 같은 종족이 아니면 그 마음은 반드시 나와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다. 『國語』, “物象天地, 比類百則.” 이 뜻은 “사물은 천지를 본받으니 부류에 따른다면 백가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子의 “가르치는 데 부류를 가리지 않는다<sup>6)</sup>”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때 벌써 그들이 사물을 ‘부류로써 모이고(以類聚)’·‘무리로써 나눈다(以群分)’는 보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말한다. 비록 아직 ‘類’를 인식론적 개념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類’의 시각에서 자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比類推理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孔子는 “한 부분을 예로 들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세 부분을 돌아켜 알지 못하면 다시 더 일러주지 않는다”<sup>7)</sup>라고 하기도 하였다. 하나를 예로 들어주면 나머지 셋을 돌아켜 안다는 것은 한 가지 일로써 서로 유사한 일을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논어』에는 또한 子貢이 공자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

“顏回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압니다.”<sup>8)</sup>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것과 하나를 듣고 둘을 아는 것은 바로 한 마디의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며, 하나의 이치로써 그 밖의 다른 이치를 깨달아 이르는 것이다. 공자는 또한 子貢을 칭찬하며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나간 일을 일러주자 올 것(미래)을 아는구나!”<sup>9)</sup> 여기서 “지나간 일(往)이란 이미 말해준 것이며, 올 것(來)이란 아직 말해 주지 않은 것이다.”<sup>10)</sup> 지나간 것을 알려주면 올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말해준 것으로써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공자가 이미 類推를 인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墨子는 ‘類’에 더욱 많은 뜻을 부여하여 ‘類’를 사물을 분석하는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故’(원인, 이유)와 연계하여 개념을 확정하고(立辭) 논증(辨說)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sup>11)</sup> 그는 ‘부류의 명칭(類名)’을 명칭의 일종으로 삼고, 그 外延은 같은 부류의 사물이라고 하였다.<sup>12)</sup> 부류의 명칭이 반영한 대상간의 ‘類同’은 부분 속성이 같다(有以同)는 것이다. 어떤 사물들은 ‘부류(類)’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같은 속성이 없기(不有同)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개념은 부류(類)로서 성립됨”을 강조하였다.<sup>13)</sup> 동시에 그는 “동일한 부류의 사물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을 뽑아서 취하여(取) 예증으로 삼고, 동일한 부류의 사물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을 미루어 판단하여야(予) 한다”<sup>14)</sup>고 하였다. 여기서 “취한다(取)”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사례를 뽑아서 제시하는 것이며, “판단한다(予)”라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해아려 판단하는 것이다.<sup>15)</sup> 그는 또 “‘推’

5) 鄭析, “動之于其類.”

6) 『論語』, “有教無類.”

7) 『論語·述而』 “舉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8) 『公冶長』 8, 『論語』 . “回也聞一以知十, 賜也聞一以知二.”

9) 『論語·學而』 “告諸往而知來者”

10) 朱熹, 「學而」, 『論語集注』 . “往者其所已言者, 來者其所未言者.”

11) 『墨子·班攻』, “子未察吾言之類, 未明其故也”; 『墨子·公輸』, “臣以三事之攻宋也, 爲與此同類,” “義不殺少而殺衆, 不可謂知類也.”

12) 『墨子·經說上』, “馬, 類也; 若實也者, 必以是名也命之.”

13) 『墨子·大取』, “立辭而不明其類, 則必困矣.”

14) 『墨子·小取』, “以類取, 以類予.”

하나를 예시하여 셋을 들이켜 알게 되며, 하나를 듣고 열을 알게 되는 것이니, 학자는 노력하는 것이 깊어지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익게 된 다음에야 깊이 이해하여 두루 관통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sup>43)</sup>

일에는 날마다 생겨나는 것이 있으니, 반드시 유추하여서 그 암에 통달하게 된다면 고하는 자는 손상하지 않고 듣는 자는 이익이 있을 따름이다.<sup>44)</sup>

이렇게 유추를 통해 하나를 알면 셋을 들이켜 알고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달으려는 목적은 암에 통달하여 학문을 더욱 깊게 하려는 데 있으며, 窮理를 더욱 무르익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豁然貫通의 경지에 이르러 궁극적인 도덕 원리를 窮究하는 데 있다.

당연히 그도 유추의 방법으로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탐구도 주장한다. 그러나 ‘큰 것’의 확립이 유추의 주요 목적이며, ‘큰 것’이 확립되면 그것으로 미루어 나아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천문학은 나름대로 학문의 한 분야이다. 만약 이치를 궁구하려고 한다면, 역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큰 것(大者)을 먼저 확립한 후에 다른 것으로 미루어 나아가면 역시 알기 어려운 것은 아니며, 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sup>45)</sup>

“큰 것”을 확립한다는 것은 천문학이나 자연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대부가 습득해야 할 학문, 봄에 지녀야 할 교양을 가리킬 것이다. 좀더 한정해서 말한다면 인간학과 도덕원리이다. 주자 자신도 자연학의 영역에 들어서서 연구와 사색을 거듭하면서, 뛰어난 관찰이나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만년의 10년 즉 60대에 들어선 후의 일이다. 확실히 그는 그 동안 인간학을 이론적으로 기초 지우는 것으로서의 자연학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았다. 인간학에서부터 출발한 주자의 학문체계는 자연학에서 이론적으로 완결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때 그의 체계에서 자연학은 이미 자립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의 문학에서는 천문관측의 실습까지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학만의 전개는 허용되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인간학이 있고 난 후의 자연학인 것이다. 그런 “큰 것”, 근본이 되는 학문이 확립된 후에 배워야 할 지엽적인 학문이 자연학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자학은 어디까지나 사대부의 학문이었고 유추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윤리도덕의 확립이였다. 즉 유추의 궁극적인 목적은 논리적 추리 절차를 이용하여 윤리도덕의 확립과 인간의 내면적 수양을 이룩하려는 데 있다.

43) 「答姜叔權」, “舉一而三反, 聞一而知十, 乃學者用功之深, 窮理之熟, 然後能融會貫通, 以至于此。”

44) 『晦庵先生朱文公文集·答呂伯恭』, “事有口生者, 須推類以通之, 則告者不費而聞者有深益耳。”

45) 『晦庵先生朱文公文集·答曾無疑書』, 卷六十. “曆象之學, 自是一家. 若欲窮理, 亦不可以不講. 然亦須大者先立, 然後及之. 則亦不至難曉, 而無不通矣.”

## 2) 類推의 根據와 方法

주자는 類推가 가능한 근본적인 根據는 理가 비록 개별적 현상에서는 특수로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보편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대개 만물은 각기 하나의 理를 갖추고 있으나, 그 만가지 理가 하나의 근원에서 같이 나온 것이니, 이것이 類推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다.<sup>46)</sup>

이렇게 보자면 나를 포함한 인간과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모두 理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다. “理는 物의 理이고 知는 我心의 知이므로”<sup>47)</sup>, “理를 제대로 궁구하지 못한 까닭에 내 知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惟於理有未窮, 故其知有不盡也).” 그럼으로 “저 物을 格하면 내 知가 致한다.”<sup>48)</sup> 즉 “物我一理”<sup>49)</sup>라는 것이다.

物의 理에 대해 더 많이 궁구하면 할수록 我의 知는 더욱 넓어진다. 그러므로 物·我是 사실상 하나의 理(一理)일 따름이다. 저쪽을 밝히면 이쪽이 밝아지는 것이다.<sup>50)</sup>

物·我是 一理이다. 저쪽(物)이 밝혀지면 이쪽(我)이 밝아지는 內外 합일의 道이다. 一物의 理가 格해지면(物格),一事의 知가 도래(知至)함으로 저쪽 이쪽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sup>51)</sup>

그러므로 “道의 극치는 物·我が 진실로 하나이다.”<sup>52)</sup> 따라서 나의 理를 궁구하는 것이나 만물의 理를 궁구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반드시 만물의 理를 궁구하려고 하면서 오로지 밖에 있는 物에만 집착하면 내 속의 理에는 밝지 못함이 있게 되고, 단지 衆物의 비슷한 종류에서 같음만 구하고 그 각각의 物에 性情이 다름을 궁구하지 않는다면 理의 精微함을 살피지 못함이 있게 된다<sup>53)</sup>

46) 『大學或問』78면. “蓋萬物各具一理，而萬理同出一原，此所以可推而無不通也。”

47) 『朱子集』4, 「答江德功」, “知者, 吾心之知; 理者, 事物之理。”

48) 『朱子語類』36, “格那物, 致吾之知。”

49) 주자가 “정자가 말한 物我一理는 저쪽을 밝히면 이쪽이 밝아지는 경지이다(程子所謂物我一理, 纔明彼卽曉於此之竟也. 『大學或問』)”라고 말한 것을 보면 物我一理는 원래 程子에게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50) 『朱子語類』, “物之理窮得愈多, 則我之知愈廣. 其實只是一理, 才明彼, 卽曉此.” 錢穆, 『朱子新學案』제2책, 518쪽에서 재인용.

51) 『朱子集』5, 「答汪長儒別紙」, “物我一理, 續明彼卽曉此. 此內外之道也. 一物之理格卽一事之知至, 故無在彼在此.”

52) 『朱子集』, “夫道之極致, 物我固爲一矣.” 박성규, 『大學 格物論 小考』(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2.)36면에서 재인용.

53) 『大學或問』, 91면. “其欲必窮萬物之理, 而專指外物, 則於理之在已者, 有不明矣. 但求衆物比類之間, 而不究一物性情之異, 則於理之精微者, 有不察矣.”

이렇게 주자는 한 편으로는 나의 理에 대한 궁구를, 다른 한 편으로는 만물의 理에 대한 궁구를 交互·竝行할 것을 역설하였다. 왜 그러해야 하는가? 나의 理가 모든 만물의 理와 같으면 내 속의 理를 궁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고, 밖에 나아가 궁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나는 이미 현상 속의 특수존재이므로 내 속에 있는 理는 이미 완전자가 아니라 기질과 섞여 있는 불완전자이므로<sup>54)</sup> 形器의 私를 갖게 되어 완전자를 파악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모두 正通한 氣를 얻었으나 그 차이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통합에도 혹 맑고 탁한 차이가 없을 수 없으며, 그 바름에도 아름답고 추악한 다름이 없을 수 없어, 그 받은 기질이 맑은 사람은 지혜롭고 탁한 사람은 어리석으며, 아름다운 사람은 어질고 추악한 사람은 不肖하니 또한 능히 같지 않음이 있다.<sup>55)</sup>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궁구해 갈 수밖에 없으니 사람에 따라 유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주자는 類推의 구체적인 方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한 가지 일에 대해 궁구하여 얻지 못하면, 또 달리 한 가지 일을 궁구하는 것이니 그 쉬운 것을 먼저하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먼저 하기도 하는 것은 각각 사람 능력의 깊고 얕음에 따른 것이다”<sup>56)</sup>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難易와 遠近의 차이로부터 초래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쉬운 것, 가까운 것부터 먼저 유추하는 방법이다. 類推의 방법은 아무 사물 간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類推 과정에서는 반드시 쉬운 것과 가장 가까운 테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확실하게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며, 비약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나아가야 하며, 이와 같이 하려면 전녀뛰어서는 안 된다. 만약 멀리 가서 찾는다면 자신에게 절실하지 못하게 된다.<sup>57)</sup>

이를 좀 더 부연해 보면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남에 이르러 사람의 보편성을 깨닫고, 나아가 동물에 이르며, 더 나아가 식물에 이르고, 여기서 生物에서 깨달은 것을 無生物에까지 적용해 가는 것이다. 그 출발이 사람에 있고, 사람에서 얻은 보편성을 사람 이외의 모든 존재자에 적용해 가는 것이다.<sup>58)</sup> 이처럼 자기에서 남으로, 사람에

54) 『性理大典』卷30. “若纔說性時，則便是來氣稟以言。”

55) 『大學或問』23면. “然其通也，或不能無清濁之異，其正也，或不能無美惡之殊，故其所賦之質，清者智而濁者愚，美者賢而惡者不肖，又有不能同者。”

56) 『大學或問』78면. “若一事上窮不得，且別窮一事，或先其易者，或先其難者，各隨人淺深。”

57) 『性理大全』卷48. “問：以類而推之說。曰：是從已理會得處推將去，如此便不隔越，若遠去尋詩，則不切於已。”

서 모든 존재로 확산해 나가는 것에 대해 주자는 “밖으로 남에 이르면 남의 理가 나의 理와 다르지 않고, 멀리 物에 이르면 物의 理가 사람의 理와 다르지 않다”<sup>59)</sup>고 하였다.

주자는 또 이러한 방법을 독서하는 데에도 활용하라고 하였다. 개개의 특수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널리 배워서 “대체적인 풀격”을 이해하고, 또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통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초학자은 거기서부터 학문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은 먼저 쉬운 것, 이해하기 빠른 것을 골라서 먼저 읽어도 된다. 예를 들면 그는 “『尚書』를 읽을 때는 우선 그 중에서 알기 쉬운 곳을 골라서 읽으라”<sup>60)</sup>고 하였다.

둘째, 어려운 것, 먼 것부터 먼저 유추하는 방법이다. 유추는 일반적으로 쉬운 것, 가까운 것부터 먼저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능력의 깊고 얕음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쉬운 것을 먼저하나 뛰어난 사람은 어려운 것을 먼저하기도 한다. 즉 “어려운 것을 먼저 하기도 하는 것은 각각 사람 능력의 깊고 얕음에 따른 것이다.”

### III. 홍대용의 類推說

#### 1. 類推說 응용

홍대용도 類推를 중요한 인식방법으로 인정·활용하였다. 그의 유추설은 유추의 의미·유추의 근거 등 원리 면에서는 주자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유추의 목적·유추의 대상·유추의 내용 등이 주자의 유추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데 있다.<sup>61)</sup>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주자가 比類推理하는 목적이 윤리도덕의 확립과 인간의 내면적 수양에 있다면, 홍대용의 유추의 목적은 주로 서양과학의 전래와 함께 관심을 가졌던 천문학 등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에 있었다. 주자의 유추의 대상은 개별적 현상에서 특수로 드러나는 理 속의 보편성인 道德原理이다. 그러나 홍대용의 유추의 대상은 자연과학과 日用當行之事인 實事·實物이었다. 따라서 주자의 유추의 내용이 주로 윤리 도덕 방면이었다면 홍대용의 유추의 대부분 내용은 서구 근대 과학의 전래와 함께 관심을 가졌던 천문학 등 자연과학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주자와 홍대용의 문제의식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홍대용도 주자의 경우처럼 세상의 천지 만물을 천차만별

58) 金敎斌, 「本體論과 心性論을 통해 본 朱子의 格物致知 이해」, 『中國思想論文選集』 朱子哲學(1) 도서출판불惑문화사, 96.6.

59) 『大學或問』 83면, “外而至於人，則人之理不異於己也；遠而至於物，則物之理不異於人也。”

60) 『朱子語類』, 「甘節錄」, 卷 78. “讀尚書，只據其中易曉底讀。”

61) 홍대용의 저서에서 직접적으로 유추의 의미·근거·목적에 대한 글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나 그의 『의산문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사상을 살펴보면 유추의 의미·근거 면에서는 주자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유추의 목적은 주자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지만 근본과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어 나눌 수 있으며 같은 묶음에 속하는 것들은 그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類推하여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약간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밖의 것과 경험한 것이 서로 같은 상황임을 미루어 판단하는 유추법을 응용한다. 홍대용의 類推方法은 주자의 類推方法보다 좀 더 구체적인 동시에 서구 근대 과학사상을 수용하여 보다 경험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동일 성질의 사물을 부분을 알면 전체를 유추할 수 있으며, 전체를 알면 부분을 유추할 수 있고,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고 다시 다른 부분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 그의 유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어떤 때는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유추는 생략되고 부분에서 부분으로의 유추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석은 무쇠를 당기고 호박은 티끌을 끌어당기게 되니 근본이 같은 것끼리 서로 감응하고 작용하는 것은 物의 이치이다. 그러므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해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요, 潮水가 위로 솟는 것은 달에 근본을 두기 때문이다. 만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땅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sup>62)</sup>

홍대용은 여기서 자석과 무쇠, 호박과 티끌 등의 개별적인 관계를 归納推理하여 근본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감응하는 것이 만물의 이치라는 전체적인 보편성을 도출해 낸다(부분에서 전체로).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근본이 같은 것끼리 서로 감응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라는 일반 원리를 이용하여 다시 개별적인 사물의 이치를 유추한다(전체에서 부분으로). 즉 해에 근본을 두는 불꽃은 위로 올라가고, 달에 근본을 두는 潮水는 위로 솟으며, 땅에 근본을 두는 만물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다시 부분(부분→전체→부분)으로 유추해 나간다.

그는 또 천문을 관찰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유추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개 五緯는 해를 훨씬 빼고 있어 해를 중심으로 삼고 해와 달은 지구를 훨씬 빼고 있어 지구를 중심으로 삼는다. 金星과 水星은 해에 가깝게 있는 까닭에 지구와 달은 包圈 밖에 있으며, 三緯는 해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에 지구와 달은 包圈 안에 있다. 금성과 수성 안의 수십 개의 작은 별은 모두 해를 중심으로 삼고, 三緯 결의 너덧 개의 작은 별은 모두 각 緯를 중심으로 한다.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 이와 같다면 각界에서 보는 관점도 미루어(類推) 알 수 있다.<sup>63)</sup>

62) 「蠶山問答」, 『湛軒書』上, 330면, “且磁石吸鐵，琥珀引芥，本類相感，物之理也。是以火之上炎，本於日也；潮之上湧，本於月也；萬物之下墜，本於地也。”

63) 「蠶山問答」, 『湛軒書』上, 334면, “蓋五緯包日，而以日爲心；日月包地，而以地爲心。金水近於日，故地月在包圈之外；三緯遠於日，故地月在包圈之內。金水之內數十小星，並心於日；三緯之旁四五小星，並心於各緯。地觀如是，各界之觀，可類而推。”

五緯는 해를 중심으로 돈다. 해와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금성과 수성 안의 수십 개의 작은 별은 모두 해를 중심으로 돈다. 三緯 곁의 너덧 개의 작은 별은 모두 각 緯를 중심으로 돈다. 이러한 부분적인 개별 사례들에서 모든 천체는 그것의 중심을 돈다는 전체적인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부분에서 전체로, 유추 생략). 이러한 전체적인 보편 원리들을 같은 종류의 다른 부분으로 미루어 나아가 부분적인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 이와 같다면 부분적인各界에서 보는 관점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것이다(부분에서 부분으로). 여기서 사용한 유추법은 부분에서 전체를 감안하고 부분이 어떤 조건인지를 안 후 다른 부분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즉 부분에서 전체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부분(부분→전체→부분→부분)으로 유추해 나가는 방법이다. 다만 여기서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내용은 생략하고 부분에서 부분으로 유추하는 형식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는 또 人體에 동서남북이 없다는 명제를 가지고 地·日·星의 上下가 空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사람의 발은 땅에 떨어지는데 머리는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원인은 위와 아래의 형세가 그렇게 된 때문이며, 사람의 가슴과 배, 윗팔과 오른팔이 동서남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그러한 세력, 즉 ‘동서남북이 空’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미루어 해와 달과 별의 상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땅과 해와 달과 별의 상하가 없는 것은 또한 사람의 몸에 동·서와 남·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sup>64)</sup>

여기서 그는 사람의 몸에는 동서남북이 없다는 부분적인 사례로부터 모든 존재는 동서남북이 없다는 전체적인 원리를 도출하여(부분에서 전체로, 유추 생략) 다시 부분적인 사례로 미루어 나아가 땅·해·달·별도 상하가 없다고 하였다(부분에서 부분으로). 여기서도 부분에서 전체로의 유추는 생략되고, 부분에서 부분으로 유추해 나가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2) 주자의 유추법은 개별적인 관찰사례로부터 개별적인 사례를 유추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적인 관찰사례로부터 개별적인 사례를 유추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일반적 원칙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홍대용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자설을 넘어서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관찰사례들로부터 일반적 원칙을 도출하는 데 이것은 서양 인식론에서의 彙納推理法과 유사하다.

그는 數千數萬가지의 개별적 사물을 중에서 불을 근본으로 하는 것들을 陽의 종류로 묶어 놓고, 數千數萬가지의 사물을 중에서 땅을 근본으로 하는 것들을 陰의 종류로 묶어 놓았다(부분→전체). 그리고 이러한 같은 종류끼리의 屬性·特徵·根本을 彙納하여 一般法則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陰陽의 학설이라는 것이다.

64) 「靈山問答」『湛軒書』上, 330면. “地日月星之無上下, 亦猶爾身之無東西與南北也.”

陽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모두 불에 근본을 두었고, 險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땅에 근본을 두었다. 옛 사람이 여기에 깨달은 바가 있어 음양의 학설이 있게 되었다.<sup>65)</sup>

또한 그는 이러한 유추법을 확대·응용하여 사람들은 별에게서 군신 의리를, 개미에게서 兵陣의 법을, 박쥐에게서 예절제도를, 거미에게서 그물을 치는 법을 참고하였는데 이것들로부터 ‘聖人은 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옛 사람이 백성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 物을 본받는 데 근거를 두었다. 대체로 君臣간의 의리는 별에게서, 兵陣의 법은 개미에게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그물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취해 온 것이다. 깨닭에 ‘聖人은 萬物을 스승으로 삼는다’ 하였다.<sup>66)</sup>

위에서 예를 든 것 외에도 홍대용이 사물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러한 類推의 방법을 사용한 예를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인 『盤山問答』에서만 하더라도 類推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그의 地球說은 일식·월식, 해무리·달무리, 수평선·지평선 등에 대한 관찰 결과를 통해 ‘땅(지구)은 둥글다’는 보편성을 유추해낸 것이다.

3) 홍대용은 또 동일 근본 사물들은 전체를 알면 부분을 미루어 알 수 있으며, 일반 원리를 알면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원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서양 인식론에서의 演繹推理法과 유사한 방법이다.

홍대용은 기후의 변화와 차이를 헷빛의 強弱이라는 전체적인 보편 원리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구가 따뜻한 것은 헷빛을 받기 때문이며, 그 따스함에 약간 따뜻함과 극히 따스함이 있음은 헷빛이 비스듬히 쏘느냐 직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이치를 살펴보면 아침과 낮의 기후가 다른 까닭이 분명해 질 것이다. 아침과 낮의 기후가 다른 까닭이 분명해지면 겨울과 여름의 기후가 다른 까닭이 분명해지며, 겨울과 여름의 기후가 다른 까닭이 분명해지면 南과 北의 기후가 다른 까닭도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sup>67)</sup>

65) 「盤山問答」, 『湛軒書』上, 349면. “雖然，陽之類有萬，而皆本於火，陰之類有萬，而皆本於地，古之人有見於此，而有陰陽之說。”

66) 「盤山問答」, 『湛軒書』上, 327면. “是以古人之澤民御世，未嘗不資法於物。君臣之義，蓋取諸蜂，兵陣之法，蓋取諸蟻，禮節之制，蓋取諸拱鼠，網罟之設，蓋取諸蜘蛛。故曰聖人師萬物。”

67) 「盤山問答」, 『湛軒書』上, 348면. “地之有溫，受於日也。溫有微極，日之斜直也。察乎此，則朝晝之異候，明矣。朝晝之異候明，則冬夏之異候，明矣。冬夏之異候既明，則南北之異候亦明矣。”

여기서 그는 헷빛을 받으면 따뜻하고, 그 따뜻함의 정도 차이는 헷빛의 强弱, 즉 헷빛이 비스듬히 쏘느냐 직사하느냐(斜直)가 관건이라는 전체적인 보편적 원리로부터 아침과 낮의 기후차이, 여름과 겨울의 기후차이, 南과 北의 기후차이 등 개별적인 부분 현상을 미루어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전체로부터 개별적인 부분으로의 유추이다.

그는 또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유추법을 독서하는 데에도 응용한다.

글 읽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大義를 살핀 다음에 그것을 미루어서 자세한 부분을 생각하며(推曲) 반드시 일을 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 章句에 얹매이지 말아야 한다.<sup>68)</sup>

글 읽을 때에도 먼저 전체적인 大綱·大義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미루어서 자세한 내용과 부분적인 문단, 글귀 등을 생각하면서(推曲) 공부하여야 하며, 일을 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大義는 살피지 않고 節과 글귀(章句)에만 얹매이면 공부하는 목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4) 홍대용은 또 類推는 반드시 확실하게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하여 먼 곳으로 미루어 나아가야 하며, 안으로부터 밖으로 미루어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추법은 주자의 유추법과 유사하다.

홍대용은 천지의 體狀을 알고자 할 때는 양극을 정한 후에 가까운 땅을 먼저 측량하고, 그 다음 미루어 천에 미쳐야 한다고 하였다.

천지의 體狀을 알고자 할 때는… (즉) 그 천지의 體狀을 측정하고 미루어 계산하는(推之) 차례는 반드시 먼저 辨方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定尺을 공부하여야 한다. 辨方은 南極·北極의 양극을 测量하는 것이고, 定尺은 땅을 측정하는 것이니, 우선 지구를 측정하고 다음에 모든 천체에 옮겨가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천지의 體狀에 대해 가히 그概況을 얻게 된다.<sup>69)</sup>

천체는 廣大하고 복잡하며 다양하므로 한꺼번에 측량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가깝고 알기 쉬운 땅부터 먼저 측량하고 그 다음에 먼 곳으로 미루어 나아가 점진적으로 모든 천체에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의 방법으로 유추해 나아가면 천지의 體狀에 대해 가히 그概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언급들에서 우리는 그가 事事物物을 직접 접하여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인식능력 한계를 類推의 여러 방법으로 넓히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類推說은 歸納방식 외에도 논리적 推理 형식을 띤 훌륭한 가설 演繹的 방법으로

68) 「自警說」, 『湛軒書』上, 273면. “讀書必… 先觀其大義, 而後推其曲, 必措諸事爲, 而毋繖繞於章句.”

69) 「測量說」 『湛軒書』下, 177면. “故欲識天地之體狀, …其窺推之序, 必先辨方, 其次定尺, 辨方以量極, 定尺以度地. 先測地球, 次及諸天, 凡天地之體狀, 可得其梗槩矣.”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방법을 보면 그가 현대적 의미의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소양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類推說 비판

홍대용은 한 편으로는 위에서와 같이 유추를 중시하여 미루어 생각하지(推索) 않는 습관을 비판한다. “세상 사람은 옛 습관에 안착하여, 살피지 않는다. 이치가 눈 앞에 있는데도 일찍이 연구하여 미루어 찾지 않기 때문에 일평생을 하늘을 이고 땅을 밟건만 그 실정과 현상에 캄캄하다.”<sup>70)</sup>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잘못된, 무분별한 유추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경계한다. 그는 유추의 병폐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아무 사물이나 부류끼리 모으기를 좋아하며 무리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리하여 類聚와 分屬의 弊端이 생기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대저 類聚와 分屬은 다 옛것이 아니다. 著書를 하면 類聚하기를 일삼아서 지름길로 가기를 좋아하여 빨리 이루고자 하는 폐단이 생겨난다. 經을 해석할 때는 分屬하는 데 힘써 記誦 訓詁의 學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書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 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後學에게 혜택 줌이 밝고 또 切實하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다만 위에 좋아하는 자 있으면 아래에서 반드시 더 심하게 함은 理의 常이라 칠십자가 죽으니, 大義가 어긋나 근본을 버리고 끝에 따르며 안을 가벼이 하고 밖을 重히 여겨 著書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깨달은 바(實得)는 얻어들을 수 없고, 理를 말함이 정밀하여 질수록 마음은 날로 荒廢하여지니, 類聚와 分屬의 法이 그 폐를 열지 아니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71)</sup>

그는 여기서 類聚와 分屬을 문제 삼고 있다. 類聚라는 것은 사람들이 著書할 때 착실하게 하나 하나씩 연구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류의 사물들을 모아(類聚) 그 동일함만을 유추하여 지름길로만 가려하는 것이다. 分屬이란 經을 해석할 때 記誦 訓詁에 치우치는 것이다. 이는 아무 사물이나 유추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일 근본 사물만이 유추가 가능하다는 유추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類聚와 分屬은 진정한 유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며 안을 가벼이 하고 밖을 重히 여기는 것으로서, 著書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실제로 깨달은 바는 적고, 理를 말함이 정밀하여 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荒廢하여지니, 類聚와 分屬의 弊端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만물을 檢證 없이 임의적으로 類聚·分屬하여 음양과 오행의 성질에 궤 맞추는 것은 진정한 유추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天地의 탐구는 간단히 음양

70) 「蠶山問答」, 『湛軒書』上, 332면. “世之人，安於故常，習而不察，理在目前，不曾推索，終身戴履，昧其情狀。”

71) 「寄書杭士嚴鐵橋誠又問庸義」 『湛軒書』上, 50면. “夫類聚與分屬，皆非古也。著書，喜類聚而好逕，欲速之弊作，解經，務分屬而記誦訓詁之學興。是以其書非不備也，其言非不善也，其嘉惠後學非不明且切也。但上有好焉，下必甚焉，理之常也。七十子喪，而大義乖舍本而趨末，輕內而重外。著書愈多，而實得无聞，談理愈精，而心界日荒，則類聚分屬之法不能不啓其弊也。”

과 오행에 類聚·分屬하여서는 안 되며 동시에 意志로 연구해서도 안되고(不可意究), 理로 탐구해서도 안 된다(不可理索)고 하였다.<sup>72)</sup> 그는 意志로 연구하고(以意究)理로 탐구하는(以理索) 것을 문제 삼아 음양설과 오행설을 비판한다.

그는 『의산문답』에서 日蝕과 月蝕도 음양의 성질에 끼 맞추어 日蝕이란 음이 양을 향거하는 것이고 月蝕이란 양이 음을 향거하는 것이라는 음양설을 비판한다.

음양 학설에 얹매여 이치에 막히고 天道를 살피지 않은 것은 先儒의 허물이다. 대저 달이 해를 가리우면 일식이 되고 지구가 달을 가리면 월식이 된다. 경도·위도가 같고 三界(해·달·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면 서로 가려져서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것이 운행의 뜻한 법칙이다.<sup>73)</sup>

홍대용은 또 자연 현상을 무조건적으로 유추하여 隱과 陽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전통적인 음양설을 비판한다. 그는 계절의 변화라든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추위와 더위를 隱陽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을 비판하고, 대신에 햇빛의 멀고 가까움(遠近), 햇빛의 깊고 얕음(深淺), 햇빛의 강하고 약함(強弱), 햇빛이 비스듬히 쏘느냐 직사하느냐(斜直)가 관건이라고 하였다.

지구가 따뜻한 것은 햇빛을 받기 때문이며, 그 따스함에 약간 따뜻함과 극히 따스함이 있음은 햇빛이 비스듬히 쏘느냐 직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근본을 궁구해 보면 실로 햇빛의 얕고 깊음에 종속되니, 후세 사람들의 말처럼 천지 사이에 따로 隱陽 두 氣가 있어서 수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면서 造化를 주관한다고 할 수는 없다.<sup>74)</sup>

이렇게 그는 천지 사이에 隱氣와 陽氣가 있어서 만물의 生長·消滅 등 造化를 주관한다는 음양론을 비판한다. 음양은 햇볕의 遠近·深淺·強弱·斜直의 차이로 환원되므로 그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임의로 오행의 數를 정하고 억지로 맞추고 유추하여 가는 지리한 수작을 지적하면서 오행설을 비판한다.

오행의 數는 원래의 정해진 의논이 아닌데, 術數를 쓰는 사람들이 이를 祖宗으로 삼아 河圖와 洛書로써 억지로 맞추고 周易의 象數로써 깊이 추리하여, 生克이니 飛伏이니 하는 지리한 수작으로 여러 術數를 장황스럽게 이야기하나 끝내 그런 이치는 없는 것이다.<sup>75)</sup>

72) 「蠶山問答」, 『湛軒書』下, 177면. “故欲識天地之體狀, 不可意究, 不可以理索。”

73) 「蠶山問答」, 『湛軒書』上, 344면. “實翁曰: 拘於陰陽, 泥於理義, 不察天道, 先儒之過也。夫月掩日, 而日爲之蝕, 地掩月, 而月爲之蝕, 經緯同度, 三界參直, 互掩爲蝕, 其行之常也。”

74) 「蠶山問答」, 『湛軒書』上, 348면. “地之有溫, 受於日也, 溫有微極, 日之斜直也。…究其本, 則實屬於日火之淺深, 非謂天地之間, 別有陰陽二氣, 隨時生伏, 主張造化, 如後人之說也。”

75) 「蠶山問答」, 『湛軒書』上, 350면. “故五行之數, 原非定論, 術家祖之, 河洛以傳會之, 易象以穿鑿之, 生克飛伏, 支離繚繞, 張皇衆技, 卒無其理。” 飛伏: 점치는 데 쓰는 술어로, 飛神과 伏神을 말함.

虞·夏 때에는 六府를 말하였으니, 水·火·金·木·土·穀이 그것이요, 周易에는 八象을 말했으니 天·地·火·水·雷·風·山·澤이 그것이요, 洪範에서는 五行을 말하였으니 水·火·金·木·土가 그것이요, 부처는 四大를 말하였으니 地·水·火·風이 그것이다. 옛 사람들은 때에 따라 말을 만들어 만물의 총칭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도 보낼 수 없고 한 가지도 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sup>76)</sup>

홍대용은 만물을 구성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반드시 다섯 가지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虞夏의 六府, 周易의 八象, 洪範의 五行, 佛教의 四大 등을 들어 전통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옛 사람들은 때에 따라 말을 만들어 만물의 總名으로 삼았으나 반드시 정해진 수가 있어서 여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오행도 원래 다섯이라 단정한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이를 河圖와 洛書에 연결시키고 周易의 象數로써 類推하여 相生說이니 相克說이니, 飛神이니 伏神이니 하는 장황하고 복잡한 이론으로 발전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홍대용은 그런 억지로 맞추는 유추법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오행설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홍대용은 ‘類推’를 중요한 인식방법으로 인정·활용하지만 그것의 잘못된 사용 특히 아무 사물이나 以意究, 以理索하여 類聚·分屬하는 방법 및 음양론과 오행론적 사고 방식을 경계하였다. 유추법은 어떤 사물의 특징으로써 그와 같은 종류인 기타 사물들의 특징을 미루어 아는 일종의 推理방법으로서 인간의 인식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인식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는 어디까지나 蓋然적 추리이므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다. 그 결론의 정확여부는 실천·실증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대용은 이러한 유추법을 補正하는 방법으로 實證說을 제기하였다.

#### IV. 朱子의 實證說

##### 1. 주자 이전의 “參驗說” “效驗說”

實證<sup>77)</sup>은 인식방법 중의 하나로서 일체의 초월적인 思辨을 배제하고 사실에 의하

76) 「靈山問答」, 『湛軒書』上, 350면. “實翁曰：虞夏言六府，水火金木土穀，是也。易言八象，天地火水雷風山澤，是也。洪範言五行，水火金木土，是也。佛言四大，地水火風，是也。古人隨時立言，以作萬物之總名，非謂不可加一，不可減一，天地萬物，適有此數也。”

77) 서구의 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서유럽에서 번창한 철학 운동이다. 콩트, 마하 등이 대표자들이다. 경험되었던 사실의 배후에 思辨이나 공상으로 초월적인 존재나 추상적인 實體를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인식의 대상을 경험적 소치로서의 사실에 국한하면서 이것을 그 자체로 해명하려는 입장. 콩트가 인간의 지식을 소위 실증적 단계에서 완결되는 것이라 하고 이것을 최고의 단계로 보았던 것은 실증주의의 입장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설은 思辨에 의한 구성이나 架空의 상상 등이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에 기초한 것, 경험으로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한다. 동시에 실효성이 있는 것, 유용한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실용주의 제창자인 콩트(Comte)는 실증이라는 것을 ‘사실적이며 유용한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본문의 실증설은 이와 다른 동양적인 실증설이다. 서구의 실증설과 동양의 실증설의 차이와 비교는 다음의 연구테마로 남기고 본문에서는 생략한다.

여 증명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 인식방법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실의 실증적 연구는 절대성에 대한 일체의 志向을 배격하고, 우리들의 정신적·신체적 상황에 입각해 언제나 상대적인 진리를 확립하려 한다. 실증적 정신은 현상의 현실적인 법칙을 찾아내어, 이 법칙으로서의 일반적 사실에 특수 사실을 결부시킴으로써, 그 특수한 사실의 현실성과 응용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따라서 실증설은 합리적 경험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실증은 실효성이 있는 것, 유용한 것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며 관찰, 관측, 실험을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實證’이란 용어는 중국철학사에서 별로 쓰이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용어로 ‘參驗’ · ‘符驗’ · ‘效驗’ · ‘貴驗’ · ‘證驗’ 등이 있다. ‘參驗’이라는 철학범주의 맹아는 춘추 말, 전국 초기에 이미 나타났다. 孔子는 사람에 대하여 쉽게 칭찬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 만약 칭찬을 하려면 반드시 그를 직접 써보고 검증을 거쳐야만 가능했다.<sup>78)</sup> 여기서 직접 써본다는 방법에서 검증을 통해 眞偽를辨别한다는 사상의 맹아를 볼 수 있다.

墨子는 중국철학사에서 제일 먼저 진리의 기준 문제를 제기한 학자이다. 그는 三表를 진리의 기준으로 보았다.

논의하는 말에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말에 기준이 없는 것은 마치 움직이는 녹로위에다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세워두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대한 논변에서, 그 구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에는 반드시 三表가 있어야 한다. 三表란 무엇인가? 墨子가 이르기를 根本하는 바, 根源을 두는 바, 사용하는 바의 세 가지라고 하였다. 무엇을 근본으로 할 것인가? 위로 옛 聖王의 事蹟을 근본으로 한다. 어디에 근원을 둘 것인가? 아래로 백성의 耳目의 실제를 살피는 데 근원을 둔다. 무엇에 사용할 것인가? 刑罰政治를 일으켜 국가 안의 백성의 이익을 살핀다. 이것이 이른바 언론에 있어야 할 三表이다.<sup>79)</sup>

여기서 三表란 세 가지 진리의 기준을 가리킨다. 그는 진리의 기준으로 역사적 경험과 직접 경험, 그리고 실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진리의 기준을 이와 같이 경험과 실제 효과에 둔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을 관념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경험과 실제 효과란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묵자의 三表法은 결과적으로 진리의 기준을 行(實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그 중 제 3表에는 국가·백성·인민의 이익을 是非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론의 사회 효과를 중요시하는 소박한 실천 기준의 맹아가 짙 트고 있었다.

78) 『論語·衛靈公篇』, “吾之于人也，誰毀誰譽？如有所譽者，其有所試矣。”

79) 『墨子』 「非命上」. “子墨子曰：言必立儀，言而毋儀，譬猶運鈞之上而立朝夕者也，是非利害之辨不可得而明知也。故言有三表。何謂三表？子墨子曰：有本之者，有原之者，有用之者。於何本之，上本之于古者聖王之事；於何原之，下原察百姓耳目之實；於何用之，發以爲行政，觀其中國家百姓人民之利。此所謂言有三表也。” 鈎：녹로. 항아리, 독, 병 따위의 원형 오지 그릇을 만들 때 쓰는 바퀴 모양의 회전원반. 이 바퀴를 회전시켜 갖가지 오지그릇을 자유로이 만들 수 있으므로 轉하여 만물의 造化의 뜻으로 쓰이며 하늘 곧 조물주를 ‘大鈎’ 혹은 ‘洪鈎’이라 함.

戰國末期 사회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孔墨사상의 기초하에 莊子의 ‘齊是非’의 상대주의에 견주어 ‘參驗’·‘符驗’이라는 중요한 별주가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屈原은 사람과 군자의 善惡의 변별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목수를 예를 들어 재주가 있는 목공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그더러 적접 몇 번 나무를 깎아 보게 해야만 깎은 것이 바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sup>80)</sup>고 하였다. 그럼으로 그는 “비교·검증하여 그 실질을 고찰해 본다(參驗考實)”라는 결론을 내렸다.<sup>81)</sup>

荀子는 ‘符驗’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식에 부합하는 바가 있는 것을 지혜(진리)라고 한다.”<sup>82)</sup> “옛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날에 부합됨이 있어야 하고, 하늘에 대해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증협이 있어야 한다. 무릇 논한 것에는 辨合이 있고 符驗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앉아서 말하고, 일어나서 실천하며, 널리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sup>83)</sup> 여기서 ‘辨’은 ‘別’과 같은 뜻으로써 고대 중국에서 어떤 물건을 빌려줄 때 사용한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다. ‘符’도 고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符信으로서 쌍방이 하나씩 갖는다. 순자는 이러한 “나누어 가진 것이 합해지고(辨合)”, “부신이 검증을 통해 실제와 부합되는(符驗)” 등의 比喻로 인식은 단지 “行(實踐)”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으며 객관사실과 부합될 때에만 眞知라고 하였다.

韓非子는 순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參驗’의 학설을 제기하였다. 그는 실제 功效로 사람들의 인식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실증경험을 강조하면서, ‘參驗’의 학설을 자신의 진보적인 사회역사관과 法·術·勢가 서로 결합하는 정치 주장의 인식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정확한가의 여부는 주관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단지 ‘參驗’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실증경험(參驗)이 없는데도 반드시 그렇다고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도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엉터리이다.”<sup>84)</sup> 여기서 ‘參’이란 참고조사로써 비교하고 검토하는 것이며, ‘驗’이란 증협으로써 실증의 의미이므로 실증경험이 곧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聖人之術을 아는 王主는 세속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名實이 부합되는가의 여부로 시비를 판정하며, 비교·검증을 통해서 그 여론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sup>85)</sup>고 하였다. 그는 또 현명한 군주는 “여러 검증에 따라서 진언한 실질을 검토했으며, 뒤의 것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것에 응했으며, 법에 따라서 대중을 다스렸고, 여러 단서를 가지고서 비교·판찰하

80) 『抽思』. “巧倕不斲兮, 勸察其撥正。”

81) 『惜往日』. “參驗考實。”

82) 『荀子·正名』. “知有所合謂之智。”

83) 『荀子·性惡』. “善言古者必有節(信, 證驗)于今; 善言天者必有證于人. 凡論者, 貴其有辨合, 有符驗. 故坐而言之, 起而可設, 張而可施行.”

84) 『韓非子』「顯學」, “無參驗而必之者, 愚也. 弗能必而據之者, 謠也.”

85) 『韓非子·奸劫弑臣』. “人主誠明于聖人之術, 而不苟于世俗之言, 循名實而定是非, 因參驗而審言辭.”

였다”<sup>86)</sup>고 하였다. 즉 현명한 군주는 언제나 사실에 대하여 반복적인 대비와 비교를 통해 각 방면의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신하들의 언론에 대한 믿음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비자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진리를 판단하고, 시비를 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功效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며 실천은 시비를 판결하는 최고의 법정이라는 것이다. 한비자가 말하는 ‘參驗’은 비록 우리가 지금 말하는 ‘實踐’은 아니고 단지 초보적인 이론 개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가 강조한 실제 功效로써 시비를 판단하고 人才를 변별하려는 사상은 중국철학자들이 진리 기준 문제를 탐구하는 중요한 里程碑가 되었다.

漢朝는 秦王朝의 멸망의 기초위에 건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秦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고 漢이 무엇 때문에 興旺하게 되었는가의 역사 경험을 총결하는 것이 漢初 사상가들이 직면한 중대한 이론 문제였다. 많은 사상가들이 이 시기 역사의 경험 교훈을 총결하는 과정에서 ‘參驗’의 작용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賈誼는 한비자의 사상을 발휘하여 “시비를 밝히는데 본받아야 할 것은 두루 증험하는 것이다”<sup>87)</sup>라는 저명한 논점을 제기하였다. 이론의 정확여부는 고대 역사 경험과 실제 효과의 검증을 통하여만 한다. “天地를 자세히 고찰하고, 옛일을 검증하여, 當時의 일을 확정하여야 한다.”<sup>88)</sup>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골고루 자세히 듣고 덮어두지 않을 수 있으며, 사물을 비교하여 증험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sup>89)</sup>는 것이다. 그럼으로 전면적으로 사물을 파악해야만 지엽적인 局部 현상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효과의 비교·고찰과 증험을 통해야만 비로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司馬遷은 저명한 역사학자로서 역사 경험의總結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그는 賈誼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 세상의 일을 검증하려면人事를 비교하여 盛衰의 도리를 고찰하여야 한다”<sup>90)</sup>고 하였다. 사마천은 비교·고찰하여 증험하는 “參驗”의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특별히 사회조사를 중요시하였다. 그는 사회 조사를 통해 얻은 직접적인 사실과 자료를 책 속의 지식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고, 역사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 저명한 『史記』를 저술하였다.

王充은 漢代 유명한 철학가로서 “效驗論”을 제기하였다. 그는 무릇 사실이 증명하는 이론은 진실하며 믿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일은 검증함으로써 그 실질을 드러낸다.”<sup>91)</sup> 반대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이론은 效驗을 이끌어 낼 수 없다(違事不引效驗)”<sup>92)</sup>고 하였다. “논한 것은 마음으로 고찰하고, 일은 효험해 보면 근거가 없는 일은 바로 입증된다.”<sup>93)</sup> “일은 효험이 있는 것보다 분명한 것이 없고, 논

86) 『韓非子·備內』. 明王 “偶參伍之驗以責陳言之實, 執后以應前, 按法以治衆, 衆端以參觀。”

87) 『治安策』. “是非其明效大驗。”

88) 『新書·數寧』. “稽之天地, 驗之往古, 案之當時之務。”

89) 『新書·道術』. “周聽而不蔽, 稽驗而不惶。”

90) 『史記·秦始皇本紀』. “驗之當世, 參之人事, 察盛衰之理。”

91) 『論衡·實知』. “事有驗證, 以效實然。”

92) 『論衡·知實篇』. “凡論事者, 違事不引效驗, 則雖甘義繁說, 衆不見信。”

93) 『論衡·對作篇』. “論則考之以心, 效之以事, 浮虛之事, 訂立證驗。”

한 것은 증거가 있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다. 근거가 없는 말은 비록 도심을 얻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다.”<sup>94)</sup> 즉 ‘증명(證)’과 ‘실제의 효험(驗)’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왕충의 이러한 증명과 실제의 효험을 중시하는 사상은 그의 유명한 저서 『論衡』의 전체를 깨뚫고 있다. 그는 이러한 “效驗論”으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심사하고(審矣)”, 또 “검증하여야(驗矣)” 한다고 하였다.

東漢末年의 徐干은 자신의 賢人 정치를 실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증협을 귀하게 여기는 “貴驗”이라는 사상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일은 효험이 있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말은 증거가 없는 것보다 쓸모없는 것이 없다”<sup>95)</sup>고 했다. 실제의 효험이 있어야 비로소 사실이 되며, 증거가 없는 것은 곧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길이 힘하지 않으면 馬의 좋은지를 알지 못하고, 임무가 중요하지 않으면 사람의 덕을 알 수 없다”<sup>96)</sup>거나 “馬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탄 후에 멀리 가게 되고, 의사가 있어도 반드시 의술을 행한 후에야 병이 좋아진다. 현명함이 있는 것에서는 알지 못하고 반드시 그를 쟁용한 후에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다”<sup>97)</sup>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사회 실천을 통해 그의 재능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실과 행동의 검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증협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은 짙은 정치 색채를 띠고 있지만 “貴驗”을 是非·賢惡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賢人 정치를 위한 철학적 논증이라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魏晉에서 隋唐에 이르기까지 “效驗論”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개별적인 사상가들만이 간혹 이 관점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稣康은 聖人의 語錄과 『六經』을 是非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관점에 반대하고 “效驗”으로 인식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자고 하였다. 그는 “보리가 콩보다 좋고, 벼가 기장보다 낫다는 것을 아는 것은 효험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안 것이다”<sup>98)</sup>라고 하였다.

宋代의 張載는 “보편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듣는 것(共見共聞)”을 감각경험의 참된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판단하는 데에 잘못이 없는 것(斷事無失)”을 학설의 참된 기준으로 여겼다. 예를 들면 “혼자 보고 혼자 듣는 것은 비록 차이가 작더라도 이상한 것이며, 성급함과 거짓됨에서 나온 것이다. 보편적으로 보고 보편적으로 듣는 것은 비록 차이가 크더라도 진실한 것이며, 음양의 바쁨에서 나온 것이다”는 말이 그것이다.<sup>99)</sup> 즉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야 비로소 참되고 확실

94) 『論衡·薄葬篇』. “事莫明于有效，論莫定于有證。空言虛語，雖得道心，人猶不信。”

95) 『中論·貴驗』. “事莫貴乎有驗，言莫棄乎無征。”

96) 『中論·修本』. “夫路不險，則無知馬之良；任不重，則無以知人之德。”

97) 『中論·亡國』. “有馬必待乘之而后致遠，有醫必待行之而后疾愈，至于有賢則不知，必待用之而后興治。”

98) 『嵇康集』卷四, 「答難養生論」. “夫所知麥之善于菽，稻之勝稷，由有效而識之。”

99) 『正蒙』, 「動物」. “獨見獨聞，雖小異，怪也，出于疾與妄也。共見共聞，雖大異，誠也，出陰陽之正也。”

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 “나의 학문이 이미 마음에서 터득되었으면 그 명제를 닦고, 명제를 닦음에 그릇됨이 없어야 비로소 일을 판단한다. 일을 판단함에 잘못이 없으면, 나는 곧 은택이 넘치게 된다. 정밀한 뜻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는 기쁠 뿐이다”<sup>100)</sup>라고 하였다. 학설이 참된가 아닌가의 증명은 일을 판단할 때 잘못이 없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일을 판단함에 잘못이 없는 것은 현대 인식론에서 말하는 “미리 판단한 것이 실제의 사실에서 증명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이 先秦 시대의 “參驗論” 이거나 漢魏의 “效驗論”은 모두 “실천(行, 實踐)”을 시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았으나 그 주요 내용은 사실로서 이론의 眞偽를 검증하고, 人才의 智愚를 판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직 사회정치이론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식론의 문제로 대두되지는 못하였다. “行”이라는 개념을 정식으로 인식론에 도입하여 시비를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삼은 것은 宋元 시대의 知行 논변을 거친 후였다. 특히 주자의 “驗”, “行” 등 관념은 진리 기준의 인식의 문제를 새로운 역사 단계로 끌어 올렸다.

## 2. 朱子의 “證驗說”

주자는 “行”을 眞知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보았다. 그는 “앎의 참됨 여부와 의지의 성실함 여부를 알고자 한다해도 단지 실현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일 따름이다. 참된 것을 진실로 이와 같이 행한다면 앎이 도달하고 의지가 성실하게 된다.” “반드시 행한 것이 모두 옳은 이후에 앎이 도달함을 證驗하게 된다”<sup>101)</sup>라고 하였다. 주자가 여기서 말하는 “行”도 역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회실천은 아니고 다만 개인의 도덕 실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行”을 인식론의 차원에서 眞知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제기한 것은 진리 기준의 탐구에서 일대 진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강조해야 할 부분은 그의 證驗說은 ‘마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한 格物窮理에서의 證驗說 · 訓詁考證에서의 證驗說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자연의 탐구에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비록 주자의 중협설은 格物窮理에서의 證驗說 · 訓詁考證에서의 證驗說이 주요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그의 자연과학의 탐구에서 나타나는 證驗說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자에게 자연학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문장은 없지만 그의 적지 않은 글들에는 자연에 대한 언급이 있다. 1190년은 이른바 주자가 “만년의 定論”이 확립되었다는 해이다. 그런데 존재론이나 인간학의 영역에 대해서라면 확실히 이 시기에 정론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학의 영역에서는 관심을 막 쏟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이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과학기계를 구성하거나 혹은 관측기계의 제작을 기도하고, 자연에 관한 사색을 심화시켜 간다. 동시에 적지 않은 자연과학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러한 언급들 중에는 證

100) 『行狀』. “吾學既得于心，則修其辭命。辭命無差，然後斷事。斷事無失，吾乃沛然。精義入神者，豫而已矣。”

101) 『朱子語類』 卷十五. “惱知知之眞不眞，意之誠不誠，只看做不做，如何眞個如此做底，便是知至，意誠。” “必待行之皆是，而后驗其知至。”

驗의 방법으로 자연과학의 지식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주자가 비록 외부사물의 관찰을 아주 강조한 것은 아니지만, 외부사물의 관찰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천지의 始原에 관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지의 시초에 혼돈되어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에 단지 물과 불 두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으니, 물의 찌꺼기가 땅을 이루었다. 이제 높이 올라 관망할 때에 여러 산들이 모두 물결치는 상태와 같이 여겨지는 것은 바로 물의 널실대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sup>102)</sup>

그는 肉眼에 의한 관찰외에도 특히 기계 등 기술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천체를 관측하여 자연과학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간의 관측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천체를 관측하여 그 이론을 검증하려면 기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계는 인간의 기술적인 구성을로서 인간의 外在化이며 인간 그 자체의 延長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기계에 양적인 측정의 規準을 설치하면, 천체는 기계 속에 양적으로 포착된다. 기계에 의해 포착된 천체는 인공언어에 의한 翡像이므로 인식 가능한 대상이 된다. 인간이 기계에 의해 천체를 포착한다는 것은 知的인 인식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작위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있는 것을 단순히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숫자를 언어매체로 하여 추상적으로 재구성된 像으로서의 천체이다. 천체운동의 인식가능성은 기술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측기계를 제작하는 기술적 실천은 언제나 천체운동의 인식에 선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渾儀는 채용할 수 있지만, 蓋天說은 사용할 수 없다. 확실히 개천설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형을 만들게 했더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가. 완전히 우산과 같았다. 어떻게 해서 땅과 접착시킬 것인가. 혼천설이라면 혼천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 ‘개천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蓋天儀를 만들게 하고 싶다. 어찌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했다. ‘우산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주위에 반드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곳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혼천설 쪽이 더 나은 것이다.”<sup>103)</sup>

비록 역사상 梁武帝 때 이미 하늘과 땅의 구조와 천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기계, 즉 天球儀에 상당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은 渾天儀와 같은 관측기계는 아니었다. 주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관측기계로서의 개천의는 제작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혼천설의 우월한 한 측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천체운동의 양적인 인식과

102) 『朱子語類』, 卷1. “天地始初，混沌未分時，想只有水火二者，水之渟脚便成地。今登高而望，群山皆爲波浪之狀，便是水泛如此。”

103) 『朱子語類』 卷二, 「葉賀孫錄」. “渾儀可取，蓋天不可用。試令主蓋天者做一様子，如何做。只似箇雨傘，不知如何與地相附着。若渾天須做得箇渾天來。或錄云：‘有能說蓋天者，欲令作一蓋天儀。不知可否？’ 或云：‘似傘樣，如此則四旁須有漏風處，故不若渾天之可爲儀也。’”

기계제작의 기술적 곤란함이 서로 같다는 주자의 생각은 천체를 기계 속에 양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인데, 주자는 더 나아가 우주의 구조를 포착하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가하는 점에서 천문학설의 可否를 판단하는 근거를 이끌어냈다.

그러면 주자는 천문학 이론을 어떻게 검증하려고 하였는가? 『書經』 「堯典」에 보이는 고대의 관측기계인 璇璣玉衡을 언급하면서 주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歷은 책이며 象은 기계이다. 역이 없으면 삼신(三辰: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소재를 알 길이 없으며, 璇衡이 없으면 삼신의 소재를 볼 수 없다.<sup>104)</sup>

여기서 주자는 책과 기계, 이론과 도구를 통한 관측은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밀한 관측기계 없이 훌륭한 이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관측 기계를 통해 검증해야만 이론의 정확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법은 역시 대체의 골격만을 개략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다. 상세한 것을 알려면 “위로 우러러 천문을 관측하고 아래로 굽어 地理를 관찰하여”<sup>105)야</sup> 비로소 證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기계가 없어서, 모두 다 규명하기란 매우 곤란하다.<sup>106)</sup>

여기서 주자는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면 혹은 그 이론의 정확 여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직접 위로 우러러 천문을 관측하고 아래로 굽어 地理를 관찰하여야만 비로소 證驗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찰·관측에 의해 이론을 證驗하는 방법적인 차각은 근대과학의 형성에 앞선 4세기, 이미 주자에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자는 실험의 방법으로 자연과학의 이론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측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이란 조금 의미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물리과학의 영역에서는 관측적 방법은 복합된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으로 인식하고, 그 복합적인 양을 분석하여 단순한 여러 요소를 끄집어내는데 비하여 실험적 방법은 처음부터 대상을 단순한 여러 요소들로 분석하고, 당면한 문제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만을 끄집어내어 그것의 관찰에 적합한 장치를 만들어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구별은 결코 엄밀한 것은 아니다. 관측적 방법에서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현상은 여러 요소로 분석되어 필요한 요소만이 관측의 대상이 된다. 오히려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주자의 방법을 근대유럽의 방법과 비교할 때, 중요한 것은 인식과정에 있어서 이

104) 『朱子語類』 卷七十八, 「輔廣錄」. “曆是書, 象是器. 無曆則無以知三辰之所在, 無璣衡則無以見三辰之所在.”

105) 『易』 「繫辭傳」. “仰而觀於天文, 倚而察於地理.”

106) 『續集』 卷二, 「答察季通書」. “曆法恐亦只可略說大概規模. 蓋欲其詳, 卽須仰觀俯察, 乃可驗. 今無其器, 胎亦難盡究也.”

른바 과학적 탐구의 방법 속에 위치 지워진 실험적 방법인 검증의 방법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가설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검증 가능한 명제를 추론하고, 그것을 실험에 의해 검증한다. 실험은 이론을 사실로, 이론바 중간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실험적 방법은 자각적인 것으로서는 중국에서 성립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원리 내지 가설로부터 연역하는, 엄밀한 추론의 방법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적인 방법은 검증의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발견의 방법으로서도 가능한다. 주자에게서 자각적으로 성립한 관측적 방법은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실험적인 방법의 한 형태였다. 천문학이나 기상학 등에 있어서의 관측만이 아니라 재료강도시험이나 과학기계제작에 있어서의 모형에 의한 테스트 등도, 그것이 자각적으로 이루어진 한 넓은 의미에서의 실험적 방법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자는 실험적인 방법을 특히 발견의 방법으로 자각하고 적용했던 것이다.

『宋史』 「天文志」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朱熹의 집에 漚儀가 있었다.” 언제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크기였는지 상세한 것은 유감스럽게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주자는 혼의를 가지고 있었다. 만년에 그 것은 그의 집 계단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으로 천체를 관측했을 것이며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런 문답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동쪽으로가 아니라 서쪽으로 회전하며, 빙글빙글 도는 맷돌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도는<側轉> 것이다.” 黃義剛이 말했다. “계단 위의 혼의로 알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sup>107)</sup>

주자는 또 『書經』 「舜典」에 주를 달아 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남기고 있다. 그 기술의 구체성으로 볼 때, 혼의를 눈앞에 두고 썼을 것이다.<sup>108)</sup> 주자는 혼의

107) 『朱子語類』 卷二十三, 「黃義剛錄」. “又曰：天轉也非東而西，也非循環磨轉却是側轉。義剛言，樓上漣儀可見。曰：是。”

108) 『朱子文集』 卷六十五, 「尚書, 舜典」. “本朝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삼중의 기계를 만들었다. 그 바깥쪽에 있는 것을 六合儀라 한다. 수평으로 단환(單環: 한 겹의 환)을 두고 거기에 12辰·84우(隅: 방위)를 새긴다. 땅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평면에 따라 사방을 정한다. 겸은 쌍환(雙環: 평행하는 이중의 환)을 기울여 세우고, 자세하게 극에서 떨어져 있는 도수(북극에서의 거리)를 새기고, 그것으로 하늘의 둥근 부분(脊部)을 둘로 나눠, 끈바로 지평에 걸치고 반은 지상에 나오고 반은 지하로 들어가 그 자오(子午: 남북)를 이어 하늘의 經으로 삼는다. 비스듬하게 빨간 單環을 기대어 세워 자세하게 赤道의 도수를 새기고, 그것으로 하늘의 배 부분(腹部)을 고르게 나누어 하늘의 經을 옆으로 돌며 역시 절반은 땅위로 나오고 절반은 땅밑으로 들어가 卯酉를 이어 하늘의 緯로 삼는다. 두 환의 안과 밖(表裏)은 움직이지 않도록 접합시킨다. 하늘의 經의 환에는 남북 두 극에 모두 둥근 축을 만들고, 속은 비어 있고 안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에 삼신의·사유의의 환을 설치한다. 그 아래 위와 사방을 여기서 고찰할 수 있으므로 육합(六合: 우주)이라 한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삼신의라 한다. 겸은 쌍환을 기울여 세워 역시 극에서 떨어져 있는 도수를 새기고, 바깥쪽은 하늘의 經의 축을 관통하게 하고, 안쪽은 황도 적도 2도를 설치한다. 그 적도에는 빨간 단환을 만들어 바깥쪽은 하늘의 緯에 걸치고, 역시 28수의 도수를 새겨 겸은 쌍환의 卯酉에 잇는다. 그 황도에는 노란 쌍환을 만들어 역시 28수의 도수를 새기고 역시 적도의 배 부분에 비스듬하게 걸치고, 그것을 卯酉에 이어, 그 절반

수운의 기구에 대해 자세한 내용적인 기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의를 손에 넣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 수운의 기구를 복원하려고 하였다. 비록 실패하였으나 그것은 남송에서 朝廷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수운 혼의를 복원하려고 한 유일한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의 제작이 官의 천문학자들이나 기술자들에 의한 국가의 사업이었던 데 비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사사로운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의 사상가, 한 사람의 자연학자가 추구한 획기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특히 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도를 만든적이 있는 실천가이기도 하다.<sup>109)</sup>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이러한 관측과 실험을 통해 천문학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실천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려는 실증설의 맹아이다. 주자의 노력은 이러한 인식론의 의미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V. 홍대용의 實證說

홍대용은 역대 參驗說·符驗說·效驗說·貴驗說·證驗說 등의 기초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독자적인, 실학자다운 實證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實證說은 도덕론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만년에 썼다고 추정되는『의산문답』에서 자연과학에 대한 탐구의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가 젊었을 때에는 주자학을 익

---

은 적도의 안에 넣어 춘분후의 태양의 궤도로 삼고, 절반은 그 바깥에 나와 추분 후의 태양의 궤도로 한다. 또 흰 단환을 만들어 그 교차점을 받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아래에 톱니바퀴 기구를 설치하여 물로 움직이고 밤낮으로 하늘에 따라 동서로 회전시켜 하늘의 운행을 본딴다. 여기서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살필 수 있으므로 삼신(三辰: 해와 달 그리고 별)이라 한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을 사유의라 한다. 역시 겸은 쌍환을 삼신의 장치처럼 만들어 하늘의 經축에 관통하게 하고, 그 환의 안쪽에는 상대하는 면의 중앙에 각각 직거(直距: 望筒을 지탱해주는 축)를 붙여, 그 바깥 반쪽은 두 개의 축을 가리키며, 중앙부의 부푼 내부에 둉으며, 다시 작은 구멍을 만들어 옥형(玉衡: 망통)을 받는다. 중앙부의 부푼 부분에 있는 작은 축은 형(衡: 망통)을 환에 따라 동서로 회전시킬 수 있는데다가 어디서도 남북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여, 관측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그 동서남북은 두루 볼 수 없는 곳이 없으므로 사유(四遊: 사방의 遊動)라고 한다. 이것이 그 장치의 개략적인 것이다.”

“木朝因之，爲儀三重。其在外者曰六合儀。平置單環，上刻十二辰八十四隅，在地之位，以準地面，而定四方。側立黑雙環，具刻去極度數，以中分天脊，直跨地平，使其半出地上，半入地下，而結於其子午，以爲天經。斜倚赤單環，具刻赤道度數，以平分天腹，橫繞天經，亦使半出地上，半入地下，而結於其卯酉，以爲天緯。二環表裏，相結不動。其天經之環，則南北二極，皆爲圓軸，虛中而內向，以掣三辰四遊之環，以其上下四方於是可考，故曰六合。次其內曰三辰儀。側立黑雙環，亦刻去極度數，外貫天經之軸，內掣黃赤二道。其赤道則爲赤單環，外依天緯，亦刻宿度，而結於黑雙環之卯酉。其黃道則爲黃雙環，亦刻宿度，而又斜倚於赤道之腹，以交結於卯酉，而半入其內，以爲春分後之日軌，半出其外，以爲秋分後之日軌。又爲白單環，以承其交，使不傾墊。下設機輪，以水激之，使其日夜隨天東西運轉，以爲象天行。以其日月星辰於是可考，故曰三辰。其最在內者曰四遊儀。亦爲黑雙環，如三辰儀之制，以貫天經之軸，其環之內，則兩面當中，各施直距，外駐指兩軸，而當其要中之內，又爲小竅，以受玉衡，要衆之小軸，使衡既得隨環東西運動，又可隨處南北低昂，以待占候者之仰窺焉。以其東西南北無不周偏，故曰四遊。此其法之大略也。”

109) 楠本正繼, 『宋明時代儒學思想の研究』 254면 참조.

하고 주자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만년이 될수록 서양과학의 전래와 함께 과학적인 실증법을 활용하였다고 보아진다. 그의 實證說은 ‘마음으로 확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한 성리학자들의 格物窮理에서의 證驗說·訓詁考證에서의 證驗說과는 달리 직접 사물로 나아가(即物) 몸소 實見하고 觀察·觀測과 實驗·實踐의 방법을 통해 진리를 일일이 확인하여(實證) 인식을 넓혀 가는 특징이 있다. 그럼 아래에 그의 세 가지 구체적인 실증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即物·實見의 實證法

홍대용은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即物·實見의 實證法을 활용한다. 그는 직관적인 사유, 관념이나 抽象의 역할보다 감각경험과 實證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氣로 이루어져 있는 객관세계는 무수히 다양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감각능력으로 매일매일 ‘即物·窮理’ 하여 인식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어서 강조한 것은 即物·實見의 태도라 하겠다.

그는 『의산문답』에서 實翁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 사람의 기록이 전하는 말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눈으로 實證할 수 있는 현실(實境)을 믿는 것이 좋다.<sup>110)</sup>

내가 實情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만 믿을 것이니, 너의 보는 바에 따라 너의 실지 견해(實見)를 열어 줄만 같지 못하겠다.<sup>111)</sup>

홍대용은 여기서 傳記를 믿지 말고 사물로 나아가(即物) 직접 자기 눈으로 현실을 살펴보아(實見) 그것이 정확한지를 實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기의 實見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即物·實見의 방법은 일반적인 하나를 알면 다른 것은 미루어 아는 類推와는 달리 객관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인식방법이다.

그는 또 그의 중요한 과학지식인 地球說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실증적인 인식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평평한 땅위에 둑근 하늘이 뒤덮여 있다고 하는 天圓地方說이 일반화된 시대에서 그는 여러 가지 실증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부정하고 地圓說을 주장하였다. 그는 땅이 평평한 一面이 아니라 둑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泰山이나 巨嶽이나 바다 밖의 國土 등 시야가 확 트이는 높은 곳에 올라 주위를 바라보아 모든 것이 빠짐없이 한눈에 들어오지 못함을 직접 관찰해 보아야 한다<sup>112)</sup>고 말함으로써 穷理를 위한 即物의 實證的 태도를 강조하였다.

110) 「盤山問答」, 『湛軒書』上, 328면. “且爾與其信古人傳記之言，豈若從現前目訂之實境也！”

111) 「盤山問答」, 『湛軒書』上, 342면. “吾語其實，爾信吾口，不若據爾所見，開爾實見。”

112) 「盤山問答」, 『湛軒書』上, 331면. “河海之水，人物之類，萃居一面也。是夷夏數萬里，遠近均平，夫泰山巨嶽，海外國土，升高測望，可以一覽而盡之，其果然乎？虛予曰：竊常聞之，此人視有限也。理或如是。實翁曰：人視固有限也。雖然海行，則日月出於海，而入於海。野望，則日月出於野，而入於野。天接於海野，無所障礙，視限之說，不可行矣。”

## 2. 觀察·觀測의 實證法

홍대용은 인식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觀察·觀測의 實證法도 활용한다. 홍대용의 인식론적 사유와 진리에의 접근방식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바로 觀察·觀測의 實證法을 인식방법에 도입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학자 누구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관점으로서 실상을 중시하고 實證과 관찰에 의한 지식의 획득을 강조하는 한편 더 나아가 실험기구와 관찰기구를 직접 제작하여 진리탐구에 적용하는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뚜렷이 근대과학의 방법론에 접맥되는 인식의 방법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천지의 體狀을 연구할 때에도 간단히 傳記를 믿지 않고 몸소 관찰·관측을 견지하는 실증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천지를 관찰·관측 할 때 기구와 수학(삼각법)으로 관측(窺)하고 미루어 추산(推算)해야 하며 方圜儀, 象限儀, 矩儀, 矩尺 등 여러 가지 기기를 활용하여 그 거리, 면적의 積步를 추득해야 한다고 하였다.

천지의 體狀을 알고자 할 때는… 오직 기기(器機)를 만들어서 이것으로서 측정하며, 수를 계산하여 이것으로서 미루어 계산(推之)한다. 天地의 體狀을 측정하는 기기는 많이 만들었으나 그것은 모두 모지고 등근 것에 불과하며, 수를 미루어 계산하는(推之)데 그 방법이 많으나 句와 股의 방법으로 요약된다. 그 천지의 體狀을 측정하고 미루어 계산하는(推之) 차례는 반드시 먼저 방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척도를 정해야 한다. 방위를 가려 南極·北極의 양극을 测量하고, 척도를 정하여 땅을 측정해야 한다. 우선 지구를 측정하고 다음에 모든 천체에 옮겨가야 한다. 이와 같이하여 천지의 體狀에 대해 가히 그概況을 얻게 된다.<sup>113)</sup>

그는 정확하게 천지 등을 관찰·관측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필요한 기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다. 즉 대소 기계가 모두 구비하여야만 편리하게 그 거리, 면적의 積步를 추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관찰·관측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工人은 그 말은 바 일을 잘하고자 하면 우선 그 일에 필요한 편리한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좋은 결과나 좋지 못한 결과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儀器의 정교함과 둔박함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등근 부분은 規(등근 자)에 맞고 모난 부분은 矩(직각 자)에 맞으며, 눈금이 고르게 분포되어 이 쪽 저 쪽 차이가 없어야 쓰임에 알맞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측량에 사용되는 것에는 4개가 있는데 첫째는 方圜儀이며 둘째는 象限儀이며 셋째는 矩儀이며 넷째는 矩尺이다. 각각 그 쓰임이 있으나 오직 方圜儀가 여러 가지 쓰임새를 겸비하고 있다.(…이와 같이 위의 대소 기계가 모두 구비 하여서만이 편리하게 그 거리, 면적의 積步를 추득할 수 있다.)<sup>114)</sup>

113) 「測量說」『湛軒書』下, 177면. “故欲識天地之體狀, …唯製器以窺之, 箇數以推之, 窺器多製, 而不出於方圜, 推雖多術, 而莫要於勾股. 其窺推之序, 必先辨方, 其次定尺, 辨方以量極, 定尺以度地. 先測地球, 次及諸天, 凡天地之體狀, 可得其梗槩矣.”

114) 「製器」, 『湛軒書』下, 180면.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推步之得失, 專係於儀器之利鈍. 圖中規, 方中矩, 度分均排, 巧合無差, 庶可適用. 其測量之用有四: 一曰方圜儀; 二曰象限儀; 三曰矩儀; 四曰矩尺. 各有其用, 惟方圜儀實兼諸器之用, …五等具備, 乃便推步”

동시에 그는 日蝕과 月蝕의 결정적인 實證사례를 들면서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땅이 둉글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月蝕이란 지구가 달과 태양사이에 위치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月面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지구에서 본 달의 밝은 부분이 일부 또는 전부가 어둡게 보여진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과학적인 현상인 月蝕을 가지고 地球說을 설명하면서 헛그림자에 현혹되어 實情을 살피지 못하는 미혹됨을 비판하였다.

달이 해를 가릴 때 日蝕이 되는데, 가리는 몸통이 둉근 것은 달의 몸통이 둉글기 때문이다. 땅이 해를 가릴 때 月蝕이 되는데, 가리는 몸통이 또한 둉근 것은 땅의 몸통이 둉글기 때문이다. 그러니 月蝕은 땅의 거울이라 할 수 있거늘 月蝕을 보고도 땅이 둉근 줄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도 그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sup>115)</sup>

그는 또 測候함에 있어서는 推步(미루어 거리를 잰다, 조사하다, 계산하다)·推說의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관측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땅은 고요하고(지정) 하늘은 운행한다(천운)는 것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견해이다. 백성들(민의)에게 해로움이 없고 때를 부여함(수시)에 어그려짐이 없으니, 이것으로 다스려도 가하지 않겠는가! 송나라의 장자후가 이 뜻을 조금 드러냈고, 서양인들도 배가 가는가 해안이 가는가의 비유로 推論이 깊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들도 측후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하늘이 운행함을 위주로 했으니, 推算에 편리하기 때문이다.<sup>116)</sup>

기술이란 비록 허망한 것이나 마음에 느껴워 몹시 믿고 의지하게 되면 혹 정조의 감응이 있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에 헛그림자를 잡는 것이다. 헛그림자에 현혹되어 실제는 살피지 않으니 미혹됨이 심하다.<sup>117)</sup>

그는 천문을 관찰할 때 推說·推步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혹 있게 되는 정조의 감응은 허공에 있는 헛그림자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헛그림자에 현혹되지 말고 관찰·관측을 통해 실제를 살피고 實證을 중요시하라고 하였다.

홍대용의 친구이자 북학파인 박지원이 홍대용의 평가에서 가장 중시한 바는 바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며 관찰정신이었다. 그 구체적인 실례가 『열하일기』의 「천주당」에 드러나 있다. 홍대용은 일찍이 서양 사람의 기교를 논하면서 선배 학자인 金昌業·李器之 등이 모두 뛰어난 식견으로 중국을 옮겨 본 것에도 쳐줄 바

115) 「盤山問答」, 『湛軒書』上, 328면. “月掩日而蝕於日，蝕體必圜，月體之圜也。地掩日而蝕於月，蝕體亦圜，地體之圜也。然則月蝕者，地之鑑也。見月蝕而不識地圜，是猶引鑑自照，而不辨其面目也。”

116) 「盤山問答」, 『湛軒書』上, 333면. “地靜天運，人之常見也，無害於民，義無乖於授時，因以制治，不亦可乎！在宋張子厚，微發此義，洋人亦有以舟行岸行，推說甚辨，及其測候，專主天運，便於推步也。”

117) 「盤山問答」, 『湛軒書』上, 342면. “技術雖妄，人心有惑，依信之極，或致徵應，此撮空之虛影也。眩於虛影，不察情實，惑之甚矣。”

가 없지 않지만, 천주당에 대한 그들의 관찰에는 유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것은 다른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마치기 어려운 바였고, 또 잡자기 보아서는 알아낼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홍대용과 박지원은 서양 사람의 기술을 논하고 있었고 선배학자 김창업의 연행록을 꺼내 읽으면서, 풍금에 대한 김창업의 관찰의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세하지 못하다고 한바탕 웃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홍대용이 한 번 보고 온 파이프 오르간을 나라의 명령이 있다면 손수 만들 수도 있다고 장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관찰과 실험정신이 뛰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3. 實驗·實踐의 實證法

홍대용은 또 자연과학지식을 획득하는 중요한 인식방법으로 직접 實驗·實踐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실험은 넓은 뜻으로 관찰의 하나지만 대상에 인위적인 변경을 하는 관찰이다. 좁은 뜻의 관찰의 대상은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지만, 실험에 있어서는 인위적인 변경을 가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떠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가 하는 것은 실험의 목적과 실험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실험의 목적과 방법은 이론에서 유도된다. 따라서 실험에 의하여 얻어지는 감성적 사실이 갖는 뜻은 이론적인 관련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은 실험에서 그 재료를 얻으며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 실험은 대상에 인위적 변경을 한다는 뜻에서 실천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험의 목적은 인식에 있고 직접적으로는 감성적 인식을 얻으려는 것이다.

일찍이 朱子도 조금이나마 이러한 실험의 방법을 사용하여 보았다. 그는 거울과光源 사이에 사물을 놓고, 반사하는 빛은 어떤 모양을 스크린에 비추는가를 실험해본다.

어떤 사람은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종이를 사람모양으로 잘라 거울 속에 붙여두고 불빛으로 밝히면 벽에 비치는 둥근 빛 속에 사람모습이 보인다. 달이 땅에 차단되어 생기는 겪은 무리도 역시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118)</sup>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비추는 것과 같고, 땅은 그 사이에 있으며 주위는 모두 비어있음(空虛)과 물이다. 그러므로 달 속에 조금 겪은 부분이야말로 거울 속의 하늘과 땅의 그림자로서, 모습은 거의 비슷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sup>119)</sup>

달을 거울에 비유한 것은 물론 반사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달을 둥근 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험 결과가 잘 설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월식의 太陽暗虛說과 달의 흐린 부분의 地影說을 조합시키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

118) 『朱子語類』 卷二, 245면. “或錄云, 今人剪紙人貼鏡中, 以火光照之, 則壁上圓光中有一人。月爲地所礙, 其黑暈亦猶是耳。”

119) 『楚辭集註』, 卷三, 「天問」. “或者以爲日月在天, 如兩鏡相照, 而地居其中, 四旁皆空水也。故月中微黑之處, 乃鏡中天地之影, 略有形似, 而非眞有是物也。斯言有理, 足破千古之疑矣。”

연과학의 성과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홍대용은 여기서 한 걸음 크게 나아가 그의 최고작인 『의산문답』에서 실험·검증의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는 구체적인 실험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某種의 조건을 첨가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특히 빛의 굴절현상을 파악하는 實驗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 일출 후에도 월식을 볼 수 있다든지 日·月이 실제 거리와는 반대로 中天에 있을 때 도리어 작게 보이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氣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시험삼아 銅錢을 대야에 넣고 물리셔서 보면 겨우 한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나 깨끗한 물을 부어주면 동전 전체가 드러나 보인다. 이것은 곧 물의 힘이다. 눈에 유리렌즈(玻瓈)를 대고 보면 미세한 털도 손가락만큼 크게 보인다. 이것도 유리의 힘이다. 지금 물과 烟의 氣가 중발하여 地面을 싸고 있어서, 밖으로는 三光(해·달·별의 빛)을 약하게 하고 안으로는 사람의 눈을 어른거리게 하여 낮은 것은 높게 확대해 주고 작은 것은 크게 확대하여(사람들로 하여금 肉眼으로 분명히 볼 수 없는 사물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양사람들은 이를 보고 ‘清蒙’이라 하였다. 쳐다보면 작게 보이는 것은 清蒙이 薄기 때문이고, 비스듬히 보면 크게 보이는 것은 清蒙이 두텁기 때문이다.<sup>120)</sup>

여기서 清蒙이란 오늘날의 대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홍대용은 물을 봇거나 유리렌즈를 대고 보는 등의 조건을 첨가하여 관찰하는 실험방법으로 서양천문학에서 유래된 대기에 의한 빛의 굴절로 천체위치가 변동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물이나 투명한 액체가 유리나 수정과 같이 물체의 像을 굴절시킨다는 사실은 예외라 하더라도 空氣와 같은 氣體도 물체의 像을 굴절시킨다고 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비록 근대 과학에서만큼 실험을 새로운 지식 획득의 중요 과정으로 강조하고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實驗과 實踐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지식으로 획득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그의 實際·實驗·實證 등 實을 중요시하고 강조한 實學사상 전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홍대용의 실사와 실지의 중시는 경험되는 현상·사실 전반을 實證의 태도로 충실히 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실사·실지의 중시가 바로 實證的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는 당시의 梁得中과 그 후의 金正喜가 강조한 ‘실사구시’<sup>121)</sup>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실사구시’는 개화기와 그후의 시기에까지 영향을 끼친 실학의 또 하나의 방법론이었다.<sup>122)</sup>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홍대용의 실학관은 實證的 태도의 개발이라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sup>123)</sup> 동시에 그의 유추설과

120) 「蠶山問答」, 『湛軒書』上, 347면. “此氣之所爲也。試將銅錢，置于浴盤，退而窺之，纔見一點，及灌注清水，全形騰露。此水之力也。玻瓈籠眼，秋毫如指，此玻瓈之力也。今水土之氣，蒸包地面，外燭三光，內眩人目，映發如水，鑾鷀如玻瓈，騰卑爲高，幻小爲大，西洋之人，有見於此，命以清蒙，仰測見小，清蒙之薄也。橫望見大，清蒙之厚也。”

121) 梁得中(1665~1742, 호 德村), 『德村集』 권2, 「辭召旨疏」 권3, 「登對筵話」 및 金正喜(1786~1856 호 秋史), 『阮堂集』 권1, 「實事求是說」.

122) 文一平, 『湖岩集』 권2, 「實事求是學派의 學風」.

실증설은 조선시대 유학사와 인식론 발전사의 새로운 한 장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다.

## VI. 結論

‘類’는 중국철학사에서 일찍이 나타난 인식론적 개념으로서 송대 주자에 이르러 ‘類推’라는 인식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했지만 주자는 유추의 의미, 유추의 방법, 유추의 근거, 유추의 목적 등에 대하여 적지 않은 언급을 남겼다. 주자는 유추법을 이용하여 사물마다 모두 일일이 궁구할 수 없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도덕의 확립과 인간의 내면적 수양에 이르고자 하였다.

홍대용도 한편으로는 ‘類推’를 중요한 인식 방법으로 인정하여 활용하였다. 그의 유추설은 원리, 근거 면에서는 주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그 실질과 목적·대상·내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홍대용이 類推法을 利用한 주요 목적은 천문학 등 자연과학의 탐구와 실제적인 民生의 해결에 있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자연과학과 실제적인 민생의 문제를 유추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았다. 이는 그의 實際·實用·實踐 중시의 實學적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그는 비교적 구체적인 類推法을 활용하였는데 주로 같은 근본의 사물들은 부분을 알므로써 전체를 유추하는 방법, 전체를 알므로써 부분을 유추하는 방법, 부분을 알므로써 전체를 유추하고 다시 다른 부분을 유추하는 방법, 가까운 것을 알므로써 먼 것을 유추하는 방법 등이었다. 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歸納推理法·演繹推理法까지 활용하였다. 홍대용도 주자와 마찬가지로 천하 만물을 일일이 궁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인식의 한계를 유추법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홍대용은 유추의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고, 類聚하기를 좋아하여 지름길로 가려하고, 分屬에 힘써 記誦 訓詁에 치우치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는 痘弊를 지적하면서 만물을 檢證 없이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음양의 성질과 오행의 성질 등에 꿰 맞추는 것은 진정한 유추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렇게 홍대용은 ‘類推’를 중요한 인식 방법으로 인정·활용하는 한편 그것의 잘못된 사용을 경계하고, 그것을 補正하는 방법으로 實證을 제기하였다.

實證은 앉아서 머리속으로 추리하는 유추법과는 달리 몸소 사물로 나아가 하나 하나 검증하는 것이다. 즉 卽物·實見의 방법, 觀察·觀測의 방법, 實驗·實踐의 방법을 통해 진리를 일일이 확인하여 인식을 넓혀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대용에게 있어서 實證說은 유추설의 보완이자 완성이며 실학적 방법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홍대용에게 있어서 類推說과 實證說은 상호 보완적인 인식방법이며 그 어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홍대용의 철학사상과 실학체계는 이러한 類推說·實證說(格致說·相對說·視物說)등 인식방법을 통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123) 『윤사순 교수의 한국유학사상론』, 388면. 예문서원 1997.

## 참고문헌

### 1. 原典類

- 洪大容, 『湛軒書』上下, 景仁文化社, 1974.  
『국역 담현서』 1-4, 민족문화추진회 역, 1974.  
『을병연행록』, 소재영 외 3인 역, 태학사, 1997.  
金元行, 『渼湖集』, 驪江出版社, 1986.  
朱熹, 『朱子語類』, 宋, 黎靖德編, 王星賢點校, 中華書局出版, 1994.3.

### 2. 單行本類

- 윤사준, 『韓國儒學論究』, 玄岩社, 1980.  
『韓國의 思想』, 열음사, 1984.  
『韓國儒學思想論』, 열음사, 1986.  
『韓國의 性理學과 實學』, 열음사, 1987.  
김태준, 『홍대용』, 한길사, 1998.2.  
김충렬, 『高麗儒學史』,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7.  
『中國哲學散稿』, 범학도서, 1977.  
이을호, 『實學論叢』, 全南大學校 出版部, 1987.  
금장태, 『유학사상의 이해』 108면 참조 집문당 96.5  
유원동, 『韓國實學概論』, 正音文化社, 1983.  
장숙필, 『栗谷李珥의 聖學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천관우, 『韓國의 名著』, 1982.  
유명종, 『韓國儒學研究』, 以文出版社, 1988.  
한국사상연구회, 『四端七情論』, 서광사, 1992.  
한국사상연구회, 『人性物性論』, 한길사, 1994.  
한국사상연구회, 『實學의 哲學』, 예문서원, 1996.  
한국사상연구회, 『조선 유학의 학파들』, 예문서원, 1996.  
조동일, 『문화사와 철학사의 관련 양상』, 한샘, 1992.  
정진석 · 정성철 · 김창원, 『朝鮮哲學史』, 平양 科學院出版社, 1962.  
최익한, 『實學派와 丁茶山』, 平양 國立出版社, 1955.  
정성철,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平양 사회과학출판사, 1974.  
최봉익, 『조선철학사 개요』, 平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張岱年, 『中國哲學大綱』,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8.  
陳來, 『朱熹哲學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陳來, 『有無之境』, 中國 人民出版社, 1991.  
陳鼓應 · 辛冠潔 · 葛榮晉, 『明清實學思想史』, 齊魯書社, 1989.  
楊國榮, 『王學通論』, 上海 三聯書店, 1988.  
邵求賢, 『朱子學研究』, 廈門大學出版社, 1989.  
張立文, 『宋明理學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5.  
任繼愈, 『中國哲學史』, 人民出版社, 1979.  
任繼愈, 『中國哲學思想史』, 人民出版社, 1990.  
張云勛, 『中國哲學基本範疇與文化傳統』, 貴州民族出版社, 1999.9.  
葛榮晉, 『中國哲學範疇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5.  
蒙培元, 『理學範疇系統』, 人民出版社, 1989.7.

- 蒙培元, 『理學的演變』, 福建人民出版社, 1998.4.  
小川晴久, 『한국 실학과 일본』, 한울아카데미, 1997.  
야마다 케이지, 『주자의 자연학』, 김석근 옮김, 통나무, 1991.10.

### 3. 論文類

- 강춘화, 「洪大容의 實學의 學問觀에 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3.12  
김문용, 「洪大容의 實學思想에 관한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6.  
金教斌, 「本體論과 心性論을 통해 본 朱子의 格物致知 이해」, 『中國思想論文選集』 朱子  
哲學(1) 도서출판불惑문화사, 96.6.  
洪元植, 「정이천의 格物致知說」, 『中國思想論文選集』 宋代哲學(2)도서출판불惑문화사 96.6  
천관우, 「洪大容의 實學思想」, 『서울대 문리대학보』, 1958.  
천관우, 「자구가 돈다 - 洪大容」, 『朝鮮哲學의 개척자 10인』, 신구문고, 1974.  
천관우, 「洪大容 지진설의 재검토」, 『불교사학논총』, 1968.  
유봉학, 「北學思想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8, 1982.  
박성래, 「洪大容의 科學思想」, 『韓國學報』 23, 1981.  
유명종, 「북학파와 양명학」, 『哲學研究』 제20집, 형설출판사, 1975.  
조 광, 「洪大容의 政治思想 研究」, 『민족문화연구』 14, 1979.  
신용하, 「담현 洪大容의 사회신분관과 신분제도 개혁사상」, 『韓國文化』 12, 1991.  
류인희, 「洪大容哲學의 再認識」, 『東方學志』 제73집, 연세대, 1991.  
이지형, 「洪灝軒의 經學觀과 그의 詩學」, 『한국한문학연구』 제1집.  
홍기문, 「담현 洪大容」, 평양.  
金柄珉, 「試論洪大容與吉杭三才的思想文化交流」, 『朝鮮中世紀史研究』, 中國延邊大學出版  
社, 1988.  
高橋進, 「朱子의 思想에 있어서의 認識과 實踐에 關하여」 『中國思想論文選集』 朱子哲學(1)  
李庚保, 「홍대용의 상대주의적 사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6  
朴相俊, 「담현 과학사상의 철학적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鄭銀美, 「담현 홍대용 北學사상의 철학적 기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10.  
李相敦, 「홍대용의 학문경향과 문학세계」, 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2  
小川晴久, 「香港の 宇宙無限論」, 『東京女子大學 比較文化研究所紀要』 38, 1977.  
小川晴久, 「18세기의 철학과 과학의 사이-홍대용과 三浦梅園」, 『동방학지』 20, 1978.  
小川晴久, 「지진(동)설에서 우주무한론으로-김석문과 홍대용의 세계」, 『동방학지』 21,  
1979.  
小川晴久, 「慕華と自尊の間 - 十八世紀朝鮮知識人の中國觀」, 『比較文化研究』 19, 東京大學,  
1980.  
小川晴久, 「실학의 개념에 대하여」, 『전통문화연구』 1, 1983.  
小川晴久, 「湛軒洪大容 實學思想의 近代精神」, 『유학연구』 1, 충남대 유학연구소, 1993.

# 봉산탈춤 사자마당의 재검토: 권선징악적 사자인가, 탈춤화한 사자인가?

김 인 회

立命館大學

봉산탈춤<sup>1)</sup>은 굿, 즉 제의(祭儀)에서 시작되어 농촌탈춤, 전기 도시탈춤, 후기 도시탈춤으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가면극 중에서도 후기 도시탈춤에 속하는 것으로 (조동일, pp.45-108), 그 중에서도 제의적 요소를 불식하고 연희화(演戲化), 연극화(演劇化)의 정도가 가장 발달된 탈춤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봉산탈춤을 탈춤의 최고봉이라고 하는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산탈춤의 다섯째 마당, 즉 사자마당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연구가 제의성(祭儀性) 또는 권선징악적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탈춤 중에서도 가장 연희성이 발달된 봉산탈춤 가운데 유일하게 사자마당만을 제의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인데, 필자는 이러한 일종의 부조화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본래 사자춤을 추는 것은 신성한 사자의 힘을 빌어 벼사진경(辟邪進慶), 풍년기원 등 제의적 기능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그 연장선상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봉산탈춤의 사자는 문수보살을 호위하는 사자로서 스승인 노승을 파계시킨 멱중들을 벌주려 왔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벼사진경, 권선징악의 사자로 나타난다. 한편 봉산탈춤이 전체적으로 연희성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제의성이 강한 마당이 삽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봉산의 사자는 단순한 권선징악적 사자 또는 제의적 사자가 아니다. 뒤에서 밝히지듯이, 그것은 탈춤화된 사자, 탈춤의 문맥에 녹아 들어가 역할이 전도(顛倒)된 사자이다.

- 
- 1) 봉산탈춤은 황해도 봉산군에 유래한다. 5월 단오날 봉산읍에는 큰 장이 열려 낮에는 그네 타기와 씨름을 하고 밤에는 탈춤을 놀았다고 한다. 봉산탈춤은 1967년에 대한민국의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2) 본고에서는 키워드로 제의성(또는 종교성)과 연희성을 사용한다. 제의성이란 사자의 주술적 위력에 대한 신앙의 정도가 커서 사자춤이 벼사진경의 제의적 기능과 직결되는 경우이다. 봉산사자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권선징악의 주제는 사자의 위력에 대한 신앙이 전제조건이므로 벼사의 상징성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하여 제의성으로 범주화한다. 연희성이란 사자신앙이 흔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며 사자가 놀이의 대상으로 화하는 경우이다. 이는 조동일이 민속예능을 굿과 극으로 나누면서, 굿을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주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극을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 대응한다(조동일, p.35). 임재해에 의하면, 한국 민속극의 경우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란 종교적, 사회적, 성적 불평등 구조를 대립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형상화하는 것이다(임재해, pp.67-70). 이런 주제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구비한 것이 바로 탈춤이며, 갈등의 첨예한 정도가 탈춤의 발달 단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사자는 벽중에게 “이것이 사슴인가, 범인가, 기린인가, 소인가”라고 조롱을 당한 끝에 얻어맞기까지 한다. 탈춤에서 양반과 고승의 권위가 여지없이 부정되듯이 문수보살의 호위 사자라는 사자의 권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청사자놀이의 사자가 본래 아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아이를 먹던 것이 마당놀이에서는 토끼를 먹고는 체하여 쓰러지는 장면으로 바뀐 것을 연상하게 한다. 북청의 「쓰러지는 사자」와 봉산의 「얻어맞는 사자」. 이는 둘다 본래 제의적이던 사자춤이 탈춤의 문맥 속에 용해되어 영수(靈獸)가 가지는 신성성(神聖性)에 어떤 변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른바 탈춤적인 「역할의 전도(顛倒)」가 일어나는 것이다. 통영오광대에 등장하는 사자를 보더라도 악행을 되풀이하는 범을 처벌한 사자가 자신도 악행을 저질러 결국 포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듯 「죽임을 당하는」 통영사자를 포함시켜 생각한다면, 권위의 부정, 역할 전도와 같은 탈춤의 맥락이 비단 봉산사자만이 아니라 한국 가면극의 사자마당에 전체적으로 관통하여 이것이 한국 사자춤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제기되게 된다.

제의성을 강조하는 기존연구는 봉산탈춤의 사자마당에 대하여 앞마당과 뒷마당을 연결시키기 위해 단순히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사자마당이 탈춤적인 연희성이 뛰어나고 다른 마당과도 의미있는 관련을 맺고 있는 가장 탈춤화한 사자춤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봉산탈춤의 사자마당에 대하여 이를 탈춤적인 연희성이 강한 사자춤으로 보아, 기존연구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자와 벽중의 문답을 분석하여 그것이 탈춤에서 자주 쓰여지는 이른바 정체확인형식(正體確認形式)에 입각한 것임을 밝힌다. 이어서 봉산사자의 동작 및 그 동작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검출하고, 이를 제의성이 강한 일본 오끼나와(沖繩) 이시가끼섬의 시라호(白保)사자춤 그리고 초기적 탈춤인 북청사자놀이의 사자춤과 관련지어 비교함으로써<sup>3)</sup>,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봉산사자를 제의적 사자로 볼 것이 아니라 탈춤적 연희성이 현저한 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겠다.

## I. 기존연구의 검토

봉산탈춤의 사자 및 사자마당을 기존연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의성 또는 종교성과 연희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를 각각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많은 연구들이 제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벽사진경이라는 사자의 제의적 상

3) 구체적인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졸고 「북청사자놀이의 재검토: 탈춤 및 오끼나와 시라호 사자무와의 비교를 통하여」(국제고려학회·하와이대학 한국학 연구센터 외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새 천년의 한국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들」 제출논문, 2000년 2월 21일)를 참조. 동 논문은 『공연과 리뷰』 제29호(2000년 8-9월호, 현대미학사)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전재되었음.

정성 가운데, 주로 벽사의 사자는 불교 수호라는 종교성에 매개되어지면서 권선징악적 사자의 모습으로 강조된다.

서연호는 “봉산의 사자는 文殊菩薩의 使者로 등장한다. 처음으로 놀이판에 등장한 사자를 보고 벽중들은 어떤 짐승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자와의 문답을 통하여 차차 그의 존재를 알게 된다. 사자는 경망스럽게 노는 벽중 하나를 잡아먹기도 한다. 벽중들은 취발이의 사주에 빠져 스승인 노장을 파계하도록 유혹하였다고 하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다. …대화 가운데도 나타난 바와 같이 사자는 불교와 깊은 관련을 지닌 채 전승되어 왔다. 佛法을 수호하기 위한, 혹은 불교를 전파시키기 위한 상징으로서 가장 오랜 전승력을 지녀온 동물탈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연호, p.82).

허은도 석가여래의 명을 받아 벽중들을 잡아먹으려고 나타난다고 하면서 불교적 색채를 강조한다(허은, p.112). 오리노 가즈키(折野和己)도 벽사진경의 기능에 윤색이 부가되어 권선징악적 신(神)의 화신으로 불교의 부폐를 바로잡는 기능을 있다고 본다(오리노, p.30). 원종세와 윤덕경도 파계승 징계를 비롯한 벽사징악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원종세·윤덕경, p.51). 김양기도 봉산사자가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金兩基, p.85). 한편 최상수는 단순히 축사연상(逐邪延祥)의 주원(呪願)으로서의 잔존이라고 지적한다(최상수:1988, p.82). 조만호는 사자춤 자체는 원래 제의 적이었으나 나중에 민풍교화(民風敎化)적 성격으로 변모되었다고 보고 있다(조만호: 1995, P.122).

봉산의 사자가 문수보살의 호위 사자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을 그것이 벽사자라는 점 및 사자와 벽중의 대화를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벽중들이 사자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는 서연호 등의 견해는 편상적인 이해이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봉산사자가 벽사진경의 사자 또는 권선징악의 사자인지, 아니면 전도된 사자, 즉 탈춤화된 연희적 사자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후술하듯이, 벽중들은 사자의 본래의 정체, 즉 이미 스스로 범죄자가 된 사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사자를 야유하기 위해, 그것이 사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정체확인의 문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체확인형식의 이러한 성격은 한국 탈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봉산의 사자마당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무용학적인 동작분석의 관점에서 제의성을 시사하는 연구로는 정병호, 서연호, 김난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병호는 봉산사자의 동작에 대해 용맹한 사자의 움직임을 표현한다고 한다(정병호, p.326). 서연호도 동물적이며 야성적, 자연적인 동작, 활달한 춤이라고 본다(서연호, p.82). 두 사람이 다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어떤 단정을 내릴 수는 없겠으나, 힘을 가진 사자, 권선징악의 권세를 위탁받은 사자의 용맹한 춤을 강조하고 있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후술하듯이 실체로 활달한 동작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탈춤적 연희성으로 연결되는 동작이 더 많으며 또한 그러한 동작이 더욱 의미있는 동작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연희적 동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활달하고 용맹한 동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한지에 대한 분석이 결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북청사자놀이에는 비슷한 사자춤 동작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은 용맹한 동작이라도 힘과 폭이 전혀 다르다. 봉산사자의 춤동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비교의 관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듯이 본고에서는 북청사자 및 오끼나와 시라호사자의 동작과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제의적 동작을 강조하는 것은 김난희도 마찬가지이다. 김난희는 “봉산탈춤에 나타나는 사자춤은 힘찬 도약과 움직임의 폭이 커서 북방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표현이나 동작이 매우 과장적이어서 사자의 위력적인 성격과 심판자로서의 사자의 성격이 춤 전체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한다(김난희, p.46).

그러나 김난희는 은연 중에 북청사자의 동작과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즉, “봉산탈춤엔 아직까지 사자춤 동작의 구체적인 명칭을 붙이지는 않고 있으나 … 북청사자 놀음에서 사용되었던 동작 중에서 …요꼼뛰기 사위, 머리쳐들기, 모대치기, 머리흔들기, 모걸음치기, 돌아치기, 뒷걸음치기, 꽂꽂이서기와 같은 동작은 하게 되며 단지 얼르기만 제외된다… 한국 사자춤에서 사용되는 동작들은 큰 변화없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김난희, p.47).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북청사자와의 동작 비교를 통해 주로 동작의 유사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한국 사자춤의 보편적 동작을 언급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동작의 보편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유사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는 제의성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연희성으로 연결되는 동작이 보여진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 강인숙의 연구가 그것이다. 강인숙은 봉산사자춤에서 마부(먹중)가 던진 질문에 고개를 젓는 사자의 동작, 마부가 채찍으로 사자를 때리는 동작에서 극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한다(강인숙, p.46). 비록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아니나, 사자와 먹중의 문답, 먹중이 사자를 때리는 장면이 가지는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자 머리를 무섭게 흔들면서 뛰어 들어오는 동작이나 사자의 걸음 동작에서 다리를 높이 들고 사자 머리를 좌우로 채는 것은 사자의 사실적인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심판자로서의 위엄과 용맹을 나타내고 있으며, 춤 전체적으로도 사자의 위력적인 성격과 불교적 이미지가 혼합되어 화해, 용서, 심판자로서의 사자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한다(강인숙, pp.45-46). 이렇게 볼 때, 강인숙 역시 결국은 제의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강인숙의 연구는 연희적 동작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의적 동작과 연희적 동작 사이에 어떤 관련성도 상정하지 않아, 사자의 용맹한 동작과 얻어맞는 동작, 표면적으로 서로 의미가 다른 이러한 동작들이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며중들의 사죄도 진정한 참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것 또한 면종복배하는 조통의 하나일 뿐이다.

조동일은 봉산사자를 이와 같이 보았기에 “물론 봉산탈춤에서의 사자춤도 창작된 것만은 아니다. 북청 사자놀음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있다. 그러나 봉산탈춤의 사자춤은 이미 있어 온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어도, 극적인 구조와 의미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된 탈춤에서나 볼 수 있는 새로운 의의를 가진 것이 분명하다”(조동일, p.40)라고 명확하게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봉산탈춤의 사자마당은 북청사자와 같이 제의적 사자에서 출발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탈춤의 연희적 사자로서 훌륭하게 변모한 것이다. 필자는 북청사자를 여전히 제의적 사자로 보는 것만을 제외하고 조동일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조동일은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남기고 있다. 위의 인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봉산탈춤의 사자춤과 북청사자놀이의 사자춤의 비교가 논의의 전제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봉산의 사자춤이 북청의 사자춤에서 볼 수 있는 비창작적 요소, 이미 있어 온 요소, 즉 제의적 요소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청산하고 연극적으로 새로운 의의를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봉산과 북청의 사자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의적 공통성과 연희적 차별성이 인정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동일은 취발에게는 징벌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조동일, p.195), 죽임을 당하는 통영의 사자보다도 마지막까지 관념성을 발휘하는 점(조동일, pp.29-44)에서 봉산의 사자가 보다 연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설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가 권선징악적 사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필자는 조동일의 주장을 구체화시켜 그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 II. 사자와 며중의 문답분석

옛부터 봉산에는 탈놀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 왔다고 한다. 고려조 말엽 어느 절(萬福寺라고도 한다)에 만석(萬石)이라는 늙은 도승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인으로부터 생불이라 할 정도로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의 지인 중에 취발(醉發)이라는 방탕한 처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술책으로 도승을 타락시켜 세인의 조소를 받게 하고자 하였으나, 만석은 좀처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취발은 마침내 미녀를 통하여 유혹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도승은 파계하게 되었는데, 그 때에 어느 지사가 불교의 장래를 염려하고 일반인들의 풍습이 퇴폐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하여 이 탈놀이를 안출하였다는 것이다(오청「가면극 봉산탈 각본」 중 개설 부분, 서연호, pp.109-110에 전재). 이러한 유래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불승의 파계를 조소하고 응징한다는 것이 당초 봉산탈춤의 주요한 테마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봉산탈춤의 마당놀이는 전체 일곱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마당부터 다

섯째 마당·사자마당까지는 노승의 과계를 둘러싼 구성으로 전개된다. 이어서 여섯째 마당에서는 사회 지배층인 양반을, 마지막 일곱째 마당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자는 다섯째 마당에서 징벌하는 사자, 불법 수호의 사자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자의 실체는 보다 심화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춤에서는 역할의 전도가 중요하다. 즉 승려나 양반이 그들이 본래 자임하는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등지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풍자함으로써 관중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탈춤의 재미라고 할 수 있다. 봉산탈춤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노승이 과계하고, 여섯째 마당에서 세 명의 양반도 하인인 말뚝이에게 조통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기까지 한다. 이러한 승려와 양반의 역할 전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 의해 상당히 연구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의성이 강하다고 잘못 이해되고 있다. 사자가 등장해서 어떠한 경과를 거쳐 멱중을 징벌하는 데까지 이르는지 그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자와 멱중의 문답을 살펴보기로 하자. 멱중은 본 적이 없는 동물이라면서 정체를 물어본다.

멱중: “어디 내가 한번 물어보자.(獅子의 앞으로 가서)네가 무슨 즘생이냐. 우리 祖上적부터 보지 못한 즘생이로구나, 그런데 노루냐.”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렁설렁 흔들어 否定한다.)

멱중: “사슴이냐.”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렁설렁)

멱중: “그러면 범이냐.”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렁설렁)

멱중: “옳다…네가 분명히 麒麟이로구나.”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렁설렁)

멱중: “옳지 알겠다…소나.”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렁설렁)

멱중: “이것 참 야단났구나. 하하 그러면 이제야 알겠다. 唐나라 때 烏鵲國이 가 물어서 온 百姓이 떠들 때에 國王의 招聘으로 너의 神通한 造化 다 부려서 단비를 나려주고 烏鵲國王의 恩寵입어 宮中에 閑居하여 갖은 榮華 다 보다가 宮中 後苑 瑰璃井에 國王을 生埋하고 三年동안이나 國王으로 變裝하여 富貴榮華 누리다가 西天 西域 土國으로 佛經을 求하러 가던 唐三藏이 寶林寺에 留宿할 제 生埋된 烏鵲國王의 現夢으로 三藏法師의 首弟子로 도솔천에 行惇하던 齊天大聖 孫行者에게 本色이 綻露되어 九死一生 달아나서 文殊菩薩의 救護를 받아 僅僅히 生命을 保存케 되어 文殊菩薩이 타고 다니던 獅子냐.”

사자: (머리를 끄덕끄덕하여 肯定한다)

(이상, 오청「가면극 봉산탈 각본」에서 부분 인용)

먹중의 질문을 통해 볼 때 봉산사자는 문수보살의 사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자의 색깔이 백사자인 것만을 보아도 그것이 문수보살의 사자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답 과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일까? 말 못하는 사자가 궁정과 부정을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징벌을 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라면 굳이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을 것이며,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하여도 문수보살의 사자임이 바로 밝혀지면서 먹중들의 죄상이 열거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대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자는 어떤 사자로 판명되는가? 그 본색은 국왕을 죽이고 가짜 국왕으로 영화를 누리다 손오공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치다가 간신히 문수보살의 구호를 얻어 살아남은 사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문답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사자가 권세있는 지엄한 존재라기보다 사실은 먹중이나 우리들 관중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덧붙여 먹중은 문수보살의 백사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 전다. 왜냐하면 사자의 과거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짓 “이것이 노루냐, 사슴이냐, 범이냐, 기린이냐, 소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죄지은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처음부터 사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사자를 끌어내려 비웃기 위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권선징악적 사자의 외피를 벗겨내어 전도된 사자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답 형식은 이른바 「정체확인형식」이라고 하여 탈출에서는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다. 전경육에 의하면, 정체확인형식은 정말 상대방의 정체를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어떤 자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또는 상황의 강조, 호기심의 자극, 흥미 유발, 긴장감의 고조, 해학과 풍자의 효과 등 다양한 문맥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전경육, p.283). 필자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 불쌍한 본색을 폭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를 풍자하고 관중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해오광대의 넷째 마당인 영노마당에 등장하는 양반과 영노의 대화를 보자.

영노: “대국서 兩班 아흔 아홉 명 잡아묵고 朝鮮에 兩班 너 하나 있다고 해서  
오늘 잡아 묵으러 나왔다.”

양반: (겁이 나서 약간 떨면서) “나는 兩班 아니다.”

영노: “그러면 뭐고?”

양반: “내가 개다.”

영노: “개면 맛있고 더 좋다.”

양반: “내가 똥이다.”

영노: “똥도 좋다.”

양반: “내가 오줌(줌)이다.”

영노: “오줌도 좋다.”

양반: “내가 개똥이다.”

영노: “개똥도 좋다.”

(이상, 최상수 채록 「김해오광대 가면극 극본」에서 부분 인용, 최상수:1984)

영노와의 대화 과정에서 양반은 개, 소, 돼지, 뚱, 오줌 등 온갖 더러운 것, 추한 것으로 비유되면서 체통이 말이 아니게 된다. 양반뿐이 아니다. 봉산탈춤 넷째 마당 노장마당에서 과계한 노승이 자신도 창피하여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벽중들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노승에 대해 비웃으면서 머리로 노승을 부딪쳐 보기까지 한다. 벽중들이나 관중들이 처음부터 노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初目: (老僧을 가리키면서) “저 東便을 바라보니 비가 오실라는지 날이 흐렸구나.”

二目: “내가 이제 가 보니 날이 흐린 것이 아니라 瓶器匠이가 瓶器짐을 벼트여 놨더라.”

三目: “내가 이제 가서 仔細히 본즉 솟장사가 솟짐을 벼트려 놨더라.”

四目: “내가 이제 가서 仔細히 본즉 날이 흐려서 大鱗이가 나왔더라.”

墨僧들: “大鱗이야?”(큰 목소리로 말하고 깜짝 놀란다.)

五目: “내가 다시 보고 올라.”(엉덩이춤을 추면서 무서운 모양으로 엉기정거리며 老僧 있는 곳을 가까이 가서 이리저리로 살펴보고 깜짝 놀래어 땅에 구르며 돌아온다.)

五目: “事實이야. 大鱗이 分明하더라.”

六目: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大鱗이란 말이 웬 말이냐. 내가 한번 가서 자세히 보고 올라.”(勇猛스럽게 춤을 추며 老僧의 앞으로 가서 술금술금 머리로 老僧을 부딪쳐 본다.)

老僧: (얼굴을 가리운 扇을 흔들흔들한다.)

六目: “大망이니 옹기짐이니 솟짐이니 뭐니뭐니 하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뒷절 老스님이 分明하더라.”

七目: “老스님이 分明하더라. 우리 老스님이 平生 좋아하시던 것이 白鷺打令이 아니더냐. 우리가 모다 白鷺打令이나 한번 하여 보자.”

八目: “내가 이제 가서 老스님께 白鷺打令을 돌돌 말아서 귀에다 소르르 하니까 대강이를 깊주린 개가 主人 보고 대강이 흔들듯이 끄덕끄덕하더라.”

四目: “내가 이제 老스님께 가서 오독도기打令을 돌돌 말아서 귀에다가 소르르 하니까 대강이를 용두질치다가 내버린 쪘대강이 흔들 하더라.”(벽중 八名은 이렇게 서로 名名 番갈아 가면서 무슨 打令이니 무슨 노래이니 하면 老僧에게 물어보고 돌아와서 老僧을 傷辱한다.)

(이상, 오청 「가면극 봉산탈 각본」에서 부분 인용)

노승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정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승은 호린 날씨, 옹기침, 숯짐, 구렁이 등 겸고 부정적인 대상으로 비유된다. 노승의 속성 자체가 겸고 부정적인 인물로 풍자되는 것이다(전경육, pp.283-284).

그런데 전경욱은 양반과 노승에 대해서는 달리 앞에서 인용한 면중과 사자의 문답에 대해서는 사자의 부정적 정체를 풍자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래에 인용하는 신장사와 원승이의 문답과 더불어, 반복에 의한 율동감과 해학미가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만 지적한다 (전경욱, p.284). 정체확인형식이 꼭 풍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율동감, 해학, 호기심 자극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겠으나, 사자의 정체확인을 원승이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봉산탈춤 넷째 마당의 신장사와 원승이의 문답을 보면,

신장사: “네가 뭣이냐. 물집승이냐.”

원승이: (머리를 左右로 살랑살랑 흔들어 否定한다.)

신장사: “그러면 물고기냐.”

원숭이: (머리를 左右로 흔든다.)

신장사: “농어냐.”

원숭이: (머리를 左右로 흔든다.)

신장사: “뱀장어냐.”

원숭아: (머리를 左右로 흔든다.)

신장사: “그럼 네가 四

원숭이: (머리를 前後로 끄덕끄덕하여 肯定한다.)

신장사: “그럼 뱀이냐.”

원숭이: (머리를 左右로

최장삼: “그럼 노루냐.”

원숭이: (머리를 左右로

최장삼: “사슴이냐.”

원숭이: (머리를 左)

시작선: “우 이제야 알겠다…원수

원숭이: (머리를 끄덕끄덕하여 肯定한다)

이사 유허 「가면극 본사탈 각본」에서 본

(18, 五。 1971. 12. 1) 〔中華書局〕

위 인용을 보면 원숭이의 경제학인을 위해 살고기, 산짐승, 도구, 사슴 등이 들기 되고 있다. 적어도 양반이나 노승처럼 더럽고 추한 것, 검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숭이를 풍자하기 위한 문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한편, 사자는 앞서 보았듯이 노루, 사슴, 범, 기린, 소 등으로 비교된다. 역시 적어도 더럽고 추한 것, 검고 부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사자와 원숭이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사자와 원숭이는 공히 노루와 사슴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원숭이에게는 아무도 권위나 힘을 인정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처음부터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에 비해 사자는 문수보살의 호위 사자가 아닌가. 신성한 사자를 노루, 사슴에 비교하는 것을 원숭이와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는 없다.

사자와의 문답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 그것이 사자를 풍자하고 있음이 더욱 명확해진다.

아래의 대화에서는 사자가 왜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다.

먹중: “그러면…우리 스님 모시라고 여기 왔나.”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령설령)

먹중: “그러면 네가 假王노릇 三年동안 山珍海味 다 먹다가 人間飲食 趣味 붙여 다시 한번 맛보라고 왔느냐.”

사자: (머리를 左右로 설령설령)

먹중: (화가 나서) “그러면 네 어미 아비를 잡아 먹으려 왔느냐.”(하며 막대기로 獅子의 머리를 때린다.)

(이상, 오청 「가면극 봉산탈 각본」에서 부분 인용)

위 인용에서는 먹중이 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뚜렷해진다. 사자는 급기야 어미 아비를 잡아먹는 자와 비교된다. 부모를 잡아먹는 자라는 것은 특별히 유교적 전통이 강한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그 이상의 모욕은 없을 것이다. 정체확인형식을 통해 사자를 풍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봉산의 사자가 제의적, 권선징악적, 불교적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편향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할이 전도된 사자로 등장한다. 먹중들은 이미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사자라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사자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사자마당이 서연호 등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연결 또는 막간일 가능성은 적다. 사자마당은 스토리 측면에서 연속될 뿐만 아니라, 양반마당이나 노장마당과 마찬가지로 주제에 있어서도 탈춤화된 것이다. 사자는 성수의 외피를 두르고 있더라도 더 이상 제의적, 권선징악적 사자가 아니다. 전도된 노승과 양반이 관념성을 폭로 당하는 것과 같이 전도된 사자일 뿐이다.

### III. 봉산사자의 동작 및 이미지 분석

봉산사자의 역할의 전도 및 탈춤화 현상은 동작면에서도 나타난다. 양반이나 노승과는 달리 말을 할 수 없는 사자에게 있어서 동작은 대사와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자의 동작으로부터 어떤 이미지가 전달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제기된다.

분석 자료로 삼은 것은 제28회 중요 무형 문화재 공연(서울놀이마당, 1995.6.10)에서 발표된 것으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작한 비디오 테이프이다. 비디오에 의

하면, 사자마당의 런닝타임은 6분 34초이다. 이것을 스토리 전환과 장단의 변화를 기준으로 먼저 장(場)으로 나누고 다시 동작의 전환을 중심으로 소절(小節)로 나눈다. 장은 처음 사자가 등장하여 춤을 추는 초장, 마부(역중)와 문답을 하는 중장, 타령 장단으로 사자와 마부가 같이 춤추는 종장, 대무(對舞)가 굿거리 장단으로 바뀌는 말장으로 구성된다. 소절은 종장에서 다섯 개, 말장에서 네 개로 나누어진다.

장과 소절 안에서의 구체적인 동작 분석은 동작 구조를 설정하여 이루어진다. 동작 구조란 동작이 갖는 의미의 큰 단위로서, 동작의 최소 단위인 동작소, 동작소가 모여 이미지의 최소 단위가 되는 동작형, 동작형이 모여 하나의 큰 이미지 내지 의미를 형성하는 동작군으로 구성한다. 동작 분석의 실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뒤에서 구체적 예를 들기로 하겠다.

이어서 동작이 전달하는 이미지의 범주를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제의성, 연희성, 무용기술성이라는 세 가지 이미지 축을 설정하고, 각각 두 항목씩, 즉 제의성에는 생동감과 중량감을, 연희성에는 명쾌감과 골계감을, 무용기술성에는 조화감과 대비감을 부여한다.

제의성과 연희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주2 참조). 무용기술성이란 이미지의 내용 자체보다 사자의 동선과 배치, 이미지 전환의 방법 등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연희성이 강한 무용극에서 고도의 무용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생동감은 예를 들면 입사자(立獅子)나 큰 뺨 동작 등 사자가 취하는 용맹한 동작에서 얻어진다. 큰 뺨 동작에는 지신밟기의 의미가 있고, 입사자에는 원래 풍년기원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중량감은 사자의 위엄을 무게있게 표현하는 동작에서 얻어진다. 이렇듯 생동감과 중량감은 사자 본래의 상징성이 잘 표현된 동작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것들이 많이 검출될수록 제의성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명쾌감과 골계감은 원초적 사자가 아니라 연극화된 사자로부터 느껴지는 것으로 연희성으로 이어진다. 명쾌감은 주로 가볍고 즐거운 듯한 동작에서 얻어진다. 골계감은 마부의 질문에 인간처럼 대답을 하는 동작, 마부의 채찍에 화가 나서 달려드는 동작 등 사자가 우스꽝스럽게 표현된 동작에서 느껴진다.

조화감은 동작의 반복에 따른 균형감에서 그리고 대비감은 전혀 다른 동작의 실행으로 감정이 전환, 고양되는 경우에 검출된다.

그러면 위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장과 소절로 나누어 살펴본다.

### 초장(00' 00" ~00' 31")

사자는 마부와 함께 경쾌하게 뛰면서 등장한다. 뛸 때 눈에 달려 있는 방울이 흔들리는 것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원래 방울은 소리를 내어 잡귀를 쫓아내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눈에 달린 것 때문에 명쾌감, 골계감으로 느껴진다. 마부의 「쉬-쉬」하는 소리와 채찍에 의해 뺨을 멈춘 사자가 무대 중앙에 앉는다. 머리를 몸의 왼쪽, 오른쪽으로 가져가며 입으로 몸을 긁는 이 잡기 동작을 한다. 이 때, 다리가

지면에 불어 있지 않고 작게 뾰으로 밝은 느낌의 명쾌감으로 나타난다.

중장(00' 32" ~2' 47" )

장단이 없이 마부와 사자가 대무를 한다. 마부의 질문에 인간처럼 대답을 하면서 골계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마부의 정체확인에 대하여 앞의 두 발을 조금 세워 머리를 크게 좌우로 움직여서 부정을 두 번 반복한다. 마부의 채찍에 화가 나서 달려드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사자냐라는 질문에 머리를 상하로 두 번 반복해서 궁정한다. 이러한 부정과 궁정의 동작, 마부에게 달려드는 동작에서 골계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종장 I (2' 48" ~3' 00" )

얇은 채로 머리를 한 박자씩 타령 장단에 맞추어 천천히 움직여 이제부터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시킨다. 본래 중량감으로 연결될 부분이겠으나, 무게감이 없이 가벼운 느낌으로 바뀌어져 있다. 사자는 천천히 일어나 조금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머리를 크게 움직인다. 명쾌감과 대비감이 표현된다.

종장 II (3' 01" ~3' 33" )

원을 그리며 공간이동을 하면서 활발하게 가볍고 밝은 동작을 행한다. 명쾌감이 주로 나타난다. 특히 사자채기, 즉 머리를 원쪽에서 몸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가져와 들고, 다시 오른쪽에서 몸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가져와 드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것은 둘째 마당에서 보이는 8명의 벽중춤의 활발한 고개잡이 동작과 비슷하다. 또한 원쪽으로 돌고 가볍게 뛴 후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에서는 공간 이용의 균형이 이루어져 조화감이 나타난다.

종장 III (3' 34" ~3' 55" )

경쾌하게 걷거나 뛰는 동작이 많이 행해진다. 원쪽 두 발과 오른쪽 두 발을 교대로 같이 들면서 뒤쪽으로 처음에는 천천히, 다음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는, 같은 장단에서 움직임의 세밀한 변화를 보여준다. 무용기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화감과 명쾌감이 현저하다.

종장 IV (3' 56" ~4' 16" )

발 동작을 마부의 동작과 맞춘다. 조화감이 현저하다. 멈춘 상태에서 오른쪽 두 발, 원쪽 두 발을 교대로 듣다. 이때,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들어 무용기술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동작은 다른 사자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종장 V (4' 17" ~4' 33" )

장단이 없는 상태에서의 마부와 사자의 대무이다. 마부가 잘 추었다고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단을 바꾸어 굿거리장단으로 추자고 권하자 사자가 머리를 상하로 두 번 반복해서 궁정한다. 골계감이 나타난다.

말장 I (4' 34" ~5' 00" )

얇은 상태에서 머리로 장단을 맞추면서 천천히 일어난다. 춤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예상시키며 관중도 홍예 겨워 자연히 어깨를 들썩이게 된다. 오른쪽으로 세 번, 원쪽으로 세 번 크게 뾰으로서 조화감과 명쾌감을 느끼게 한다.

말장 II (5' 01" ~5' 37" )

무용기술이 숙련되어 있다는 것이 크게 두각된다. 사자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좌로 우로 크게 뛰어 오르는 동작에서는 활기 있는 명쾌감으로, 원쪽 앞뒷발, 오른쪽 앞뒷발을 교대로 올려 뒤로 천천히, 빨리, 더 빨리, 세밀한 변화를 주면서 마부와 발 동작을 맞추는 부분은 완성도 높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 발장Ⅲ(5' 38" ~6' 18")

드물게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즉 입사자(立獅子)와 큰 뺨 동작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직립한다고 해도 후술하듯이 북청사자의 입사자와는 다른 연출이 덧붙여진다.

#### 발장Ⅳ(6' 19" ~6' 34")

경쾌하게 뛰면서 마부와 함께 퇴장한다. 명쾌감이 느껴진다.

이상의 장별, 소절별 분석은 다음과 같은 동작 및 이미지 분석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지면 관계상, 초장의 첫 번째 동작 구조인 사자의 등장 부분(표1)과 중장의 사자가 마부에게 달려드는 부분(표2)을 표로 설명하는 데 그친다.

이상과 같이 봉산 사자춤은 오끼나와 시라호 사자춤과 북청 사자춤에서 두드러지는 생동감과 중량감, 즉 제의성으로 연결되는 이미지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 보다는 가볍고 활발한 명쾌감, 우스꽝스러운 풀제감 그리고 높은 무용기술이 자아내는 조화감이 두드러져 인공적으로 연출되어진 사자춤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다음으로 제의적 동작이 연희적 동작으로 변용되는 과정이 뚜렷이 나타나는 특정 동작을 들어, 봉산과 시라호, 북청의 세 사자춤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먼저 입 동작인데, 입을 크게 벌리는 동작은 다리를 크게 올리는 동작과 마찬가지로 사자의 위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의성이 강한 시라호 사자춤에서는 입을 크게 딱딱거리거나 판객을 물거나 아이를 잡아먹는 등 위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행한다. 한국에도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궁중 무용으로 채택된 사자춤의 경우, “사자 두 마리가 몸을 흔들고 뛰어나가 동서로 나누어 북쪽을 향해 엎드려 머리를 들고 입으로 땅을 두드리고 눈을 번쩍이며 일어선다. 음악 반주에 맞추어 꼬리를 휘두르고 발로 뛰며 좌우로 돌아본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이빨을 딱딱 부딪쳐 소리를 내며 나가고 물러나고 돌고 돌아 흥겹게 춤추다가 물러가면, 음악도 그친다”라고 묘사되어, 시라호 사자춤과 분위기가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는 춤이었기에 그렇지 않았던가 싶다. 또한 농촌탈춤에 속하는 하회탈놀이의 주지도 입을 크게 벌리고 딱딱 소리를 내며 악귀를 퇴치한다. 북청사자도 마을뜰기를 할 때에는 크게 입을 벌려 무언가를 잡아먹는 흥내를 내어 악귀를 쫓아낸다. 이와 같이 제의성이 강한 사자춤은 그 입 동작에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북청 사자춤이라도 마당놀이의 북청사자는 입을 개폐하되 사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혀를 날름 내밀어 웃음을 자아내는 동작으로 변용되어

5) 오끼나와 시라호 사자춤과 북청 사자춤의 동작 분석에 대해서는 앞의 졸고 참조.

골계감을 느끼게 된다. 봉산사자는 아예 입이 약간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 입의 개폐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 입을 크게 열어 이빨을 부딪히면서 위엄을 나

표1. 봉산사자의 동작과 이미지분석

사 자 는 마 부 와 함 께 뛰 면 서 등 장 해 서 무 대 중 앙 으 로 온 다.	동 작 구 조 (0' 00" ~0' 15")	이 미 지
동작소 (30회)	1.오른쪽 앞 뒤 다리로 뛰어 오르면서 앞으로 (15회) 2.왼쪽 앞 뒤 다리로 뛰어 오르면서 앞으로 (15회)	
동작형 (15회)	오른쪽과 왼쪽의 앞 뒤 다리로 교대로 뛰어 오르면서 1.뛴다. 2.몸이 흔들린다. 3.눈에 달려있는 방울이 흔들린다.	가벼움 밝음 익살맞음
동작군 (1회)	15초에 동작소 30회  사자는(마부와 함께)빠른 템포로 원을 그리면서, 경쾌하게 뛰어서 등장한다. 뜀으로써 몸이 흔들려 눈에 달려있는 방울이 흔들리는 것이 웃음을 자아내 게 된다.	명쾌감 연희성 골계감
	군	▶ 동작군(1회)
	형      형	▶ 동작형(15회)
	소    소    소    소	▶ 동작소(30회)

표2. 봉산사자의 동작과 이미지분석

		동작구조 (0' 55" ~ 1' 12")			
부정의 뜻을 나타내 마부에게 매를 맞고 달려드 는 동작	동작소 31회	1. 머리를 원쪽 방향으로 4. 좌우 앞발을 듦다 7. 머리를 위로 듦다 10. 머리를 위로 듦다 13. 1의 반복 16. 오른쪽 앞 뒤 발로 뛰어 오르면서 19. 머리로 오른쪽에 원을 그린다 22. 좌우 앞발로 뛰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25. 3의 반복 28. 좌우 앞발로 뛰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31. 네 발의 수준을 낮게	2. 머리를 위로 듦다 5. 머리를 위로 듦다 8. 3의 반복 11. 머리로 원쪽에 원을 그린다 14. 좌우 앞발을 듦다 17. 머리로 원쪽에 원을 그린다 20. 네 발의 수준을 낮게	3. 머리로 오른쪽에 원을 그린다 6. 머리로 원쪽에 원을 그린다 9. 좌우 앞발을 듦다 12. 네 발의 수준을 낮게 15. 좌우 앞발을 듦다 18. 원쪽 앞 뒤 발로 뛰어 오르면서 21. 머리로 오른쪽에 원을 그린다 24. 좌우 앞발로 뛰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27. 11의 반복 30. 좌우 앞발로 작게 뛴다	
		1.1~6 (머리로 좌우에 원을 그린다.) 2.7~11(머리로 좌우에 원을 그린다.) 3.12~15(앉은 상태에서 일어난다.) 4.16~19(뛰어 오르면서 앞으로 두번 나간다.) 5.20~24(머리로 좌우에 원을 그리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뛰면서 나간다.) 6.25~28(5의 반복.) 7.29~31(앉는다.)	이미지		
	동작형 7회	1.1~11                    2.12~19                    3.20~31 1. 앞의 두발을 조금 세우고 머리로 크게 좌우로 움직여서 <u>부정을 두 번 반복</u> 한다. 2. 마부에게 매를 맞고 <u>화가 나서 달려드는 동작</u> 을 한다. 3. 달려드는 동작을 하기 전의 장소로 뛰면서 돌아온다.	의살맞음 격렬함	골계감 골계감	연희성

타내는 행위가 망각되고, 그 대신 북청사자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골계감을 자아낸다. 같은 도시탈춤인 통영사자의 입도 더 이상 개폐를 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아울러 생각한다면 시라호에서 북청을 거쳐 봉산과 통영사자로 내려오면서 입을 움직이는 방법에 변화가 생겨 제의적인 사자가 골계적인 탈춤적 사자로 변화되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입사자(立獅子)동작을 보더라도 같은 점을 말할 수 있다. 북청에서는 입사자를 만든 후, 동서남북으로 사방을 내려다본다. 이것은 입사자를 하지는 않지만 머리를 힘 있게 돌려 강하게 응시하는 시라호의 사자와 유사하다. 시라호사자보다는 약하지만 중량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봉산사자의 입사자 동작은 뒷모습으로 천천히 입사자를 만들고 몸을 돌리면서 정면을 보여준 뒤, 머리와 몸을 흔들흔들 흔들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앞으로 몇 발자국 걸은 후 내려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연출이 가해진 것이다.

봉산사자는 입사자 이외에도 북청사자에게서 보이는 모래기, 모재비 동작도 보인다. 그러나 북청보다는 다리의 힘이 줄어들어 가벼운 느낌이고 뛸 때의 다리의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다. 머리의 움직임도 힘이 약해져 부드러운 폭선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정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시라호의 경우, 사자의 동작은 무거운 중량감과 활기찬 생동감이 주된 이미지이다. 위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중량감, 힘이 넘치는 생동감이 신적 존재로서의 시라호사자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 북청의 사자는 중량감과 가벼운 느낌의 명쾌감이 균형 있게 공존하고 있다. 본래의 사자와 전도된 사자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비해 봉산사자에서는 중량감을 거의 느낄 수 없다. 가벼운 명쾌감이 중심 이미지를 형성하고 골계감과 조화감이 두드러진다. 특히 골계감이 현저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벽중의 질문에 인간처럼 대답을 하는 동작, 멈춘 상태에서 오른쪽 앞뒷발을, 다음에는 왼쪽 앞뒷발을 동시에 교차하면서 드는 동작은 다른 사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손이 많이 간 골계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리를 교차하면서 드는 동작, 벽중의 움직임을 흥내내며 같은 동작으로 추는 모습도 큰 몸집에 어울리지 않아 골계감이 나타난다. 벽중에게 매를 맞고 달려드는 동작, 이동작은 다른 사자에게서는 생동감으로 연결될 동작이지만, 매를 맞고 화를 내는 장면이므로 골계감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보면 봉산사자의 동작에는 연희성으로 연결되는 명쾌감과 골계감의 이미지만이 보이는 것 같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봉산사자에게서도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라호나 북청사자와 비교한다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시라호사자에게서는 강하고 조용히 그러나 갑자기 머리의 방향을 바꾸는 동작, 입 동작, 힘있게 차는 힙 동작, 크게 들어올리는 다리 동작에서 생동감을 느낀다. 시라호사자의 생동감은 중량감과 일체가 되어 나타나기에 제의적 사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봉산사자는 그 동작에 명쾌감과 골계감이 강하고 한편으로는 생동감도 있으나 시라호나 북청사자와 비교한다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본래의 영수

로서의 동작이 완전히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제의적 사자의 모습을 상실하고 높은 무용기술을 지닌 연희적 사자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이상의 검토로부터 대부분의 기준연구와는 달리 봉산탈춤의 사자와 사자마당이 제의적 사자 또는 권선징악적 사자가 아니고 발달한 탈춤에서만 보이는 전도된 사자춤, 양반마당이나 노승마당과 마찬가지로 탈춤적 연희성이 풍부한 마당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오끼나와의 시라호 사자춤, 북청 사자춤과의 비교를 통해 사자춤의 변용 과정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봉산탈춤의 사자마당은 벽사진경의 제의적 사자춤이 한국적 탈춤의 세계와 접합되면서 북청사자놀이의 사자춤과 같이 제의성과 탈춤적 연희성이 공존하는 단계를 거쳐 풍자와 해학의 전도된 사자춤으로 완전히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청사자놀이의 「쓰러지는 사자」와 봉산탈춤의 「엎어맞는 사자」 그리고 통영오광대의 「죽임을 당하는 사자」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사자춤의 한국적 변용의 한 가지 형태는 탈춤과의 영향관계에서 점차 탈춤화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한 것이 아닐까 전망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밖의 사자마당, 즉 하회탈놀이의 주지, 수영야유의 사자 등을 더하여 한국 사자춤의 전반적 변용 형태를 밝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인숙 「사자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3  
김난희 「한국 사자춤과 중국 사자춤의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3  
김인희 「북청사자놀이의 재검토: 탈춤 및 오끼나와 시라호 사자춤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연과 리뷰』 제29호(2000년8~9월호) 현대미학사, 2000  
박진태 『탈놀이의 기원과 구조』 새문사, 1990  
박진태·유달선 『영남지방의 동제와 탈놀이』 태학사, 1996  
서연호 『황해도 탈놀이』 열화당, 1988  
서연호 『야유·오광대 탈놀이』 열화당, 1989  
오리노 가즈키(折野和己) 『한일 사자무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0  
원종세·윤덕경 「사자춤에 나타난 상징성」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집, 제15집, 1991  
이두현 『한국의 탈춤』 일지사, 1981  
이두현 『한국가면극』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임재해 『한국의 민속예술』 문학과 지성사, 1988  
전경욱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 열화당, 199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기린원, 1988  
조만호 『전통희곡의 제식적 미학』 태학사, 1995  
최상수 『해서가면극의 연구』 성문각, 1988  
허운 『전통극: 우리들의 잊어버린 신명』 교보문고, 1999

池田弥三郎『藝能と民俗學』岩崎美術社, 1972

石黒節子『イメージ・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しての舞踊』三一書房, 1989

金兩基「韓國の獅子と獅子舞」民族藝術學會『民族藝術』第11號, 1995

西角井正大『民俗藝能・一』音樂之友社, 1990

古野清人『獅子の民俗: 獅子舞と農耕儀禮』岩崎美術社, 1968

頭川昭子『舞踊のイメージ探究』不昧堂出版, 1995

本田安次『沖繩の祭と藝能』第一書房, 1991

本田安次『アジアの傳統藝能』錦正社, 1992

村山智順「民衆娛樂としての鳳山假面劇」朝鮮總督府『朝鮮』第261號, 1937

### 비디오 자료

1. 「봉산탈춤」 제28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서울놀이마당, 1995.6.10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제작)
2. 「북청사자놀음」 제26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서울놀이마당, 1993.6.10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제작)
3. 「시라호 사자춤」 일본 오기나와현 시라호마을 미야라가(宮良家)마당, 1997.8.15  
(필자가 직접 제작)

# 현재성의 내방가사

이정옥

위덕대학교

## 1. 서론

가사의 발생시기에 대한 논란이 常存하듯이 그 소멸시기에 대한 논의의 정리도 아직은 이르다. 국문학사에서 가사의 가장 마지막 모습은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 발표 연재된 소위 ‘개화 가사’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개화기 가사의 특징을 잠시 언급하는 것은 내방가사의 현재성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개화기는 문학, 특히 가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통상 1896년 독립신문 창간에서부터 1910년 8월 언론매체 강제통폐합이 이루어진 때로 한정한다. 이는 그것이 개화기로 설정되기에 가장 알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작품을 ‘개화가사’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개화기라는 시기가 개화사상이 사회문화운동으로서 활발히 전개되던 때라는 점과, ‘개화가사’라는 장르가 발표를 실현 방법으로 삼았다는 점이 각 개념의 핵심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구체적 작품의 출현과 마감을 두고 말하면 앞의 시기가 되지만 여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사회변화를 중시하면서 보다 역사적 개념으로 환원시키면 ‘개화가사’는 결국 1894년 개혁 이후 1910년 국토의 일제강점 때까지 발표된 작품으로 별주화된다.<sup>1)</sup>

장성진에 의하면 가사가 개화기 시기의 대표적 양식으로 수용되는 계기는 그 장로적 특성과 시대적 요구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가사가 지닌 전통, 곧 작자와 독자 모두에게 친숙하다는 점, 교훈성을 담기에 적절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시대적 양식으로 채택되고 개화사상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과정에서 가사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하위양식으로 분화·발전하였다. 전대의 경향을 이어받은 전통가사, 분절과 합가·후렴 등 음악적 요소가 강화된 가창가사, 분련과 후렴구를 갖춘 새로운 양식인 신가사가 그것이다.

이 ‘개화가사’가 창가 -> 신체시 ->의 장로적 진전을 보인다는 것이 가사의 발전적 진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였다. 그렇다면 ‘개화가사’ 이전 양식으로서의 가사는 ‘개화가사’에서 전통가사의 형식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이전의 가사는 이미 ‘개화가사’ 시작 이전인 1894년 이전의 문학으로 편입된 셈이라는 논의이다. 곧 개화가사 이전의 가사, 소위 ‘양반가사’, ‘내방가사’, ‘서민가사’, 또는 ‘동학가사’나 ‘천주교가사’

1) 개화가사의 자료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개화가사를 다시 세분하여, 전통가사, 가창가사, 신가사로 분류하는데, ‘독립신문’ 등의 신문매체에 총 898편, 개화기 잡지인 ‘태극학보’ 등에 38편 등이 있다(장성진, “개화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경북대 박사논문, 1992).

등의 종교가사는 전대 가사로 분류되어 국문학사의 통시적 맥락에서 그 소멸의식을 별색 치른 셈이라는 반증이 된다.

그러나 한 문학양식의 소멸과정을 창작과 향유의 중단으로 본다면 내방가사만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내방가사는 아직도 향유되고 있다. 경북의 많은 여성노인들은 아직도 가사를 짓고, 외고, 읽고 배낀다.

본고는 내방가사의 역사성과 그 전승적 차원에서의 현재성에 주목한다. 특히 경북지방의 양반가문을 중심으로 아직도 연면히 창작되고 있는 내방가사의 향유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가사창작 및 향유의 현재성을 확인한 후, 그 보존과 전승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경북 내방가사의 역사성과 여성사

내방가사의 발생시기는 학자에 따라 이견은 있으나 대체로 18세기 영조 이후의 시기로 잡고 있다. 특히 경북의 그 많은 내방가사의 창작과 전승은 조선조 후기 급격한 신분사회의 변동과 관계가 깊다.<sup>2)</sup>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 양반의 지배가 지방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고 일반 백성에까지 유교 윤리가 확산되어 명실공히 유교적 명분사회를 이루게 되는 사회적 배경에는 통치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낙향 관료들의 이익 유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조선 전국 초기 개국 공신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 세력이 내부 분쟁으로 쇠퇴하고 그 와중에 재야에 은거하여 유교적 학덕을 쌓는데 몰두하였던 사림파가 득세하는 것과 관련된다. 훈구파에 비해 지적,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림파는 유교 원리를 주무기로 세력권에 영입하였고, 따라서 이들은 유교의 이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였으며 유교적 질서를 뿌리내리는 데 전념하였다. 즉 유교이념의 실천은 사회질서 유지의 기제이자 사림파의 권력의 기반이었던 셈인데 지방에 기반을 가진 사림파 및 그 후예들은 집권시에는 중앙으로 나아가고 진출이 좌절될 때에는 향촌의 지배층으로 남아 유교적 교화를 명분 삼아 향권을 장악해 왔던 것이다. 지방 양반들의 중앙 관료로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양반층이 비대해지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향촌 내의 특권 유지가 어려워지고 양반들은 더욱 유교 윤리를 절대화하고 문종 중심의 조직화와 기준의 득세 가문들끼리의 결성을 통하여 신분 확보를 꾀하게 된다. 17세기 이후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족보 간행, 서원과 향안 중심으로 한 베타적 결사체의 활성화, 그리고 동족 부락의 형성은 이러한 향촌의 지배 질서의 재편성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는 원칙적으로 사적, 혈연적 영역과 혈연을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공적 영역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 경우 여성의 주요 역할은 남성의 출세를 돋는 내조자에 국한한다.

인류 역사에 가장 최초로 나타난 이러한 남녀의 불평등 관계는 그 장구한 역암에

2) 이정옥(1999),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단순히 자연적이고 기능적 분담이 현상으로 인지되어 왔을 뿐, 권력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남녀 관계는 노예제·계급 갈등 및 인종 차별 현상과는 달리 매우 친밀한 일상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그것을 대립적 집단 간에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다. 공적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비로소 여성들은 자신이 완전한 사회 성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여성 억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상당히 구체적인 물적 토대를 다루는 노동력 및 출산력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중심적 코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화적 차원이다.

아드너 E. Ardener(1975: 21)는 억압 집단이 갖는 하나의 주요 특성을 그들이 지배 집단에 비해 자신의 입장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구사력을 갖지 못한 점 inarticulateness, 즉, 병어리됨 mutedness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것을 계급적 억압이든 인종적 억압이든 여성 억압이든 관계 없이 모든 불평등 관계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성으로, 지배적 코뮤니케이션 체제에서 소외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보고 있다. 억압적 상황에 놓인 집단은 한결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지배 집단의 언어를 빌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조 영남 사대부가의 부녀들은 일찍부터 삼종지도와 열녀효부의 도덕적 규범의 굴레 속에서 순종무위의 행동거지로 일체의 문밖 출입이 어려운 자유와 인권을 박탈 당한 삶을 강요 당해야 했지만 동족집단의 향촌사회의 지배 기반 위에서 사대부가의 부녀로서의 신분적 대우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다. 아직까지 영남지방의 명문대가의 종부는 신분적으로 가문을 대표하고 대소가의 대소사를 진두지휘하는 상징적인 대우를 받는 사대부가의 부녀자의 위치를 누리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우리나라 가족은 생산의 단위이고 소비의 단위였다. 부유한 가정에서나 가난한 가정에서나 생산의 일차적 목적은 가내소비를 위한 것이다. 주식인 쌀만이 아니라 부식까지 가내에서 조달하고, 생산에서 조리, 저장 등 전과정을 가내에서 관리하였다. 식생활만이 아니라 주생활은 물론 의생활도 원료의 생산에서 의류의 제작까지 전적으로 가내노동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가족이 생활의 단위이기 때문에 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한편 가족은 가족 원의 노동력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것은 그 집이 장차 노동력이 많아지는 징조로 자녀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자녀가 없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그 집의 장래는 어두운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의 단위만이 아니라 생활의 단위였다. 의식주의 모든 생활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원은 가사를 분담하였던 것이다. 전통가족에서는 성별원리에 따라 가사분담을 하였으니 이를테면 가장인 남자는 집밖의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하고 주부인 여자는 집안 일, 쉽고 편한 일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가사분담을 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하다. 가장인 남자는 가족원의 의사를 외부에 대표하는 대표권을 갖고, 가족원을 통솔하는 가족권을 가지며,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을 갖는다. 이러한 가장권에 비하여 주부가 갖는 권한은 예컨대 재산의 관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장은 재산을 관리하고 상속하는 권한인데 비하면 주부는 재산을 운영하고 소비하는 것이니 주부의 권한을 가사의 운영권과 가사의 집행권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가장권이 주부권을 통솔하지만 실제 가사의 운영에서는 가장권이 도구적 권한 또는 형식적 권한인데 비하여 주부권은 실제적 권한이라 하겠다. 가사의 운영과 역할의 분담에서는 가장권이 주부권을 지도하고 주부권이 가장권을 보필하여 가장권과 주부권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이들이 자동적으로 운영되고 이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가사가 운영된다.<sup>3)</sup> 열쇠로 상징되는 이 주부권은 찬광, 쌀뒤주 등의 열쇠꾸러미를 주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한 집안의 경제의 소비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주부의 고유권한이었다.

이 주부권이 영남지방에서는 ‘안방물림’이라는 가장권의 계승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영남 지역 가족제도의 한 특성으로서, 가정 경영과 가정 경제에 있어서 주부인 부녀자의 권한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여성의 가정 내의 역할과 구성원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곧 여성의 입지가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점차 지지를 얻어 확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딸이나 자녀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적 역할부터 시작하였다.<sup>4)</sup> 그리하여 점차 여성의 교육자적 역할을 가정과 사회가 인정하게 되면서 전범적이고 규범적인 교육론에서 경험적인 교육론까지도 가사의 작자층은 자유자재하게 퍼력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가정 내의 입지는 당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화, 현대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가 지속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은 사회학적 논의의 끊이다.

18세기 이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식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상당하는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졌다. 유교적 선비상을 이상으로 하는 세정 모르는 남성들에 비해서 생산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적인 가계운영에 있어서 여성 역할의 비중은 상당히 컸다.<sup>5)</sup> 실지로 治產 잘하는 여성들은 가문 내에서 공적 인정을 받아 대대로 후손에게 칭송받는 예도 가사작품에서 흔히 발견된다.<sup>6)</sup> 내방가사에서는 실제 유교 윤리의 적극적 실천 방법인 열녀행이나 효녀행보다 이러한 가정 경제의 부흥이 더

3) 이광규(1993), 한국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3-14.

4) 이정옥(1990), “계녀가에 나타난 조선시대 여성 교육관”, 여성문제연구소 제18집, 효성여자 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5) 조혜정(1990),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지성사, 서울.

6) 최근 입수하게 된 인쇄물의 형식의 경주 최씨택 개인 가사집에 수록된 <능주구시경자록>은 가문 내에서 가문전범으로 전하는 가사인데 빈한했던 집안을 일으켜 세운 여장부에 대한 사랑을 야단스럽게 하고 있다.

옥 존경받고 공적 인정의 변수가 되었다. 곧 역척스러운 주부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그 역사적 진행은 산업화 과정에서 그 힘을 더 한층 발휘하게 된다.

교육자적 지위와 가정 경제권의 확보는 가정 내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 획득과 함께 남녀초월적 가정운영권을 공고히 확보하게 된다. 공적인 표충문화권에 대하여는 음양원리, 유교적 원리에 부분적으로 순응하는 적용의 방식을 취하면서 여성들만의 독특한 하위문화, 곧 자궁가족, 안채문화, 가정경제권, 모권을 형성 계승하면서 성취적이고 강인한 인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sup>7)</sup>

영남은 조선조 후기 양반층이 동족근린집단의 강화와 촌락 단위의 문화권을 형성, 그 유대감이 긴밀하였다. 또한 향촌사회의 지배기반 강화의 수단으로 혈통과 문벌 위주의 통혼권을 형성하였는데 내방가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혼권 내의 혼인은 한국의 혼인 풍속에서는 현재도 대단히 유효한 혼인관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재의 내방가사의 향유층도 대부분 영남 양반가 통혼권 내에서 형성된다. 소위 연비연사간의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 3. 경북 내방가사의 현재성

#### 1) 작자

2000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에서, 6월 6일, 8월 26일, 9월 11일, 9월 30일의 4차례에 걸쳐 안동시 용상동에서, 9월 22일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자연부락명 : 호지말)과 영덕군 창수면 인량동, 병곡면 송천동 등에서 취재한 자료를 근거로 내방가사의 현재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내방가사의 작자는 여성이다. 남성작자도 있을 수 있으나 독자와 전승자를 포함한 향유층을 기준으로 말하면 여성이다. 또한 결혼한 여성이다.<sup>8)</sup> 결혼하여서도 시집살이에 상당한 정도의 적용기를 거쳐, 시집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정내 지위를 확보한 중년 이후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이다. 그들은 사구고, 봉제사, 접빈객, 목친척 등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소위 시집살이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 여성이다.

그러므로 자식을 두어 며느리를 보거나, 딸을 시집 보낼 만한 연령층은 되어야 가사 창작을 비롯한 향유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혼 전,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들에 의해서 가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이미 한 사람 들이다.

“어렸을 적, 아마 열살 전후쯤에 어머니가 읽으시는 가사를 여러 번 들어 뜻도 모

7) 조혜정(1990), 위의 책.

8) 미혼이라 할지라도 결혼적령기는 넘긴 여성이다.

르면서 노래하듯이 외고 다녔더니 집안의 어른들이 종종 불러서 가사를 익어 보라고 하셔서 그 분들 앞에서 원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지금 보니 바로 계녀가였네요.”<sup>9)</sup>

가사의 작자들인 여성은 대부분 익명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개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그들은 택호(宅號)라는 별칭으로 이름된다. 택호란 결혼한 여자의 친정 고장의 이름에서 따온 별칭으로 시집온 여성의 출신지와 본관과 성을 알 수 있는 이름 중의 하나이다. 결혼한 여자의 택호를 따라 남편도 그의 집안에서는 배우자의 택호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친정이 경주인 “갑”이라는 여성의 “을”이라는 남성 집안이 있는 영천으로 시집을 오면, 그 여성은 ‘경주댁’이라는 택호로 불리며, 그의 남편은 그의 집안에서 ‘경주형님’, ‘경주아재’, ‘경주할배’가 된다. 그 반대로 여성 집안에서 “갑”은 ‘영천아지매’, ‘영천언니’가 된다.

가사 두루마리에 가사의 필자(작자일 수도 있고, 단순히 필사자일 수도 있다.)는 이 택호를 수기해 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sup>10)</sup>. 또한 가사를 찾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안노인들은 서로를 택호로 써 호칭하고 지칭한다. 기존 가사자료집의 작자나 소장자도 대부분 택호로 호칭되거나 지칭된다.

현존 가사 향유층의 연령 최하한선은 약 50대까지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친정이나 시집에서 어깨 넘어 전통적으로 익숙해왔던 창작자나 필사자만으로 하한선을 잡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연령층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에 의하면 낭송의 리듬이나 필사된 글씨체가 70세를 전후로, 혹은 학교교육을 받은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실제로 70세 그 후의 연령세대와는 가사 향유에 있어서 상당한 단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신식교육을 받은 세대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방가사보존회원의 경우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연장자에게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교육되는 세대와 교육하는 세대와는 낭송리듬에 큰 차이를 가진다.

<표1>의 ‘제보자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내방가사를 향유하고 있는 안노인 약 60여 명과의 면담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sup>11)</sup>

내방가사는 낭송과 필사라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해 왔다.<sup>12)</sup> 따라서 향유층도 그것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즉 작자층으로는 1차적 창작자와 그 작품을 개작하는 개작자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입수한 작품을 단순히 필사하는 필사자도 있다.

9) 조남이 할머니 구슬.

10) 최근의 창작가사나 필사 또는 인쇄자료에는 작자나 필사자의 설명을 써 두는 경우가 많다. 내방가사경창대회자료집에는 주소와 연락처까지 인쇄되어 있다.

11) 2001년도 말 보고예정인 경상북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인 “내방가사 CD 타이틀 제작”이 완료되면 전 경상북도내 시·군에 걸쳐 조사가 진행, 완료될 것이다. 약 200여 명의 제보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좀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나 연구논문이 제출될 것이다.

12) 이정옥, 앞의 책, 165면, 표7 참조.

위의 세 경우는 모두 문자로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사를 향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는 이러한 기록문학적 방법 외에 낭송이라는 방법으로도 향유된다. 이 경우는 대부분 두 사람 이상의 다중(多衆)이 모인 공공적 장소, 예를 들면 잔칫집의 안방 정도의 여성이 모인 장소에서 향유되는 방식이다. 한 사람의 초성 좋은 여성의 가사를 소리 높게 읽으면 그 외의 여러 여성들은 귀 기울여 듣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하는 자세를 가진다. 때로 감동적인 대목에서는 탄성과 친사 등의 간접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낭송이 중단되어 술행이거나, 곧 이어 한두 사람의 제자로 다시 가사 낭송은 계속된다. 한 번에 여러 편이 읽히지기도 한다.

보통 가사낭송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사람이 대소간에 한두 명쯤 있으며, 그들은 오랜동안, 집안의 여성들이 즐겨 듣고자 하는 가사를 여러 차례 읽은 경험으로 몇 편의 가사는 외고 있는 경우가 많다.

<표1>제보자 인적사항

NO.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번호				
나 이		택 호	(親家)	(姻家)
주	현주소 :			
소	원적지 :		연락처	
보유가사	입수경위 :			
창작가사				
필사가사				
특이사항	이사 : 교육정도 : 건강상태 :			

\* 본 자료는 내방가사 CD 제작을 위한 자료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2). 다양한 전승 형태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재 내방가사는 활발히 창작되고 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대부분의 작자들이 창작가사를 가지고 있었다. 더러는 시집이나 친정쪽의 조상들, 이를테면 할머니나 어머니의 작품을 소중히 간직한 것을 자랑삼아 내놓기도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자신이 지은 가사라고 하면서 제보해준 분들이 많았다.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의 백남이 할머니의 경우 가장 많은 창작가사를 보유하고 있었다.<sup>13)</sup> 총 70편의 가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1. 수삼십년 지난 오늘에,
2. 단기사이 팔칠연 갑오이월십사일나의,
3. 백발가,
4. 천자문 부치는 것,
5. 생사록,
6. 조상앞에 대한 향념록,
7. 은사카,
8. 전설같은 현실,
9. 시절가,
10. 호촌침묵,
11. 봉중록이라,
12. 촌명은 호촌이요,
13. 피판도,
14. 추천사,
15. 천자문 뜻,
16. 들노리,
17. 불학무식자탄가,
18. 과거록,
19. 탄식가,
20. 석별가,
21. 필녀가,
22. 해동관장가,
23. 애향곡,
24. 화수가,
25. 여러 가지,
26. 축산별곡,
27. 팔경록,
28. 물목이,
29. 애향가,
30. 약수,
31. 부모은증가,
32. 타향살이 서른사정,
33. 주역에 있는 말,
34. 회고록,
35. 너희들 뜻 있게 보아라,
36. 균신록,
37. 삼강오륜,
38. 절아격여문,
39. 연꽃노래,
40. 신라고찰,
41. 축야장,
42. 적벽부,
43. 시절가,
44. 회고문,
45. 형심전,
46. 육노리,
47. 제주록,
48. 주왕산,
49. 관해록,
50. 상강오륜,
51. 관광유람,
52. 금강노정기,
53. 칠십사회기념,
54. 수년단복가,
55. 남해구경,
56. 신미정월이일 이상장,
57. 사향행유곡,
58. 심사록,
59. 반포가,
60. 대순진리회,
61. 사친가,
62. 약수,
63. 충복가,
64. 경계가,
65. 칠십사회기념을 비디오 촬영,
66. 사향의주곡,
67. 퇴계선생 낙빈가,
68. 회수가,
69. 명제어른 궁체견학,
70. 온 가족이 함께보라

&lt;표2&gt; 제보자 일반사항

번호	이름	택호	현주소	원적	보유가사
1	조남이	윤임댁	의성	청송	90-100편
2	김성연	개실태	안동	안동	60
3	김유한	구광댁	안동	안동	60
4	김정순	신당댁	안동	안동	70-80
5	김옥	중들댁	안동	청송	70-80
6	김수행	금호댁	안동		30
7	권분성	임하댁	안동	안동	50
8	표양엄	죽산댁	안동	전라김제	
9	김성이	고란댁	안동	안동	53
10	김영진	신당댁	안동	안동	45
11	정진영	영청댁	안동	영양	13
12	심외생	덕천댁	안동	청송	50
13		안동댁	영주	안동	68
14	안지연		대구	안동	
15	이희강	분네댁	안동	안동	27
16	이길자	광산댁	안동	안동	27
17	권영숙	닭실댁	안동	봉화	70
18	윤숙옥	강원댁	안동	강원영월	27
19	김시한	남촌댁	안동	안동	67
20	김태지	덕산댁	안동		46

13) 이 할머니의 가사는 권우행, “백남이 규방가사 연구”(『민족문학의 양상과 논리』, 양하 정상박 박사학회논총, 1995)와 같이 단일논문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21	김태남	종호댁	안동		27
22	이상옥	송골댁	안동	안동	27
23	박무남	운호댁	안동	안동	
24	신복순	샘재댁	안동	청송	45
25	류계남	한들댁	안동	안동	48
26	김복동	고가리댁	안동	문경	32
27	유자희	고천댁	안동	안동	
28	박귀행	남문댁	안동	안동	45
29	권분조	하상댁	안동	안동	70
30	이순자	봉양댁	안동	충북제천	78
31	권삼정		안동		
32	김인한	오대댁	안동	안동	45
33	권분조	고천댁	안동	안동	68
34	박정서	감호댁	안동	청송	46
35	이만식	목계댁	대구	청송	
36	이상기		안동	안동	85
37	김총희		안동	안동	27
38	권태연	소방댁	안동		48
39	이선자		안동	의성	120-130
40	이온자	예안댁	영덕	안동	제책본 4
41	신세경	미곡댁	영덕	영덕	
42	남정철	남호댁	영덕	영덕	
43	백순기	이호댁	영덕	영덕	
44	조정회	사호댁	영덕	영양	
45	박봉주	미산댁	영덕	영덕	
46	남수진	호평댁	영덕	영덕	
47	이분남	미실댁	영덕	영덕	
48	남수호	원호댁	영덕	영덕	
49	김수남	주곡댁	영덕	영암	
50	권기남	대호댁	영덕	안동	
51	이수선	대평댁	영덕	영덕	
52	손영자	신천댁	영덕	경주	
53	신경복	송천댁	영덕	영덕	
54	정덕기	박실댁	영덕	울진	
55	남정모	원개댁	영덕	영덕	
56	조위석	사들댁	영덕	영양	
57	정대화	묘곡댁	영덕	영덕	
58	김일순	보문댁	영덕	영덕	
59	황인택	이천댁	영덕	영덕	
60	김기섭	내압댁	영덕	안동	
61	강수복	대산댁	영덕	영덕	
62	조수영	주실댁	영덕	영양	
63	김명자	대제댁	영덕	영덕	
64	조수남	후평댁	영덕	영양	
65	신위선	묘안댁	영덕	영덕	
66	신귀인	의주댁	영덕	영덕	
67	안필순	자산댁	영덕	울진	
68	김재영	오록댁	영덕	봉화	
69	백남이	중들댁	영덕	영덕	70
70	권필생	송계댁	영덕	영덕	
71	이진기	산대댁	영덕	경주	
72	권태연		안동	안동	

73	윤분기	영양댁	안동	영양	
74	홍성화	목동댁	안동	안동	
75	신은규	미대댁	영덕	영덕	
76	이부숙	수일정댁	영덕	영덕	
77	류연위	무실댁	영덕	안동	
78	김우정	지례댁	영덕	안동	
79	류 위	표계댁	영덕	안동	
80	권필조	입암댁(웃골)	대구	포항	
81	권중원	입암댁(원당)	영천	포항	
82	권중봉	입암댁(양동)	경주	포항	
83	권중천	입암댁(미제)	대구	포항	
84	심명희	청송(교관댁)	서울	청송	
85		입암댁(넉실)	영덕	포항	
86	순창완	방록골댁	포항	경주	
87	최순식	미역골댁	포항	경주	100여편
88	최병화	입암(웃골)	서울	포항	
89	권중선	입암(귀미)	대구	포항	
90	조 은	오길(입암)	포항	영천	
91	남상재	입암(월매)	포항	청송	
92	정태용		대구		
93	권중조	입암(자천)	경주	포항	100여편
94	박부들	상천댁	예천	예천	제책본9권
95	박필희	가일댁	예천	예천	
96	채숙록	표내댁	예천	예천	20여편
97	권 원	입암댁	영천	포항	
98	류두루	하회댁	성주	안동	제책1권
99		도동댁	성주	달성(대구)	

### 3) 전승과 보존 형태

현재 내방가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창작하는 수준에서 家傳 차원의 문집 형태로 발간하거나 개인적 관심가에 의한 편저, 시군 단위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 다양한 자료집의 형태로 집집마다 장통 속에 숨어있던 내방가사가 발굴·보고되고 있다. 작품 창작의 사례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가사 향유층의 자손들이 어머니 혹은 윗세대 조상들의 가사자료를 문집형태로 출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겠다.

『이내말쌈 들어보소』와 『내방교훈』이 좋은 예다. 전자는 벽진 이씨 집안에서 유인본으로 출간한 개인문집형태의 가사집이다. 후자는 역시 경주 최씨 집안의 세 전가사를 엮은 가사집이다.

내방가사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는 호사가에 의해 자료집이 발간된 경우가 있다. 안동문화원에서 발간한 『안동의 가사』는 이대준이라는 한 호사가에 의해 편찬된 가사집이다. 이씨는 '가사에 도취하여 문전을 섭렵하고 촌가의 내방을 찾아 다니면서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가사를 모으는 일을 필생의 업으로 삼는<sup>14)</sup> 현시대에 드문 이이다.

14) 임동권, 『안동의 가사』 서문.

## 『안동의 가사』 수록 가사자료

도덕가/퇴계 부자분, 화전가/미상, 하회경곡/류시경, 망부가/미상, 맹망인덕담경/미상, 자장가/이원봉, 화수찬가/김구현, 강남행/미상, 조부인 귀정 회고가/미상, 여행가/미상, 평수 부인가/미상, 부녀 노정기/미상, 제주관람가/조희수, 애사/이윤항, 우복동찬가/김자상, 진해강산유람록/미상, 고별가/미상, 환향곡/미상, 망향가/정임순, 대명복수가/김창희, 해소사/미상, 정부가/미상, 백발가/미상, 장한가/미상, 계매가/미상, 여자단/미상, 수연축하가/미상, 수연가/미상, 축수연사/미상, 남매이별가/미상, 수연축사가/미상, 백남수연경축가/김필임, 동상가/미상, 회포가/미상, 계아사/미상, 신세자탄가/미상, 시절가/미상, 환향유록/미상, 선유가/미상, 원한가/권영철 모친, 석천화산 어륜몽유가/이필남, 몽중 탐승가/미상, 화전가/미상, 주왕산기행/미상, 열녀가/미상, 천등산 화전가/권기섭, 청량가/미상, 화조가/미상, 딩 화전가/미상, 옥설화답/미상, 사친가/미상, 한국 유람가/김대현, 관동 유람가/미상, 사친가/미상, 봉우가/미상

향토문화적 차원에서 경상북도 각 시군이나 문화원에서 내방가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집을 발간한 예도 있다.

영천시에서 발간한 『규방가사집』(1988)에는 총 51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自嘲嘆息, 道德勸善, 自然讚嘆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 편찬하였다.

## 『규방가사집』 수록 가사자료

1. 자조탄식(自嘲嘆息) : 고향 쪄난 회심곡, 꽈시지문, 기천횡가, 깃천별장가, 남미상봉 월별가, 낭군님전상서, 노처녀소회가, 단종인탄인모회, 동데민 유희가, 리회가, 별곡답가, 봉우사모가, 사모가1, 사모가2, 사모가3, 신슈단, 심중소회, 여자한가, 원망가, 이별가, 이별한탄가, 자탄가, 자탄회심곡, 정부인기천가, 진정소회가, 탄소소라, 탄식가1, 탄식가2, 회심가, 회심소
2. 도덕권선(道德勸善) : 경여가, 계여가, 사친가, 오륜가1, 오륜가2, 행신가, 효행가, 효덕가, 효성가
3. 자연찬탄(自然讚嘆) : 사시경기가, 사시풍경가, 손슈화조가, 춘풍사, 춘풍사답화전가1, 화전가2, 화전가3, 화전가4, 금강유산가, 주왕손유롭기, 한양가

봉화문화원에서 발간한 『우리 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1995)에는 민요와 가사를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그 중 규방가사 총 44편이며, 권선효충가와 기타가사로 분류하였다.

### 『우리 고장의 민요와 규방가사』 수록 가사자료

권선효충가 : 권선지로가, 효자가, 삼강오륜가, 권선지로가, 당일권선가, 도덕가, 자녀훈계록, 사친가, 수연가, 논개충열가

기타가사 : 자장가, 적벽가, 적벽부, 새야새야 파랑새야, 풍월노래, 산유화, 과부중, 풍월, 웃노래Ⅰ, 웃노래Ⅱ, 과부노래, 색시노래, 말거리, 누에, 회심곡, 꿩 자치기, 화조가, 매화시, 회한가, 석별가, 세덟가, 북정가, 침부가, 명월음, 꽃노래, 화전가, 선유가, 망부가, 봉우소회가, 상화가, 칠석가, 팔도유람가, 금강산 유람가, 제주도 여행가

내방가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안동에서는 내방가사 경창대회를 매년 개최하며 내방가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내방가사가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멸위기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선자씨가 가사의 발굴과 전승, 지속적인 창작을 위해 용상장수대학을 중심으로 내방가사전승보존회를 구성하였다. 현재 내방가사전승보존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씨는 안동 전역의 경로당의 도움을 받아 1997년 단오날 제1회 가사경창대회를 연 후, 98년 본회를 공식적으로 조직, 매년 경창대회를 개최, 올해로 4회의 경창대회를 열었다.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내방가사를 향수하시는 분이 1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본 보존회는 경상북도에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제1회 경창대회 때부터 발간한 가사모음집이 4권 있으며, 98년과 2000년 등 격년으로 개최되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및 안동민속제에 출전 시연한 바 있고, 또한 '99년 전국노인체육대회(장충체육관)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고 한다.

총 4회에 걸쳐 4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가문에서 세전되던 가사를 읽기 쉬운 현대어로 바꾸어서 기록된 가사나 최근에 창작된 가사로 이루어져 있다.

### 제1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모음집 수록 가사자료(20편)

화전가/권분성, 웃풀이/권자익, 성묘가/권용복, 도산별곡/박삼기, 망개 짱는 선소리/정은섭추풍난별곡/정남진, 화조가/김복순, 칠석가/류순조, 후원초당봄/박승목, 퇴계선생노퇴작시 시곡/조남이, 권효가/권금숙, 화전가/권정이, 구여성의 자탄가/정위조, 춘향이 매맞는 대목/정연태, 초한가/이수경, 만고영웅/정정운, 삼강오륜/한준태, 수도경치가/심외생, 사향서원가/신분형, 의성읍 오로동 전설가사/이선자

### 제2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모음집 수록 가사자료(19편)

영화창회록/권자익, 세월가/민분조, 나의 일생/권영숙, 도산별곡/이수결, 회재선생사 모애곡/박삼기, 부녀자탄가/김복순, 로탄가/미상, 권효가/규순조, 베틀가/천오조, 일 생회상곡/김종향, 길삼가사/이준현, 옥설가/안옥순, 망부가/권달국, 백발가/김남홍, 유람가/정남진, 원정동락가/김종수, 퇴계선생사모애곡/박경기, 자녀훈계론/권분성, 여 자소회가/이선자

### 제3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모음집 수록 가사자료(21편)

나의 증순 백일가/권자익, 별곡소희/김유한, 담배가/이상기, 화수가/김종향, 해방가/류차희회갑가/권정희, 농춘가/김복순, 사향가/김시한, 기묘년 봉우가/이점함, 한라탐 승가/류계남종군회심곡/권영숙, 부녀자탄가/김정순, 구국명륜가/박무남, 추천가/류수 향, 아유가/김영진, 시를여자 서른사정/권숙향, 여행가/이재선, 수연경축가/금옥, 하 회경치가/심외생, 봉우사모가/권분성, 영남칠십일주가/이선자

### 제4회 내방가사 경창대회 모음집 수록 가사자료(24편)

노인소회가/박무남, 제주도 여행가/류수향, 고향이별가/안지연, 은사가/조남이, 오륜 가/이만식, 경력가/김성, 육여사 추모가/김유한, 여자설운가/김성년, 단종애사가/권분 조, 화투풀이가/김복순, 이별가/김수행, 대한해방가/김인환, 경녀가/이상기, 오륜가/정진연, 예만김씨 세덕가/김옥영, 고별가/한희숙, 사미인가/권영록, 여행유람가/김시 묘, 회심가/금옥, 남매이별가/김정순, 권선징악가/심외생, 환향가/김종향, 장렬가/권 분성, 닭실 세덕가/이선자

## 4. 결론 : 보존과 전승의 방향성 모색

현재 내방가사는 여성들 간의 낭송과 같은 집단적인 전승이나 秀作의 필사 차원이라는 과거의 전승방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창작은 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대단히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관심사나 개인적 경험이 다양해지면서 내방가사의 유형 분류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창작된 가사에 대한 수집과 유형 분류 등의 기초적인 작업이 일단 시급하다. 가사의 제목으로 창작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 있으나 대부분은 전통적인 제목을 가지고, 그러나 그 내용은 최근의 작자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종전의 가사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남해유람별곡’, ‘자녀교훈’, ‘백발가’, ‘효행가’, ‘화슈가’, ‘비탄곡’, ‘화전가’ 등과 같은 작품들이 그렇게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내방가사는 그와 유사한 한글 수필의 영역인 제문이나, 상장, 위장 등과 함께 가사 향유계층에서는 연면히 전승되고 있는 여성적 글쓰기의 모델이다. 그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경북의 여성노인들은 아직도 내방가사를 지으며, 즐기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현장성 있는 자료의 수집, 보존과 전승 차원의 조사와 기록이 시급하다.

본고의 보고는 지극히 부분적이며 그런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 2000년도 경상북도의 지원 하에서 필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내방가사 CD제작과 보급 계획”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늦은 감이 적지 않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전승방법의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권영철,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봉화문화원, 『민요와 규방가사』, 1995.  
 (사)안동내방가사전승보존회, 『내방가사경창대회모음집, 1. 2. 3. 4』, 1997-2000.  
 영천시, 『규방가사집』, 1988.  
 이대준, 『안동의 가사』, 안동문화원, 1995.  
 조애영, 『은촌내방가사집』, 1971.  
 최강현, 『기행가사자료선집I』, 국학자료원, 1996.  
 기타 필사 또는 영인본 자료 다수.

### 2. 논문 및 단행본

- 고려대학교 고전문학·한문학연구회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후출판사, 1980.  
 권경은, 「여성화자 가사에 나타난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김학성, 「가사의 장르성격 재론」, 『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 『한국 고전 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0..  
 노태조, 「금행일기에 대하여」, 어문연구 제12집, 어문연구회, 1983.  
 서영숙, 「개화기 규방가사의 한 연구」, 어문연구14, 어문연구회, 1985.  
 ----, 『한국 여성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서원섭, 『가사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신은경, 「조선조 여성 텍스트에 대한 페미니즘적 조명 시고(1)-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석정 이승옥선생 회갑기념논총, 원일사, 1991.  
 엄은영, 「강원지역 가사의 연구-작품배경과 작자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1998.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 부산대출판부, 1998.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이정옥, 「내방가사에 대한 미학적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1.  
 ----, 「내방가사의 작가의식과 그 표출양상」, 문학과언어6, 문학과언어연구회, 1985.  
 ----,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2.  
 ----, 「내방가사의 언술구조와 향유층 의식의 표출 양상」, 어문학 60집, 한국어문학회, 1998.  
 ----,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이형대, 「<북새곡>의 표현방식과 작품세계」,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고려대학교 고

- 전문학 · 한문학연구회편, 집문당, 1995.
- 정재호, 「가사문학에 나타난 근대적 성격」, 정신문화연구 겨울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최태호, 「내방가사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68.
- 홍재희, 「가사문학론」, 국문학연구 8, 효성여대 국문과, 1984.
- , 「영남가사문학연구(1)」, 논문집8, 대구교대, 1972.

# 한국사회에서의 대학진학수요 결정요인에 관한 시계열 분석

有田 伸  
동경대학 대학원

## 요약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대학진학수요가 어떤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는지를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진학수요에 관한 분석은 주로 경제학적 시각을 통하여 행해져 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던 제도적 변수를 적극적으로 분석에 도입하기로 한다. 1972년부터 1996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자의 대학진학수요는 가계소득 등 예산제약조건에 관한 변수와 정부가 결정하는 대학입학정원에 의하여 크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대출자/고졸자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관련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자의 대학진학수요에 관해서는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남자의 경우에 비하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은 애매하고 분석모형의 적합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 I. 머리말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학진학기회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1996년에 실시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학생의 96%이상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의 진학을 원한다고 한다(통계청, 1997). 한국사회에서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대학진학의욕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집합적 데이터를 사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한국 대학진학수요의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 희망률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지를 통계적 수법을 통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sup>1)</sup>. 그 과정에서는 이론에서 도출된 분석모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학교제도와 입시제도의 여러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특징들을 분석모델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분석을 시도한다.

1)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대학진학수요함수의 추정작업이 된다.

## II. 대학진학수요에 대한 접근방법

### 1. 경제학적 접근방법

대학진학수요에 관한 실증분석은 지금까지 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주로 행해져 왔다. 진학수요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진학행위를 “투자”로 보는 것과 “소비”로 보는 것으로 대별된다.

Schultz, Becker 등이 주장하는 인적자본론(Becker, 1964; Schultz, 1971 등)은 전자에 속하는 이론이다. 인적자본론자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배워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는, 학교교육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인적자본론에서는 학생들은 진학에 따른 제비용 대신에 장래에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진학하려는 것으로 가정되며 진학행위는 일종의 “투자행위”로서 이해된다.

이 인적자본론은 사회전체에서의 최적 교육투자량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사용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진학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수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즉, 각 개인은 진학에 드는 비용과 진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여 그 수익률(収益率)이 충분히 높으면 진학하려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사회전체에서의 진학수요는 학교납부금, 기타 수학비(修學費), 유실소득(foregone earnings) 등의 진학비용과 진학함으로써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진학수요모델에서는 자본시장의 완전성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자기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진학하려는 학생은 자본시장을 통하여 진학자금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시기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가정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인적자본론에 입각해서 분석을 할 때에는 자기자금량 등의 예산제약조건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학적 접근방법에는 진학행위를 “소비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있다<sup>2)</sup>. 이 접근방법은 진학의 목적을 교육을 받는 것 자체에 따른 효용(utilitiy)종대로 보는 입장이며 이 관점에 따르면 “교육”도 일종의 소비재로서 이해된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교육에 관해서도 다른 소비재와 같이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개인은 일정한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최대화하도록, 즉 다른 소비재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과 교육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이 일치되도록 “교육”이라는 상품의 구입량을 결정한다고 가정된다.

이 소비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사회전체의 진학수요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학교납부금이라는 교육의 “가격”과 소득수준, 대체재의 가격 등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학적 접근방법은 “투자”나 “소비”라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행위 이념형을 “대학진학”이라는 행위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

2) Campbell과 Siegel(1967)의 분석모델이 이 예이다.

학행위를 완전한 “투자행위”나 완전한 “소비행위”로 가정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쪽의 접근방법에서 도출된 각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진학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상정된 변수들은 투자론적 접근방법과 소비론적 접근방법 사이에서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통하여 어느 접근방법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때문에 경제학적인 진학수요연구는 진학행위를 투자로 보는지 소비로 보는지를 선형적(先驗的)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진학행위에는 투자적 측면과 소비적 측면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에서 가정되는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검증한다는 절충적인 방법을 채용하기로 한다<sup>3)</sup>.

## 2. 제도적 요인 -한국 교육제도의 특징

지금까지 행해진 경제학적 진학수요분석에는 경제적 변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비경제적 변수들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진학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 및 그 집합으로서의 진학수요는 경제적 변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에 찾아낼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대상인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에는 “대학입학정원령” 등에 기초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국내 모든 대학의 입학정원을 정부가 결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왔다. 국가가 대학입학정원을 결정할 경우 그 결정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한국의 대학입학정원은 당해 년의 사회적 진학수요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로 인력수요 등의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으며 정권교체에 의해서 그 수준은 크게 변동되어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sup>4)</sup>. 물론 “재수생의 축적”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진학수요를 고려하여 대입정원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해 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수요는 대입정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졸업자수와 대학입학정원수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 증가율과 대입정원수 증가율 사이의 상관계수는 0.357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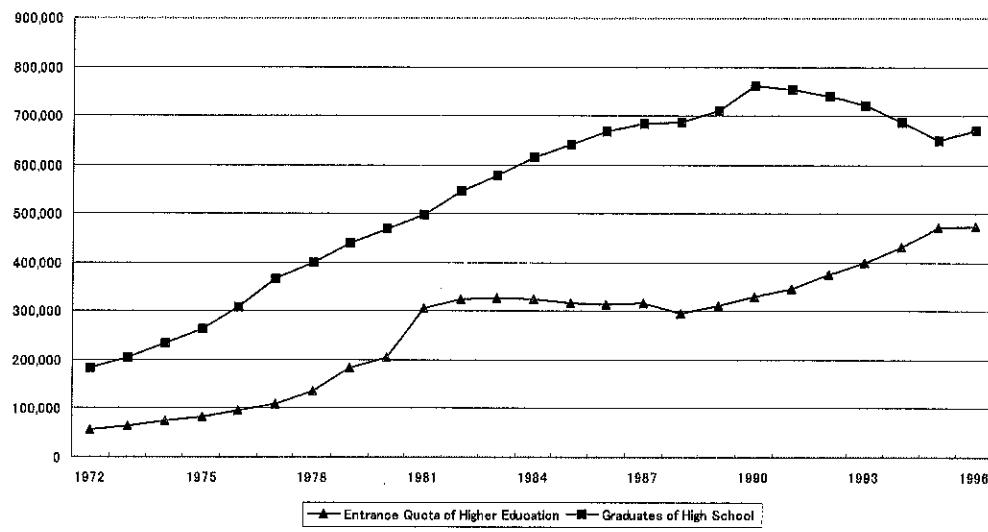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진학기회시장의 양상은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이나 투자재 시장과는 전혀 다르고 진학기회 공급량이 진학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동해 온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진학 때 학력을 기준으로 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결정한 대학진학기회 공급량이 진학수요 자체에 영향을

3) 같은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과 같은 이론부하도가 높고 정보집약적인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분석모델에 그대로 집어넣기로 했다. 물론 수익률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료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한다.

4) 한국의 대학정원정책에 관해서는 강무섭(1986), 송광용(1988), 김영화(1993), 손준종(1994), 등을 참조.

5) 1972년부터 1996년까지에 수치로 계산함. 이 상관계수는 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다.

<그림 1> 대학입학정원수와 고등학교 졸업자수의 추이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판

미칠 수도 있다. 즉, 당해 년의 진학수요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대학입학정원의 변동이 한계적 진학희망자의 “합격가능성 판단”을 좌우하고 그들의 진학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적인 진학수요수준을 변동시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의 대학진학수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때 대입정원이라는 제도적 변수를 분석모델에 집어넣어서야 비로소 적절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진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의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고등학교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대학진학자격소유자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의 진학의욕을 변동시킬 만한 제도개혁이 시행되었을 경우, 대학진학수요 자체도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일어난 고등학교정책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7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후기 중등교육 정책은 상당히 한정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성격을 띠어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비교적 억제되어 왔고 각 고등학교간에는 입학 난이도와 진학 실적에 따라 “일류고”나 “이류고”라는 서열이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한국의 고등학교제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정원이 인문고를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신설교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가장 큰 변화는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이후 20개 도시에서 시행된 이 평준화조치는 고등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과열 고입경쟁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며, 각 고등학교별의 입학자 선발을 폐지하고 학군별로 입학자를 선발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도가 관리하는 연합고사에 합격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희망자는 거주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학군내 고등학교

에 추첨으로 배정되게 되었다<sup>6)</sup>. 이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의하여 학군내 학교간 서열구조는 없어지고 고입경쟁도 구조적으로 진정화되었다. 환언하면 이 조치는 고등학교입학단계에서의 “선발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70년대 중반의 고등학교정책 변화는 대학진학수요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학진학 자격 보유자인 고등학교 졸업자(특히 인문고 졸업자)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질적 측면에서도 고등학교단계에서의 선발성 약화가 고등학생의 진학의욕을 높이고 사회전체에서의 대학 진학수요를 확대시켰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교육사회학에서는 한 국가의 학교제도와 선발체제 형태가 학생의 진학의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져 있다. 터너(Turner, 1960)는 1950년대의 미국과 영국 학교체제와 그 배경에 있는 이동 규범, 그리고 그것이 학생의 아스페레이션(aspiration)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발이 가능한 한 늦게까지 연기되어 있고 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성적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희망직업수준이 일반적으로 높고 공상적인 경향을 띠는 반면, 영국에서는 복선적인 중등교육제도와 초기에 실시되는 선발때문에 공상적인 희망은 드물고 특히 선발시험에 실패한 학생의 희망수준은 크게 떨어진다고 한다<sup>7)</sup>.

이상의 연구를 참고로 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 고등학교단계에서 선발성 및 분리성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대학진학의욕이 상승하여 그 결과 대학진학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 III. 변수 선정과 분석방법

#### 1. 대학진학수요의 측정

지금까지 여러 나라 사례에 관해서 행해진 진학수요분석에는 각 년의 실제 진학자수를 진학수요수준으로 삼는 연구와 진학지원자(희망자)수를 진학수요수준으로 삼는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진학자수는 정부가 정하는 입학정원과 같기 때문에 후자의 진학지원자수로 진학수요수준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실시된 대입제도 개혁 때문에 신뢰성이 있는 변수를 선정하는 것은 예상외로 어려운 작업이 된다.

교육부(구 문교부)가 발행하는 “교육통계연보”에는 고등교육기관 진학희망자·지원자수에 관해서 세 계열의 데이터가 실려 있다. 이 중 “대학지원자수”는 각 대학

6) 이상의 고등학교정책 변화는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진학수요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미에서의 중등교육 평등주의화 경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한다.

7) 그 외 연구들도 선발체제가 학생들의 진학의욕이나 아스페레이션 수준을 좌우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竹内洋, 1995; Rosembaum, 1976 등).

지원자수를 단순히 합계한 수치이며 김영화·유한구(1994), 이광호(1995)에서 사용된 것이지만 이 수치에는 복수대학지원자수가 중복 계산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합계 대학지원자수는 전기·후기별 입학정원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며(백일우, 1990:9), 또 1981년에는 대학별 본고사 폐지에 따라 사실상 지원 학교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지원자수가 크게 상승되어 있다는 등, 이 데이터를 시계열적 진학수요 변수로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학입학예비고사 수험자수”는 김영철(1979)에서 진학수요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사용된 수치이며 중복계산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뢰할 만한 데이터이다. 하지만 1979년에 전문대학 지원자에게도 대학입학예비고사 수험이 의무화되면서부터 수험자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통계연보”에는 4년제 대학 지원자와 전문대학 지원자별에 수험자수가 계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9년을 넘어서 진학수요를 분석할 경우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수”이다. 이 수치는 각 고등학교에서의 조사결과를 집계한 것이며 당해 년 고등학교 졸업자 중 한 개이상의 상급학교를 지원한 학생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로부터는 학교종류별 지원자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입제도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일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이것을 대학진학수요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사용하기로 한다<sup>8)</sup>. 이 진학희망자수는 고등학교졸업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로 나눈 “신규 고졸자의 대한진학 희망률”을 시계열 분석의 종속변수로 한다<sup>9)</sup>(<그림 2>).

## 2. 독립변수와 분석방법

전절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대학진학수요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진학 비용에 관한 경제적 변수, 진학의 편익(benefit)에 관한 노동시장 관련 변수, 그리고 학생의 합격 가능성 인식이나 진학의욕을 좌우하는 교육제도 관련 변수들을 들 수 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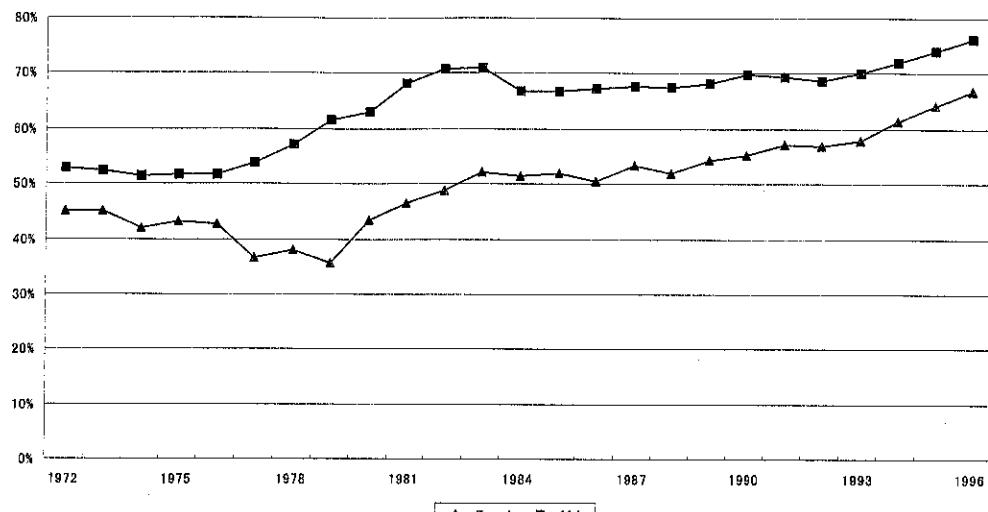
먼저 진학 비용에 관한 변수로서는 수업료 등의 학교납부금과 진학 비용 부담능력으로서의 소득수준을 들 수 있다. 학교납부금 변수는 4년제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각 평균치를 합한 것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소득수준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개인이 아니라 가구가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주체임을 감안해서 가구당 가계소득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한 수치를 사용한다. 진학에 관한 비용으로서는 유실소득(流失所得)도 고려해야 되지만 자료의 제약 때문에 본

8) 이 데이터를 사용한 선행연구는 백일우(1990) 및 백일우(1993)뿐이다.

9) 이것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취급하는 표본수가 적어서, 독립변수도 되도록 적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기도 한다.

10) 그 외 사회·문화적 요인도 한국 대학진학수요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들의 영향은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 있어서는 분석대상에서부터 제외했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고찰하기로 한다.

&lt;그림 2&gt;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희망률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판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sup>11)</sup>.

진학의 편익에 관한 노동시장 관련 변수는 대학 진학에 따른 추가적 소득의 대변수로서 남녀별 대졸자/고졸자간의 평균임금비율을 사용한다. 그 외로 취업기회에 관한 변수도 분석모델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분석에서는 신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진학자는 분모에서 제외)을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진학희망자는 분모에서 제외)로 나눈 수치를 대졸자/고졸자간 취업률 격차 변수로서 사용한다.

교육제도에 관한 변수로서는 김영화·유한구(1994), 김영철(1979)에서도 그랬듯이 정부가 결정하는 대학입학정원을 분석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각년의 대학입학정원을 신규 고졸자수로 나눈 상대적인 입학정원을 독립변수로 한다. 또 도시부에서 실시된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조치가 진학수요에 미쳤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변수를 사용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조치는 1974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 이후 기타 18개 도시에 확대된 것이지만 평준화 대상 지역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과 부산의 고등학교 학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1974년에 진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7년 이후를 1로 하는 가변수를 도입하기로 한다.

다음 절에서는 각년의 이상 변수값을 표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시도한다. 대학진학지원은 보통 진학 전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학비용 변수와 노동시장관련 변수에는 1년의 시차를 두지만 다음 년도의 입학정원 및 학교납부금은 지월시점에 있어서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에는 시차를 두지 않는다. 또 한국사회에서는 진학행위에 관해서 남녀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남녀별

11) 유실소득은 가계소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 Campbell and Siegel(1967)도 그 일례이다.

로 진학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대상기간은 1972년부터 1996년까지로 하고 실제 분석에는 통계 프로그램 TSP를 사용한다.

#### IV. 분석결과

<표 1>은 신규 고등학교 졸업자(남자)의 대학진학희망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표에는 각 회귀식에서의 독립변수 계수 추정치,  $t$  값, 유의도 및 각 회귀식의 결정계수(수정치)와 오차항의 계열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이 표시되어 있다.

회귀식(1)부터 식(5)까지는 제도적 변수를 제외하고 경제적 변수만을 포함한 식들이다. 식(1)은 단순한 소비모델이라 할 수 있고 식(2)-(4)는 식(1)에 경제적 편익에 관한 노동시장 관련 변수를 하나 내지 둘 추가한 것이다(식(5)는 식(2)에서 학교납부금을 제외한 것임). 이 회귀식들의 결정계수는 그다지 낮은 편이 아니지만 각 회귀계수 중 유의한 것은 식(5)의 가계소득 변수만이며 더 적합적인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식(6)-(10)은 식(1)-(5)에 대학입학정원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식(1)-(5)와 이들 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비교하면 결정계수 및 D.W.통계량이 크게 개선되어 있고 입학정원이라는 제도적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적합도가 대폭 상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와 그 유의도를 봐도 모든 회귀식에서 가계소득 변수가 진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납부금 변수의 계수도 사전의 가설대로 負의  $\beta$ 가 되어 있다. 또 새로 추가한 입학정원 변수는 모든 회귀식에서 유의한 반면, 임금격차 변수와 취업률 격차 변수는 5%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회귀식 중에서 대입정원, 가계소득, 학교납부금 변수를 포함한 식(6)은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결정계수도 높다. 이 식(6)에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가변수를 추가한 식(11)의 추정결과를 보면 대입정원, 가계소득과 같이 평준화 가변수도 대학진학희망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입정원수나 가계소득수준 변화를 통제하고 나서도 1977년 이후 남자 진학희망률이 유의하게 상승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고등학교를 졸업자 중의 진학희망자수를 전체 졸업자수로 나눈 진학희망률이므로 분모인 고등학교 졸업자수만이 늘어나고 분자인 대학진학자수는 변하지 않는 경우 진학희망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변수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는 것은 평준화 실시에 의한 대학진학의욕 상승효과가 이 시기의 고등학교 진학자 증가에 따른 진학희망률 저하 효과를 능가할 정도로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식(11)의 결정계수는 0.926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D.W.통계량은 1.049로 여전히 낮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정부가 결정하는 대학입학정원수가 고등학생의 진

&lt;표1&gt; 남자 진학수요 분석결과

	C	Entrance Quota	Household Income	Tuition Fee	Wage Difference	Difference of Employment Rate	Equalization in H.S. Dummy	adj. R <sup>2</sup>	D. W.
(1)	0.500** (20.190)		0.113 (1.408)	0.016 (0.329)				0.624	0.224
(2)	0.252 (1.789)		0.135 (1.736)	0.030 (0.642)	0.118 (0.179)			0.658	0.337
(3)	0.690* (2.673)		0.049 (0.414)	0.018 (0.359)		-0.126 (-0.739)		0.616	0.238
(4)	0.454 (1.630)		0.066 (0.581)	0.032 (0.679)	0.120 (1.801)	-0.136 (-0.842)		0.653	0.362
(5)	0.271 (1.993)		0.180** (5.740)		0.111 (1.728)			0.667	0.357
(6)	0.382** (17.485)	0.492** (7.029)	0.164** (3.610)	-0.077* (-2.546)				0.883	0.792
(7)	0.268** (3.330)	0.468** (6.668)	0.172** (3.858)	-0.066* (-2.152)	0.057 (1.469)			0.889	0.839
(8)	0.449** (2.998)	0.488** (6.785)	0.141 (2.070)	-0.076* (-2.442)		-0.044 (-0.457)		0.878	0.772
(9)	0.347* (2.151)	0.462** (6.415)	0.145* (2.177)	-0.064 (-2.040)	0.059 (1.480)	-0.054 (-0.570)		0.885	0.821
(10)	0.234* (2.737)	0.397** (5.920)	0.090** (3.612)		0.078 (1.929)			0.869	0.456
(11)	0.389** (22.411)	0.393** (6.364)	0.110** (2.851)	-0.049 (-1.976)		0.057** (3.687)		0.926	1.049

\*p&lt;.05 \*\*p&lt;.01 팔호안의 수치는 t값임

&lt;표2&gt; 남자 진학수요 분석결과 (4년제 대학 입학정원)

	C	Entrance Quota	Household Income	Tuition Fee	Wage Difference	Difference of Employment Rate	Equalization in H.S. Dummy	adj. R <sup>2</sup>	D. W.
(12)	0.351** (15.753)	0.785** (8.061)	0.158** (3.862)	-0.050 (-1.920)				0.904	0.919
(13)	0.154* (2.473)	0.764** (9.479)	0.176** (5.112)	-0.037 (-1.676)	0.096** (3.304)			0.935	1.382
(14)	0.316** (2.244)	0.791** (7.751)	0.170* (2.715)	-0.051 (-1.894)		0.023 (0.256)		0.899	0.940
(15)	0.140 (1.085)	0.766** (9.049)	0.180** (3.461)	-0.037 (-1.639)	0.096** (3.210)	0.010 (0.133)		0.931	1.393
(16)	0.140* (2.168)	0.720** (9.062)	0.123** (7.815)		0.105** (3.530)			0.929	1.069
(17)	0.361** (25.377)	0.647** (9.754)	0.103** (3.745)	-0.029 (-1.716)		0.060** (5.687)		0.961	1.953
(18)	0.368** (4.797)	0.645** (9.033)	0.102** (3.049)	-0.029 (-1.674)	-0.003 (-0.088)		0.061** (3.630)	0.959	1.964
(19)	0.368** (4.599)	0.605** (8.621)	0.058* (2.687)		-0.002 (-0.042)		0.064** (-3.696)	0.956	1.553

\*p&lt;.05 \*\*p&lt;.01 팔호안의 수치는 t값임

학회망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자신의 입학년도의 정원수를 고려하면서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한계적 진학희망자”들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같은 대학정원수라고 해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변화보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화가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울 수도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분석에 사용한 전체 대학입학정원 대신에 4년제 대학 정원수를 신규 고졸자수로 나눈 비율을 4년제 대학 정원변수로 하여 다시 분석을 시도했다. <표 2>의 식(12)-(16)은 입학정원 변수를 제외하면 <표 1>의 식(6)-(10)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각 회귀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2>에 실린 회귀식의 결정계수와 D.W.통계량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학정원 변수의 계수추정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전체 대학 정원수 보다 4년제 대학 정원수가 남자의 대학진학희망률을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6)-(10)과 식(12)-(16)을 비교하면 대졸자/고졸자간 임금격차 변수를 포함한 식(13), 식(15), 식(16)에서 결정계수가 크게 올라갔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전체 입학정원수를 사용한 회귀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대졸자/고졸자간 임금격차 변수가 여기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준화 가변수를 추가한 회귀식에서는 이 변수는 다시 유의하지 않게 된다. 식(12), (13), (16)에 평준화 가변수를 추가한 식(17), (18), (19)의 회귀결과를 보면, 평준화 가변수를 추가함으로써 결정계수와 D.W.통계량이 함께 개선되어 있지 만<sup>12)</sup> 임금격차 변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대졸자/고졸자간 임금격차가 남자 대학진학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는 여자의 대학진학수요에 관해서도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및 <표 4>). 대입정원을 포함하지 않는 식(1)-(5)에는 유의한 변수가 거의 없고 결정계수도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은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경우 대입정원 변수를 추가한 식(6)-(10)에 있어서도 결정계수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식(10)을 제외하고는 대입정원 변수와 가계소득 변수조차 유의하지 않다는, 남자의 경우와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분석모델에 관해서 전체 대학입학정원 대신에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수를 사용한 것이 식(12)-(16)이다. 식(6)-(10)에 비해서 결정계수와 D.W.통계량이 크게 개선되어 있고 입학정원 변수는 모든 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정원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데 4년제 대학 정원변수는 진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로부터는, 여자의 4년제 대학 선호경향이 남자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여자의 사회진출이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대학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의 진학의욕을 환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정원 변수를 추가한 식(12)-(16)에 있어서도 학교납부금, 임금격차, 취업률격차 등 변수의 유의한 영향은 인정되지 않고 뿐만아니라 남자의 경우 명확히 나타난 가계소득 변수의 영향도 식(16)을 제외하고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12) 특히 식(17)과 식(18)에서는 D.W.통계량이 2에 매우 가까운 값이 되어 있다. 남자 진학수요에 관해서는 이 회귀식이 가장 적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았다.

평준화 가변수를 추가한 식(11)과 식(17)에서 평준화 가변수는 여자 진학희망률에 대해 負의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1970년대 후반의 여자 진학희망률 저하 현상(<그림 2> 참조)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 현상은, 남자에 비하여 진학기대수준이 낮았던 여자의 경우 평준화 조치가 가지는 진학의욕 상승효과보다 고졸자 증가에 따른 진학희망비율 저하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77년에는 여자의 진학희망자수 자체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러한 해석은 타

&lt;표3&gt; 여자 진학수요 분석결과

	C Quota	Entrance Household Income	Tuition Fee	Wage Difference	Difference of Employ- ment Rate	Equaliza- tion in H.S. Dummy	adj. R <sup>2</sup>	D. W.
(1)	0.336** (15.791)	0.083 (1.198)	0.046 (1.095)				0.746	0.488
(2)	0.300* (2.469)	0.090 (1.208)	0.046 (1.074)	0.016 (0.301)			0.735	0.508
(3)	0.342** (4.614)	0.079 (0.998)	0.046 (1.073)		-0.050 (-0.089)		0.734	0.492
(4)	0.277 (1.223)	0.098 (0.966)	0.045 (1.015)	0.021 (0.305)	0.008 (0.121)		0.722	0.511
(5)	0.307* (2.518)	0.162** (5.319)		0.015 (0.293)			0.733	0.535
(6)	0.290** (9.128)	0.190 (1.859)	0.102 (1.545)	0.010 (0.225)			0.771	0.535
(7)	0.322* (2.780)	0.200 (1.814)	0.097 (1.368)	0.008 (0.173)	-0.015 (-0.290)		0.761	0.526
(8)	0.272** (3.402)	0.194 (1.831)	0.112 (1.440)	0.008 (0.166)	0.012 (0.246)		0.761	0.531
(9)	0.307 (1.421)	0.200 (1.766)	0.102 (1.060)	0.007 (0.155)	-0.011 (-0.173)	0.006 (0.087)	0.749	0.525
(10)	0.324** (2.875)	0.209* (2.182)	0.107* (2.805)		-0.016 (-0.328)		0.772	0.536
(11)	0.279** (10.274)	0.319** (3.325)	0.172** (2.845)	-0.026 (-0.659)		-0.072** (-3.068)	0.837	0.722

\*p<.05 \*\*p<.01 팔호안의 수치는 t값임

&lt;표4&gt; 여자 진학수요 분석결과 (4년제 대학 입학정원)

	C Quota	Entrance Household Income	Tuition Fee	Wage Difference	Difference of Employ- ment Rate	Equaliza- tion in H.S. Dummy	adj. R <sup>2</sup>	D. W.
(12)	0.250** (7.956)	0.455** (3.321)	0.109 (1.887)	0.008 (0.209)			0.825	0.694
(13)	0.342** (3.442)	0.511** (3.440)	0.092 (1.523)	0.003 (0.074)	-0.045 (-0.981)		0.825	0.722
(14)	0.196* (2.641)	0.485** (3.384)	0.135 (2.017)	0.001 (0.034)	0.035 (0.792)		0.822	0.699
(15)	0.300 (1.633)	0.513** (3.368)	0.107 (1.297)	0.001 (0.026)	-0.035 (-0.620)	0.015 (0.273)	0.817	0.709
(16)	0.343** (3.547)	0.515** (3.776)	0.096** (3.197)		-0.045 (-1.025)		0.833	0.727
(17)	0.237** (10.148)	0.626** (5.743)	0.177** (3.876)	-0.018 (-0.659)		-0.074** (-4.279)	0.904	1.280

\*p<.05 \*\*p<.01 팔호안의 수치는 t값임

당하지 않고 전혀 다른 요인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평준화 가변수가 나타낸 負의 효과는 적당한 해석이 어려운 것이며,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보다 적합적인 모형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식(11)과 식(17)의 회귀결과에서 가계소득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결과로부터 단순하게 가계소득이 여자 진학수요를 규정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V.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남자 진학수요에 대해서는 입학정원과 가계소득 변수 그리고 평준화 가변수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을 포함한 회귀식의 결정계수는 0.9를 넘고 외국의 진학수요 분석결과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남자 진학수요가 가계소득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결과는 원래 대학진학을 희망하면서도 경제적 제약 때문에 진학지원을 포기한 잠재적 대학진학수요자들이 분석대상 기간 중 일정수준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학교 납부금 변수도 부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한국에서는 전반적인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서 가계의 대학진학비용 부담능력이 올라 그 만큼 대학진학수요도 같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가계소득과 학교납부금을 제외한 경제적 변수들, 즉 대졸자/고졸자간의 임금격차, 취업률격차에 관해서는 그들이 진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가계소득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면서도 임금격차 변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는 사람들이 경제적 변수에만 반응해서 진학여부를 결정한다는 인적 자본론이 한국의 경우 잘 맞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많은 판단재료가 필요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학진학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것이며 임금격차의 단기적 변동에 의하여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지 금전적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그 자체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위신 등이 대학진학의 주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결국 본 분석을 통해서는 대학진학의 목적에 관한 변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른 접근방법도 병용하면서 계속 연구해 갈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에 관한 변수로서는 먼저 대입정원 변수가 남자의 대학진학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학진학수요는 이 제도적 변수를 분석모델에 추가해서야만 비로소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정원이 남자 진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자신의 합격가능성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하면서 진학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가계소득 변수와 같이 이 변수가 잠재적 대학진학수요자에 대한 제약조건으로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의한 엄격한 입학정원통제가 실제 진학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던 것이고 만약 진학기회 공급량에 대한 정부 통제가 완전히 철

폐되었다면 진학수요가 더욱 높아졌을 가능성이 강하다<sup>13)</sup>.

하지만 대학정원이 진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는 학교 종류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 대입정원 변수보다는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사회에서는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선호경향이 확실히 존재하고 그 때문에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는 잠재적 진학희망자의 진학의욕을 크게 환기하지는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제도적 변수로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평준화 가변수가 대학진학수요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졌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977년 이후 남자 진학수요가 유의하게 오른 것은 평준화정책에 의하여 결정적인 선발이 연기되어서 학생들의 진학의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남자 대학진학수요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비하면, 여자 진학수요 결정요인은 아직도 상당히 애매하다. 우선 입학정원 변수에 관해서는 4년제 대학정원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여자학생의 4년제 대학 선호가 남자와 비교해서 훨씬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기타 변수는 여자 진학수요 결정요인으로서 인정하기 어렵고 각 회귀식의 결정계수도 남자에 비해 상당히 낮다. 특히 남자의 경우 어느 회귀식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던 가계소득 변수가 여자의 경우 거의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흥미를 끈다. 여자의 진학수요에 관해서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서 더 적합적인 분석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가계소득 등 경제적 제약에 관한 변수가 유의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야 말로 여자 대학진학 행위의 특징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각 가계에서 소득이 올라서 자녀의 대학진학비용 부담능력이 생겼을 경우 그 추가적 소득을 아들의 대학진학 비용으로서 쓴다 하더라도 팔의 진학비용으로서는 쓰지 않고 다른 용도(예를 들면, 남동생의 진학 준비를 위한 저축 등)에 쓰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자의 대학진학수요가 가계소득이나 학교납부금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진학에서의 남자 우선적인 가족 규범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해석이 맞다고 하면 여자의 진학수요는 중·장기적인 접근에 의해서야만 비로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며 본 분석과 같은 단기적 접근에서는 적절한 모형 구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대학진학수요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큰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제도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그 때문에 정부의 대입정원정책이나 입시제도정책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

13) 한국에서는 요즘 “대학정원의 자율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대학정원 결정권이 각 대학 측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 변화가 대학진학기회시장의 양상과 대학진학수요수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으로는 70년대 및 80년대 한국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개발주의 체제에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 대학정원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 왔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 교육정책에 어떻게 대응하여 대학진학의욕이나 그 형태가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도.

- Becker, Gary S. (196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ampbell, R. and Siegel, B.N. (1967)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19-1964"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7
- Handa, M. L. and Skolnik, M. L. (1975) "Unemployment, Expected Returns, and the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in Ontario: Some Empirical Results", Higher Education, Vol.4
- Nakata, Y. and Mosk, C. (1987) "The Demand for College Education in Postwar Japa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22, No.3
- Rosembaum, J. (1976) Making Inequality: The Hidden Curriculum of High School Tracking, Wiley.
- Schultz, Theodore W. (197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New York: The Free Press.
- Sloan, F. (1977) "The Demand for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Medical School Applicant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11, No.4
- Turner, Ralph. (1960) "Sponsored and Contest Mobility and the School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No.25

강무섭 외(1986) 『고등교육 정원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1979)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분석", 『한국교육』 Vol.6, No.1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 교육과학사

김영화 · 유한구(1994) "대학진학수요 결정요인의 시계열분석(1962-1992)", 『교육학연구』 Vol.32, No.1

백일우(1990) "고등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Vol.8, No.1

백일우(1993) "고등교육수요에 관한 연구(I)(II)", 『교육재정 · 경제연구』 Vol.2, No.1 and No.2

손준종(1994) "한국 고등교육 정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송광용(1988) "대학정원정책의 평가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논문

이광호(1995) "교육수요분석의 경제학적 접근", 『한국교육』 Vol.22

통계청(1997) 『한국의 사회지표 1997』

荒井一博(1995)『教育の経済学』有斐閣

竹内洋(1995)『日本のメリットクラシー－構造と心性』東京大学出版会,

田中寧(1994)“戦後日本の大学教育需要の時系列分析－内部收益率理論の再考察”，『経済経営論叢』（京都産業大学），Vol.28，No.4

矢野真和(1984)“大学進学需要関数の計測と教育政策”，『教育社会学研究』，Vol.39

山本真一(1979)“大学進学希望率規定要因の分析”，『教育社会学研究』，Vol.34

#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윤 건 차

가나가와대학

재일조선인('재일')이 형성된 역사를 감안하면서, 현재의 아이덴티티의 모습, 그리고 장래의 전망 등에 대해서 최근의 세계의 학문적 흐름과 관련시켜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세기 말을 맞이하면서 세계는 바야흐로 '세기말'의 양상이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국가의 쇠퇴가 예상되면서도, 국민=민족적 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소수파(minority)의 존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경제에 급속도로 편입되어 가면 갈수록, 한편에서는 각종 하위집단이 스스로의 아이덴티티(정체성, identity)를 찾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거기서는 때로 '마이너리티 내셔널리즘(minority nationalism)'이라는 말이 발생하게 되어, 자타 모두 '내셔널리즘'이라고 인정하는 집단적 정치행위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다루는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소수파이지만, 다만 현재 재일조선인 전체에 공통되는 의미로서의 '소수파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이 있는지 어떤지는 의심스럽다. 확실히 오늘날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확고한 민족공동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내셔널리즘으로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상에 대한 위기감의 표명임과 동시에 재일조선인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한 표명이기도 하다.

재일조선인에 있어서 이 세기말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방후 반세기를 경과하여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이고, 더구나 남쪽은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 혼란, 북쪽은 국도의 식량위기라는 고통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재일조선인은, 일본 속에서 제3세계(남)적 요소를 가진 존재이면서도,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중추(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일조선인도 현실에서는 일본 경제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1세에서 2세, 나아가서는 3세, 4세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고, 민족교육을 받는 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가운데, 일본국적의 취득자가 증가하기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재일조선인 사회는 바야흐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상태나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복합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일본과 남북한의 정치 상황이 또한 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재일조선인을 규정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system)에 따라 한국이나 조선이라는 '국적(표시)'인지,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혈통'인지, 아니면 역

사나 문화에 얹힌 ‘의식’인지, 나아가서는 제일조선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 등등 다양한 의견이 복잡하게 얹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제일조선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장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근대성과 식민성의 상호관계와 탈식민주의라는 최근의 학문적 과제와도 관련시켜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일’ 총수는 약 65만 명이라고 하지만, 戰前부터의 거주자에 유래한 특별영주자는 55만 명을 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일본국적의 취득자는 1995년에 비로소 연간 1만 명을 넘었고, 1952년부터 96년까지의 누계는 20만 7천명을 헤아리기에 이르렀다. 일본국적 취득자 가운데에는 국적은 달라도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고, 日本国籍取得(帰化)=同化, 民族=國籍이라는 종래의 이해에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일’의 젊은이들은 동포끼리의 결혼을 바라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인과의 결혼이 이미 8할에서 9할에 달하고, 게다가 그러한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일본인 이혼율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에서는 상당한 기간, 또는 현재도, 일본어, 일본문화를 기축으로 하는 ‘單一民族觀’이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일본’ ‘일본인’이라는 것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방적으로 자기를 변용하고, 적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른바 ‘同化와 排外’의 논리이고, ‘제일’도 ‘일본인’이 되든가, 아니면 차별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대국’ 일본이 급속히 ‘國際化’되고, 일본사회의 ‘多民族 狀況’이 표면화함에 따라, 또한 동시에 ‘제일’이 定住思考를 강화하여 일본사회에 대한 ‘순응’을 모색함에 이르러, ‘民族共生’이라든가 ‘多文化主義’를 과제로 하게 되었다. 언어나 문화, 역사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共生의 思想, 國際理解, 多文化主義라는 말이 일본사회의 单一民族觀을 상대화하고, 일본을 시민사회로 성숙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말인 오늘날에 있어서, ‘제일’의 아이덴티티의 핵이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해 상당히 의심스럽다. 무엇을 가지고 ‘在日’로 규정해야 하는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국적’, ‘혈통’, ‘역사’, ‘문화’와 같은 것을 일단 들 수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네 개의 전부를 명확히 가지고, 스스로를 ‘제일’이라는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국적이나 혈통, 역사, 문화 중 하나만에 강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이 네 개 모두에 대해 명확한 자기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자기 스스로를 ‘제일’이라고 규정하고, 또는 규정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자기의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이라고 만은 할 수 없고, 부정적인 것인 경우도 있다. ‘제일’임을 명확히 자각하고 조국의 통일이나 ‘제일’의 권리옹호, 또는 예술이나 학문의 창조활동에 힘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꾸로 부모나 조국을疏어하고,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불행한 형태라 하더라도 ‘제일’을 의식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제일’이라

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일’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정치상황에 크게 그 삶이 좌우되고, 본국의 국가권력의 구속을 다양한 형태로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국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해서 ‘재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국적을 취득한(귀화)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됨에 따라 뿌리로서 조선(한국)에 눈을 뜨고, 스스로를 ‘재일’로서 위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거꾸로 한국이나 조선의 국적(표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일’의 자각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혈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문제이다. 확실히 구체적 인간으로서 부모의 존재나 호적, 여권과 같은 눈에 보이는 형태의 것으로 스스로의 혈통을 의식하고, 자각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재일’은 形質의으로는 일본인과 거의 다른 점이 없다. 인종차별의 기본적 지표가 되는 백인과 흑인과 같은 피부색의 차이도 없다. 얼굴 형태 그 외에도, 그것을 가지고 일본인과 ‘재일’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일’이 식민지지배의 소산이라 해도, 일본과 조선의 근대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으로는 오히려 스스로의 근거를 역사속에서 구하지 않는 쪽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문화’도 또한 아이덴티티의 명확한 근거가 되는가 라고 하면, 대답은 매우 애매모호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재일’은 조선의 전통을 이은 문화의 제상을 단편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나, 식습관, 예의범절 또는 음악이나 춤미 등의 형태에서 그러한 문화를 이어받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재일’의 아이덴티티의 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재일’의 대다수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방법에 대한 성찰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태어난 이후도 스스로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 문득 정신차려 보면, 요컨대 사고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말았다. 당연히 교육을 正이라는 것, 善이라고 본다면 처음부터 잘못되고 만다. 교육은 현실에서는 국가나 그 외의 틀과 떼어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 자체, 실제로는 스스로의 주체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재일’이 일본의 소수파라고 할 때, 그 아이덴티티의 형성은 당연히, 다수파(majority)인 일본인=일본국민의 형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래 소수파라는 것은 근대국가가 ‘법 아래 평등’을 자명한 전제로, 국민교육에 의해 국민통합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컨대 다수파의 통합과정에 있어서 그것에 반발하고, 또는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동화되지 않는 집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소수파이고, 그것은 다수파의 통합이념 내지 과정의 변화에 의해 변하는 것이다. 다수파나 그 형성과정의 내실이 변하면, 소수파의 그것도 변동한다

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양자의 관계를 고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소수파의 상황변화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고 만다.

在日朝鮮人の 정신태도는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일본이 좋지만, 싫기도 하다. 조선(‘재일’)은 싫지만 좋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재일’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한 영역(영토)의식이나 단일 정치적 의지를 가진 법률이나 제도의 공유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리 민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북이나 남을 ‘조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암도적 다수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다는 현실에 있어, 조국(母國)과의 일체화에 의한 아이덴티티의 구축은 허구이기조차 하다. 세계에서는 母語와 母國語의 일치가 보통이라고 해도, ‘재일’에 있어서는 母語는 일본어이다. 게다가 짚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조선어는 외국어이고, 모국어가 아니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재일’에 있어서는 일본이 조국이고, 母國인가 라고 하면, ‘재일’ 총체의 아이덴티티의 실상에서 볼 때, 그것은 비현실적인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재외동포 가운데 在日朝鮮人만이 한국 내지 조선의 국적(국적표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보더라도 ‘재일’이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아이덴티티는 원래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성 문제이다. 여기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재일’에 있어서 ‘타자성’이란 무엇인가. ‘재일’이 일본과 조선의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재일’에 있어서 일본은 ‘타자’인가. 또는 짚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조선은 ‘타자’인가. 무엇보다도 타자란 ‘재일’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인가. 또는 ‘재일’의 ‘내부’, 즉 정신의 한쪽 깊히 존재하는 것인가. 현실의 상태에서 볼 때, ‘재일’은 ‘자기’와 외부에 있는 ‘타자’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와 그 내부에 숨은 ‘타자성’, 그것도 ‘자기’에 내재화된 일본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타자성’과의 조우, 격투, 타협, 협조라고 하는 곤란한 매일 매일의 생활이 요구되고 있다.

어쨌든 전후 20년간은, ‘재일’ 의식은 주로 일본과 조선이라고 하는 양대 대립을 품은 것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변하는 것은 70년대 이후 ‘재일’의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권리옹호 투쟁에 의해서였다. 일본과 조선의 대립, 분열이 아니라, 일본에 정주하는 재일외국인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요구한다는 새로운 목표 설정에 의해, ‘재일’은 일본과 조선 양방을 내부의 타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강화해 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밝힌 것처럼 유럽 근대 동양연구 내지 동양학은, 오리엔트에 대한 유럽의 지적 지배양식으로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을 형성했다고 한다. 거기서는 ‘서양’이 ‘문명’=지배자로 설정되고, 그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동양’은 후진적, 奇矯的, 수동적이라는 이미지로 다루어졌다. 이른바 ‘동양’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양대 대립의 허구(픽션) 아래에서 피지 배의 틀 속에 규정되고, 게다가 그러한 知의 양식이 문화적인 힘을 행사하는 지배적 체계로서 꾸며내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탈식민주의) 논의는 식민지 체제가 만들어 낸 틀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것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인식 하에서, 이제까지 상식으로 여겨져 왔던 지의 체계, 지의 틀을 해체·재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는, 제국주의/민족주의의 양대 대립의 脱構築을 도모하고, 종주국과 식민지가 분열적, 대립적이 아닌, 또한 일방통행도 아닌, 각각 상호 침투적으로 쌍방향적이며, 거기에서 형성되는 아이덴티티도 이원적이 아닌, 복합적·관계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포스트콜로니얼의 문제는, 제국주의와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과 아이덴티의 문제만이 아닌,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문제와도 중첩되고, 그것들은 '서구'나 '근대'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으로도 연동해 간다.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의 문제는 이론이나 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재일'의 아이덴티티와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말하자면 '재일'의 아이덴티티는 탈식민주의와 관련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일'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면, 거기서 이야기되는 '우리'는, 타자와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일찍이 식민지주의적 폭력을 일삼은 일본인은, 타자 멸시, 타자 부인의 '우리'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라 할 것이다. 확실히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일본인이 '재일'에 멸시관을 품고, 차별적 언동을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거꾸로, 일본 사회가 변화하고, 그것에 동반하여 '재일'의 처우개선이 실현되어 왔던 원동력도 또한 일본인의 양심에 의한 것이다. 사이도 류로 말하면, 저항과 해방의 위대한 이야기(전설)는, 식민지화되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고, 제국주의적 忍從으로부터 탈각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식민지지배의 측에 속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공동체의 설현이라는 새로운 이야기(전설)를 위한 투쟁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그 의미에서도, '재일'이 과거 일본인의 억압·가해에 대항해야 하고, 필사적으로 '민족'에 저항의 에너지원을 요구했다고 해도, 그 민족에 의존했던 귀속의식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때로 일본인과의 공생을 방해하는 타자멸시, 타자 부인의 요소로도 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에서는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 사상에 의거하는 것이 일본인과 '재일'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우리' 의식의 확보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재일'이 '민족'에 의거하는 것은 모두 잘못일까 라고 하면, 물론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식민지주의적 폭력이 노골적인 형태로 존재할 때, 저항하는 측의 민족의식이나 내셔널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민족주의'로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관계, 사회관계의 창출을 꿈꾸고, 자기 해방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든지, 민족의식,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약자, 저항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리고 많은 경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강자, 억압자, 가해자가 민족을 이야기 할 때 그것은

타자멸시, 타자부인, 나아가서는 파시즘적인 영향을 가지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것은, 약자, 저항하는 자가 말할 때야말로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인류 전체의 보편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자기 출신을 확인하는 역사의식이 아주 중요하다. ‘재일’ 안에는 아직도 민족으로서의 집단적 기억에 기인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에 아이덴티티의 핵을 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것이 북이나 남의 민족주의 내지 국가주의와도 얹혀, 배타적인 자민족 중심주의나 반일주의로서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의 총체는 지금에 와서는 일본에서의 定住를 기정사실로 하고, 거기에 세대 교체나 일본인과의 결혼 증가 등이 중첩되어, 이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급속히 확산, 내지 회복해져 가고 있음을 분명하다.

‘재일’이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곤란해 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재일’만이 아니라 일본인도, ‘자격’으로 스스로의 민족을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결국 ‘재일’의 ‘민족’의식은 다양한 요소를 가진 복합적인 것이지만, ‘재일’의 현실과 미래에서 보면, 특히 자기 출신을 확인하는 역사의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꿔 말하면, ‘재일’을 규정하는 것은 국적이나, 혈통, 의식, 또는 투쟁하는 것 등 다양하게 이야기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내력을 확인하는 역사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혈연(血)이 아닌 출신, 즉 역사의식, 역사인식, 역사적 자각이다.

물론 현실 생활에 있어서 ‘재일’을 규정하는 커다란 요소는, 국적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국가 체제이고, 또한 남북의 국가 체제이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일’은 민족=국민과 같은 共同態로 동화될 수 없는 ‘자기’ 내면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때, ‘재일’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수파로서, 기억 및 확인으로서의 역사의식, 민족의식을 보유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경험한 저항의 역사, 해방에 대한 투쟁의 역사의 자각이기도 하고, 확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일’은 아직까지도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 생활은 탈식민화를 과제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는 여러 사상조류가 있지만 그 중 하나의 호름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리즘=탈식민주의’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금의 한국을 ‘식민지 이후=포스트콜로니얼’이 아니라 ‘신식민지’로 보는 사상이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였을 뿐 아니라 해방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신식민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과제가 독립한후의 식민지잔재 청산 문제라고 하면 탈식민주의의 과제는 과거 식민지지배의 극복과 동시에 오늘의 폐지배하에서의 탈식민화의 동시수행이다. 따라서 거기서는 친일/친미 문제뿐 아니라 식민지지배에 기인한 분단과 통일이라는 민족문제도 들어온다. 더구나 그 탈식민주의는 기본적으로는 탈근대, 반근대,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일’을 볼때 그 미래의 방향은 당연히 탈식민주의적인 것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재일’은 제3세계 출신이면서도 현재는 제1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주장하는 세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제3세계 출신이면서도 현재는 제1세계의 국적 소지자라는 것과 비교할 때 ‘재일’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까지도 아이덴티티의 근간을 이루는 국적은 제3세계(남북조선)에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재일’은 근대나 근대성/식민성, 나아가서는 탈식민성/탈식민주의의 과제를 생각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투고규정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호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 Perfect”로 입력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호글” or “Word Perfect”.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543-0024 日本 大阪府天王寺区舟橋町2-2 OICセンター

国際高麗学会「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IC Center, 2-2 Hunabashi-cho, Tennoji-ku, Osaka,  
543-0024, Japan

### 논문모집 \*\*\*\*\*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 제 고 려 학

---

발행일 : 2001년 3월 30일

편집인 : 「국제고려학」 편집위원회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543-0024 日本 大阪府天王寺区舟橋町2-2 OIC Center  
国際高麗学会「国際高麗学」編集委員会

TEL : +81-6-6763-2684

FAX : +81-6-6763-5080

---